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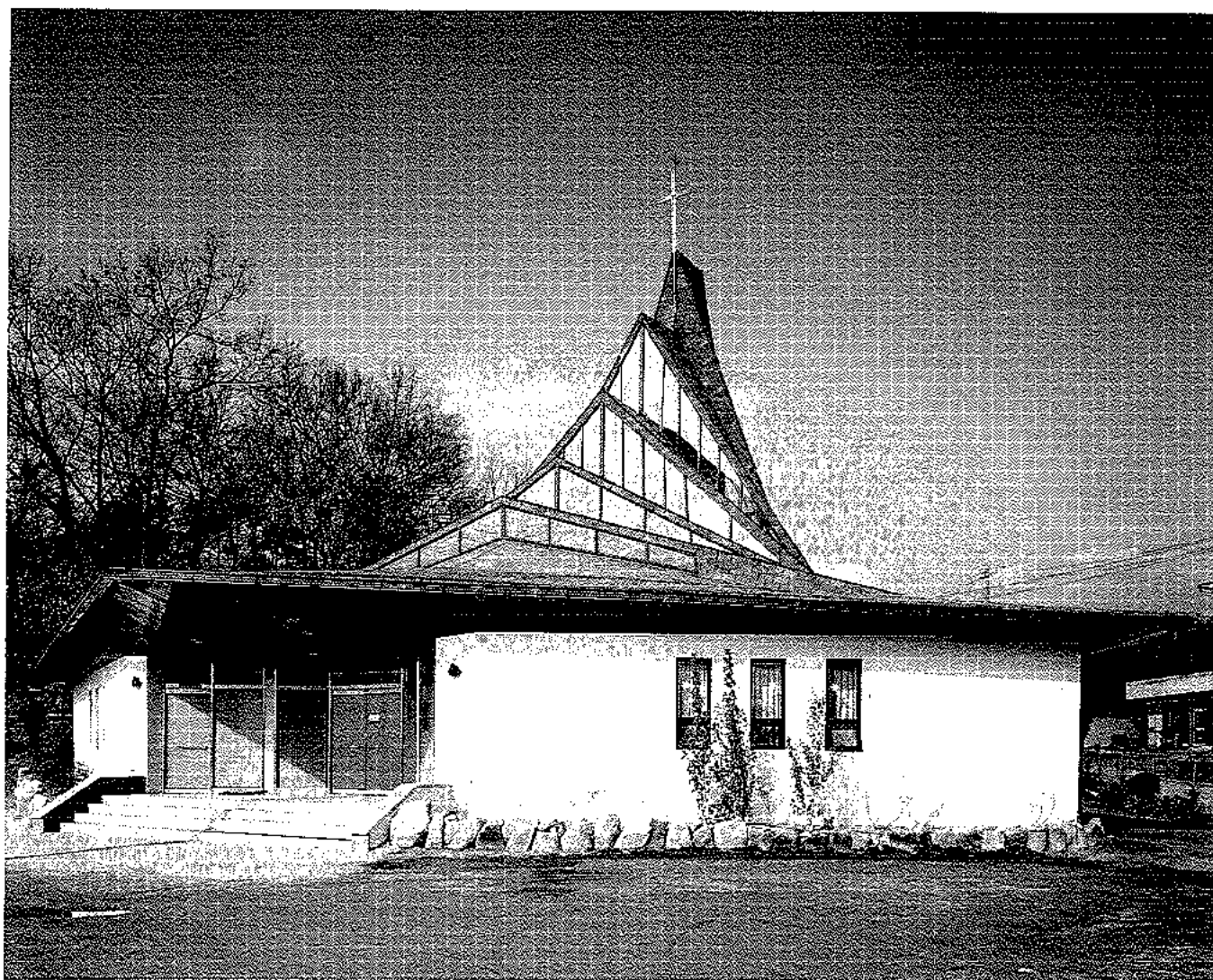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3년 6월호
통권 290호(매월 1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서)라-26
1985년 12월 31일 제9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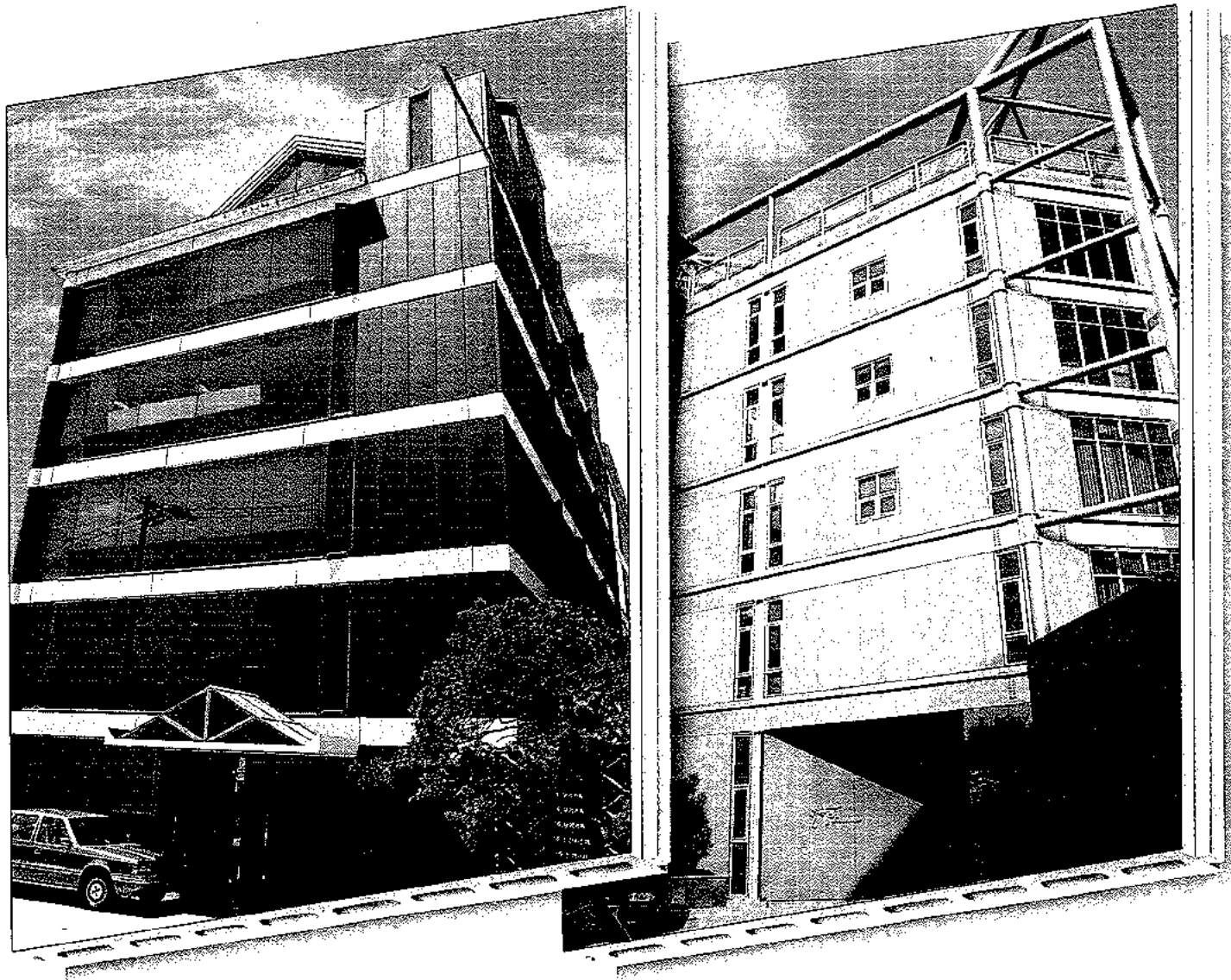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June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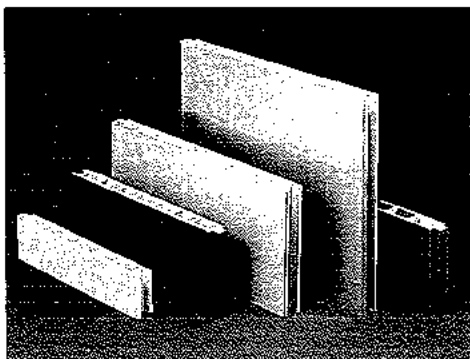


6

JUNE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 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축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2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제품·시공문의상담 (02)280-6250~8 특수영업부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라동위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 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몽신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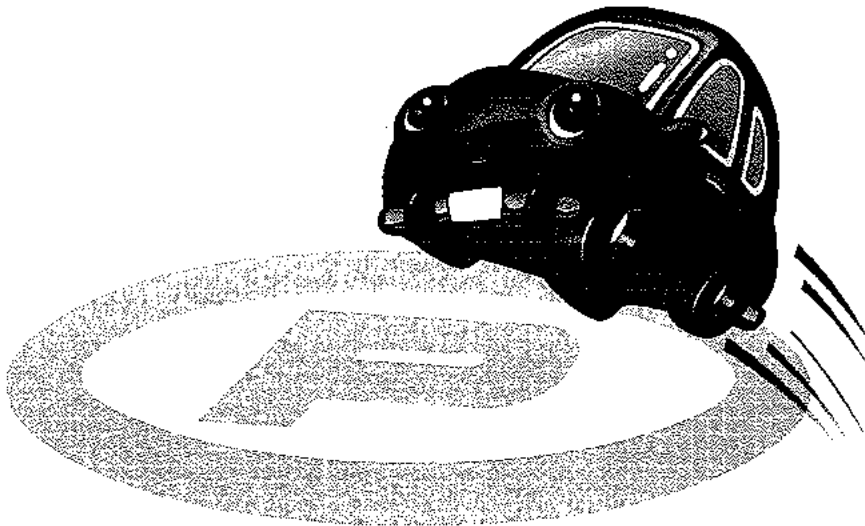
서울特別市 麻浦區 坡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 209-1 松麻里 山 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워킹전용의 Computer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장치와 핸드체인인 장치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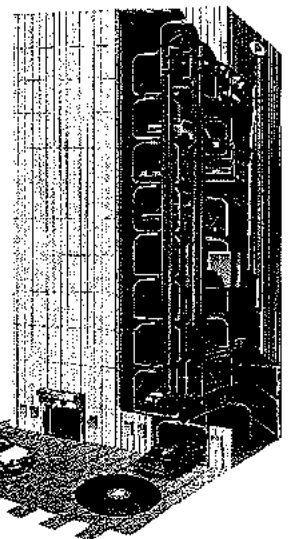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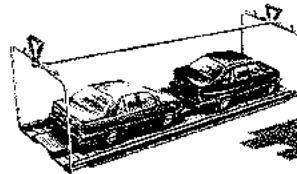
수직순환방식 대형제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캐이지 (Cage)를 메달이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캐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강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SAMSUNG

삼성중공업

어머니,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농촌의 주거공간 — 인슈 그린하우스가 바뀌드립니다.

힘든 논·밭일 끝내시면
높은 부엌 문지방 오르내리시면서 허리 한 번
펴보시지 못하시고 나이드신 고향의 어머니!
'내사, 고향이 좋다' 시는 어머니는 편리한 도시생활도
싫다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나요...
이제 그 푸르른 고향, 좋은 터전 위에 전원주택
인슈그린 하우스가 생깁니다.
어머니 편히 지내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의 편리하고 행복한 집 —
인슈그린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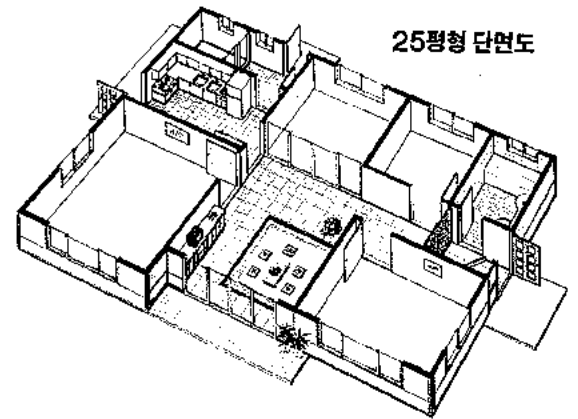
"노부모님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고, 생활도 편해지니
퇴직후에 저도 여기서 살고 싶군요."/



"영농생활은 물론이고
집안일 하시기도 편하시겠어요."/



"화장실이 깨끗한 욕실과 함께 있어
이제 우리집처럼 편해요."/



25평형 단면도

첨단 신 건축자재로 시공되는
인슈 그린하우스의 특징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인슈패널 시스템과
다년간 축적된 연합인슈의 노하우로 실현되는 전원주택—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 고급화, 시공 단순화 등으로
기존 주택의 건축공법에 비해 25~30% 저렴하게
시공됩니다.

탁월한 주거기능이 있습니다.

최고의 단열소재 폴리우레탄 폼 (PIR)과 1급
불연재 그라스울을 사용하는 전원주택—
구조성과 내구성은 물론이고, 방음, 방수, 방진 기능으로
부터 냉·난방비의 절감효과에 이르기까지 기존 주택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능으로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로부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치밀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연합인슈,
대명건설—
애프터 서비스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주택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평형 전용면적 : 65.6㎡ (19.88평)

23평형 전용면적 : 76.2㎡ (23.1평)

25^A평형 전용면적 : 84.24㎡ (25.53평)

25^B평형 전용면적 : 81.69㎡ (24.76평)

한국의 전통 양식을 기초로하여
영농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됩니다.

욕실과 세면 시설이 주택 입구에 설치
되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님들을 위한 방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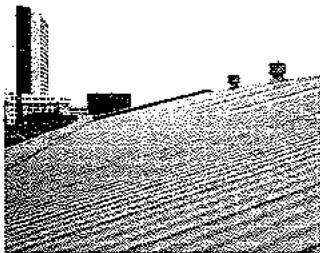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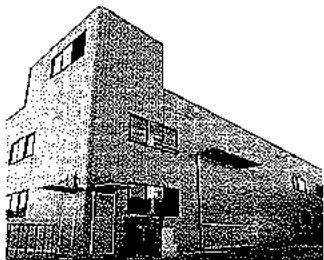
주식회사 연합인슈
주식회사 대명건설

부 설 기술 연구소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전화 : (대) (02) 553-6891, FAX : 553-1651
공정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39-2
전화 : (02) 745-0687, (0336) 34-8880, FAX : (0336) 32-4243
부산사무소 : (051) 816-7701
광주사무소 : (062) 527-7144 대구사무소 : (053) 66-2202



패널의 품질—중간단열재가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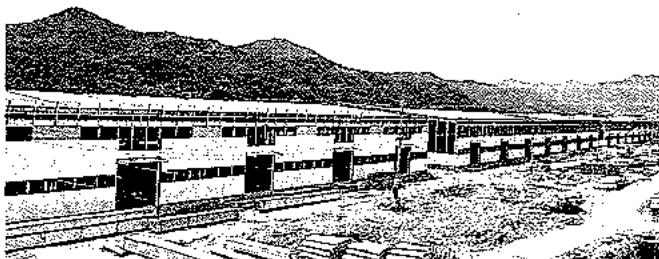


**아이소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
조립식 단열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터스트리의
하이드로백 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 아이소핑크를
중간단열재로 사용하여 건축자재 톱메이커인 벽산의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 단열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차례/1993년 6월호 통권 제290호

취임사	협회의 나아갈 길/吳雄錫	10
일하며 생각하며	제자리 잡기/宋洙九	12
회원작품	양재 287.3/趙成龍	14
	주내교회/金漢根	20
	동덕여자대학교 인덕관/金仁錫	24
	한마음 문화센터/吳慶恩	28
	시·상 빌딩/劉建	32
	동산빌딩/金春雄	36
스케치	生長의 집/孫旭	38
계획작품	양주군 문예회관/林長烈	40
비평	趙成龍 건축의 엘리티시즘 「양재 287.3」/朴吉龍	42
특별기고	구조안전진단 감상(2)/李昌男	50
연구	도심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1)/崔燦煥	53
	르 꼬르뷔지에와 建築創造의 力學(1)/李英哲	58
	품질관리 그 문제점과 대책(1)/李仲浩	64
법령	건축법 절의·회신	70
현상설계	가인기념·군민 종합회관	76
	동양그룹 본사사옥	82
	할렐루야 교회	90
	부산시립 미술관	98
연구	현행 주택의 온수온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池健相	106
기고	건축물 설계도서의 저작권법상의 권리/鄭德薰	110
법령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113
통계	1993년 4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116
협회소식		118

發行人: 李永熙

編輯企劃: 編輯委員會

委員長: 李鍾寬

委員: 金文圭, 金仁品, 吳元根,
金相景, 金倬孜, 姜健熙

編輯·取材: 出版事業部/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특별시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録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録: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Lee, Young-Hee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Jong-Kwan

Member: Kim, Moon-Kyu / Kim, In-Cheol
Oh, Won-Keun / Kim, Sang-Kyeong /
Kim, Kyeong-Ja /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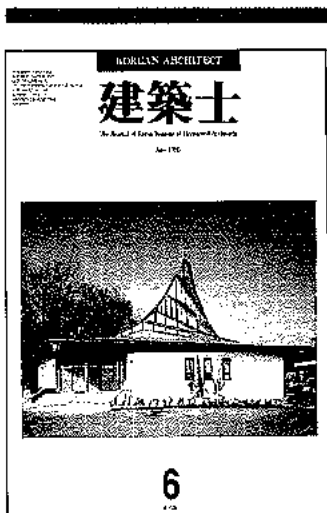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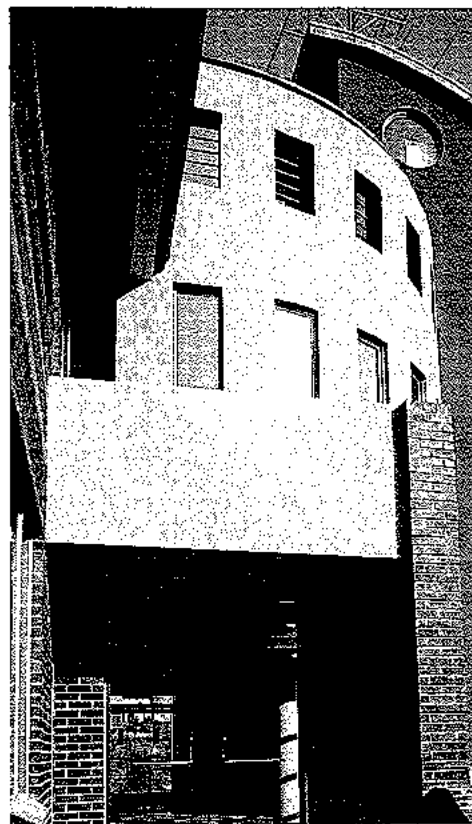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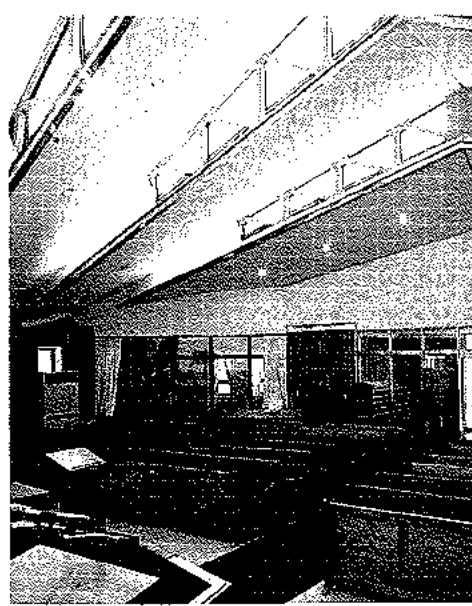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사진: 주내교회
(설계/김한근)

KIRAS Way	Oh, Woong-Suk	10
KEEP YOUR BUSH	Song, Swoo-Koo	12
WORKS	YangJae 287.3 / Joh, Sung-Yong	14
	Chunae Presbyterian Church / Kim, Han-Geun	20
	Induk Hall Dongduk Women's Univ. / Kim, In-Seok	24
	Hanmaeum Culter Center / Oh, Kyeong-Eun	28
	Sisang Building / Yu, Keon	32
	Dongsan Building / Kim, Choon-Woong	36
SKETCH	A Herb Clinic and Residence / Son, Wook	38
PROCESS WORKS	Yangju gun Culter Centere / Im, Jang-Yeol	40
CRITICISM	Eliticism of Joh, Sung-Yong's Architecture Yangjae 287.3 / Park, Kil-Yong	42
FEATURE	Description of Structual Security Examination(2) / Lee, Chang-Nam	50
REPORT	The State and Controversial Point of Downtown Redevelopment / Choi, Chan-Hwan	53
	Le Corbusier and the Mechanism of Creation in the Architecturale Works / Lee Young-Chul	58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It's Controversial Point and Countermeasure / Yi, Chung-Ho	64
LAW & ORDINANCE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70
COMPETITION	Kain Memorial and Inhabitants Culture Center	76
	Dongyang Group Head ofice	82
	Halleluiah Church	90
	Pusan City Art Museum	98
REPORT	A Study on the Controversial Point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Under-floor Heating System Housing / Chi, Keon-Sang	106
FEATURE	The Copyright of Architectural Design Drawing / Cheong, Teok-Hun	110
STATISTICS		116
KIRA NEWS		11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달일 안내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서울특별시건축사초우회 1603-55, 581-5715~8, 시대문화회/시대문화연구원 169-25, 333-6911, 원학문화/원학건축연구소 1422-17, 882-0744, 도봉문화/도봉구수영동 191-13, 933-3425, 영등포문화/영등포구당산3가181, 631-2113, 강동문화/강동구상대동317-4, 484-6840, 강서문화/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문화/성동구구로동252-16, 446-5244, 동대문문화/동대문구신원동101-7, 923-6313, 종로문화/종로구수성동16-18, 735-4805, 마포문화/마포구상안동275-1, 336-5067, 송파문화/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문화/중구로동2가49-11, 279-1415, 용산문화/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문화/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은평문화/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남작문화/남작구사당동306-8, 815-3026, 강남문화/강남구논현동242-30, 511-5515, 노원문화/노원구상대동217-4, 933-8076, 양천문화/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중랑문화/중랑구민복동166-46, 923-6123, 성북문화/성북구상선5가110, 923-1401, 구로문화/구로구구로동86-4, 853-4048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 진구 범천동847-18, 28(05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8, (053)53-88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 (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7-6129~30, 수원문화/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3-6662, 7072, 안양문화/안양시안양동223-5, (031)40-2688, 부천문화/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464-1554, 성남문화/성남시수정구대평동3007, (031)2755-5425, 의정부문화/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1)876-0458, 용인문화/용인시서생동343-22, (031)3666-6153, 고양문화/고양시금곡동유구388동16-505, (031)63-8902, 구리문화/구리시수택동409-2, (031)63-2337, 이천문화/이천시이천읍공미192-1, (031)633-0545, 평택문화/평택시관산동220-2, (02)684-5845, 안산문화/안산시고산동536-1, (031)830-9130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전동39-5, (0361)54-2442, 원주문화/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강릉문화/강릉시성내동6-14, (0391)2-2262, 속초문화/속초시동명동466-63, (0392)133-5081, 삼척문화/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양양문화/양양시양양읍양양1리960-12, (0372)43-2605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 충주문화/충주시의전동673-1, (0411)847-3082, 제천문화/제천시제천읍동8-8, (0413)43-6253, 옥천문화/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5-4088, 천안문화/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홍성문화/홍성군홍성읍오곡리239-1, (0451)32-2755, 부여문화/부여군부여읍봉남리703-1, (0463)2-2217, 대청문화/대청시대청동197-10, (0452)131-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1(대극빌딩 508), (0552)87-6007~8, 이리문화/이리시남동동1가77-22, (063)52-3304, 군산문화/군산시신창동35-4, (0554)445-4069, 남원문화/남원시하평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783-23(추천회관)(062)364-7667, 33-9944, 목포문화/목포시대안동1, (0631)43-3318, 순천문화/순천시장원동51-11(0661)33-2157, 여수문화/여수시광복동411면지, (0662)4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동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포항문화/포항시죽동43-8, (0542)44-6025, 46-1661, 경주문화/경주시동원동801-4, (0551)3-4710, 구미문화/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47~8, 안동문화/안동시서부동157-1, (0551)54-5703, 김천문화/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영주문화/영주시하명3동311-12, (0572)133-9922, 김천문화/김천시중앙동289-3, (0581)53-6877, 상주문화/상주시남상동36-7, (0582)32-5868, 경산문화/경산시봉명동 859-5, (053)812-6721, 달성문화/달성군하연읍천내리113, (0531)634-6336, 양천문화/양천시광구동26-10, (0563)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47, (0551)46-4530~1, 통영문화/통영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636, 진주문화/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충무문화/충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 김해문화/김해시부민동611-1, (0525)35-5692, 밀양문화/밀양시내면동392-1, (0527)335-1848, 거창문화/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양산문화/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1-3050, 거제문화/거제군신원읍교현리139-2, (0558)635-3432, 삼천문화/삼천포시동남동91-5, (058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289-6, (064)22-3248, 서귀포문화/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162-2233

20대 회장 취임사

協會의 나아갈 길



吳雄錫 會長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찬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같은 동료의 한사람으로서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창작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회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과 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전문기술 직능단체로 성장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엄청난 개혁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추어 우리의 현 위치를 솔직히 조명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하여 과감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건축사의 새로운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광범위하며 깊이 있는 연구와 아울러 사회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회 운영과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사법의 개정 건의는 회원의 자유스러운 저작 활동과 권익이 보장되며, 국민을 위한 객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협회의 운영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곧 제출, 협의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무를 다루어 나갈 주체가 될 위원회를 중·개편하여야겠으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일에 적극 협력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주업무인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성격을 분명히 하고, 업무의 한계와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위원회를 “설계위원회”와 “감리위원회”로 분리하여 그 밑에 필요한 실무 분과위원회를 두어 전면적으로 업무연구를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의 회원수는 5월말 현재 4,105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천년도 초에는 약 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도 사전에 대비하여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협회의 진로목표는 이상에 두되, 협회 현안해결은 현실에 발을 붙이고, 다수 회원의 공감대 형성을 근간으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발간되고 있는 “건축사”지는 우리 협회의 유일한 홍보지로서 우리들의 좋은 작품을 소개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작품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의논하는 대화의 장으로서 뿐 아니라 회원업무의 활동상 문제점을 파헤쳐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회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 15개국 건축사 협회의 모임인 ARCASIA와, 친선 각서 교류가 되어있는 일본건

축사회 연합회와 정기적으로 모임 또는 상호방문 등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작품전시의 교류 등을 통하여 좀더 깊이 있는 교류활동을 펼쳐 국제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87년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연금제도는 여러 회원님들의 협력으로 많은 기금이 예치되었습니다만, 이 기금은 노후의 복지 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계신 회원이 필요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치된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여신업무를 개발하여 여러분들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자발생으로 인한 일부 기금은 일부 면허대여 등 업계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의 폐업권장 수단으로 활용하여, 그 결과 혜택이 회원 여러분에게 더 큰 수익이 되어 명예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임 회장과 이사 전원이 회장 취임 초기에 사임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부덕한 본인이 회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하게 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회원 여러분앞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취임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 6. 23.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 雄 錫

제자리잡기

Keep Your Bush

宋洙九/건축사 사무소 한송

by Song, Swoo-Koo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해를 다짐하고, 새봄의 희망을 안고서 새 날의 꿈을 꾸던 올해도 미지의 설렘 속에 어느덧 6월에 접어들었다.

유난히도 빠른 여름은 서두름에 익숙하여진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듯 신록의 기억으로부터 짙어진 녹음으로 변하여 더위 속에 그 싱싱함을 잃어가는 듯하다.

탁해진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의 짓눌림인가!

어떻든지 껌테기 삶에 가위눌림은 나 혼자만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보훈의 달 6월에 느껴지는 답답함은 연륜의 삶이 두터워질수록 더욱 더 가중됨은 時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족함일까 아니면 이해력없는 편견일까? 보훈의 달의 의미는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단 하나의 생명을 소중히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못다한 삶을 애도하고 추모하면서 동족 상잔의 쓰라린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고저 다짐하는 것이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웃이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을 당했으며, 오늘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처속에 살아오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50대후 세대에게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않는 생생한 기억 때문이다.

지난 어느 송년회로 기억된다. 장정 또는 건강 식품이라면 염치없는 요즈음에 부패 식사에서 “호박죽”은 인기식품의 하나이다. 그런데 전쟁 당시의 굶기를 밥먹듯 하던 시절에 오직 호박으로만 살아온 한 친구의 호박죽 기피증은 어련 그 시절의 지워지지 않는 전쟁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어 끔찍했던 옛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다.

죽음의 의미도 모른 채 삶의 애착도 버려야 했던 처절한 전쟁 시절, 가난과 무지 속에 인고의 세월, 고난과 죽음의 혼란 속에서 오늘의 삶을 이어온 지 40여년, 오늘이 있기에 그 죽음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가치는 많이 변하여진 느낌으로 相은 하나인데 입히는 옷에 따라 편리한 대로 끌려가는 像은 애처로움만 느낄 뿐이다.

대변혁의 세계속에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분단 국가의 의미조차도 망각하는 이 시대의 우리는 6·25 이후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 인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더우기 새로운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 창출같은 북한의 핵 개발 논쟁과 주체사상의 고립화는 죽음을 앞둔 자의 참회보다는 우물안 개구리의 방자함에 촉각을 세우지만, 낙랑공주의 어리석음 같은 현실속에서 새 정부의 紀元과 더불어 일부 대학생의 이름 바뀐 운동권의 허상과 변화없는 행동에 6월은 더욱 허전함과 앓음함을 느끼게 한다.

남의 잘못과 지난 일의 역사는 오늘의 삶의 지표가 되며, 제자리 잡기의 기준이 되어야 하거늘 편협된 판단과 이기적 사고의 행위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며, 대승적 가치기준을 오도하고 있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어렵기만 하다.

짧은 우리의 현대사임에도 수없이 바뀐 정치 풍토의 기현상은 우리의 가치기준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감각의 마비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새 한국 창조의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의 새로움과 긴박함을 요즈음과 같이 실감하기는 전쟁이후 처음같은 느낌이며, 매일 달라지는 주인공과 사건에 대하여 충격과 허망함에 지속적 흥미보다는 치부를 가리고 싶은 본능의 욕구같은 느낌 뿐이다.

오늘의 세차게 부는 바람속에 날리는 寄生의 부류가 幻影이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면서 제자리를 잡아 하루속히 그리고 굳건히 뿌리내려 枯死하지 않고 건실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마다 口頭禪같은 국민에 대한 주제는 이번에도 예외없이 “신한국 창조”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순박한 우리는 새로운 주제의 선장에 긍정적으로 동참하였으니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으나, 이 또한 역사에 맡겨야 할 일이 아닌가 하며 빈 수레의 요란함이 타산자석임을 알아 말없는 다수의 경외심에 방편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자리 찾기에 사들리아 할 것 같다.

오늘날 우리는 남의 자리에 너무 연연하여 총횡무진으로 무질서하며, 나의 일보다 남의 일에 흥미와 관심으로 기력을 쏟아 국력을 낭비하여 용이 이무기에서 토룡으로 둔갑하는 망신과 정통성, 문민정치 등의 순수한 단어가 언어의 오염으로 변질되어가며 감정의 섬세함을 잃게하고 있다.

“우리 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외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 사회의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주변을 둘러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주인이 됩시다.”라고 외친 도산의 獅子吼는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참 주인이 되었는가 되돌아보고 적극적인 참여로서 주인이 되는 길이며, 지혜의 힘을 모아 역경의 곤란을 극복할 때 미래의 문은 열리게 되며, 우리의 자리를 찾게될 것입니다.

勸善懲惡이라는 우리의 고전이 갖는 大意는 오늘날에 懲善勸惡의 주관없는 언론매체로 방향을 잃고 소극적이며 이기적인 정치권의 차원은 언제 그 자리를 높이게 되며, 부화뇌동하는 무능력한 지식인의 편견은 언제 제자리를 찾아서 남의 미래를 점치는 해외석학의 紙上칼럼을 차지하게 될지! 삶의 안전수칙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기계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제자리 잡기는 그리 쉽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의 유기체가 세찬 바람에 도마노 게임이 되지않기를 바라며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

제자리 잡기란 大乘의이며 利他的이어야 하고 뿌리깊은 達人의 경지일 때 비로소 신 한국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제각각의 자리가 존중되고 발전되는 우리의 문화속에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달인적인 장인의 자리는 찾지도 못하고 곱게 보지 못하는 사회의 눈초리는 오늘의 경제 성장에 일조하였던 해외공사에서 완벽한 기술의 세계적인 명성을 부끄럽게 하며, 전문기술안으로서의 건축사의 위상 역시 제자리 아님을 우리모두 인식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건축물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설계자의 어눌한 설명자책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서야 어떻게 하라마는 이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우치가 아닐까?

자긍심없이 기생하다시피하는 우리가 과연 제자리에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술의 창조자라하며 지성인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은 환경 공해의 요소이며, 존경받지 못하는 지성은 코미디이며, 지속됨은 비극이다. 또한 우리는 돈키호테가 아니다. 그는 흥성스러운 산초가 있었으므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산초도 없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산초 없는 돈키호테가 산으로 끌고 가는 배와 같다면 역지가 될 지...

대책없이 떠오르는 『UR』, 목적없이 방황하는 『건축법』, 멀미잡히는 『건축사법』, 시도때도 없는 『전기법』 등등은 발등 짚힌 도끼임에도 호구지책의 앞가림에 발버둥치는 현실에 협회의 작금의 실패는 코미디가 아닌 비극이며, 더우기

정부기관과의 관계는 무능력한 지식인의 편견으로도 설명되지 않을 것 같아 스스로 고개숙여 얼굴 붉힘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소수의 말잔치와 보이지 않는 투쟁으로 다수의 회생을 강요함은 버려져야 할 악습이며, 이로 인한 협회의 소용돌이는 어떠한 누구도 무능력하게 되기에 이 시점에서 東方의 大賢 栗谷의 “등짐이나 질 자가 수레를 탄 격”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새겨진다. 또한 국내외의 환경 변화의 흐름속에서도 대처하지 못하면서 개혁의 바람속에 동물이 될까 우려되는 현실은 민족의 선각자이신 島山 安昌浩 선생의 웅변이 귓가에 스치는 듯하다. “우리 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외다. 그러나 오늘 대한 사회의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주변을 둘러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주인이 됩시다.”라고 외치고 도산의 獅子吼는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은 우리가 참 주인이 되었는가 되돌아보고 적극적인 참여로서 주인이 되는 길이며, 지혜의 힘을 모아 역경의 곤란을 극복할 때 미래의 문은 열리게 되며, 우리의 자리를 찾게될 것이고 또한 개인이 뿌리깊은 제자리를 갇출 때, 우리의 협회는 兩頭一身의 相殘보다는 一頭兩身の 相助로서 참된 협회의 발전을 기약하고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예술의 창조자로서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하게 되며 후대에 기리 기억되는 선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의 6월을 맞이하면서 一過性の 口頭禪이 아닌 선열의 넋이 제자리 잡기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西山大師의 禪詩 한 구를 되뇌여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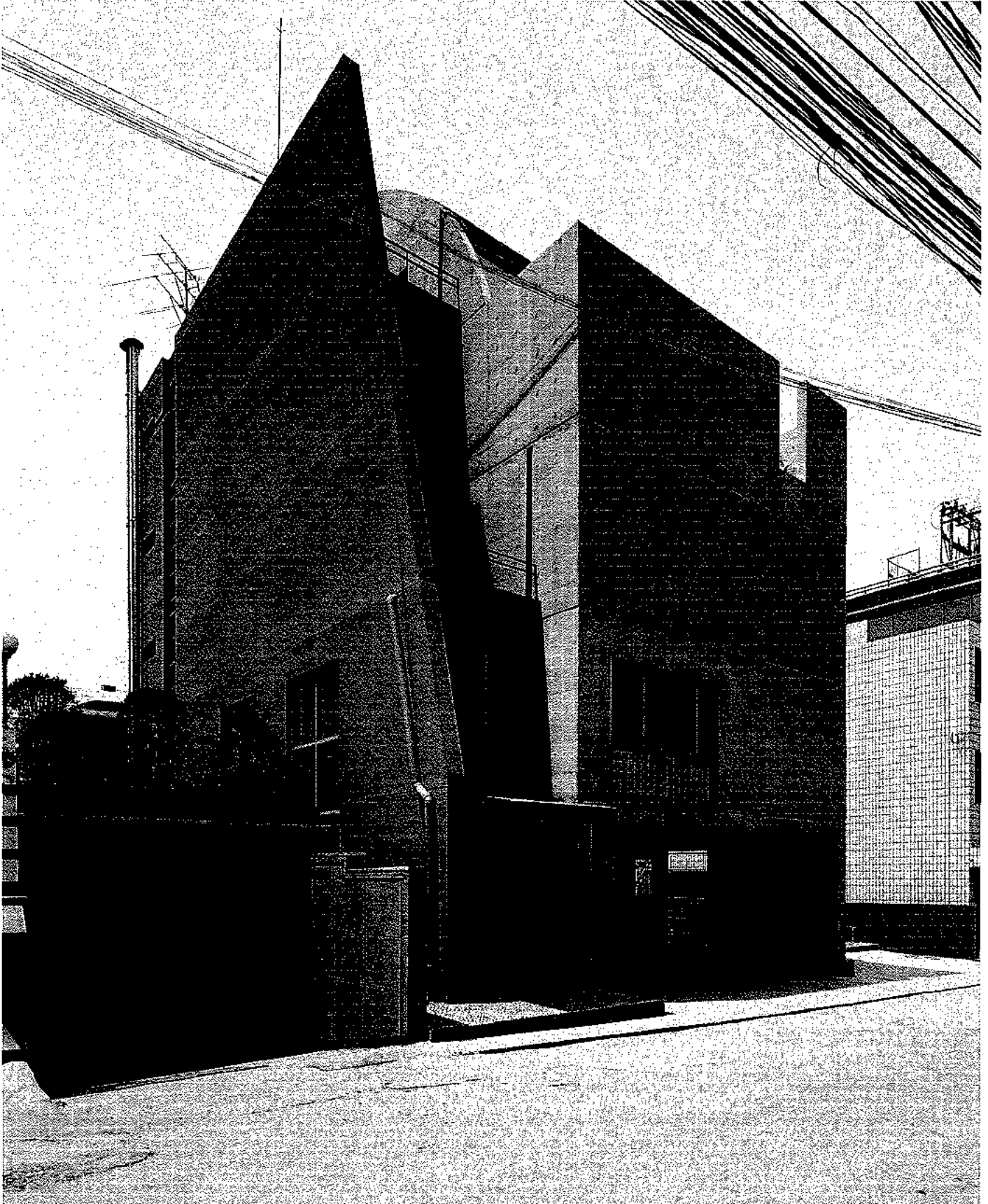
“눈길을 걸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살피서가고
오늘의 그대 발자취
뒤따라 가는 이의
이정표인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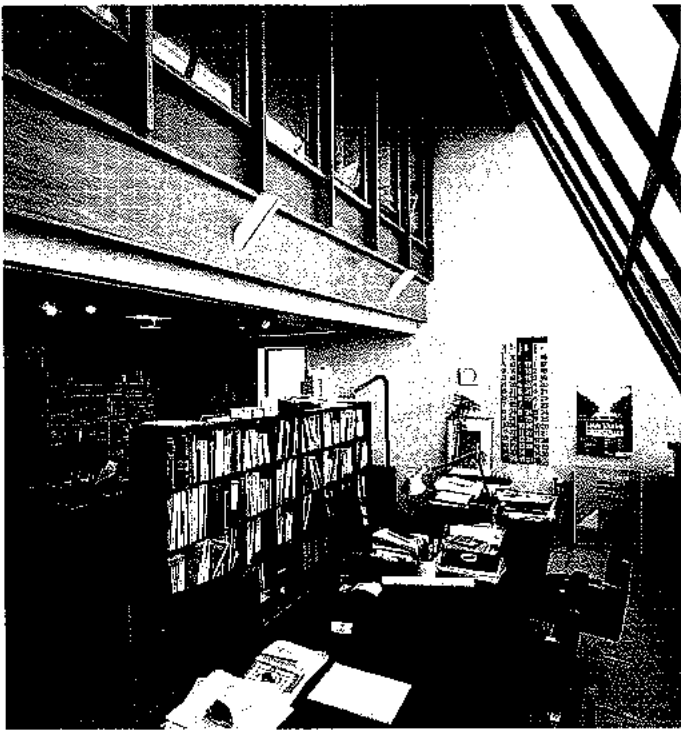
양재 287.3

Yang Jae 287.3

趙成龍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Designed by Joh, Sung-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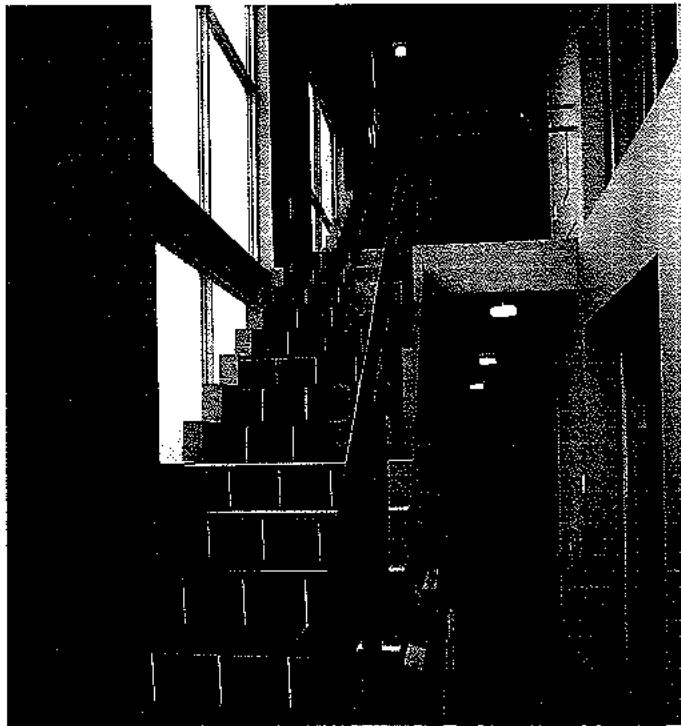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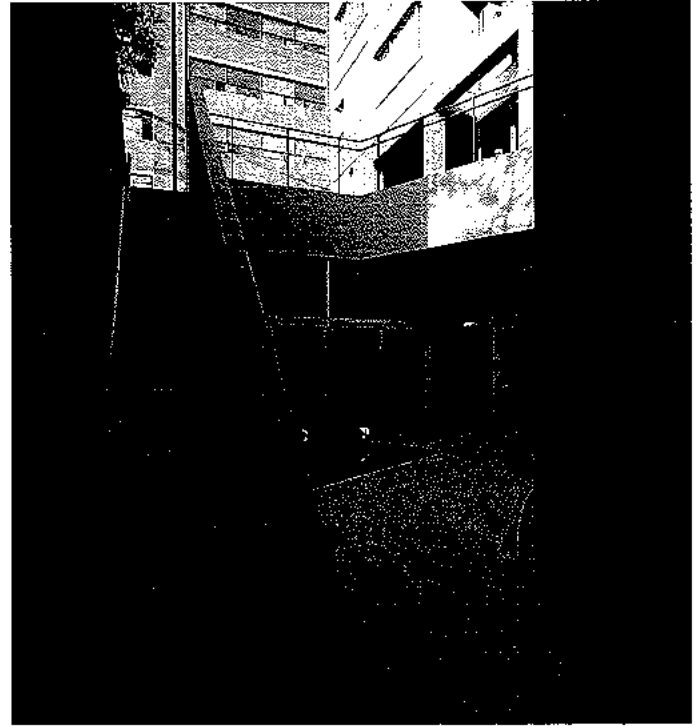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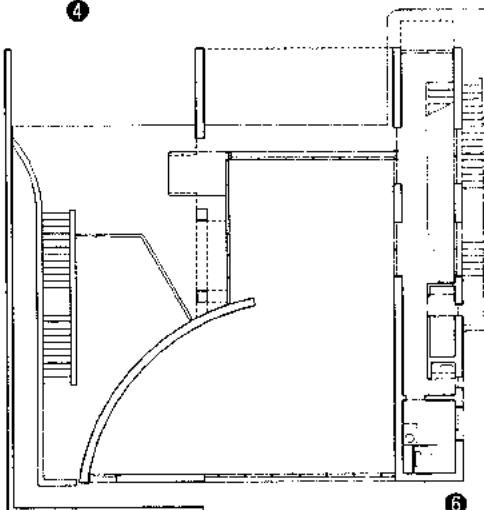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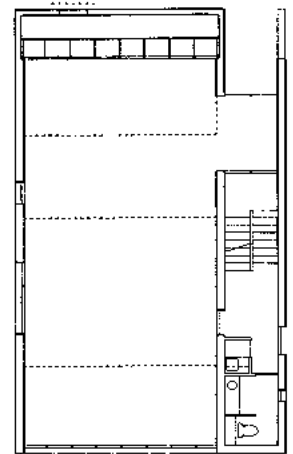
5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3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333.8㎡
 건축면적 / 164㎡
 연면적 / 861㎡
 건폐율 / 49%
 용적률 / 193%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치장콘크리트
 지붕-아스팔트 형광

- ① 전경
- ② 4층 내부(소장실)
- ③ 2층 설계실측 상세
- ④ 일직선으로 된 연결 계단부
- ⑤ 지하의 작은마당
- ⑥ 1층 평면도
- ⑦ 4층 평면도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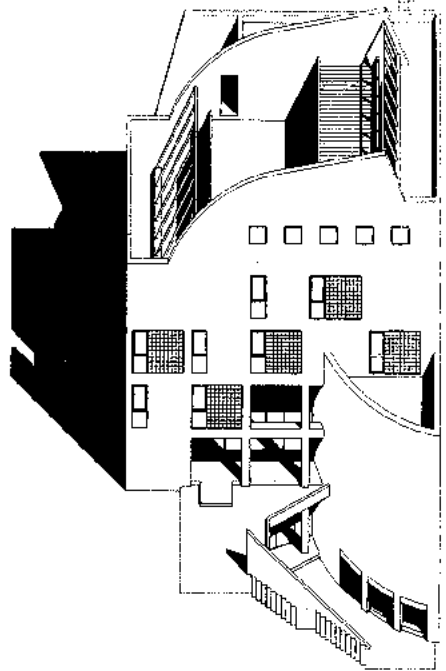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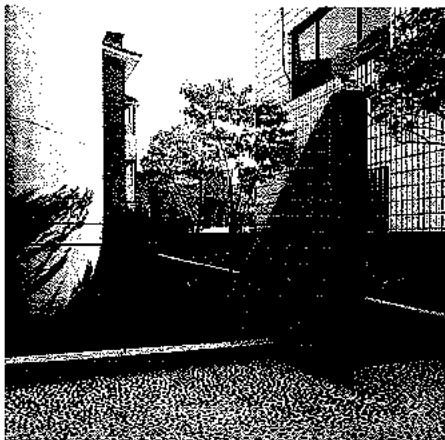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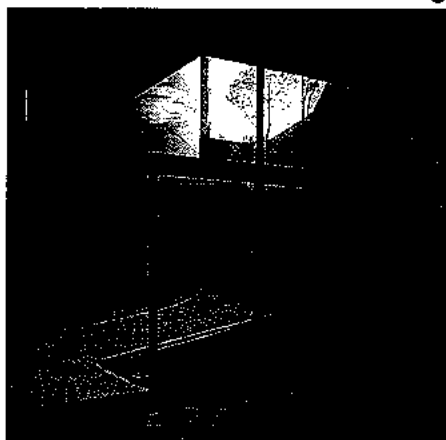
- ⑨ 설계실 내부
- ⑩ 지하층 사무실 내부
- ⑪ 지하층 연결계단에서 본 외부상세
- ⑫ 올라다 본 외벽상세
- ⑬ 지하층 출입측 상세
- ⑭ 지하층 내부에서 본 작은마당
- ⑮ 엑소노 메트릭
- ⑯ 1층 평면 상세도
- ⑰ 화장실 칸막이 상세도



14



12



13

도시의 풍경을 만드는 것 :

양재 287.3(19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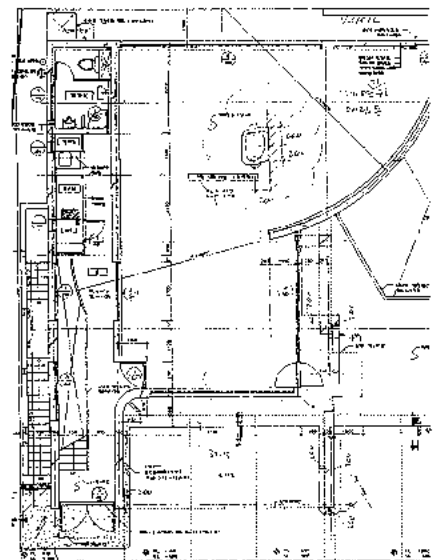
서울 한강의 남쪽, 그린벨트와 만나서 더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지역이 양재동, 포이동이다. 원래 배밭이나 논밭이었던 이 지역은 최근 수 년 동안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설계로 계획되었지만, 개발의 템포,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와 현실과의 불균형, 시민의식의 결여로 이 지역의 환경은 혼탁하고, 복잡하다.

구룡산의 실루엣을 배경으로 엇비슷한 크기의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는데 이는 원래 필지 자체가 주택용으로 작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거지역에서의 용도제한, 땅값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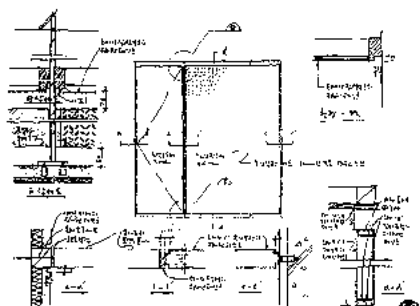
급등,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부동산투기억제제도가 한꺼번에 작용하여 이루어 낸 결과이기도 하다.

주거지역이라고 하지만 초기에 들어선 얼마간의 주택을 빼 놓고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차 있다. 그러므로 주변 자연과의 경관은 물론이고, 이웃하는 건물과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무성적인 가로망만 있을 뿐 집단으로서의 아이덴티티도, 지역의 고유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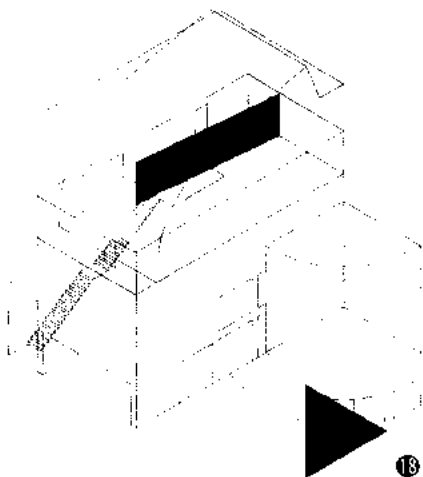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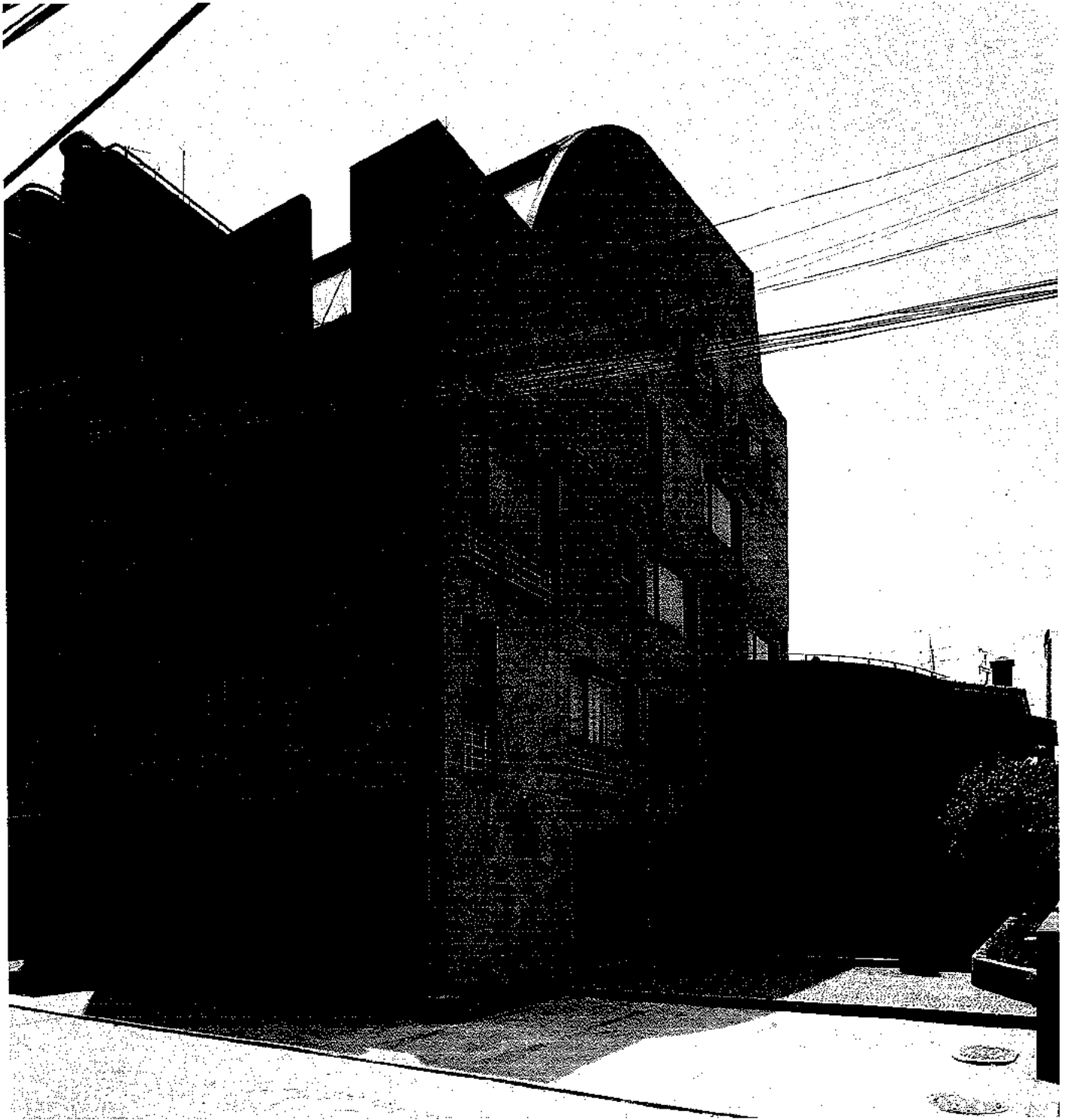
4년전 발표한 <baroque>는 교통량이 많은 강남의 큰 도로변의 소규모 건물인데, 필지의 크기와 미관지구라는 집단규제때문에 거의 일정한 폭과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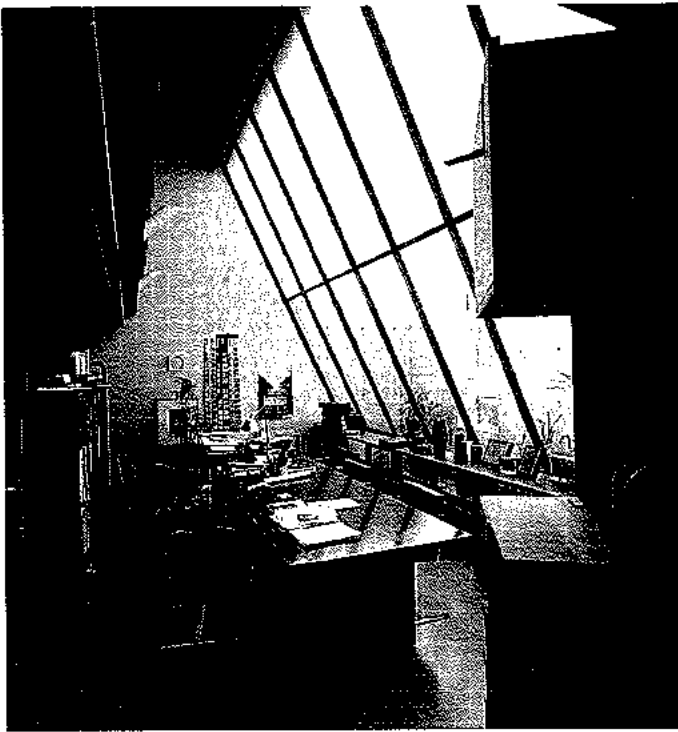


높이를 가진 건물들 사이에 새로운 것을 끼어 넣는 'in-between'의 개념과 파사드의 구성방법으로 실천한 것이다.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대한 해석도 단순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의 진입방법과 영역의 분할이라는 개념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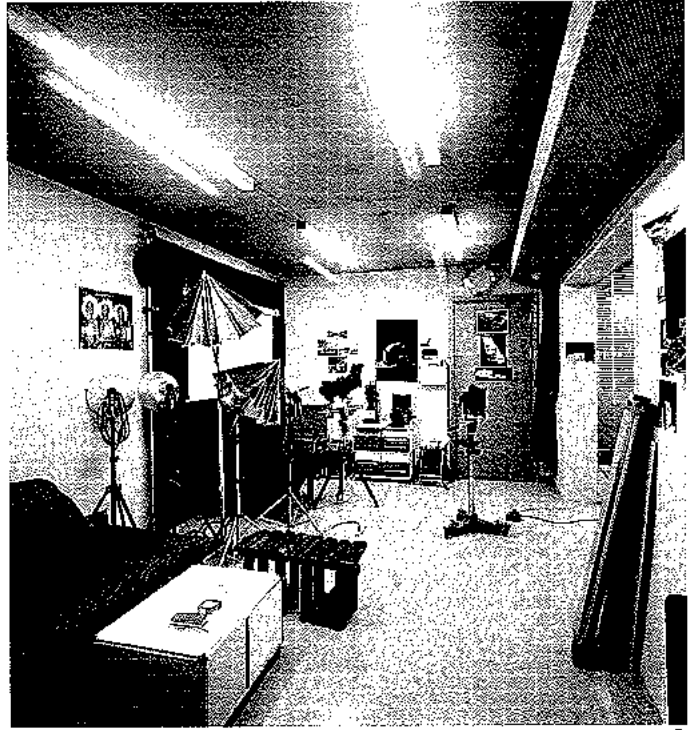
(baroque)에서 주-부공간의 확실한 구분이 영역뿐 아니라 외관의 모양이나 재료의 사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면 <양계 287.3>의 경우는 좁은 골목에서 어떻게 공간과 영역을 확보하며, 공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주공간과 부공간은 철저

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곡면의 공간은 지하까지 뚫려서 공간이 수평, 수직으로 확장한다. 전면은 표정이 없는 콘크리트의 벽으로 겨우 아래층과 꼭대기에 작은 개구부가 있을 뿐인데 이것은 좁은 골목의 소란스러움과 갑다한 풍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서쪽의 비워진 쪽으로 거의 모든 창문이 나있고 도로쪽에 의하여 제한된 벽선을 따라 여러가지 크기와 모양의 발코니를 통하여 내부공간이 바깥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공사상과 포장되지 않은 녹도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먼지와 소음 잘 날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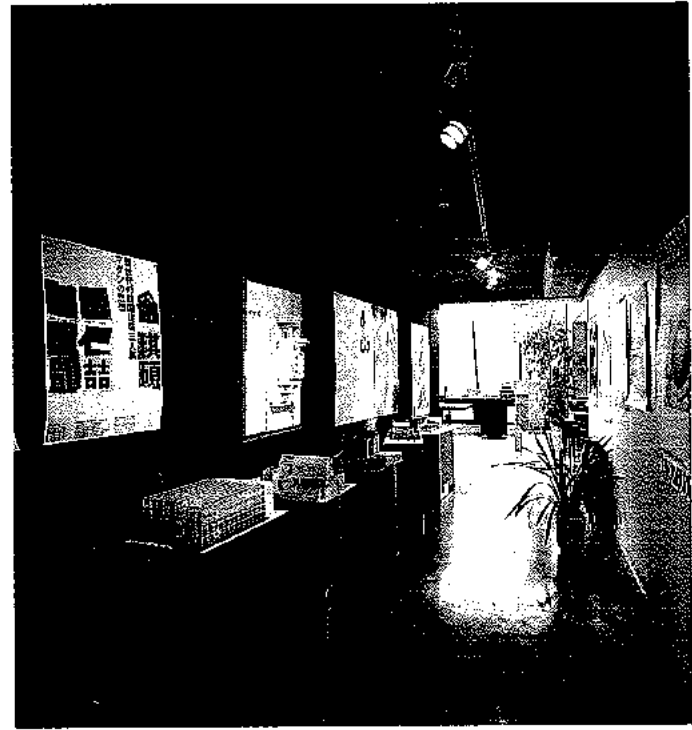
19



20



21



22

는 이곳의 몇 년 지난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짐작하여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개발과정으로 이루어 보는데, 대부분의 근린시설이 소규모 업무시설로 그 용도가 바뀌고, 지금은 1층에 국한되어 있는 점포가 그 위층이나 지하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건물의 계단에는 원래 출입문과 창문이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일차 계단은 길의 연장이다. 언젠가 이 지역이 깨끗하게 정비될 때 이 부분은 공적(public)공간으로 개방될 것이다. 그러므로 1층의 벽은 거의 유리로 둘러 있어서 이웃하는 건물들과 시각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풍자같이 박힌 외부공간과 계단, 작은 리프렉팅 풀(reflecting pool), 감나무는 외부와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장치이며, 꼭대기층의 이중으로 된 벽은 주변의 소음과 풍경에 대응하는 필터이다. 콘크리트벽을 배경으로 경사진 큰 유리에 비, 바람소리와 구름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음은 큰 즐거움이다.

도시의 건축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상황에 대응하고, 그럼으로써 존재이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 ① 측면전경
- ② 공간 구성도
- ③ 4층 내부(소장실)
- ④ 3층 내부(사진연구소)
- ⑤ 2층 내부(접견실)
- ⑥ 5층 사무실(전시공간)

주내교회

Chunae Presbyterian Church

金漢根/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an-Geun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163-1

지역·지구 /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 1,998m²

건축면적 / 462.11m²

연면적 / 534.89m²

건폐율 / 23.13%

용적률 / 2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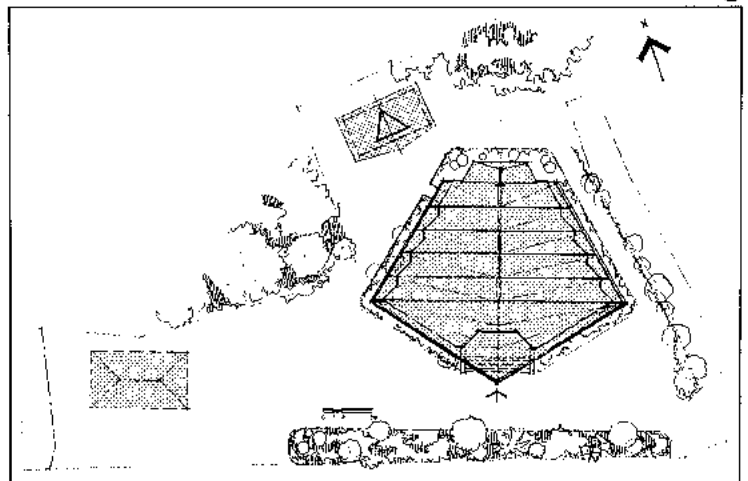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20대

외부마감 / 벽-돌판, 수성페인트

지붕-컬러 아스팔트 싱글



① 정면 전경

② 배치도

③ 남측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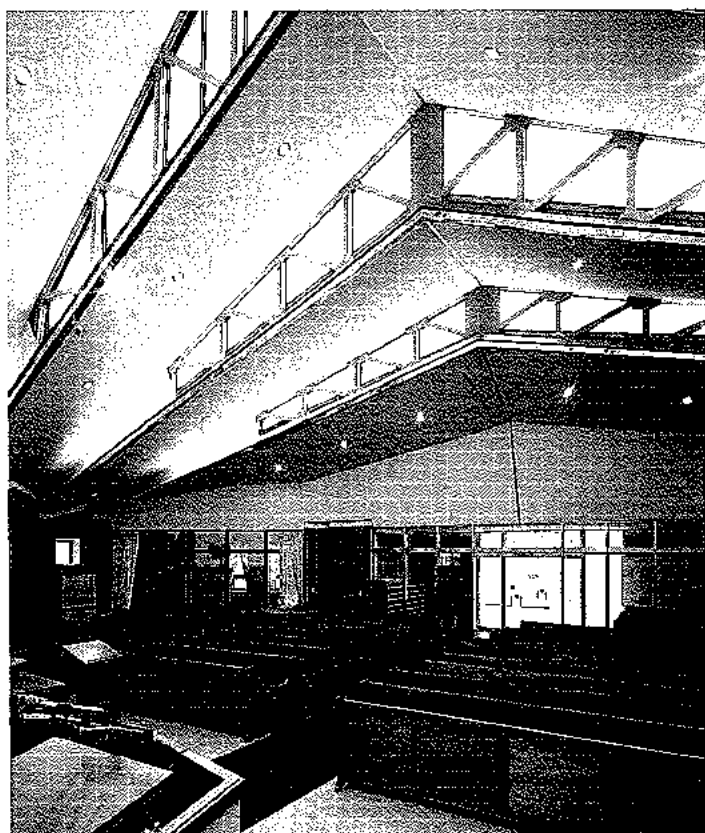
④ 내부 상세

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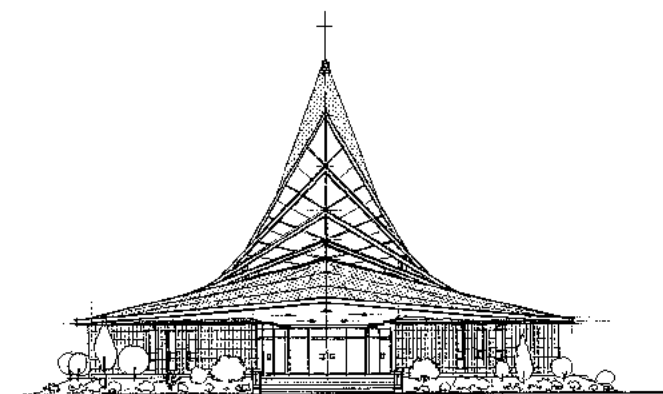
⑥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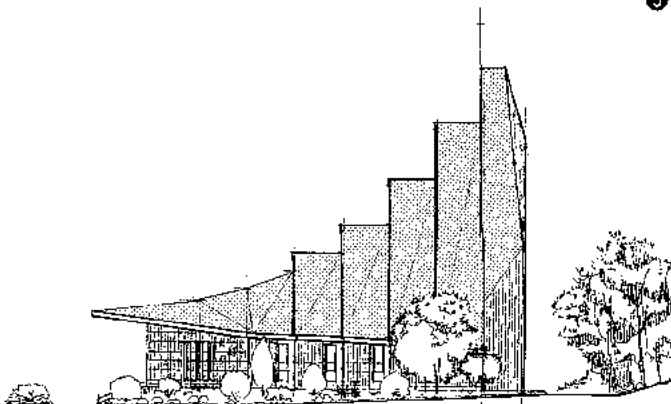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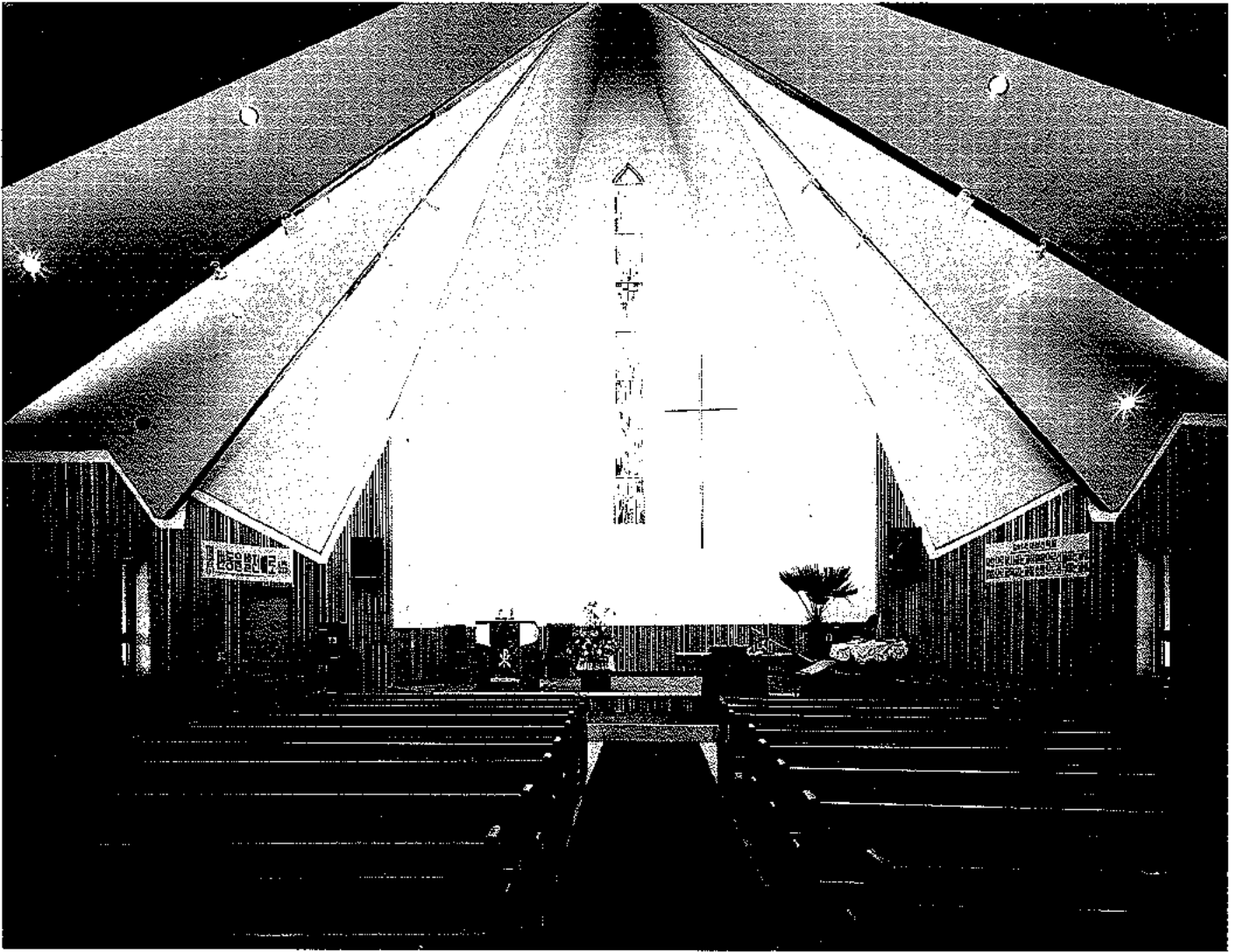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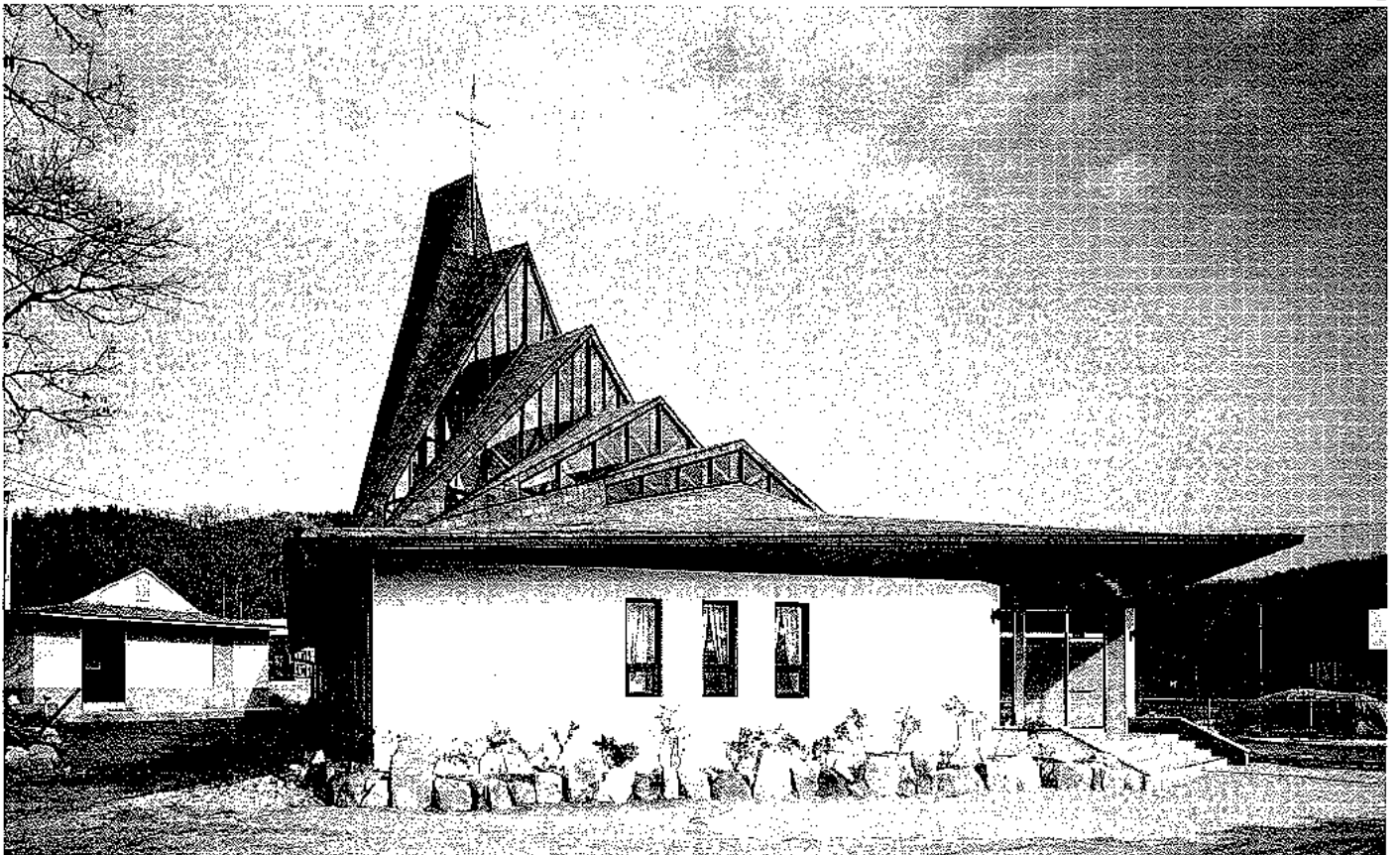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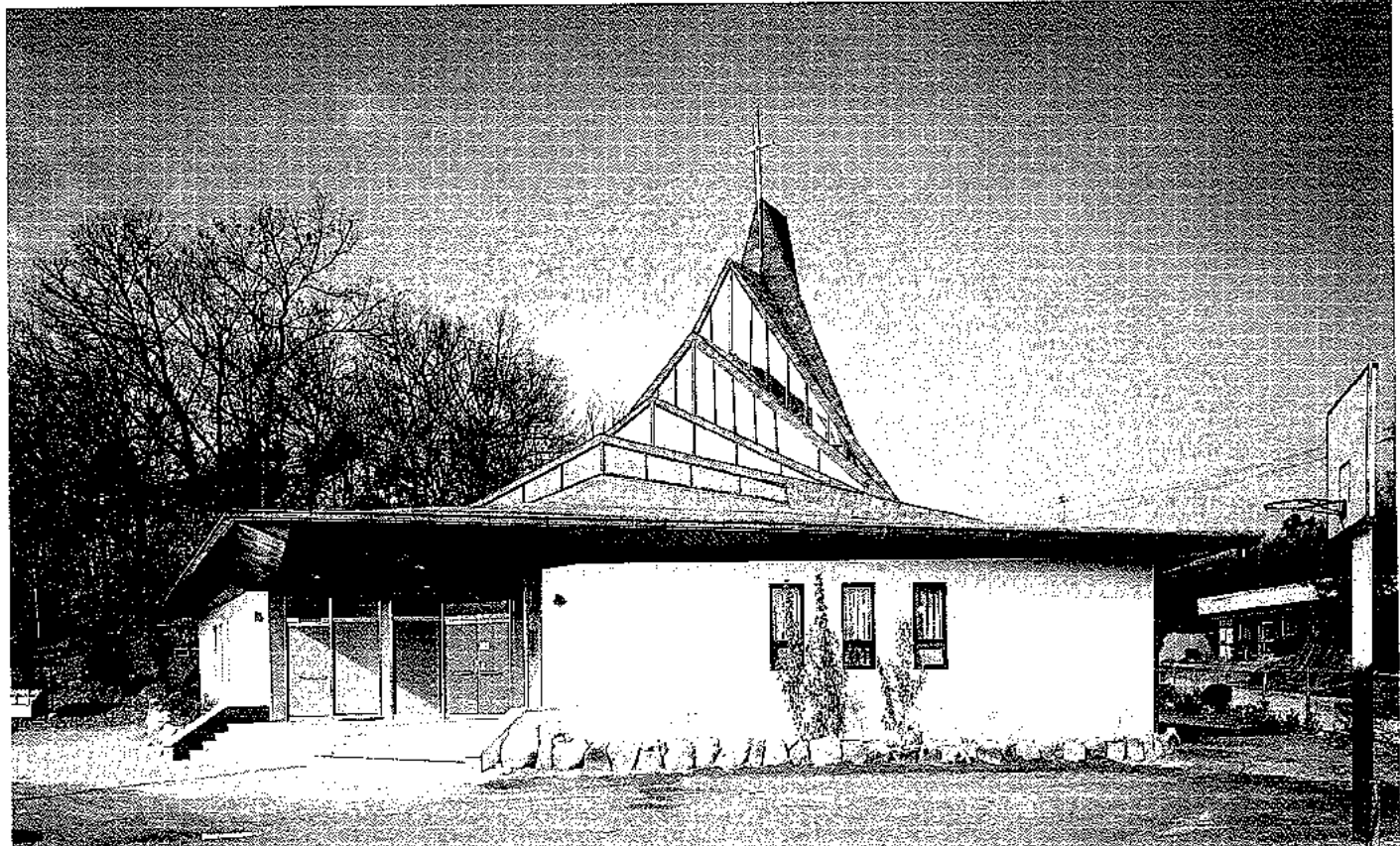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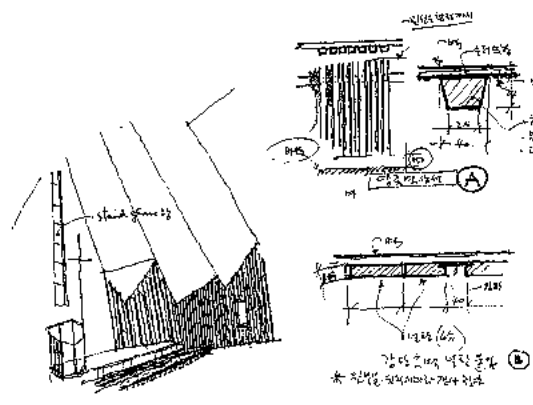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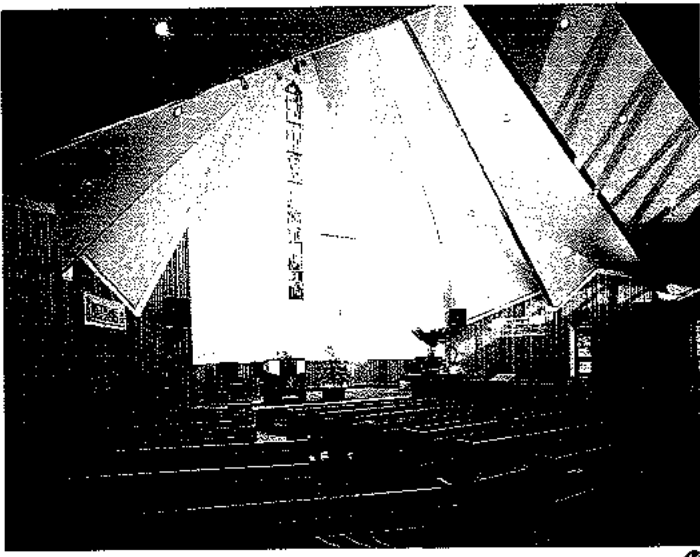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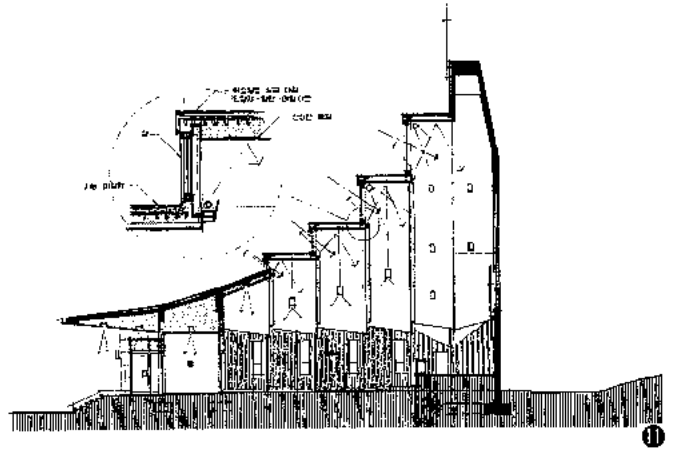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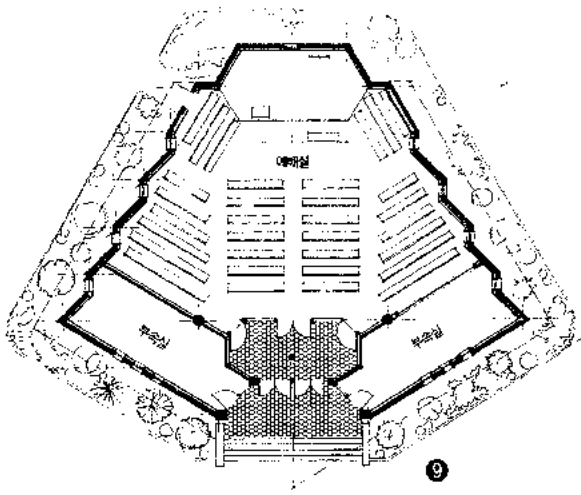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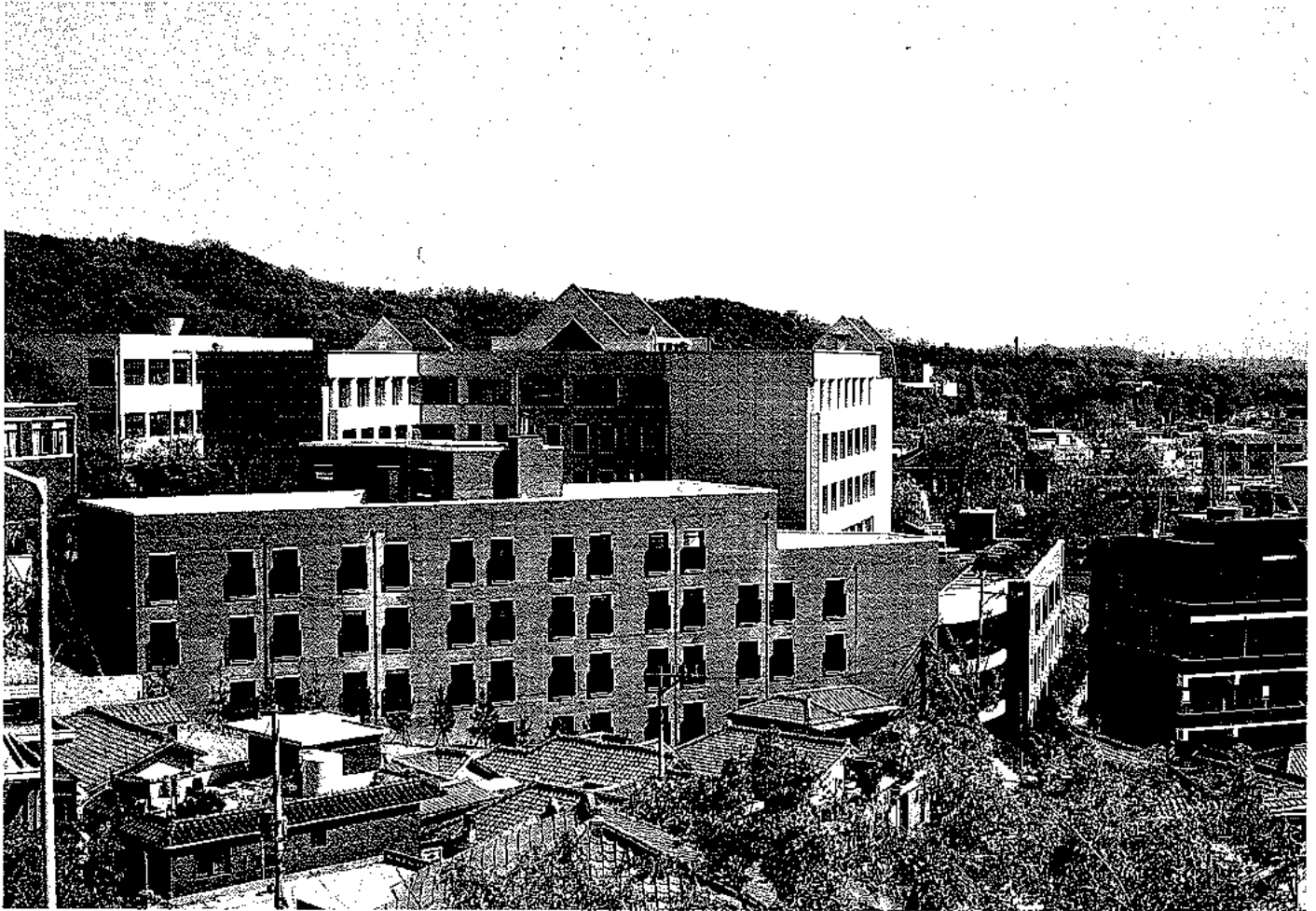
- ⑦ 예배실에서 본 제단 ⑪ 종단면도
- ⑧ 남서측 전경 ⑫ 내벽상세도
- ⑨ 평면도 ⑬ 남동측 전경
- ⑩ 예배실 전경



동덕여자대학교 인덕관

Induk Hall Dongduk Womens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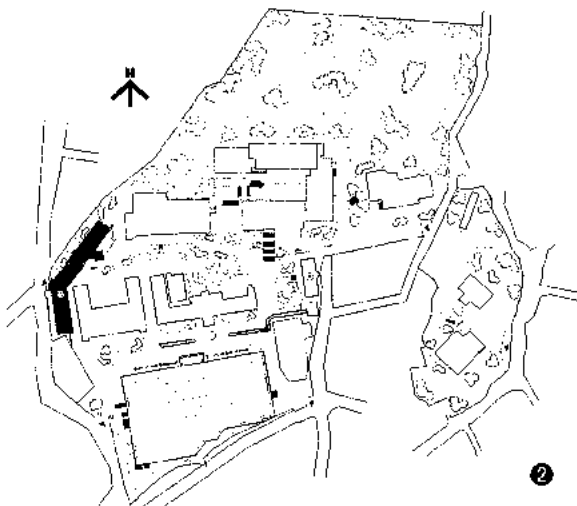
金仁錫/일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I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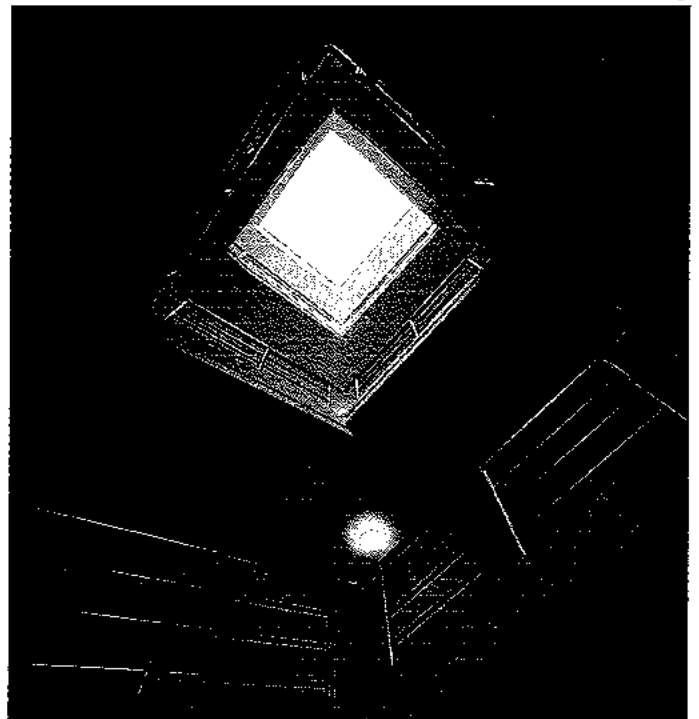
1

위치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3-1
지역지구 / 주거지역, 학교용지
대지면적 / 43,355㎡
건축면적 / 633.02㎡
연면적 / 3,17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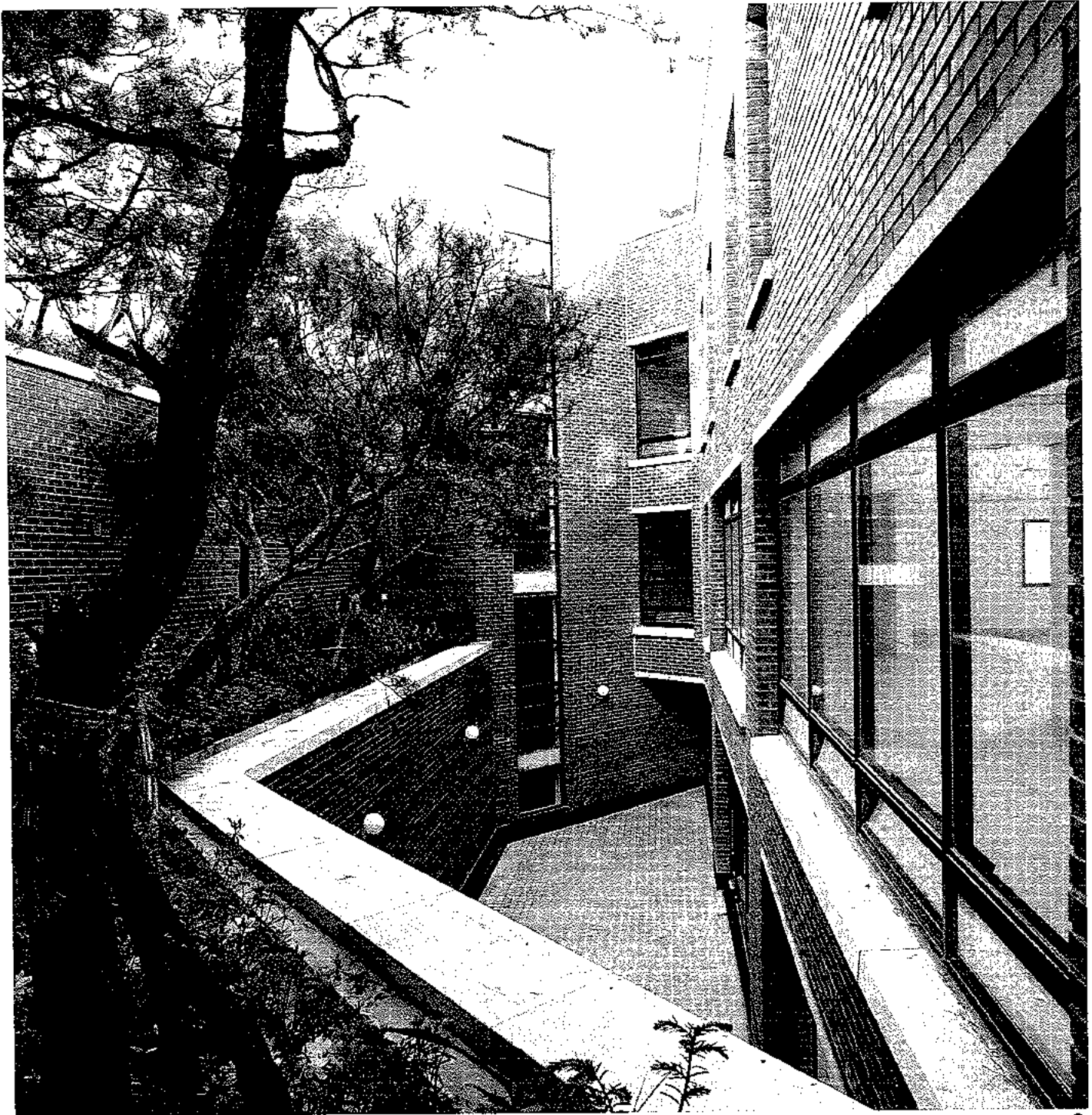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용도 / 강의실, 실기실
외부마감 / 붉은벽돌 치장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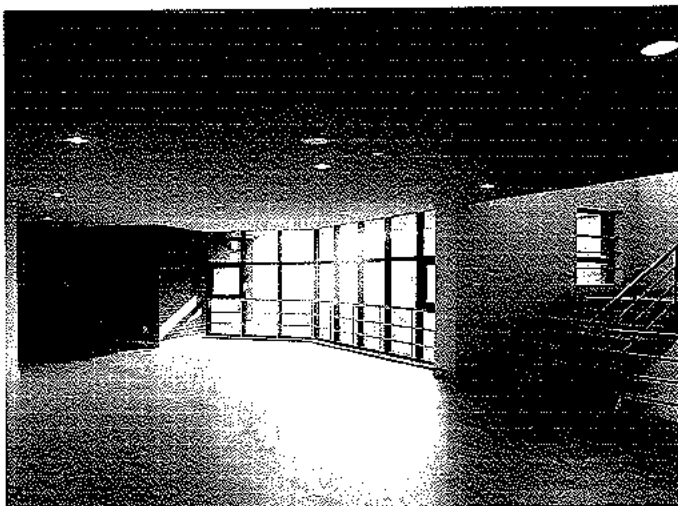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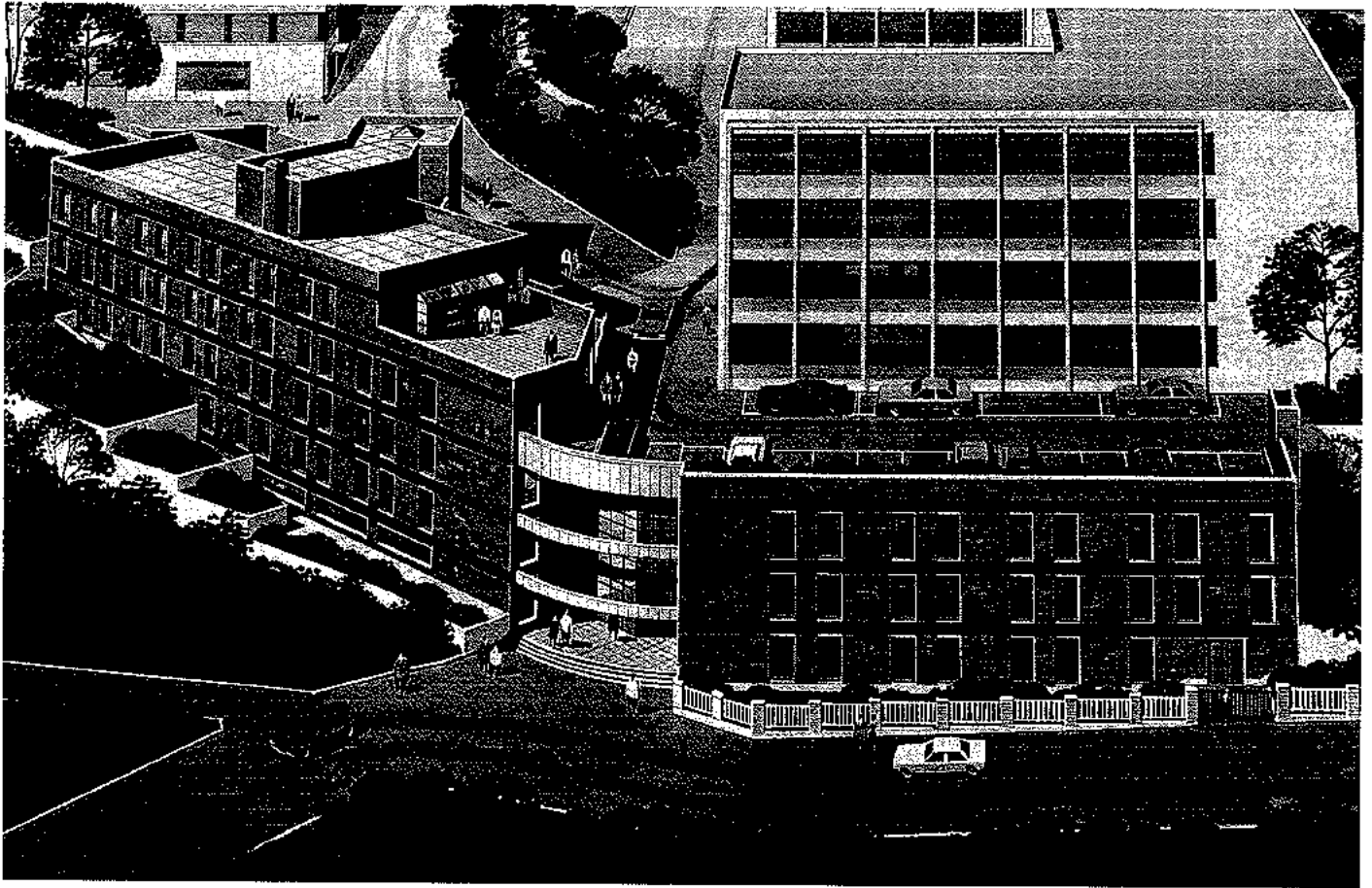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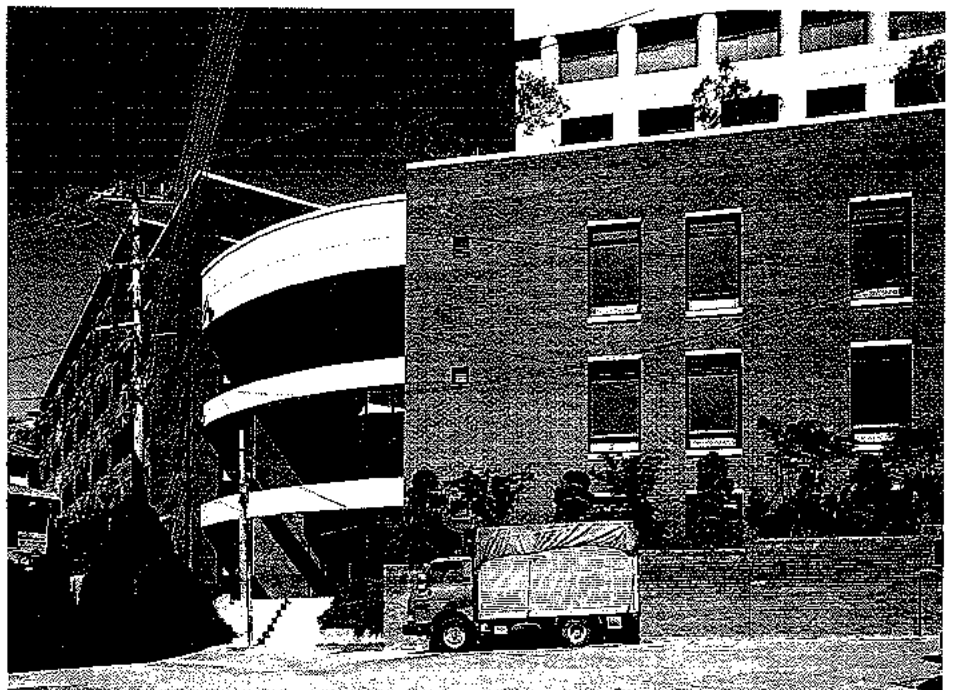


7

- ① 외부 전경
- ② 배치도
- ③ 계단실과 Top Light
- ④ 선큰 가든
- ⑤ 중앙홀과 계단실
- ⑥ 횡단면도
- ⑦ 종단면도



- ⑧ 조감도
- ⑨ 중앙홀이 있는 외관
- ⑩ 4층 출입구와 진입로
- ⑪ 3층 옥상주차장과 출입구
- ⑫ 선큰 가든이 있는 복도
- ⑬ 1층 평면도
- ⑭ 2층 평면도
- ⑮ 3층 평면도



대지상황

인덕원의 건축부지는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 서측면 경계부지로서 인접도로와 약 10m 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곡선형 경사지이며 부지동측에는 기존 관학관과 대학원 교사가 인접되어 있다.

배치 및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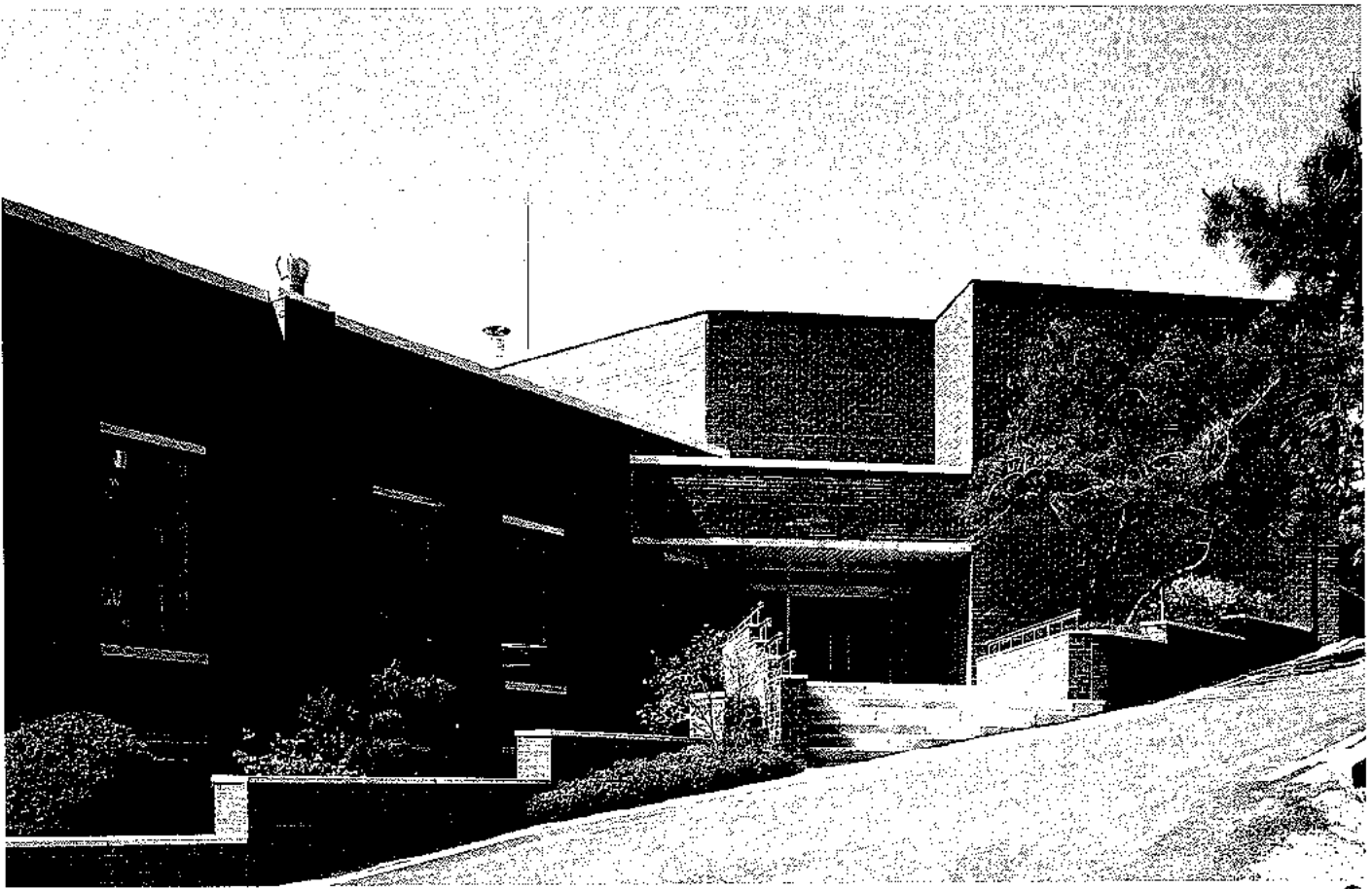
기존 석축을 철거하고 주위지형과 지반고에 맞

추어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건물 동측면의 절토부분은 단형 Sunken Garden을 계획하여 실내에서 채광과 조경조망을 하였다. 평면은 지형에 따라 세장한 평 복도 형이며 후반 Block은 지형에 맞추어 평면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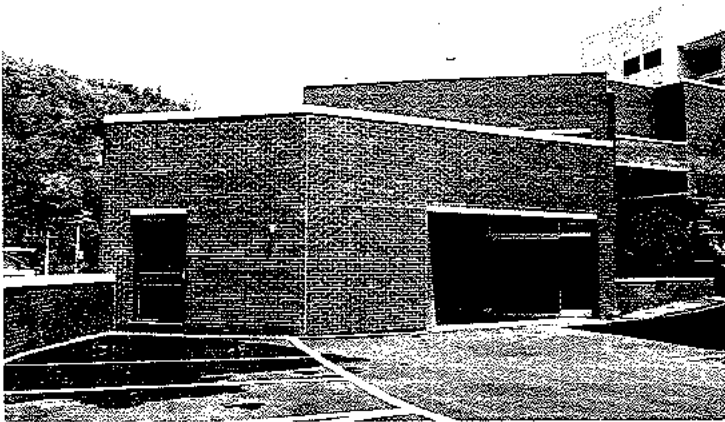
입면계획

주위 지형과 지반고를 이용한 건물이므로 건물

Facade는 서측과 동측이 주가 되고 3단으로 된 단형 입면이 된다. 주마감재는 붉은 벽돌 치장쌍기로 하고 수평줄띠를 강조하였으며 인접 주택지와의 차면을 고려하여 세장한 수직형 창호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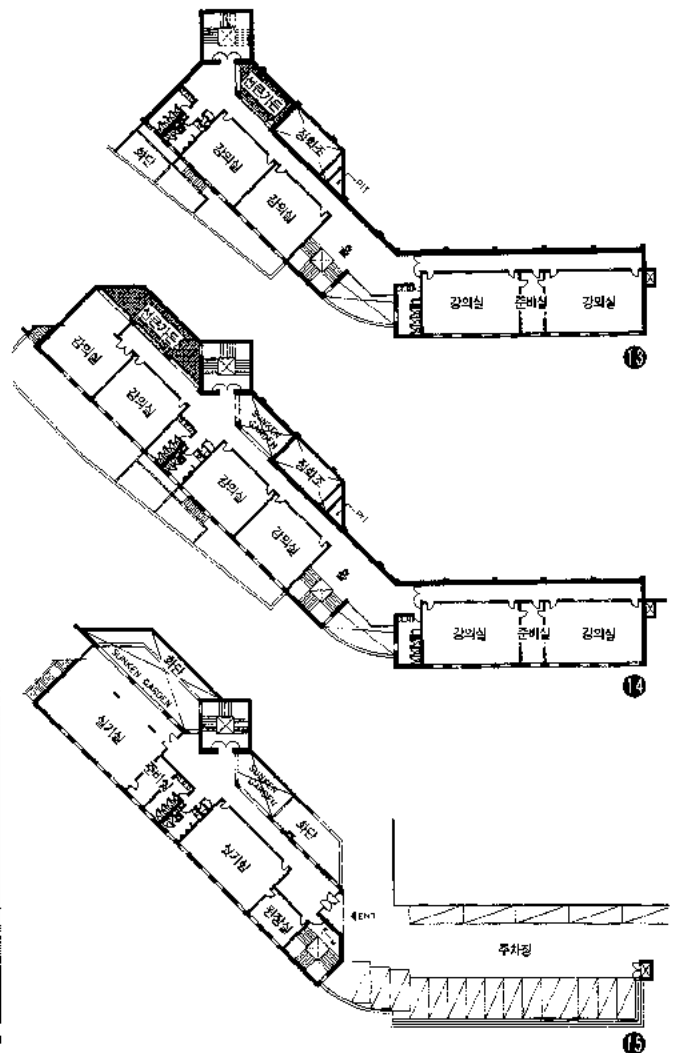
11



11



12



한마음 문화센터

Hanmaeum Culture Center

吳慶恩/종합건축사 사무소 피아건축

Designed by Oh, Kyung-Eun



1

위치 /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239-6, 28호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 1,452.1㎡

건축면적 / 460.91㎡

연면적 / 1,097.88㎡

건폐율 / 3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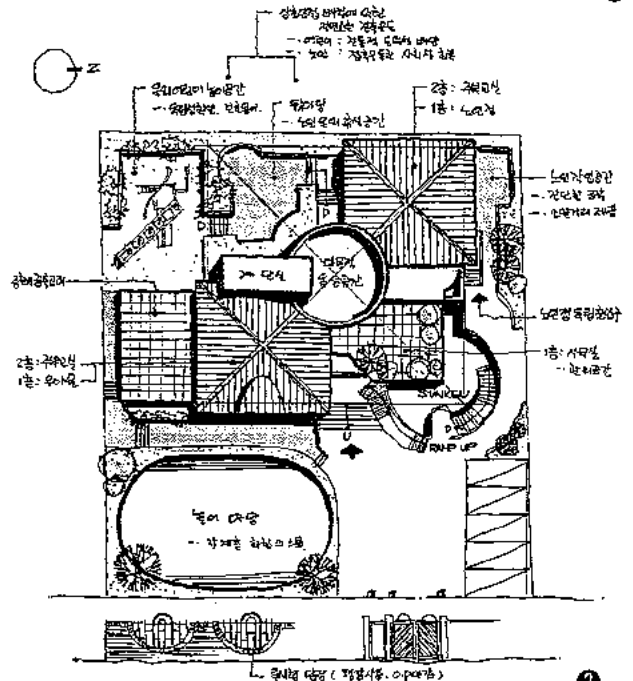
용적률 / 43.74%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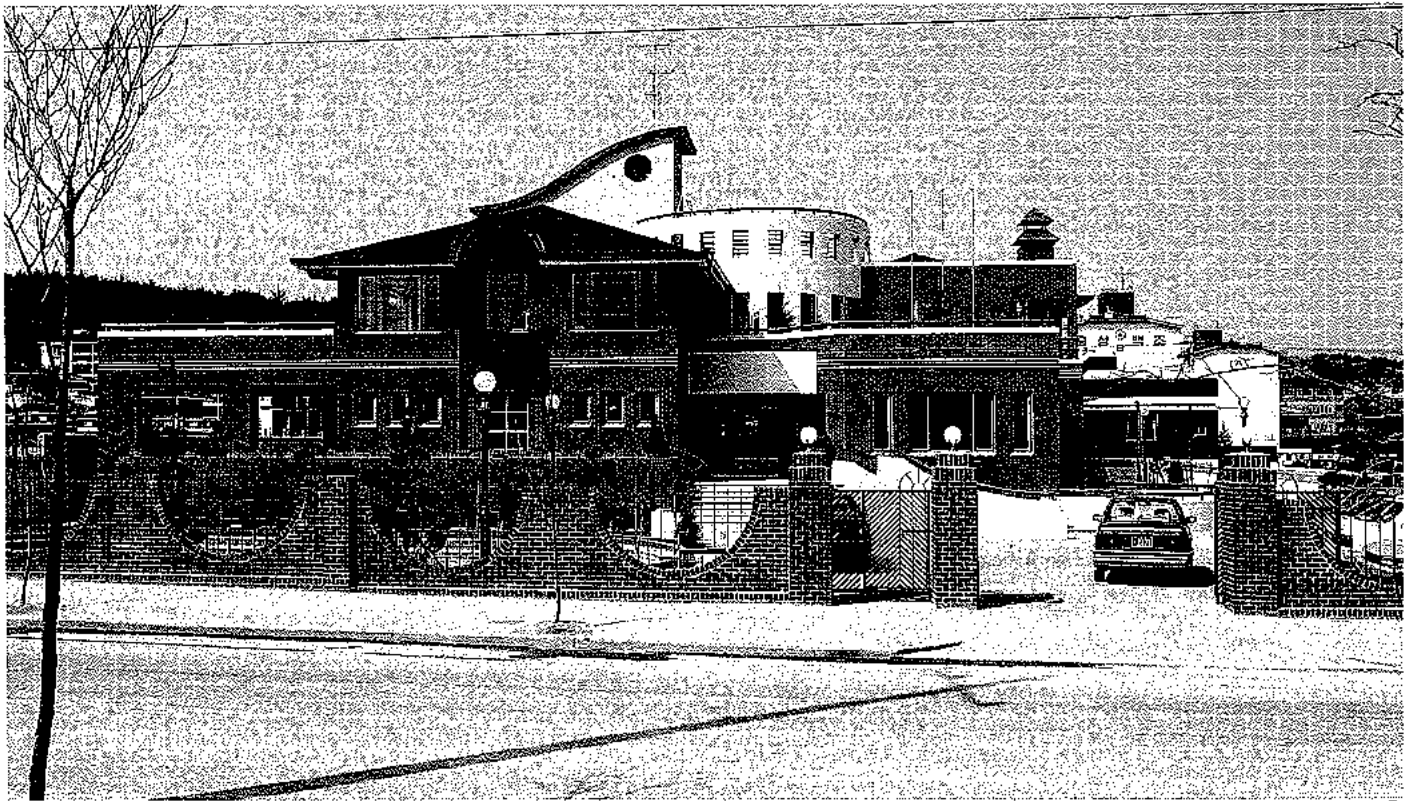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외부 마감 / 벽-적벽돌 치장쌓기, 텍스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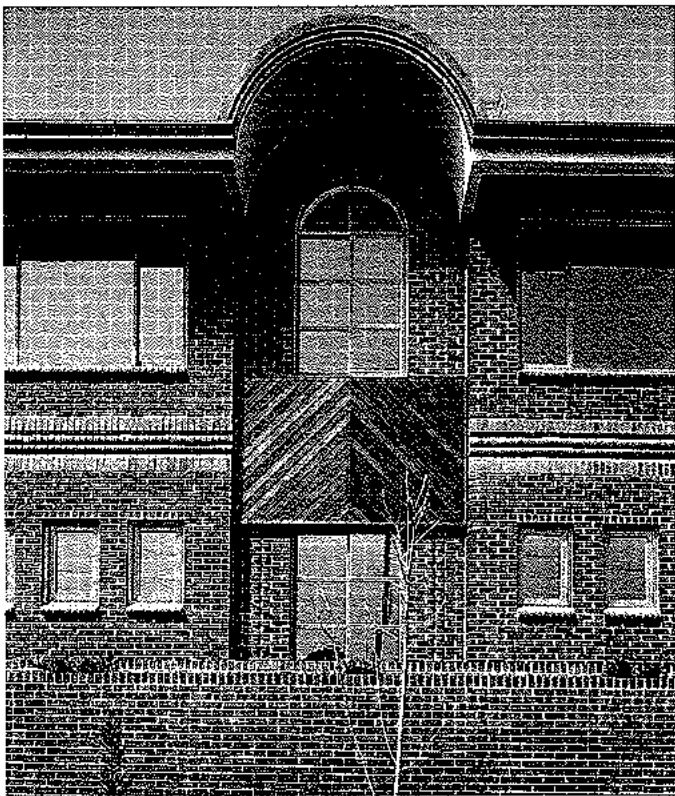
지붕-아스팔트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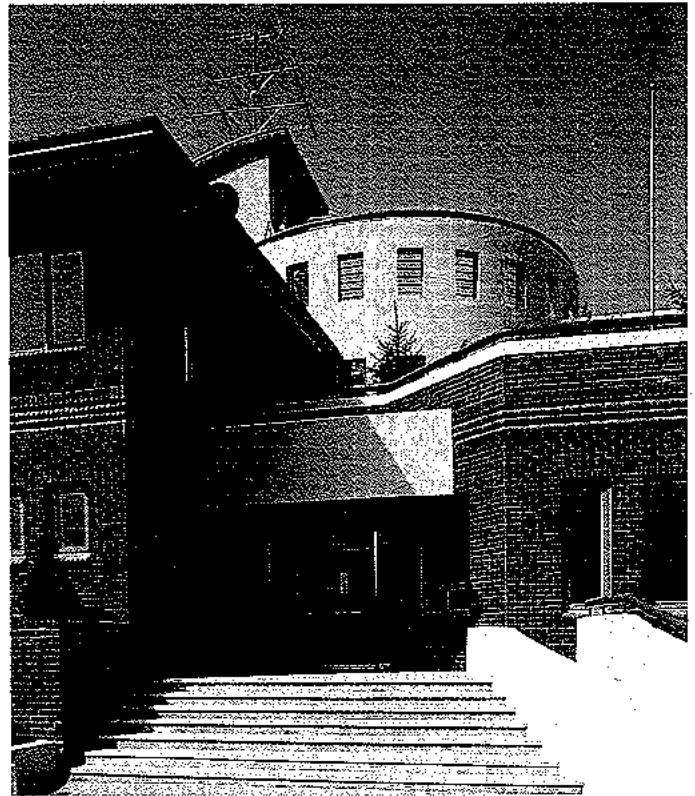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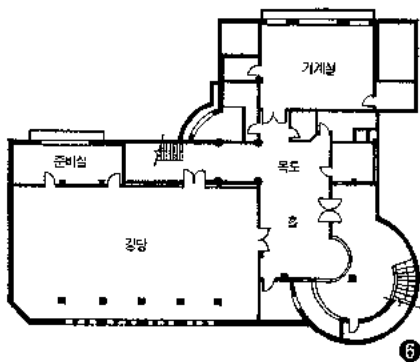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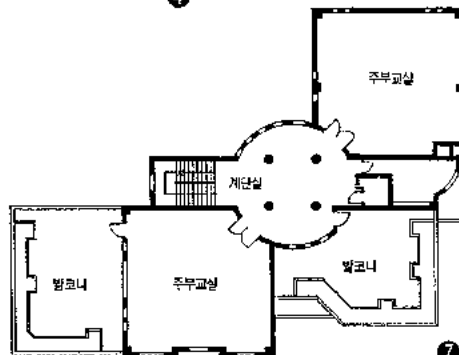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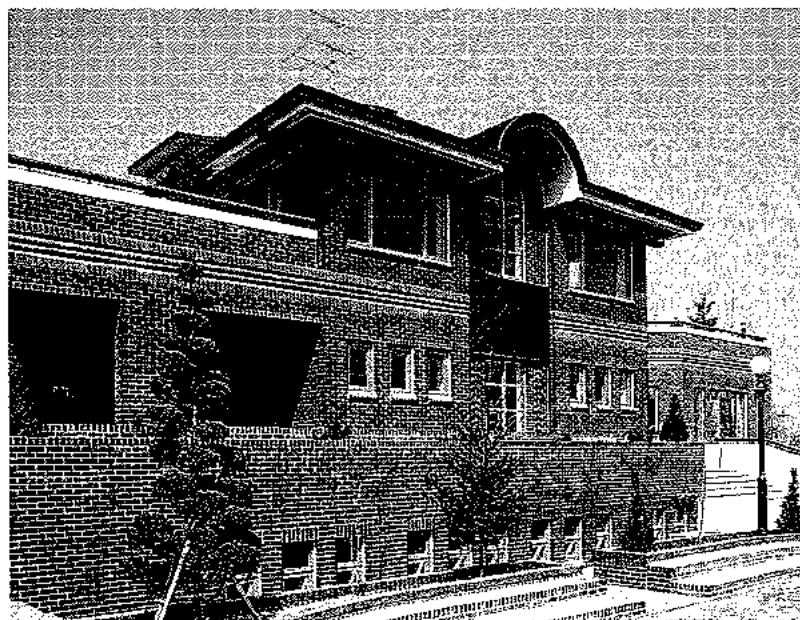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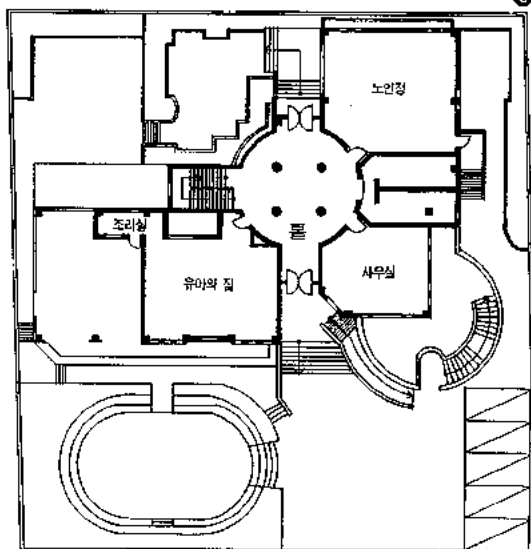
- ① 주출입구측 전경
- ② 배치 개념도
- ③ 전경
- ④ 전면 상세
- ⑤ 현관 입구 상세
- ⑥ 지하층 평면도
- ⑦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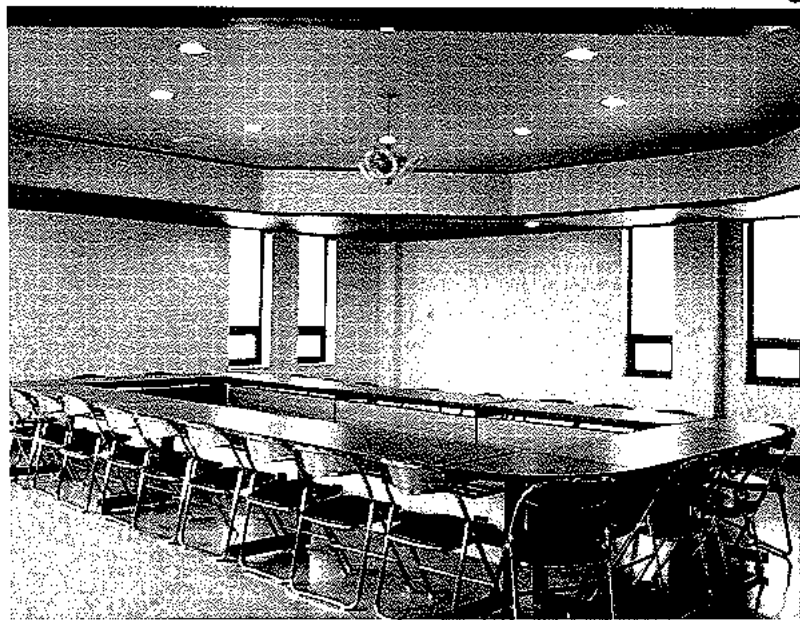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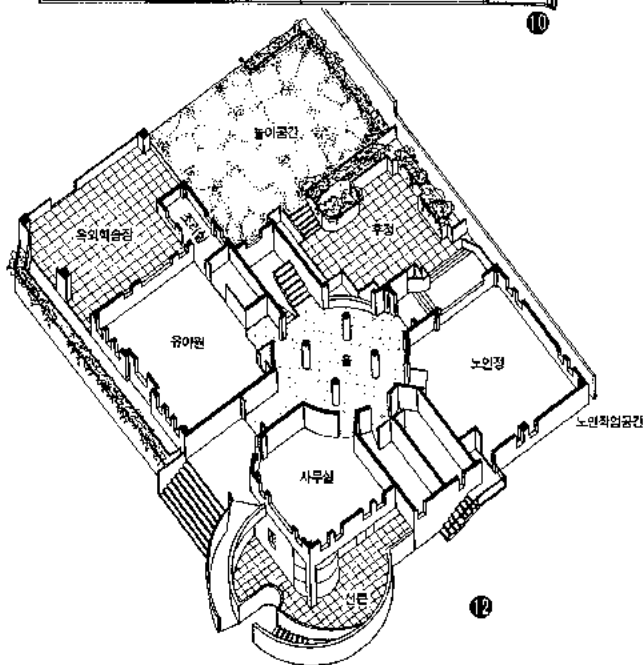
9



10



11



12



13

- | | |
|----------------|-------------|
| ⑧ 2층 홀 | ⑭ 측면 외벽 상세 |
| ⑨ 뒤 현관측 상세 | ⑮ 전면 현관측 상세 |
| ⑩ 1층 평면도 | ⑯ 입면 스케치 |
| ⑪ 2층 주부교실 | ⑰ 전면 현관 상세 |
| ⑫ 1층 내부 엑스노메트릭 | ⑱ 평면 개념도 |
| ⑬ 전면 외벽 상세 | |



건축사 930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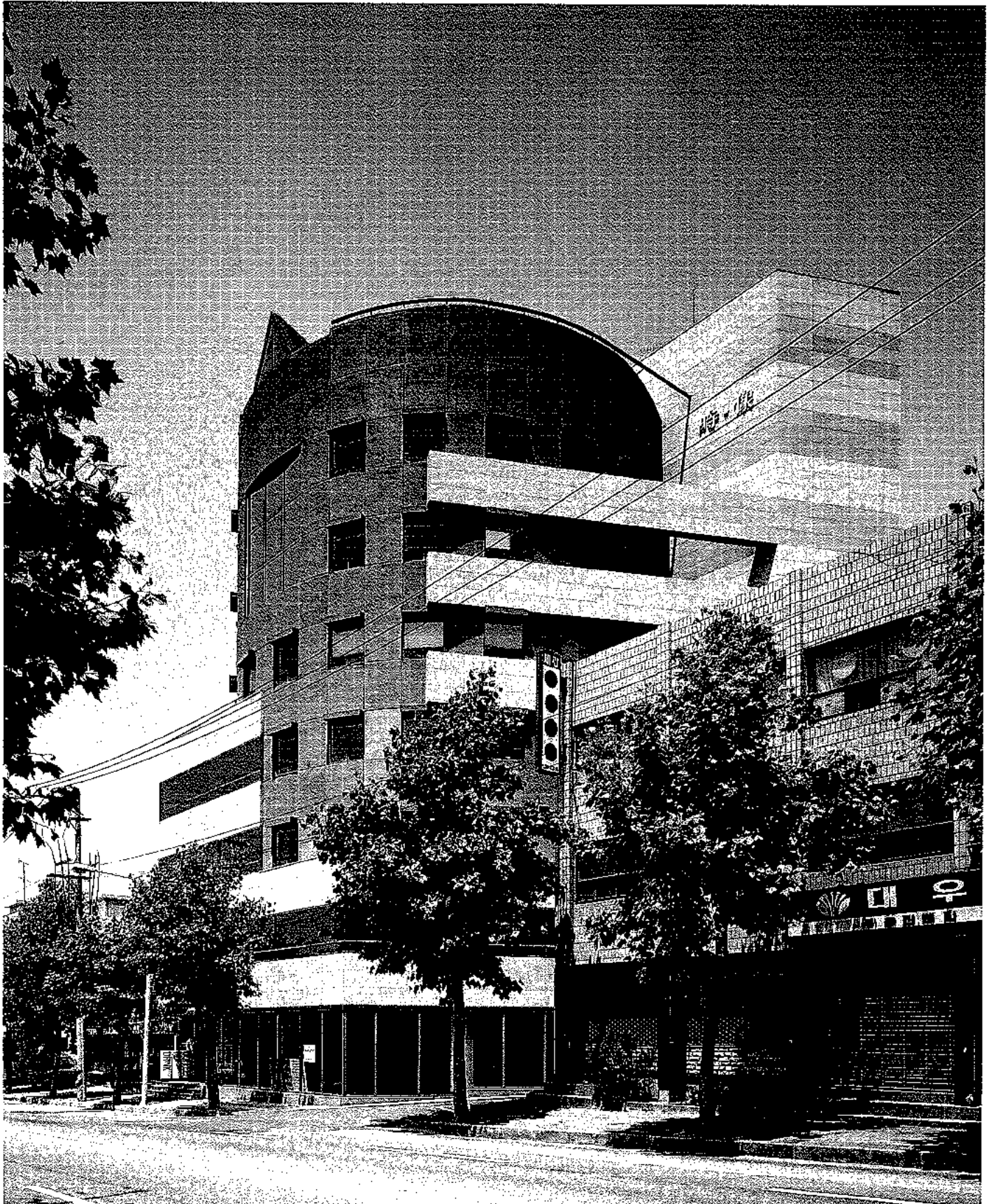
회원작품

WORKS

시·상빌딩

Sisang Building

劉 建/(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Designed by Yu, Kun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5-19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784.2㎡
 건축면적 / 389.04㎡
 연면적 / 3,141.99㎡
 건폐율 / 49.6%

용적률 / 290%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외벽단열시스템
 지붕-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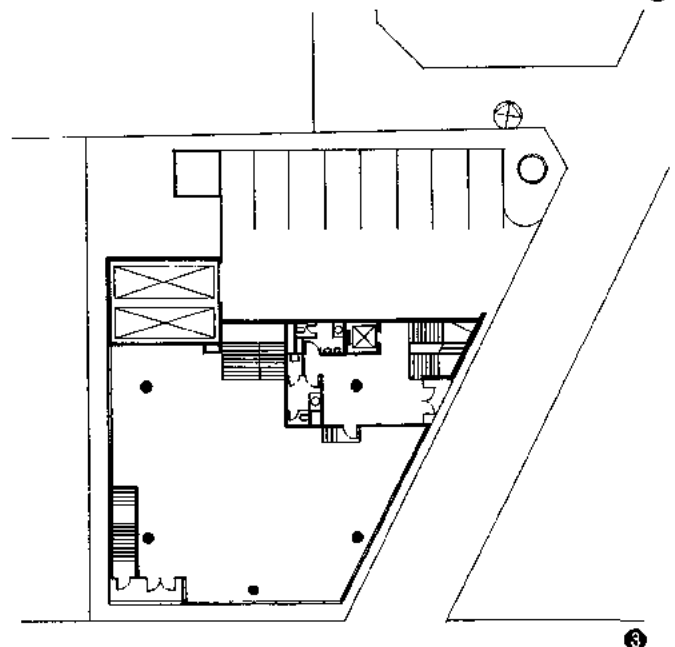


몇 년 전부터 '캄캄해지는 등'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를 문득문득 느끼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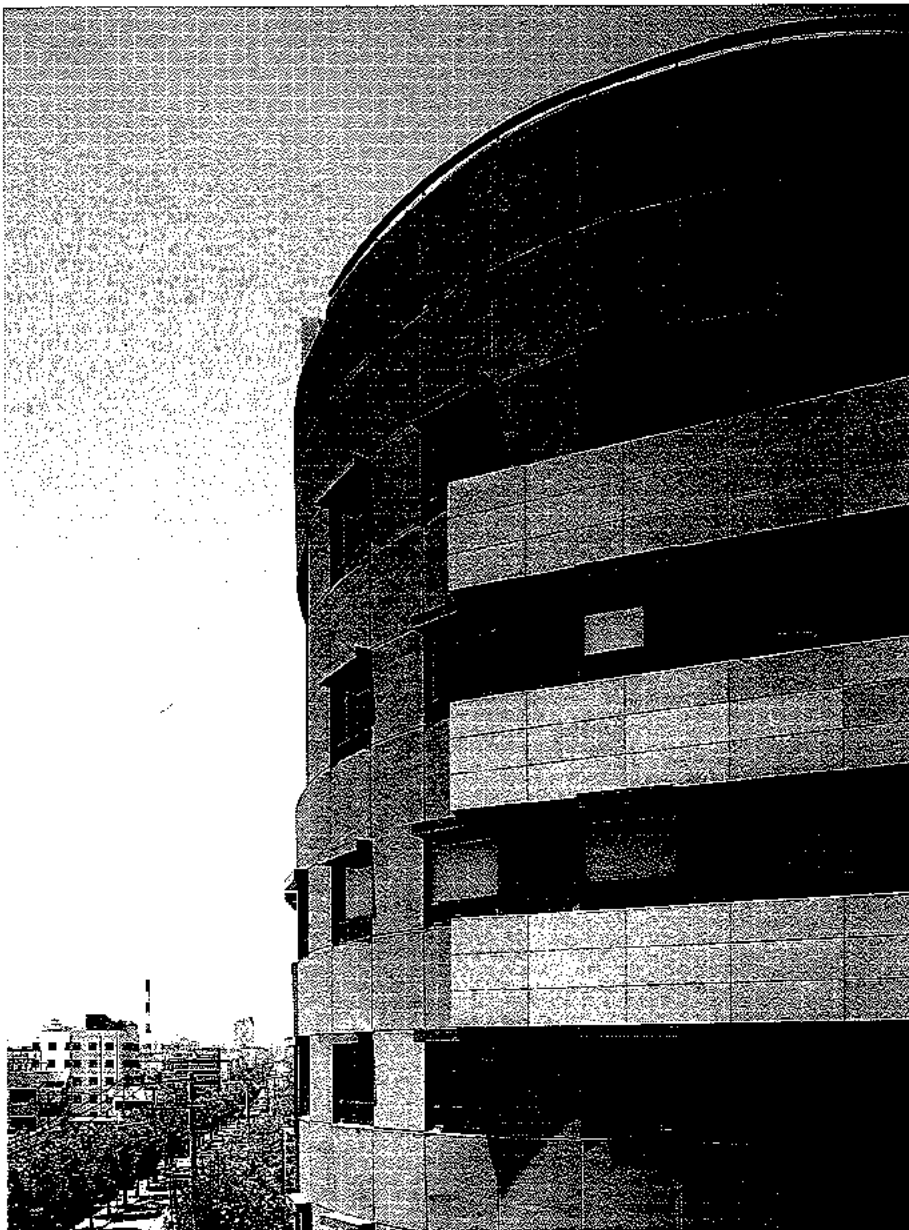
상식적으로 등이란 어두움을 밝게 하는 기능을 갖춘 거구로 인식되어 왔으나 어느날부터인가 역으로 밝음을 어둡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 그런 측면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건축에 입문한 이래로 교육과 실무를 통하여 터득하게 된 것은 건물의 안전감, 주변과의 조화, 디자인 요소간의 복잡성과 일치감, 비례감, 완성감 등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역행하는 개념인 불암함으로 느껴지는 긴장감, 주변과의 대비, 각 요소들의 분리 및 독립성, 부조화, 시간감 등을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기존의 개념들과 혼합된 형태로 시도해 볼 기회를 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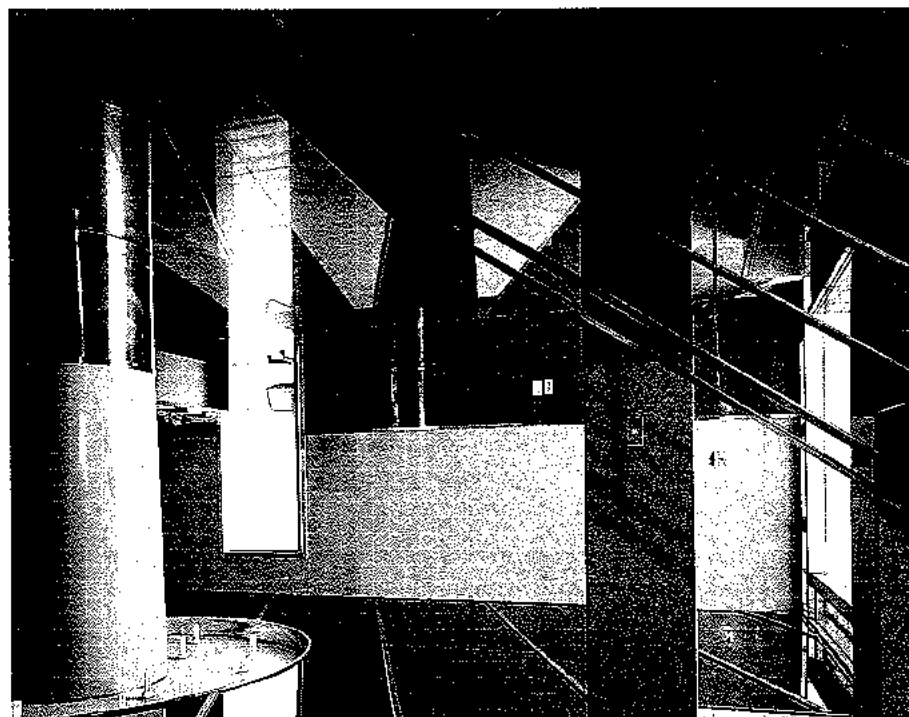
본 대치동 프로젝트는 정형화된 강남 간선도로의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에 가로변이 가구점 거리화되어가는 길변에 6m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사다리꼴 대지이나, 위치상 인지도가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과의 조화보다는 대지 형태인 사다리꼴과 원, 두 기하학적 형태의 강한 대비를 택하였다. 또한 거친 재료로 형성된 베이스 위에 평활한 면으로 구성된 패스의 처리보다는 역으로 평활한 면으로 이루어진 베이스 내부에 거친 면의 원통형으로 처리하여 상부의 원통형을 강조할 수 있는 장식(ornament)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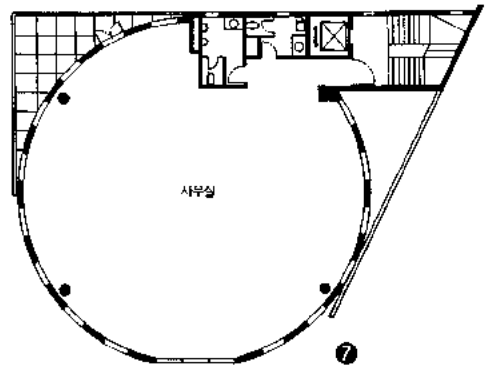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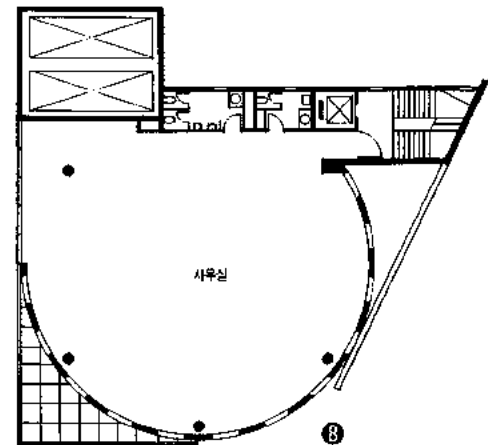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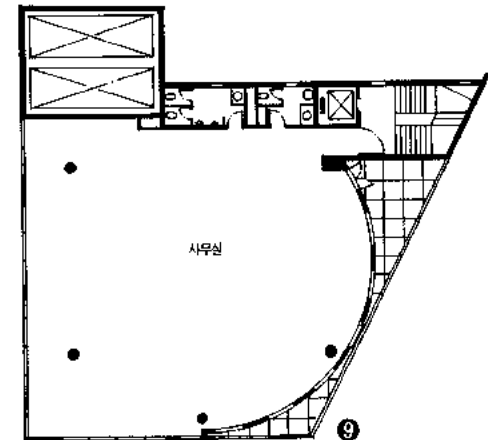
6



7



8



9

- ① 남동측 전경
- ② 남서측 전경
- ③ 1층 평면도
- ④ 남측 전경
- ⑤ 외부상세
- ⑥ 1층 내부
- ⑦ 7층 평면도
- ⑧ 5층 평면도
- ⑨ 3층 평면도

동산빌딩

Dongsan Building

金春雄/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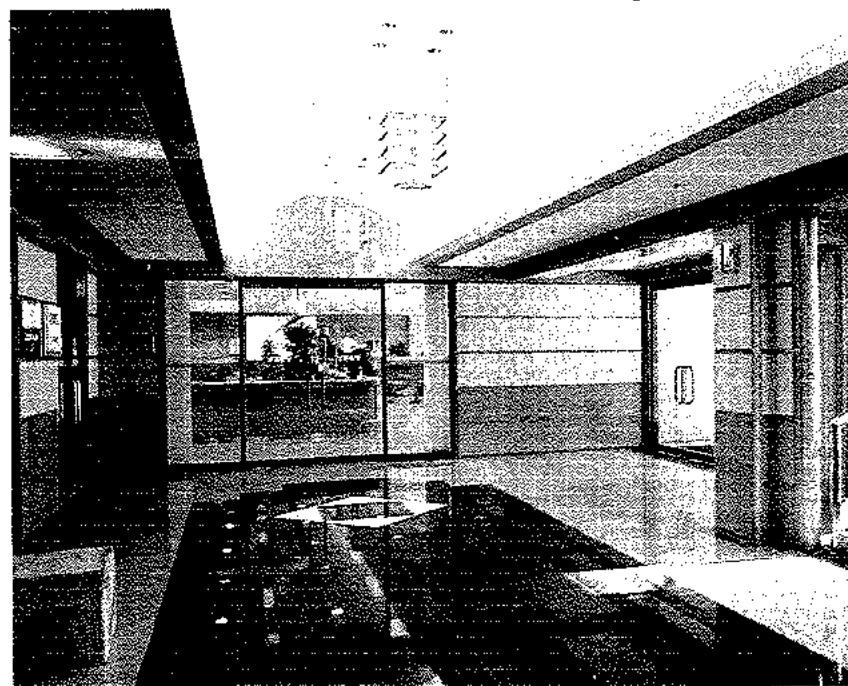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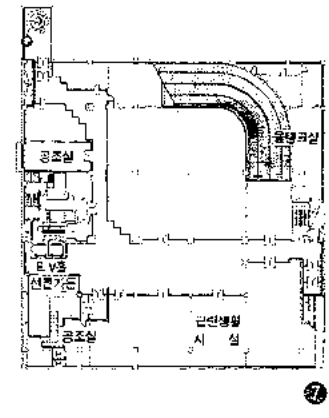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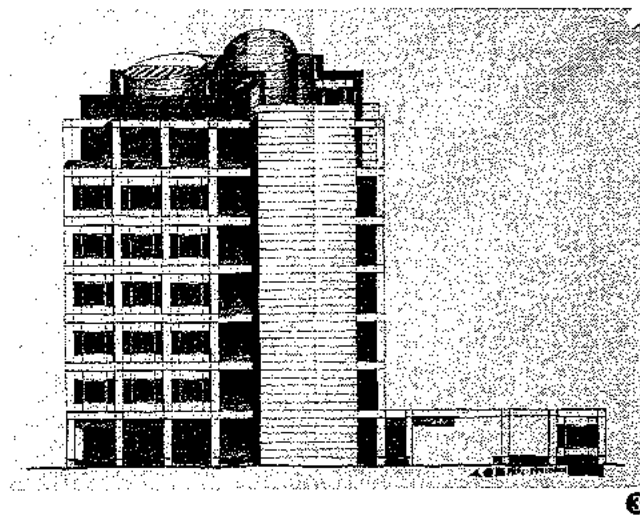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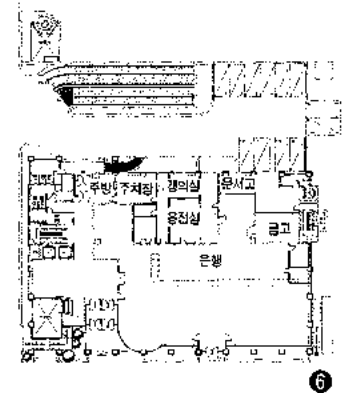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Choun-Woong



동산빌딩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29-630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2,504.5㎡
 건축면적 / 1,181.76㎡
 연면적 / 13,036.10㎡
 건폐율 / 47.18%
 용적률 / 298.41%
 규모 / 지하 3층, 지상 7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101대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및 몰탈기,
 파스텔복층유리, 알미늄페널



대지의 전면으로 40m도로를 면하고 있고 뒤로는 80m도로를 사이에 두고 12층의 아파트가 늘어섰다.

전면도로는 남북순환도로 축상에 있는 도로로서 도로면에는 나름대로의 개성을 갖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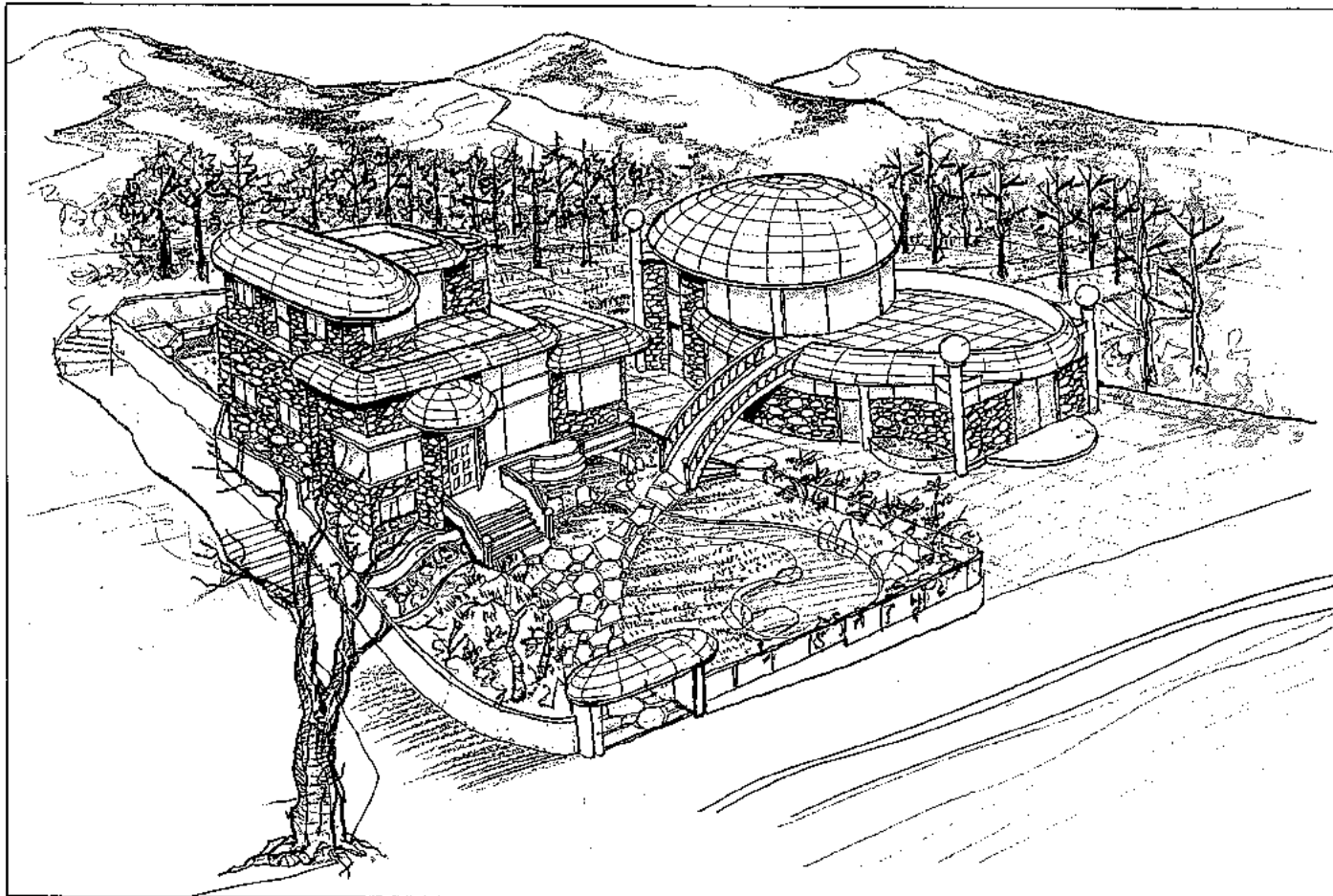
건물을 미관 후퇴선에 맞추고, 후면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 아파트와의 간격을 최대한 넓혀, 아파트 주민과의 민원소지를 줄였다.

지하층의 환성화 및 접지층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면부에 선 콘가튼을 도입했고, 입면은 정연한 격자프레임을 시공성과 질서를 주었으며, 매스를 중첩시켜 변화감을 주었고, 탑 및 7층에 원통의 매스에 사선을 가미하여 사용, 옥상, 성화 및 전체 매스의 격자가 주는 단조로움을 극복, 정연하면서도 개성이 있는 조화를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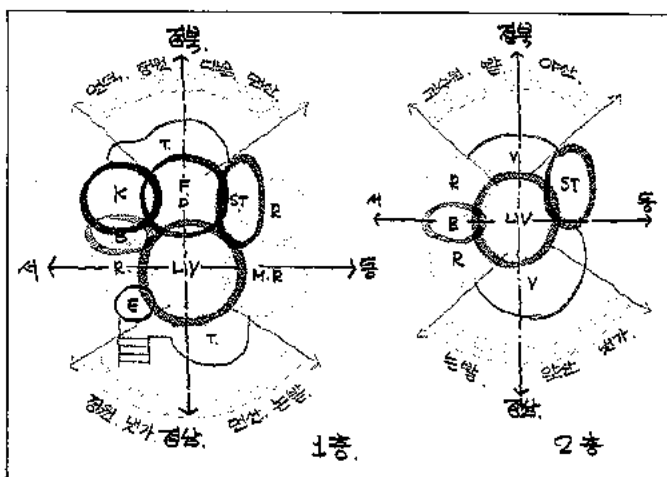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투시도
- ③ 초기만 스케치
- ④ 전면 조각들
- ⑤ 1층 내부
- ⑥ 1층 평면도
- ⑦ 지하 1층 평면도

A Herb Clinic and Residence

Designed by Son, 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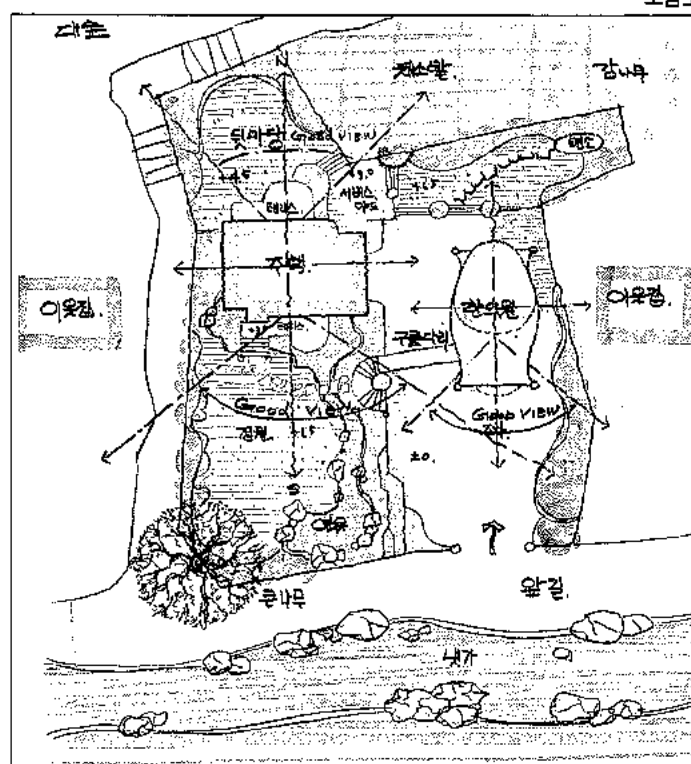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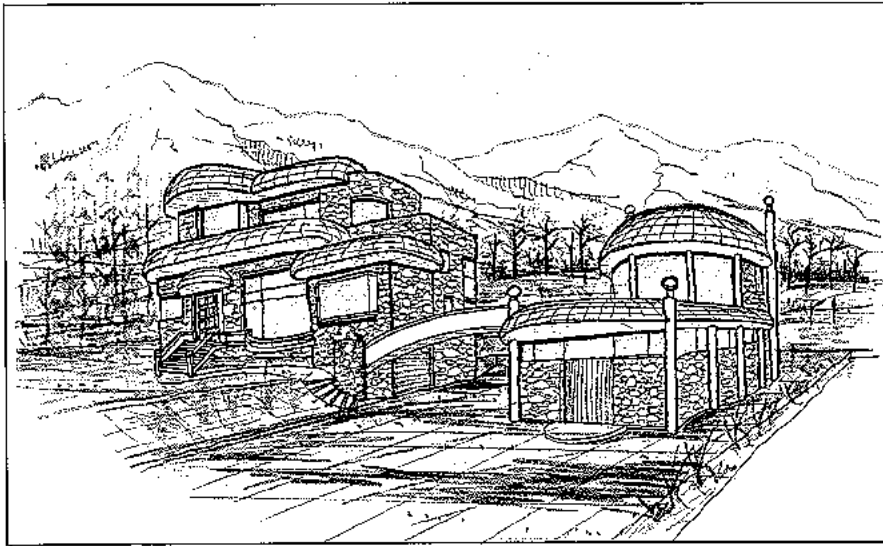


가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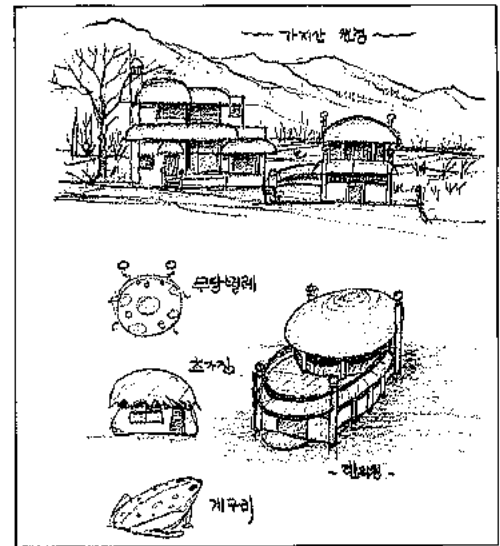
그 자리에 자리잡은 명봉들이 이루는 가지산 아래
佛心 깊은 바구니들의 경읽는 소리 은은히 들려올제
석남사 山侍의 향내는 오늘도 감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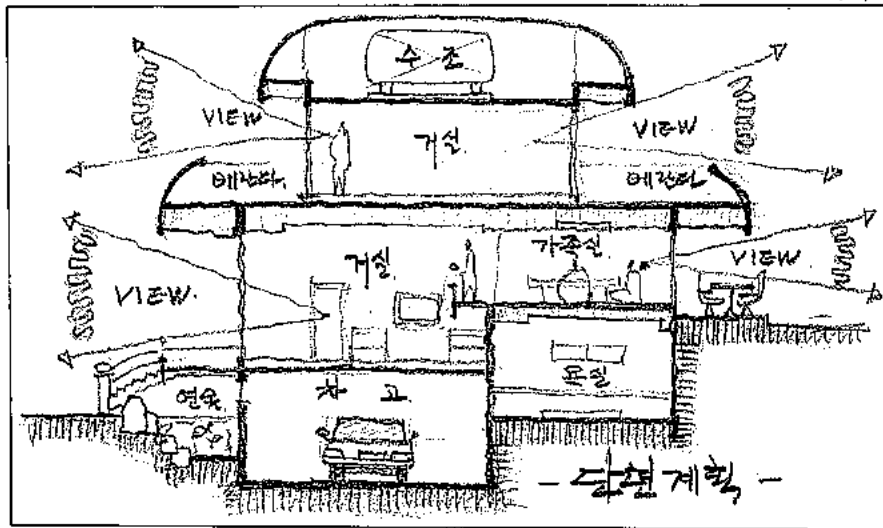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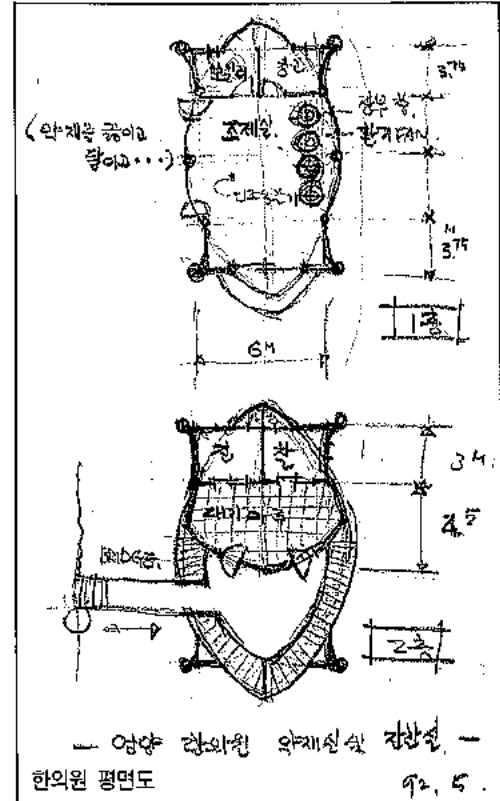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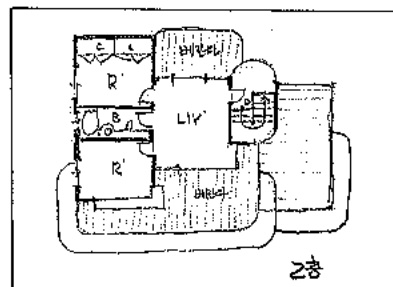
디자인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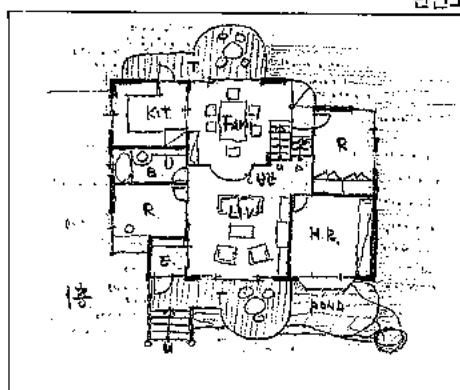
단면도



92.5



주택동 2층 평면도



주택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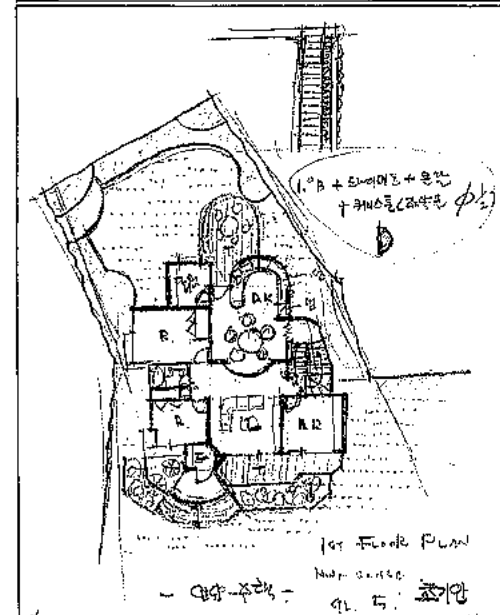
언양읍에서 20분거리
석남사 입구 맞은편 작은마을
유달리 감나무가 많은 동네

집앞으로는 가지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냇물이 흐르고 아무렇게나 놓여진 바위가 늘려있고...

都心에 찌든 몸과 마음을 듯자리처럼 펴고 싶은 곳.
주인은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100년 전에 정착하여
한의원을 하고 있었다.

예부터 이곳은 초가지붕들이 방계처럼 엮여 있었다.

- 설계방향 ○自然에 동화되는 집
- 지형과 방위축에 순응
- 환자에게 대기하는 즐거움 부여
- 주거동 PRIVACY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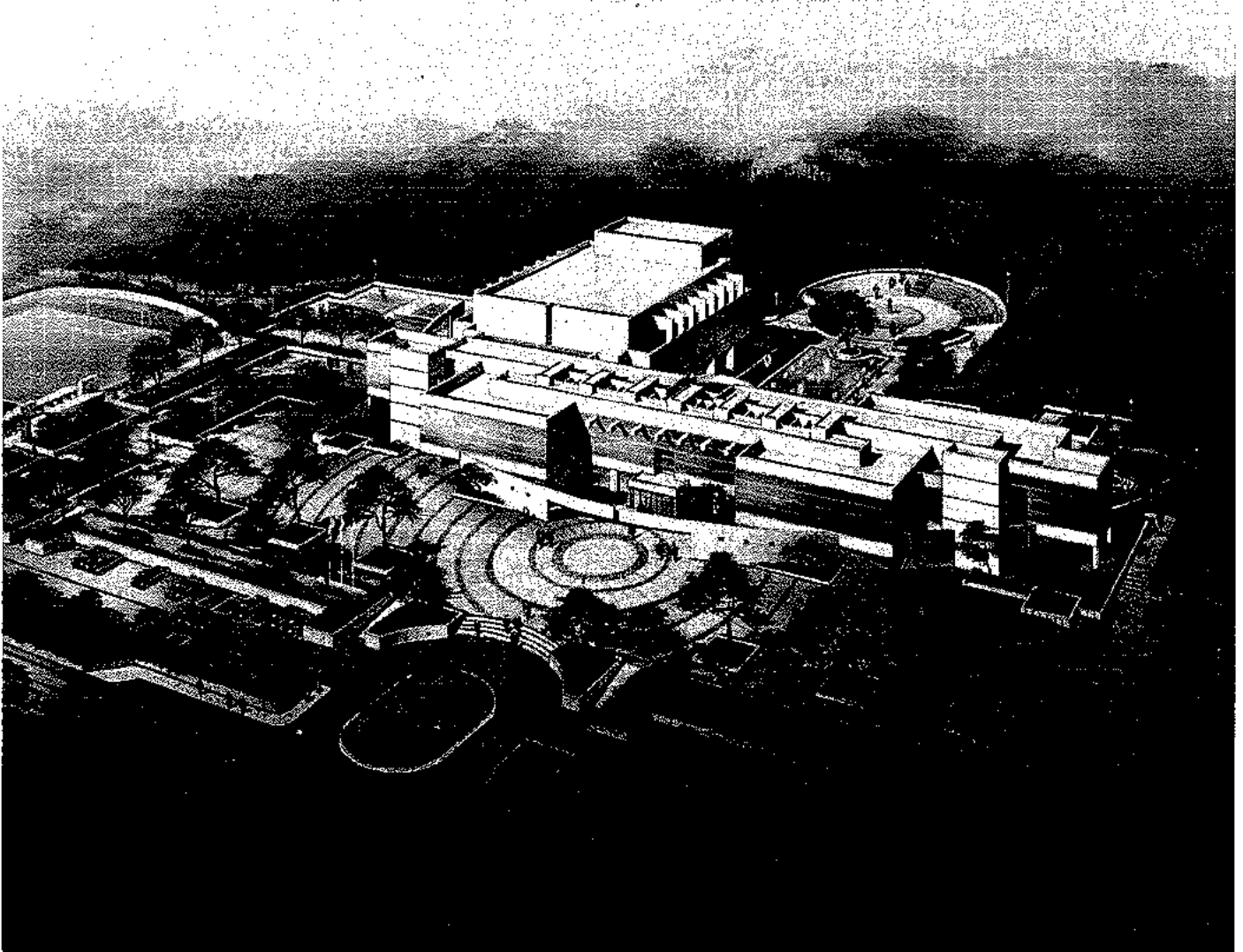
초기안 1층 평면도

양주군 문예회관

Yangjugun Cultu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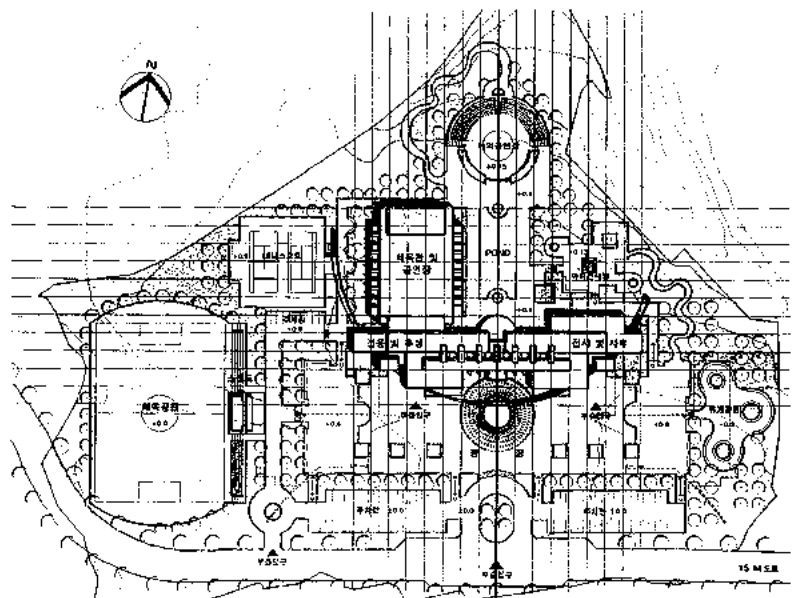
林長烈/(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Im, Jang-Y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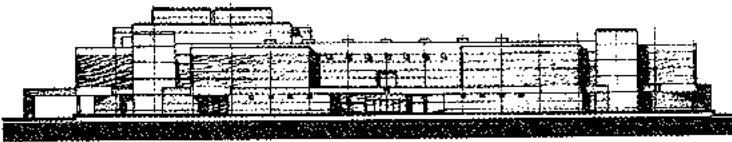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178~1번지의 10필지
 지역·지구 /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지면적 / 39,611㎡
 건축면적 / 3,074.46㎡
 연면적 / 5,897.55㎡
 건폐율 / 7.76%
 용적률 / 13.37%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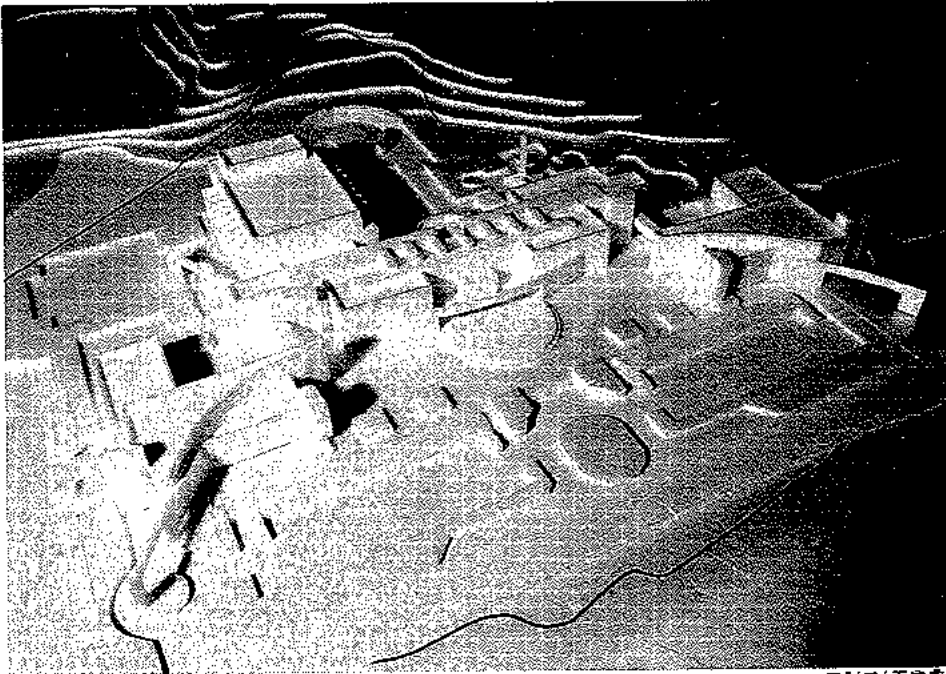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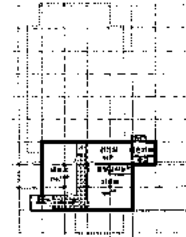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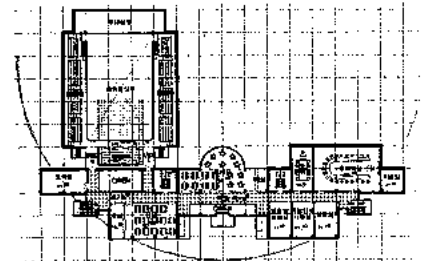
우측면도



모형도(중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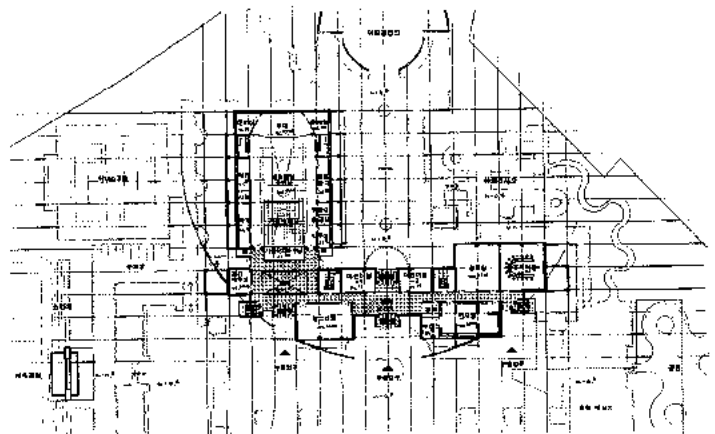
지하층 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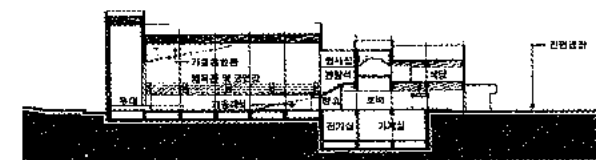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계획

- 대지 주변 자연지형과 환경에 부응하고 도로에서의 자연스러운 접근 및 공간의 위계적 질서 구성
- 체육관과 공연장, 업무, 전시 및 전용실 등의 상호 유기적관계를 고려하여 구별하고 연결한 기능적 배치계획
- 이용자의 출입과 통행 흐름을 고려하여 건물, 주차, 외부공간 및 조경공간의 상호 연계성 확보
- 동적영역인 내, 외부 체육시설과 정적영역인 사무실, 전용실과 옥외 휴게공간 등으로 구분 Zoning으로 내, 외부공간의 연계
- 주진입부로부터 전면광장, 수공간, 야외공연장을 연결하는 주축상에 단계적 옥외공간 구성

평면계획

- 각 기능별 분리를 통한 평면계획으로 독립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 서로 연결시켜 상호 유기적인 관계 형성
- 체육관, 공연장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동시출입을 고려하여 충분한 로비공간을 확보하고 세방향 출입구로 원활한 출입유도
- 전시장은 관람객이 입장하여 전시물을 관람하고 출구에 이르기까지 동선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 동일기능별, 사용시간대별로 실을 배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개별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

입면계획

- 전면에 곡면부 도입으로 부드러운 이미지와 주 출입구의 명확한 인지성, 중심성 강조
-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입면계획으로 이용자와의 친근감 조성
- 지역의 중심시설로서의 성격을 감안, 시각적 중심성과 상징성을 갖도록 매스 및 형태에 독립적인 아이덴티티를 부여
- 조화, 통일, 균제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입면계획
- 의장요소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통일성과 리듬감 부여
- 대지와 밀착하는 수평적 요소에 수직적 요소를 기미하여 상호 조화되는 입면 구성

趙成龍 건축의 엘리티시즘 「양재 287.3」

Eliticism of Joh, Sung—yong Architecture for Yangchae 287.3

朴吉龍 /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by Park, Kil-Yong

趙成龍의 「양재 287.3」은 변지수의 명제가 떠오른 서울의 한 도시건축이다.

이 건축은 이미 1992년 10월에 준공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舊聞인 셈이다. 그러함에도 이 구문의 건축을 다시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즈음 도시건축에 나타나는 몇가지 양태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시세의 팽대에 힘입어, 소위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소규모 도시건축이 도시의 공간을 채워가는 경향에서 보편적인 과제가 되어왔다.

대체로 이 유형의 건축들은 두가지로 변별되는 양태를 나타내는데, 그 지배적인 문제는 상업주의와 무의식의 건축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당한 환경을 잠식하고 있는 경향에 있다. 이에 비해 비록

소수이지만, 젊은 건축세대의 조형적 실험으로 적당한 대상이 되므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에 비하여서도 밀도 높은 작업 결과들을 얻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의 「양재 287.3」을 통한 논의는 일상적인 도시 건축의 입장으로서는 이해와, 소규모 건축으로서 보편적 오브젝티브를 찾는 범론으로서 기대를 겸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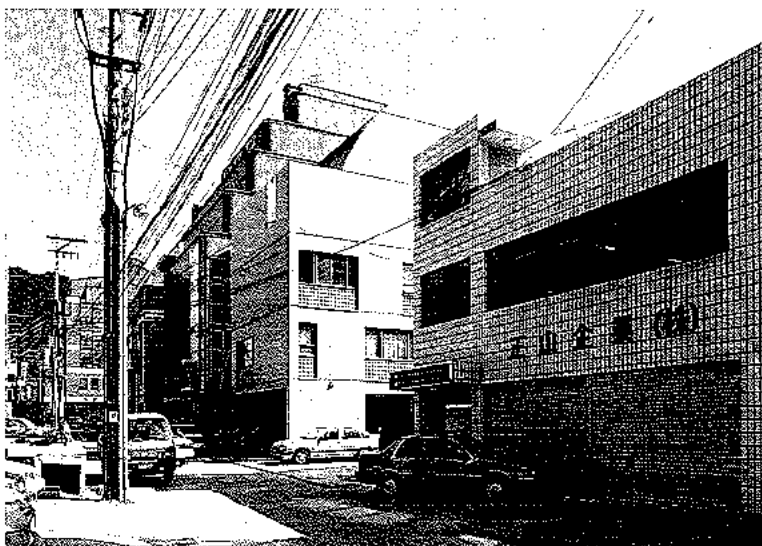
소규모 도시건축의 의의

도시가 조직을 근거로 하는 만큼,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건축은 도시건축이다. 그것은 도시적 조직을 떠나서 형성되는 田園建築의 입장과는 그 주변성 때문에 확연히 구별된다. 그것은 건축이 좀더 자유롭게 개별적 意圖에 있을 수 있는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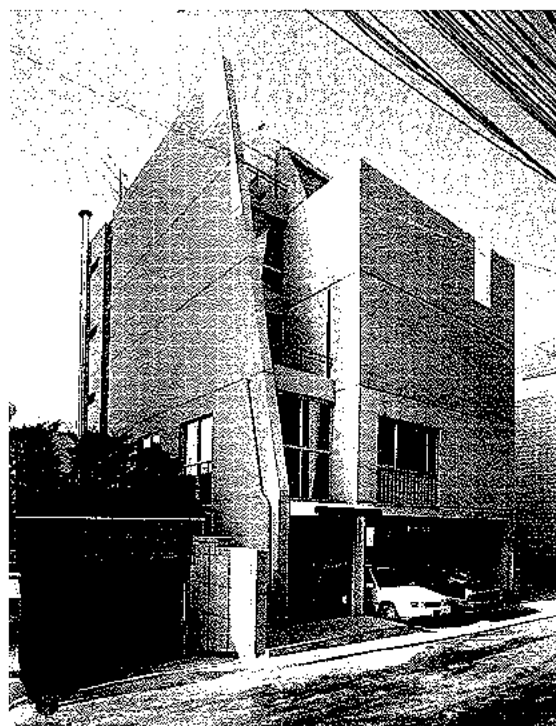
조직적 틀을 準據로 하여야 하는가의 차이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건축이란 마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것과 같이 건축의 '도시적 존재로서 건축'을 말하게 한다. 감상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건축은 겸손하다고 하고, 어떤 건축은 댄디하지만 주변과 잘 동조되지 못한다고 한다. 어떤 건축은 개별성에 뛰어난 모습이나, 주변과 알력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른바 '脈絡性 ; Context'라는 것은 서구의 역사적 도시, 건축에서 비롯되나, 이를 확대하자면 도시의 조직적 구조에서 건축간의 同調性으로 말하게 한다.

여기에서 동조성을 기대하기 위해 도시건축에는 형상의 차원 보다도 중요한 準據의 틀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가로로



「양재 287.3」의 주변성에서 입장



조성룡, 바르크 빌딩, 서울, 1989

통해 연속화되는 엄정한 공간적 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건축마다의 표현과 가로에서 접촉되는 기능에도 상관된다.

그중에서도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도시의 소규모 건축은 우리의 생활거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物像으로 우리에게 접촉되어 온다.

거북한 주변과의 인연

도시건축이 주변과 인연을 가져야 할 이유가 그간 여러 경로에서 잘 이야기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도시의 경우에서 이 맥락의 수단을 찾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것은 맥락의 索引이 될 주변성의 요소가 분명치 않거나, 너무 난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맥락의 근거를 어느 쫓점에서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 앞에서 당혹하게 된다.

특히 서울의 강남지역과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 데쳐진 신흥도시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구도 잡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며, 이 「양재 287.3」의 주변인 포이, 양재동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의 대지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나 대부분의 도시활동은 소비적이고 상업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축적 가치보다는 부동산 가치를 서비스하고난 의기양양하거나 아니면 계면적이 하는 건축들을 도처에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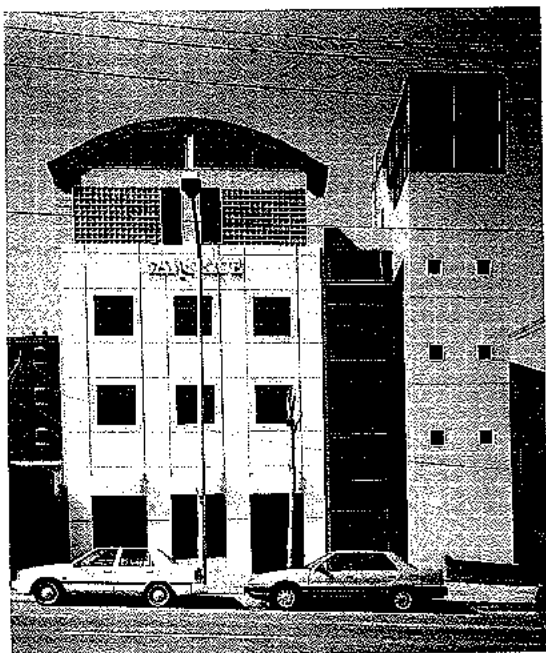
대부분 소규모 도시건축의 경우가 그러하듯,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성에서 건축은 새로운 동기유발 보다는 임가응변으로 선행에 의하여 주변에 쫓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자연히 한 건축의

역량은 다음 건축의 목적을 들우게 하고, 극기야는 아우성의 가로를 만든다.

이와 같은 주변성에서 「양재 287.3」은 아무런 장소성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조직적 유대 속에서 디자인의 동기를 찾지 못하고 난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맥락의 索引이 적당치 못하고 산만한 경우 우리는 곧잘 이웃간에 폐쇄적 양태를 띠우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개별성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어떤 주변성으로서의 역할도 소극적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도시는 도시건축이 內性的으로 될수록 개연적으로 感性能力을 쇠잔하게 한다. 즉 節制라는 메카니즘은 자연히 감성적 에너지, 즉 엔트로피를 저하시키며 주변으로 부터 沈潛하게 된다.

그의 극단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도시의 건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성룡, 양재 287.3, 서울, 1992



손학식, 두손 프라자 빌딩, 서울, 1992

토치카와 같은 防禦性과 貝殼과 같은 自閉性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물론 없는 듯 있거나 있는 듯 없는 것이 물가치하다는 것은 아니다. 감성의 에너지가 다채롭고 화려하게 분출된다기 보다 麟華의 도시가 된다는 염려가 상대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대중성과 엘리티시즘의 알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도시의 건축이 일차적으로 적당히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은 이와 같은 자폐적 건축들에 의해 무색하게 되었다. 이 건축에서 보이는 주변성에 대한 태도도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주변성에서 맥락의 리퍼런스를 찾지 못하므로, 自閉의 태도를 취한다.

2) 이에 따라 그 주변과 가로에서 웨이탈의 구조는 끊어지고, 단편적이게 된다.

3) 내성적인 표현으로 주변의 엔트로피를 저하시키며, 가로는 숙연하여진다.

趙成龍의 도시는 비록 蔑視의 대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桎梏의 조건이며, 위와 같은 자신의 도그마를 확고히 한다.

양재동과 같이 급팽배하는 도시세에서 동시대의 건축가들이 내질른 상업주의의 아우성 속에서 확실히 우리의 도시는 지쳐있다.

도시를 卑下할 수만은 없으면서, 회생시킬 수단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우리는 도시를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달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자신의 안식감 대신에 우리는 그에게 맡겨진 소중한 책임 하나를 손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 책임이란 함께 도시를 만든다는 윤리에서 그러하거나와, 한 엘리트에게 우리는 어떤 慰撫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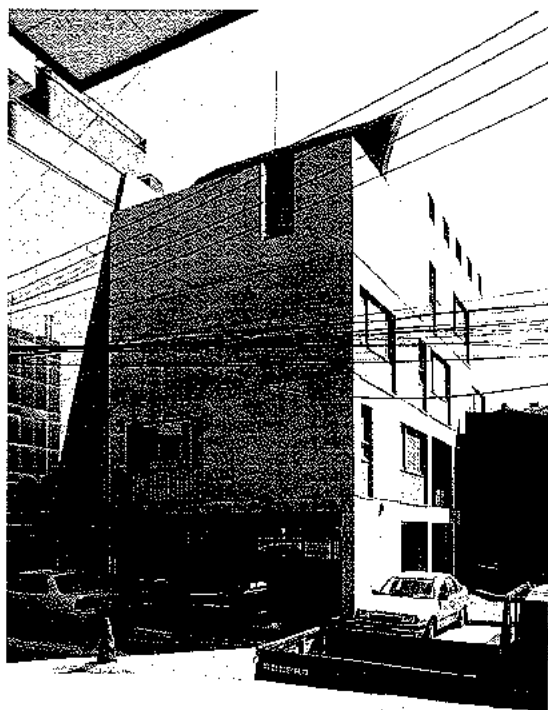
안도다다오(安藤忠雄) 건축이 그의 안에 공간을 머금은 방법으로 도시를 외면하지만, 그는 도시의 길을 연장한다는 모순에 빠져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환경을 흡입하며 자신의 길을 만든다.

이 趙成龍의 건축에서도 이끌려 들어온 길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현관 이후 계단까지의 긴 경로가 그러하고, 지하층 선콘 공간으로 이끄는 계단이 그러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주변에서 무엇을 끌고 담고자 하는가.

「양재 287.3」는 도시건축이나, 그 주용도는 작가의 스튜디오를 포함하여 건축, 사진 공방으로 임대되어 있고, 아직 1층의 임대부분이 비어 있다. 따라서 이 건축의 입장은 통상적인 도시건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점두(Shop Front)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데에서 그러하다. 특히



安藤忠雄, B Block, 京都, 1990



전경 속의 지반층 조직

1층이 주차장으로 지배되는 건축에서, 인상지어지는 것은 건축이 가로에 대해 방임한다는 것이다. 건축의 내부가 가로의 보행자와 접촉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건축의 接道는 보차혼용도로로서, 일상적인 商圈이 형성되고 있는 주변성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대중이 최소한 지반층에서나마 건축의 내적 구조가 열려있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점두의 구성이다.

이 건축에서 1층의 주현관으로 길게 드러내지는 계단의 구성은 길의 연장이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인가는 확신이 없지만, 다시 잘 정리되고 난 후 정감이 회복된 길일 때를 위한 준비라는 것에도 믿음을 두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작가가 혐오하는 도시의 혼돈으로서 그 건축주변은 이미 척박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건축의 45층은 이중으로 된 벽에 의해 내부공간을 안주하게 한다. 이와 같은 필터는 내적 안정감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비, 바람, 구름, 빛 등 자연과 접하는 經路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天上의 요소이다. 이러한 대상들은 地上에서 기대되지 않는 교감의 요인들 보다는 훨씬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만, 이러한 自身性的의 기준으로 선별된 交感要因들과의 대화는 더욱 이 건축을 內性的으로 한다.

간격 두기와 점도 방법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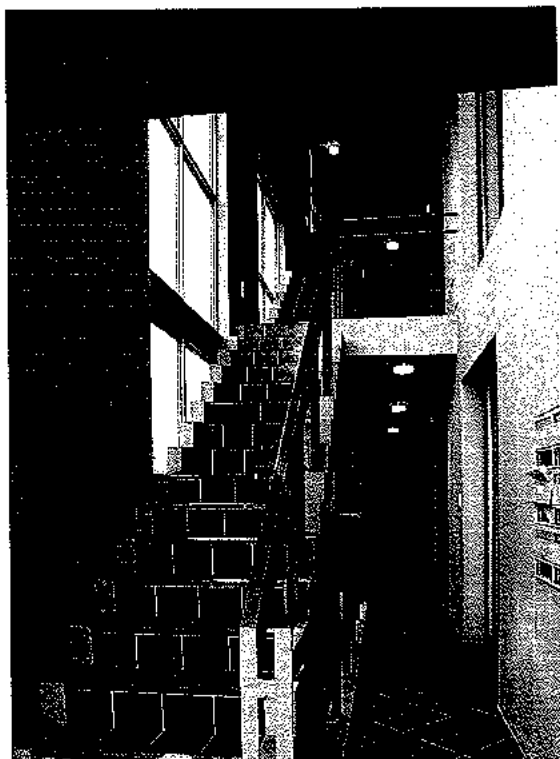
배치는 남쪽 측면과 동쪽 가로면에 바짝 다가서는 대신, 북쪽 측면에 여유를 두고 있다. 이 여유 속에서 지하의 선관

공간으로 독립된 경로가 이루어 진다.

북쪽 집과 기리를 가급적 건물자신의 그림자 길이 이상으로 두고자 하는 것은 신중한 태도이다. 동시에 작가는 여러가지 繪畫的 構圖를 이 여유공간에서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주차공간이 빈약하게 된 반대급부이다. 전술되었듯이 店頭부분으로 가로에서 유일한 개방성이 기대되는 부분을 자동차로 채우게 되며, 6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다. 이 부분은 비록 작가가 멸시하는 街路이지만, 그에 대한 건축도 집삼치 못한 형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셋팅에 지상층에서는 가로에 대해 철저히 폐쇄적이거나 베란다 같은 필터를 두는 대신, 자신이 마련한 북쪽 공간으로 여는 태도를 취한다.



현관이후 긴 계단



측면의 구성

형태 조형에서 스판의 원리

그의 형태구사에서 유지되는 건축적 균형 감각은 용의주도한

스판(Stannung; 충돌의 잠재력을 갖는 긴장상의 균형)의 원리에서 얻어진다. 그의 파사드에서는 잘 조절된 평형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圖形的 均衡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다.

그의 건축은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부수적인가를 잘 나타낸다. 「바로크 빌딩」에서 사무소 공간과 서비스 코어의 상대성이 그러하듯, 이 「양재 287.3」에서도 두 요소의 입장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에는 사무소 공간이 4층까지 직렬한 채 고정된 불륨인데 비해, 계단 부분이 뒤물려져 올라감으로서 主副의 두 입장을 말한다.

4층-5층부에서 형성되는 垂直相의

세워진 곡선은 지하층-2층 간에서 平兩相의 뉘어진 곡선과 서로 상관된다. 그것은 同一 位相에서 반복이 아니라, 입체적 관계에서의 반전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형적 소질 때문에 조성물의 건축 표현은 어떤 방법보다도 엑소노메트릭에서 훨씬 우월하여 진다.

正方의 支配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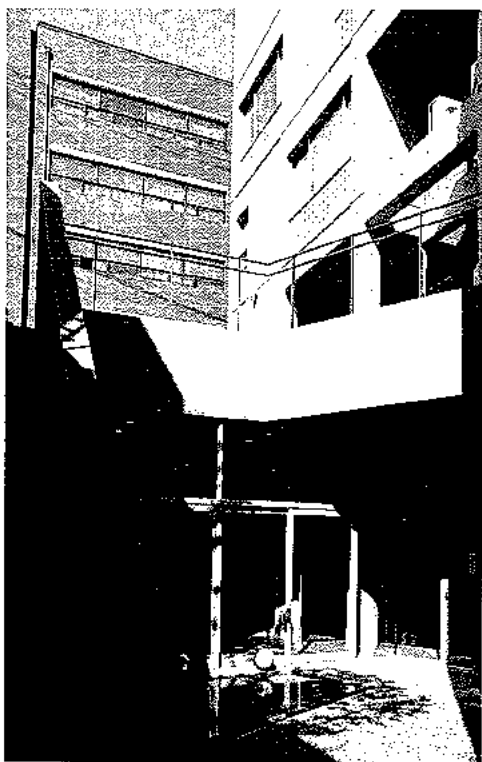
開口의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정방형의 프로포션이다. 초기안은 훨씬 규칙적이어서, 측면의 창을 구성하는 질서의 원리는 1/3의 垂直比를 갖는 細窓와 정방형의 유리 블록 면으로 조합된 구성이었다. 아마 이와 같은 구성으로 완성되었다면 내부공간의 폐쇄감은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엑소노메트릭과 측면

전경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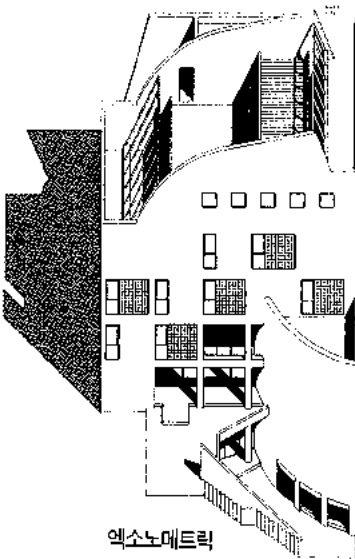
평면의 도형적 이해에서도 이와 같은 정방형의 프로포션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침 대지의 윤곽이 정방형에 있고, 그 윤곽 안에서 건축공간을 안치시키는 구도를 十자형으로 구획한 조직에서 이루고 있다.

A. 팔라디오로부터 M. 보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정방형으로 지배되는 형태는 명쾌하면서도 완결의 감성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방형은 불변성의 표현으로서 유효하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解體의 융통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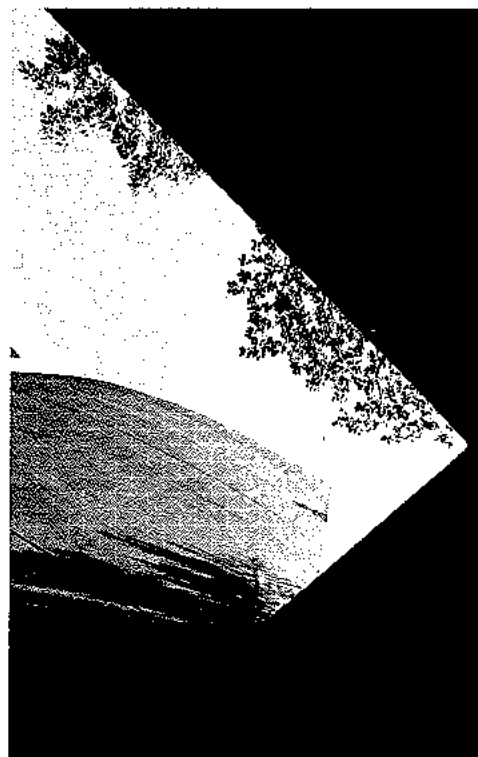
보다 복잡한 異形의 거부라든가, 형태적 정제를 통한 전체의 調律이 신중한 것은 작가의 엘리트적인 감수성에 연관된다. 그는 모더니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통합의



선과 공간에서 虛, 實, 빛의 구성



엑소노메트릭



선과공간에서 구성

논리 안에서 造形함을 거북하게 느끼지 않으나, 부분 마다의 감수성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新合理主義의 태도에 가깝다.

콘크리트의 物性

건축의 「내용」과 「수단」의 부합은 모더니즘의 주요한 강령이었다. 그래서 이 두 관계의 부적합한 구사는 대부분의 불건강한 건축의 이유가 된다.

현대건축이 그의 관능성을 위해 構法과 皮質이 혼화되어 牽制附會의 조형을 이루는 것, 디테일의 둔감함으로 세부묘사력이 부족한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건강하다. 그러나 그의 극단적 소극성은 病色의 조형을 이루게 한다.

우리의 도시건축에서 벽들의 물성을

거북하게 여기는 태도 다음에, 유리와 금속의 虛性에 식상하여, 다시 손에 쥐게 된 콘크리트는 가장 정착된 물성의 재료이다. 이투박한 재료를 보다 신중히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는 콘크리트의 예민한 물성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可塑性을 떠난 趙成龍의 콘크리트는 루이 칸이나 안도 다다오의 것과 마찬가지로 진중하며, 침묵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沈默的 物性은 산만한 주변에서 더욱 건축의 개별성을 보장한다.

작가에서 콘크리트가 표현적 수단으로 되는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어질 것 같다

1) 금속재 또는 유리의 機械的 表質, 또는 지각적으로 과잉되기 쉬운 벽돌에 대한 식상감 — 인공과 자연성의 중간적 재료

2) 無彩色 中性化에 가까운 表質에서 지각적으로 좀더 침착되는 표현의 모색 — 그러나 일상적인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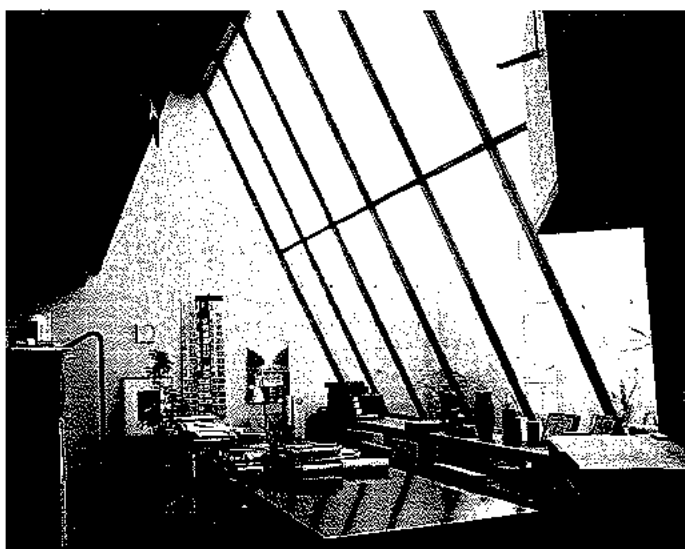
3) 공간의 質量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의 필연성 — 硬性和 重量 재료

위의 같은 과정이 콘크리트가 종래 可塑 형태의 수단으로부터 非可塑 형태에서도 축망받는 물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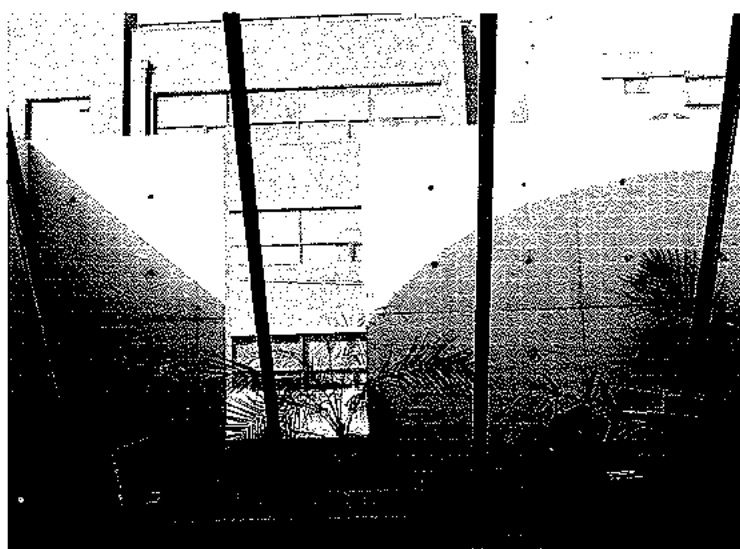
그러나 콘크리트는 여전히 도시적 재료는 아니다.

제물치장 콘크리트는 그 자신의 構造的 硬性이 외연화되는 속성 때문에 신뢰적이고, 내재된 감각과 외적표현이 일체, 상통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공적 재료이면서도 그것이 노출재가 될 때 자연적 채취에 가깝게 된다.

틀의 구조에서부터, 타설, 양생이라는 긴 과정 때문에 현장의 작업과 결과에 대한



4층 사무소 실내 전경



발코니의 구성

기대가 일치하여야 하는 構法이다. 그것은 거꾸집 제거 후에도 '숨죽인 듯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변밀한 섬생이 필요하다.

「바로크 빌딩」에서는 같은 회색조의 모노크롬이면서도 외장 타일과 알미늄 패널의 인조재료에 의하였었다. 이에 비해 콘크리트는 결과의 정도를 쉽게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실패의 리스크를 갖지만, 이러한 手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가는 작업의 의미를 의식한다.

「양재 287.3」에서 제물치장 콘크리트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여러 시공 체험에 비교하여 가장 성공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構度는 自社의 건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모르지만 비교적 정확한 결과이다.

콘크리트의 소재와 함께 2차적으로

지각을 지배하는 마감은 편칭 메탈과 무늬 강판이다. 이 재료는 콘크리트의 硬性과 아주 잘 배합되는 재료이나 역시 배타적이다.

회화적 구도의 즐거움

趙成龍의 건축은 대단한 정제과정을 거치는 만큼, 그의 건축은 다분히 畫趣의이다. 그것은 이미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에서도 발견하는 여러가지 삼화적 구도로 부터 「바로크 빌딩」과 같은 도시의 한 정경 속에서도 펼쳐리스크한 화취를 갖는다.

이 「양재 287.3」에서도 몇가지 용의주도한 회화적 구도를 발견하는 일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상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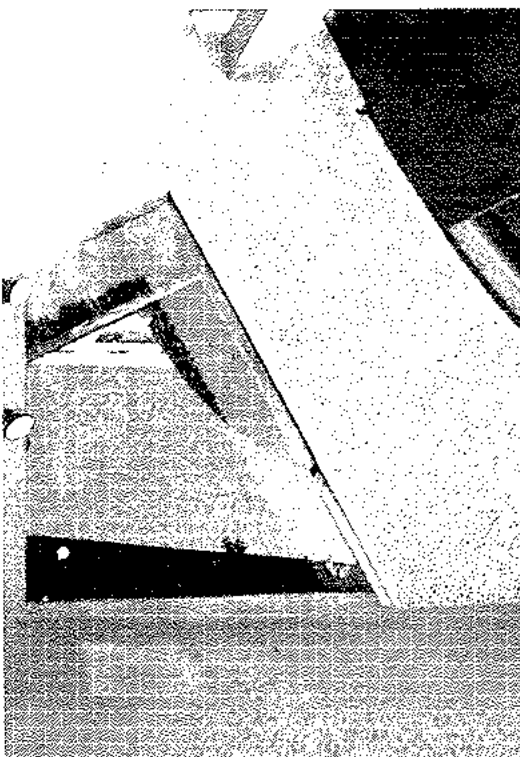
전면의 4층 발코니에서 한 부분을 배어낸

면의 구성은 실내에서부터 그를 통해 주변의 일상적 도시의 한 장면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가로에서는 발코니의 틈으로 엿비치는 식재가 畫材를 이루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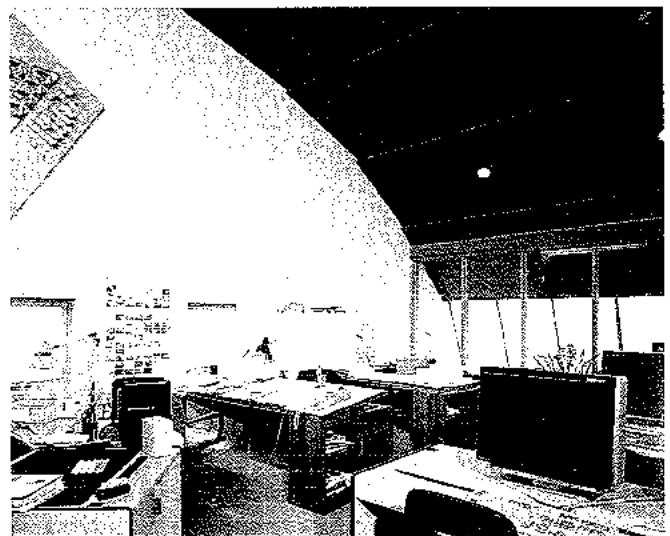
선큰 공간의 특별한 기하학적 구도를 발견하는 것은 가로에서보다도 내부 거주자의 일이지만, 건축을 풍요하게 하는 요소이다.

면(수면), 삼각(계단), 곡선(저층부)의 도형적 구성과 색채(회색과 적갈색)는 화인더 안에서 하나의 완벽한 회화이다.

각층에서 발코니를 갖추고자 함은 일상적인 실내 생활에서 거주자가 외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이다. 그러함에도 대부분의 작업공간은 극히 폐쇄적인데, 그것이 작업자의 작업시간 동안 지각을 외부경관에 빼앗기지 않기위한 방어는



선큰 공간구도



사무소 공간, 창과 작업테이블의 일치

아니겠지만, 여하튼 일상생활 사이에서 自然(또는 빈곤하고 혼탁한 주변성이라는 것)과는 격리된다.

빛을 실내에 어떻게 투여하는가의 방법이 용의 주도함은 작가의 해안이다. 지하층 깊이 스미는 빛, 작업공간에서 포착될 적당한 양의 광선은 향위의 인연이 맞아야 할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빛을 위한 비어냄의 공간적 구도가 빛에 대한 이해를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조직의 문제에서

하나의 타운스케임을 창출하기 위한 시간과 관심이 얼마나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양재동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行蹟들의

문제는 그 기대를 어렵게 한다.

그것이 개별적인 유희이거나 줄부들이 자본문화로 이미 선점된 조직에서 어떤 맥락을 위한 言辯도 그렇게 호소력있게 들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다양성은 서로 차단된채 가치관의 대조를 이룬다.

도시건축에서는 두가지의 태도가 견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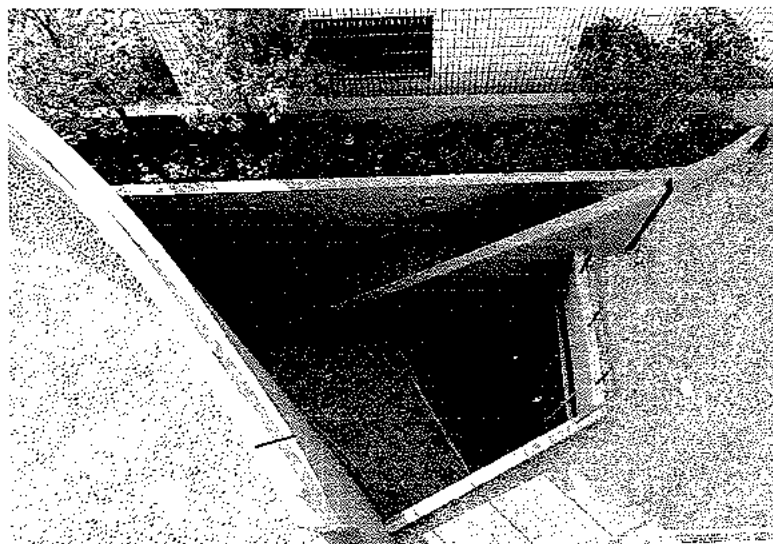
하나 는 다양성의 탈을 쓴 倒錯的 唯美主義이다. 또한 설계요인의 연속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自閉性을 띠우는 것은, 최소한 일상적인 도시건축의 상황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에의 안식감보다는, 주변에의 멸시보다는 包攝的 態度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항상 엘리티시즘과 大衆性은 알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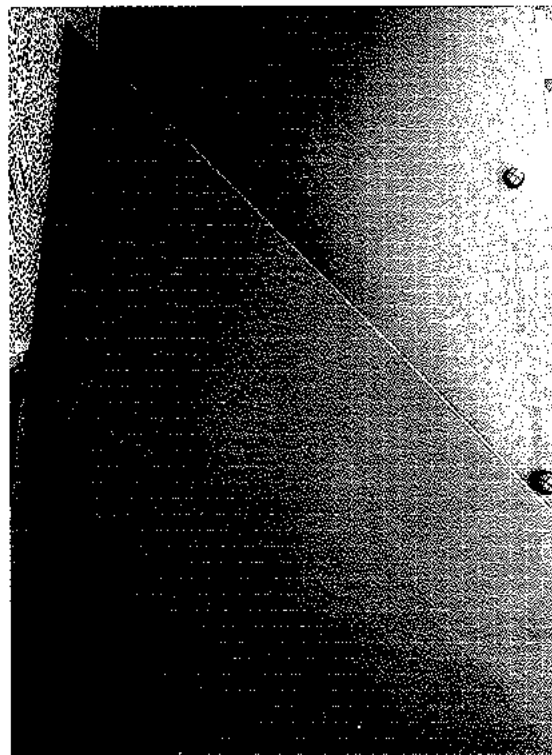
반드시 상대를 적결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평형의 균질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질서와 다양성이 통합되며, 도시의 스타일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와 건축은 어떠한 感情移入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이입을 통해 알게 되는 가치가 귀중하고, 얼마나 도시를 풍요화 할 수단인가를 몰두하는 것이 도시건축의 第一義이다.



4층에서 선릉까지의 회화성



선릉공간 벽면의 색채구성

구조 안전진단 감상(2)

Description of Structural Security Examination(2)

李昌男/센구조 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필자는 건축사 9202에 같은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제 그간에 느낀 구조 안전진단 현장에서의 심정을 적어 보기로 한다.

축구 심판은 공정해야 관람할 재미가 있다. 우리나라 선수라고 해서 심판이 우리편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조치를 취하면 설사 경기에서 승리했다 해도 마음속은 패배감 이상으로 불편하다.

관중들도 경기의 규칙을 잘 알고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니 고의로 봐 주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잘못보고 그릇된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잦으면 야유를 받아 위신이 실추되기도 하고 심하면 심판의 자격을 잃게 된다.

축구는 스포츠이며 관객에게는 오락이다. 그러나 건축구조 안전진단이 잘못되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다. 그런데도 적당히, 소홀히 다루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한다. 항간에 무식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용감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구조안전진단 의뢰자의 유형은 다음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순진형”이다. 순수한 의미에서 건물의 안전성 여부가 염려되어서, 때로는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찾아오는 분들이다. 슬라브나 보에 금이 가고 벽과 기둥이 쪼개지는가 하면 물이 새고 바닥이 기울어져서 혹시 오늘 밤에라도 깔려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가끔 집이 흔들거려서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호소해 오기도 한다.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두뇌 세포만 동원해서 일해도 되는 기분 좋은 프로젝트들이다. 모두가 이런 의뢰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둘째, “엄살형 또는 억지형”이다. 스스로도 안전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 범위와 상환을 될수록 확대 노출시켜, 가해자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피해 보상을 받아 내려는 분들이다. 입주 당시부터 보아왔던 하자 사항까지 이번 피해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어쩌면 오히려 자기 집이 이 기회에 더 심하게 부서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로 행동한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목소리가 크고 권리 찾기에 필사적이다.

재건축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상의 “안전진단”, 오히려 “불안전진단”이라고 불려야 옳을 업무도 있다. 다행히(?) 건축사협회에서 필자에게까지는 그런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정책적인 고민에서 해방된 상태이지만 알려진 바로는 자기 집이 구조상 될수록 불안하여 곧 헐어 버려야 한다는 판정이 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의뢰자이다.

지은 지 20년은 지나야 한다느니, 20년은 채 못되었어도 심하게 낡았으면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 받고 조사하는 건축사 입장이라 신나는 일일 지 모르나 의뢰자의 마음은 결코 기분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심하다고 할 정도로 고액의 진단비를 청구해도 혹시나 답이 “안전함”으로 나올까봐 군말없이 응하며 은근히 로비(Lobby)활동을 해오는 모양이다.

실제로 필자는 건축사협회 모 회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 1회의 재건축 조사를 할 뻔 했다. 사전 조사 출장중 걸로만 보아도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조차 없을 정도로 안전했는데, 뜻밖에도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다 거액의 봉투를 막무가내로 쑤셔 넣고 도망가는 것이었다. 물론 그 돈을 즉시 온 라인(On-Line)으로 돌려 보냈기 때문에 이 같은 굴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도 많다. 건축주가 양심적이고 성실하여, 세들어 있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때 맞추어 손질해서, 깨끗하고 튼튼한 집은 재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반면에, 악덕 업자가 부실 시공하고는 한번도 돌아 보지 않아 위험스럽게 된 건물은 얼른 헐어 버리고 다층아파트를 지어 돈 벌어도 좋다는 허가증이 나온다. 나의 은사 한 분은 옛날에 사 둔 야산에 나무를 심고 정원처럼 예쁘게 꾸며 놓았더니 공원용지인가 풍치지구인가 뭐 그런 것으로 묶여 놓아 집도 못 짓고 땅 값도 오르지 않는데, 바로 옆 같은 조건의 땅은 사 놓고 방치하여 쓰레기장 같이 저저분하니 얼른 집지어 돈 벌라는 것이다.

그 집 지으면 나의 은사 땅은 저절로 그의 정원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엄살형, 억지형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기존 아파트나 빈민촌 옆에 땅가진 사람은 톡톡히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 구로동 모 현장에서는 주민 공동으로 비디오 카메라까지 사 놓고 교대로 현장을 향하여 촬영을 하는가 하면 쓰러져가던 담벼락에

조그만 금이라도 추가로 생기면 마치 아끼던 보석이 깨지거나 한 것처럼 수선을 떤다. 실제로 달동네 신축 현장은 사망이 적이다. 그러나, 일단 집짓고 나면 먼저 자불했던 피해보상비를 옆집 신축 현장에서 받아 내려는 작전을 세운다. 집마다 진정서요, 법정에 고소하는 살벌한 원수다. 양보와 겸손을 미덕으로 삼던 동방예의지국이 어찌서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관청에서도 그렇다. 그래도 집짓는 돈 가진 자는 땅바닥에 누워서 악을 쓰지는 않는 것을 아는 공무원은 덜 귀찮은게 좋다는 생각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편을 들어준다. 중산층 이상이라고 자처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다를 바 없다. 직업적인 테코폰을 고용하여 날마다 아우성치는 데 결석하면 벌금내니 파출부를 고용해서라도 가담한다. 옳고 그르고는 따질 필요도 없고, 그저 대중을 따라 가기만 하면 돈이 생긴다는 논리다. 실제로 분회 아닌 다른 단체에서의 얘기인데 정말 진단 결과 제시된 하자가 공사현장 때문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세대당 4~500만원을 보상하고서야 준공 검사를 받은 빌딩주가 있다. 건축주가 재벌이라서 그랬는지 크게 양보해서 협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이제는 온갖 구실을 들어서 사사건건 공사를 방해하고 나선다. 하자가 생길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부터 보상비를 확보해 두자는 속셈이다.

셋째, “강심장형 또는 철면피형”이다. 누가 보아도 옆 집에 무시못할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인다. 고쳐 주면 될 거 아니냐고 큰소리도 친다. 대개는 돌팔이형 건축시공자다. 자기 방법은 항상 옳다. 아주 모르면 그래도 낫다. 가르치면 알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경험한 지식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바다, 벽에 균열이 생겼는데 때워주면 책임을 다한 거라는 논리이다. 집이 기울어진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 주겠다고는 건지 모를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안전진단 의뢰자에게 돌아나는 사이비 기술자들이다. 마치 교통사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일부 돌팔이 의과 의사 같다. 순식간에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기막히다.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판정을 뒤집기도 한다. 울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이다. 공신력이 있다고 알려진 협회를 경유한 것들 중에도 그런 것이 있다. 오죽하면 필자 개인 자격으로 모 협회를 통해 시행한 안전진단 결과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안전진단 업무를 몇몇하게 시행했겠는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침묵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진이 잦으면 돌팔이이지만 고의로 거짓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범죄행위에 속한다.

옆집 공사 때문의 하자 사항이 염려되어 시행하는

구조 안전진단은 공사 착공 전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의 모든 구조물이 처음 준공시부터 완벽한 100점짜리가 아닌 바에야 가해자가 배넛병신격인 원초적 하자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같은 업무를 시행해 본 적도 있다. 필자가 종용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이렇게 사전에 마음을 열어 놓고 협의하면서, 공사중 피해가 불가피하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해 주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례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피해가 적어지는 방향으로의 사전 조치도 연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안전진단에 임하는 당사자도 화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어서 보람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 의뢰 주체는 가해 가능자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양자 공동이면 더욱 바람직하다. 때로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자 중에서 가해자가 선정 의뢰하기도 한다.

넷째, “학구파 또는 판사형”이다.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구구각색이다. 같은 그룹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하고 같은 이름의 건설회사에서 시공했는데 건물의 사용처는 또한 그룹내의 다른 제조회사이다. 같은 배를 탔다고 자처하는 사이인데도 공격적인 면에서는 양보할 수 없단다. 분명히 보가 깨져 나갔는데, 누가 봐도 위험한데, 잘못 했다는 사람은 없다.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애매한 화재사건을 “누전”때문이라고 하듯 “천재지변”이라고 하느님에게 뒤집어 씌울 구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필자에게 구조안전진단을 시켜서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구조물은 어느 한 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제는 그 잘못의 정도가 누구에게 몇 %나고 수치까지 적여달란다. 설계상(구조계산, 도면작성, 시방서), 시공상, 때로는 건축주의 번덕이나 횡포, 약속 불이행, 무리한 사용 등이다.

신이 아닌 이상 그것까지를 정량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구파 또는 판사형 의뢰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다. 이론이 정연하고 비장의 Last Card도 있다. 자칫 한 눈 팔다가는 망신당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숨겼던 옛날 자료를 불쑥 제시한다. 건축 구조물은 말이 없다. 하자의 원인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속에 감춰진 채 결과만 모습을 들어낸다. 그것도 두꺼운 옷을 입은 채... 옷을 벗겨야 진찰을 할텐데 그제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컴컴하고 먼지진 천장·속, 도저히 뜯어낼 수 없거나, 너무 값 비싼 마감재라서 손상할 수 없는 여건일 때도 있다. 입주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거나 돌아가는 공장 기계를 멈출 수 없는
사정일 때는 난감하다.

어쨌거나 이들 학구파 또는 판사형 의뢰자를 만났을
때는 다른 의뢰자의 경우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게 된다. 누가 감시하던 안하던 모든
안전진단 업무는 같은 정성을 들여야 할텐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아마도
학부형들이 참관한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구조안전진단 업무에서 대부분은 진단 초기에 원인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각종 진단 장비의 활용은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야 진단이 수월하고 또한 명확하다. 진단 결과가
애매모호하고 횡설수설하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진행중일 수도
있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도 있다.
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없을 때, 구조물이 여러차례 중,
개축되고 용도와 사용자가 여러번 바뀐 경우, 또는
제시된 도면과 시공된 구조물이 맞는 듯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틀릴 때 당황하게 만든다. 증언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하는 일도 허다하다. 공사
당시부터 편여했던 분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항상
도면대로, 감리자가 시키는 대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지난날 정치 바람을 타는 사건 처리를 맡았던
판·검사들의 고뇌가 이해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압력도 있다. 이들을 피해 나가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업무 자체 해결을 위한 연구보다 더 신경
쓰일 경우가 있다.

다섯째, “피해망상증”형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형”이다. 집이
기울어지거나, 주저 앉으면 문제가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자가 “변형”에는 둔감하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균열에만 관심이 많다.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의 원인 중에는 내력 부족에 의한 것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균열=위험”은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진단에 임하는 많은 기술자들이 Epoxy
Grouting을 만능 치료제로 알고 있는 듯 하다.

바람이 찢날해지면 처녀의 손등도 갈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웬만한 상처는 스스로 치유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낡은 세포가 “때”로 변하여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 새 세포로 대체된다. 그러나, 건물은 준공한
날부터 늙어 간다. 콘크리트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음을 알 것이다. 중성화가 큰 증상이다.

요즘 들어 갑자기 알칼리 반응 골재가 어머니 하면서
마치 콘크리트의 에이즈나 암처럼 퍼들어 내는데 그런
것을 들먹이지 않아도 역시 겁을 먹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청주에서 사람이 폐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하고 잠 못 이루며, 석축이나
옹벽이 당장 넘어질 것같은 감이 든다. 이런 분들의
비위 맞추기가 의외로 까다롭다. 하나에서 열까지
증명, 설명해야 한다. 마치 “암” 노이로제 걸린
환자 아닌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각종
검사를 일삼는 것과도 같다. 작고 깨끗한 불건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이런 의뢰자가 많다.

오늘은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보아온 의뢰자들의
습성같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짚어 보았다. 사실은
금년 초 건축사협회 구조시공분과 위원장직을 맡으라는
제안을 해 왔을 때 그 간에 이루어졌던 구조안전진단
프로젝트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에 부딪친
경우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그 동안 사협회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사업비 책정이 안된터라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안전진단 업무는 인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찾아 내서 보완하는
일이므로 병원에서 이행하는 건강진단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건축공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30여년
전, 그간의 각종 건축자재 파동과 인력난, 200만호
신도시 아파트의 무리한 시행 등을 감안할 때 안전상
염려되는 건축구조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구조물의 역사가 깊은 선진 제국은 물론
이웃 일본만 해도 현재 건물의 보수 보강 물량이 전체
건설공사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옳거나 좋거나 이 구질구질한 일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을 감안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감히 구조안전진단을 구조 업무의 예술이며
꽃이라고 비유한다. 구조계획에 능하고 계산 경험에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에도 일가견이 있는
종합적인 만능인이어야 명 진단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콘크리트 재료 역학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건물
구조계산에 조금 능통했다거나 무슨 진단 장비 몇개
갖고 있다고 덤벼들어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판정을
일삼는 일부 몰자각한 사이비 기술자들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피해보는 양민이 너무나 많다. 엉뚱한 진단을
해서 환자를 앓먹이고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하거나
재 명에 죽지 못하게 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과잉 치료가 문제이듯 별로 큰 탈 없을 법한 구조물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때우고 붙이고 고이는 것을 자주
본다. 제대로 맥을 짚어서 간단히 처방을 내려도 될
것을 가지고, 아스피린 두 서너 알로 치료될 병에 각종
항생제와 치료제를 투여하고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하느라 무슨 주사까지 놓는 의사같은 건축구조
기술자는 없는지...

도심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1)

The State and Controversial Point of Downtown Redevelopment

崔燦煥/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론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구조적인 탈바꿈을 하고 고도산업사회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게 된 것도 1970년대 이후의 일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기간동안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도시화과정에서 야기되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이를 수용하는 시설과 활동공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활동기능, 용도, 밀도 등 토지이용과 공간구조에서도 연쇄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도시는 하나의 복합적인 유기체로서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으며 도시의 생성,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자기생존의 본능적 변질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에서 무형의 활동기능은 극히 가변적인데 비해 그것을 담는 유형의 시설물과 형성된 공간구조는 고정되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도시공간의 효과적 이용의 결여와 시설물의 불량과 노후, 환경의 변화, 공공시설의 부족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각종도시문제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내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심재개발은 수요와 공급체계화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심재개발도 크게보면 도시개발의 한 유형이며 기존의 구 시가지나 시설물이 있는 특정지구로 새로운 용도기능을 부여하거나 밀도의 증가, 지구환경개선 등의 지구와 시설물의 양적, 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일상생활의 모든 물건은 필요에 따라 계속 손질하면서 사용해야 하는데, 도심재개발도 이와같은 이치를 따라 기간이 경과하면서 도시를 끊임없이 개수하고 손질하는 작업이며 도심재개발 수법은 지역적으로 보아 도시라는 공간에 한정된 독특한 것이라기 보다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도시란 공간을 무대로 통상 널리 쓰이고 있는 개발수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과정이 짧은 기간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신개발의 신드롬 속에서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우선 순위가 밀려서 무관심한 가운데 특정한 지역에 제한된 개발권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왔으며, 그 성과 또한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심재개발에 관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1976년 12월31일 도시재개발법제정 공포) 늦었으며, 그 이전에는 특정지구정비지구를 지정하여 지구내 건축물은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규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극히 소극적이었고 사업시행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도심재개발은 대구, 인천 등 일부 직할시에 재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예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고 재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기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어려운 사업시행을 해야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이 인근의 영세필지를 통합하여 사옥을 건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도심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도심재개발은 도시의 자기생존적 필수과정이라고 볼 때 이로 인하여 도시의 활동기능, 공간구조와 함께 도시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여기서는 도심재개발의 현황을 서울시 중심으로 고찰하고 몇개 사례지구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고 앞으로 도심재개발이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 추진현황

1) 지구지정

서울시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서울시 자료를 참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대상 구역은 38개 구역 424개 지구로 면적은 1,929,626㎡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도심지인 4대문안이 324개지구로 면적은 약 1,545,000㎡이고 마포로변이 100개지구로 389,000㎡정도이다.

마포로변이 김포공항-여의도 국회의사당-도심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귀빈로의 성격상 정책적인 관점에서 지역지정이 되고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영등포, 신촌, 청량리, 미아리, 연신내, 천호지역 등

부핵 내지는 부도심 등 배후 생활권의 규모가 크고 중심지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재개발 대상지역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진실적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지구(424개)중 완료된 지구는 전체지구의 23.8%(101)이고 시행중인 지구가 11.8%(50개) 미인가된 지구는 64.4%(273개)로서 미인가된 지구수가 전체의 과반을 넘고 있는 실정이며, 88년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대대적인 도시정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급속히 추진하였던 도심재개발이 아직까지 해야될 곳에 비해 완료된 지구가 낮은 비율임에 비추어 알 수 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후 사업시행 추진중인 지구는 22개지구이다.

(표 1) 추진실적

구 분	계	완 료	시 행 중	미 인 가
지구수(%)	424(100)	101(23.8)	50(11.8)	273(64.4)
면 적(%)	1929(100)	464(24.1)	248(12.9)	1217(63.1)

지구수 : 개소 면적 : 천㎡

그런데 앞으로 부도심지역으로 확대지정될 경우 대상지역은 엄청나게 확대 될 것이며, 해야할 도시기개발 사업도 크게 늘어갈 것이므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기능회복과 환경정비 등 본래의 사업목적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사업추진 현황

도심재개발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나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금까지 거의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어 왔다.

이는 도심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대기업의 토지확보로 비쳐진 것도 이와같은 이유에서이며,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이후 도시정비의 필요성에서 도심재개발을 급격히 추진했던 과정에서 불가피 했던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지만 재개발의 정책적 목표와 재개발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는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1990.5.8의 대기업체의 비업무용 취득금지 조치와 함께 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감소시킴으로서 (국세인 양도세 감면을 100%에서 50%로, 취득,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는 100%감면에서 감면혜택을 없앴다.)개발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여기에 덧붙여 제 3개발자의 지정요건을 강화시킴으로서 (종전에는 토지면적의 1/2소유자중에, 토지면적의 2/3이상의 추천자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해당되어야 하도록 개정됨)주민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이는 개발 추진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주는 강제적인 사업시행의 고삐를 늦추게 됨으로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게 되었으며 지구내 영세 토지주가 많아 인가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업시행 주도자가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이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시행중인 50개 지구중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지연이 9개지구, 자금부족인 경우 3개지구, 사업계획 변경지연이 5개지구, 지장물 미철거지구 2개지구, 기타 5개지구로 나타났다.

협의 지연의 원인으로는 시행자의 매입가격과 해당 토지주의 매도가격이 큰 차이가 있을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감정금액에 의한 관리처분시 지분율이 불만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의 경우는 인가후 시행자의 부도, 그리고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경우와 변경으로 인한 절차 진행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수도권정비심의 등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2-3년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다.

공공용 지상 지장물 미철거로 사업완료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지장물 소유자, 세입자가 보상가에 반발한 것 등이며 사업시행자가 복수일때 이해가 상충되는 등의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3. 대상지역의 설정

도심재개발 대상지역은 대부분 구시가지¹⁾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귀빈로로서의 특수한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지정된 마포로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북도심지역으로 되어있다.

도심재개발대상지역은 도심재개발이 지역개발, 정비에 우선적인 개발 수단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부핵, 부도심, 지구중심 중에서 선정한다.

또한 지역환경이 극히 악화되어 있거나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 도시공간체계 재편성과 지하철건설에 따른 교통편의성 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철 및 지하철역을 중심으로한 역세권개발과도 중요한 연계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 C.B.D의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재개발지역을 부핵 내지는 구도심지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간체계 형성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4. 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요건은 도시개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몇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하여 최저고도지구와 건축물의 바닥면적 기준 2/3가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된 경우 그리고 방화지구로서 건축물이 방화구조가 아닌(2/3이상) 경우 및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의 비율 등 법적으로 규정된 지구와 건축물의 상태정도에 따라 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소 토지로 인한 환경불량, 공공시설정비로 건축대지로

부적합한 경우 건축물이 과밀화되고 토지이용과 증진이 곤란한 경우와 인구, 산업 등의 과도한 집중으로 토지고도이용이 요청될 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 구역지정이 다분히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재개발의 필요성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면에 폭넓게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저 고도지구의 지정, 방화지구 등 비현실적 기준은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새롭게 손질되어야 하는데 최저고도지구는 미관지구에만 해당될 뿐이지 실제 서울도심지에서 최저고도지구 지정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객관적 기준이 있는 반면 주관적인 지정요건으로서 모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요구되며 평가 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구역사정의 당위성과 그 정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제시가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역의 규모가 지나치게 대규모(마포구역은 약 200,000㎡)에서 소규모(신문로 구역은 5,000㎡정도)까지 다양하며 평균규모는 약 52,000㎡를 기준으로 할 때 차이가 심할 뿐 아니라 구역의 형상도 다르다.

집단적을 지정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띠모양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지정된 구역이 있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역의 크기, 형상 등은 인접지와의 관련성, 사업의 파급효과, 계획적인 적합성, 사업의 성과 등 여러 측면에서 세심하게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획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구역지정과 함께 사업시행지구의 크기와 지구의 설정 등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기존권리자의 관계, 자금, 개발효과, 환경정비 등 여러측면에서 검토, 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인접지와의 연속성 그리고 조화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5. 사업시행절차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이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개발법 제 3조에 의하면 재개발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해당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이 시, 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도시재개발이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수법이라기 보다는 개발과 재개발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모든 도시나 지역에는 이와 같은 재개발 수법이 일반화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 개발이라는 하나의 도구로 모든 도시와 지역개발을 합리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대도시는 물론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개발이 있는 한 재개발이 필수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구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대상구역을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재개발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구역안에서 시행될 재개발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사업계획 결정후 시행인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거쳐 준공이 되어 사용점사와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이 완료된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와 건축허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도심재개발 업무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 함으로서 번거로운 절차를 다소 간소화 할 예정으로 있다.

서울시의 주요 도심재개발 사업을 분석해 본결과지구별 평균 사업시행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사업시행허가일까지 평균 4년5개월이 소요되었고, 시행허가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되어 구역 고시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평균 6년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적인 건설공사기간에 비해 사업시행허가일까지의 준비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장기간의 사업에 엄청난 자금 (1개지구당 사업비 82년도 215억원, 83년도 261억원, 84년도 201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재개발의 특수성이 활발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 기간의 단축, 자금지원 등이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6. 시행주체

재개발의 사업시행주체를 보면 사업시행이 완료된 지구와 시행중에 지구를 포함하여 보면 토지소유자 개인이 60%, 조합이 20%, 공공기관이 2%정도로서 토지소유자 단독시행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전까지 토지소유자 개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소유자 조합과 개발업자(주로 건설회사)가 함께 시행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합동재개발 방식을 전면매수방법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개발업자가 자금과 전문인력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상당히 진전된 유형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공익보다는 기업이익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생리상 개발과정에서 사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질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유자조합과 공공기관이 결합된 공공 합동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택지난과 그 위치의 입지성으로 볼때 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의 몫에 해당되는 분양시설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등의 공공합동개발이 효용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본다.

7. 공공용지 확보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용지 확보는 공공이 추구하는 핵심적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공공용지 확보실적을 보면 총대상면적 475,385㎡중에서 17%인 21,301㎡는 확보되었고, 미확보된 면적이 전체의 83%인 394,084㎡나 되었다. 그런데 공공용지 부담방향을 보면 지구별로 불평등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지나치게 과소하면 재개발의 효과가 반감되며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공공용지 부담방법과 그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까지는 대개 면적식으로 하여 지구내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주가 일정비율을 확보하여 이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은 초기 사업시행자는 선택성이 크고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택성이 적어지고 따라서 가장 어렵고 비싼 공공용지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처음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척되다가 일정단계를 넘어서면 지지부진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는 상호유기적인 연결체계를 가져야 효과적인데도 미시행지구가 부담하고 있는 일부구간의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조성된 기존 도로마저도 도로로써의 충분한 기능수행을 못하는 비효율성과 문제점이 있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별로 확보해야 할 공공용지를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하였으나, 이럴 경우 사업시행지구와 관련된 부분의 공공용지는 확보될 수 있지만 사업시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공공용지 확보가 사업승인의 선결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구매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구역전체의 토지매입가를 높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용지 확보방안은 도심재개발의 사업효과와 목적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사업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공공용지를 보상수용하고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련한 중개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사업자와 공공용지 예정지의 소유자 사이에 조정자로서 나섬으로써 권리금액의 공정한

평가와 함께 지가의 안정, 그리고 필요한 공공용지를 적절한 시기에 취득하고 공공용지 부담비율의 균형, 공공용지 권리자의 사업참여 알선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시의 경우 87년부터 조성된 도심재개발 기금을 사업시행인가후 공사를 추진중인 현장이나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지구 등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하여 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이고, 더 나아가 현재 사업시행 인가후 공사를 추진중인 지구 및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역의 해당지구 등에 재개발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무엇보다 재개발기금의 적절한 활용과 공공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개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현재 재개발 사업시행에 걸림돌의 하나인 공공용지 확보 방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 대안이 마련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8. 재개발사업의 성과

1) 도심기능의 변화

사업시행이 완료된 몇개 지구²⁾를 사례지구로 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전의 용도는 주거용이 41.6%, 업무용이 8.7%, 숙박 유흥업이 2.5%, 기타용도 24.0%였으나 사업시행후 주거용 15.1%, 업무용 50.3%, 상업용 11.1%, 기타용도가 23.5%로 변화되어 도심주거 기능은 줄어들고 업무용 기능은 늘어나 주거용도가 업무용도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 저층건축물은 대규모 고층건축물로 재개발 됨으로써 토지이용의 고도화, 공지의 통합, 공공용지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도심에서 주거기능이 줄어들어 도심공동화를 촉진하게 되며, 이로 인한 도시의 불균형 발전, 밀도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도심혼잡 가중, 공공시설수요증가 등 여러문제를 야기하며, 용도기능에서 도심이 업무, 상업중심으로 단순화 되어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주거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거복합용도를 장려하고 도심재개발이 용도기능측면에서 상업기능으로 변경되어가는 것을 억제하고 주거용도를 포함한 도심에서 필요한 다양한 용도기능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심공간의 변화

사례지구의 도심재개발 사업에 의한 도심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지구당 평균 건축연면적은 시행전 약 2,000㎡이던 것이 사업시행후 22,800㎡로 약 11.4배 증가하였으나 건폐율은 47.9%에서 46.7%로 비슷하고 용적률은 시행전 56%에서 시행후 486%로 약 8.6배 증가하였으며, 평균층수도 시행전 2층 정도에서 시행후 지상 15층 지하 3층으로 높아졌다.

이를 토대로 고찰해 보면 건축연면적, 용적률, 층수 등은 많이 늘었거나 고밀화된 반면 건폐율, 공지면적

등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정된 지역에 필지를 통합하여 대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위치변경에 따른 공지의 통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개발단위별로 공지통합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으나, 단일용도 위주로 도심기능이 획일화 내지는 단순화된다는 점에서 도심재개발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공공용지의 비율은 구역지정당시 13.4%이었던 것이 사업후에는 27.8%로 약 2배 증가되고 있으나 마포구역은 공공용지 부담률이 최대 42%인 반면 소공구역에서는 최저 6.7%에 불과하는 등 구역 및 지구별로 공공용지 부담율에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용지 부담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부담률이 낮아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 지구가 지닌 여건이 다른 점을 인정하더라도 공공이 관찰해야 하는 공공용지는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이를 취득하고 각 시행지구별로 적절히 분담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9. 도심재개발의 문제점과 방향

도심재개발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시정비의 일반적 수법의 하나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도심지역에만 편중되어 토지의 고도이용과 고층화, 업무상업지역 중심의 용도기능 등으로 인하여 도시기능 배치에서 다핵화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청량리, 영등포 등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부도심과 신촌, 연신내, 미아리, 면목동 등 지역생활권 중심지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비교적 신시가지인 잠실, 영동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수립하고 재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순결하여 각 사업 시행 지구별로 재개발 사업시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그 지구가 지닌 개발 잠재력과 도시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도심기능과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시행지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재 구역지정 현황을 보더라도 사업추진이 미진한 실정이며 새로운 구역지정과 함께 기지정된 구역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간자율 참여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전문가, 공무원,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종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도심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으나 계속적인 사업시행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권장하는 동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개발에 거의 의존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며 아울러 재개발의 공공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재개발 소유자 조합과 공공기관과의 합동재개발 방법은 재개발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재개발의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제도, 행동절차 등의 개선과 간소화 등 여건조성을 하면서 경제적, 기술적인 뒷받침을 한다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도시계획세의 10%를 재개발 기금으로 확보하여 조성된 자금을 재개발 사업의 촉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활용함으로써 한층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0. 결론

도심재개발은 단순한 재건축과는 여러면에서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도심기능의 고도화, 고밀화, 그리고 환경정비의 차원을 넘어서 편리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차원 높게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도시재개발은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들의 생활속에 무르익아 살아 있는 도시의 개발 및 정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안

2) 도심재개발 기업 및 제도적인 개선책에 관한 연구 p.15, 1986년 7. 서울특별시

3) 사해지구 : 장교 14, 도림 6.7.14, 반도특가구한일분구, 공평 5, 마포 1-10, 1-16, 1-5, 을지로 2-16, 2-17지구

르 꼬르뷔지에와 建築創造의 力學¹⁾ (1)

Le Corbusier and The Mechanism of Creation in the Architectural Works

李英哲 / 인하대학교 강사

by Lee Young-Chul

1. 意識의 문제

머릿말

순수예술활동과 마찬가지로 “조형예술로서의 건축행위” 역시 조형성(구조나 기능 등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된 상태에서의 부가적 개념으로의 조형성)이라는 명확하고 외재적인 표상행위를 위한 기법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축행위 또한 건축가 자신의 어떤 지적감수성의 표현을 위한 의지적 행위이며, 건축작품은 건축가의 어떤 정신의 반영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조형활동을 통하여 건축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표현체계와 그 체계를 구축하는 초적인 정신적 세계의 가치를 간파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건축비평의 세계에서 표출된 건축조형이라는 무대의 뒷면에 감춰진 개개의 건축가 고유의 지적감수성이나 정신적 차원을 왜소시키면서 집단적 의지의 개념으로서의 “예술의지(Kunstwollen)”²⁾나 “시대정신(Zeitgeist)”³⁾ 속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건축행위는 한 사회의 집단적인 예술의지나 시대정신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가 개인의 지적 감수성의 표현을 위한 의지이다. 말하자면, 건축가의 내부에서 분출하는 깊은 감수성은 그의 지적능력 속에서 순화되어 지적감수성으로 융해되며, 그러한 지적감수성이 정신성 속에서 승화되어 조형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투영될 때 건축은 예술적 차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처럼 건축작품은 단순히 건축가의 조형기법만의 산물이 아니라 건축가 개개인의 고유한 정신의 결과이며, 건축가 자신의 정신상의 표명행위이다.

건축행위와 정신적 차원의 관계라는 이 문제에 대한 재인식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하이테크·해체주의 등 다양한 ism이라는 유행의 굴레에서 방황하는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는 건축형식이라는 외재적상황에서의 방황은 건축가 자신들의 내적인 혼돈이나 어떠한 근원적인 것에 대한 무장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건축과 정신의 관계는 그리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리라. 단지 잠시나마 잊었을 뿐이라 하겠다. “인간이 신의 모습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이 항상 보다 더 고도의 인간정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면 건축은 바로 그러한 고도의 인간정신의 산물이다.”라고 말한 Wright의 Testament의 한 구절을 되새겨 보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High tech의 원류인 Mies마저 “건축은 더할나위 없는 정신적 투쟁의 장소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溫故而知新을 되새겨보면!

그것은 “나는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꼬르뷔³⁾였다면 어떻게 계획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나의 모든 작품들은 그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가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구에게 나의 작품을 바칠 수 있을까?”라는 Louis Kahn의 말로서 충분하리라.

“예술작품의 근원은 예술가이며, 예술가의 근원은



르 꼬르뷔지에의 자화상 (사진1)

AUTO PORTRAIT

1) 본 考는 필자의 프랑스 Grenoble 건축학교의 최종 학위과정인 CEAA의 “건축歷史연구작전공”학위 논문인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가인 르 꼬르뷔지에 (Le Corbusier ou l'Architecte comme oeuvre d'art)” (1992.7)에서 발췌, 보충 및 재구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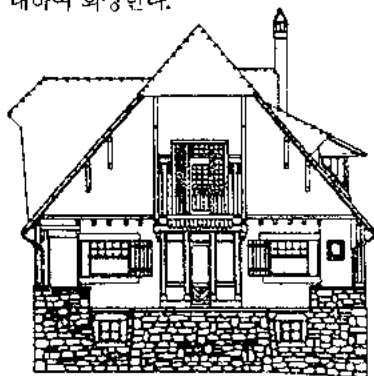
2) “예술의지” 또는 “형태의지”라고도 불리우는 Kunstwollen은 A.Rieg(1858-1905)이 Stilfragen(1893)에서 집단적사상과 예술양식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 예술가의 개인적 예술의지의 차원으로서의 “예술의지”의 개념을 Panofsky도 그의 小考인 “Le concept du Kunstwollen”(1920)에서 언급하고 있다.

3) Corbu는 Le Corbusier(1887-1965)의 애칭

예술작품이다”⁴⁾라고 말하듯이, 예술작품의 창작이 불가능한 예술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예술창조의 원천인 예술가의 사상이나 그리고 또한 예술가속에 내재하는 “어떠한 창조적잠재력”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본 책은 지금까지 많은 건축비평가들이 간과해왔던 “창조적잠재력”에 대한 試論으로서 건축의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며, “왜”, 그리고 “어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Le Corbusier의 내재적인 차원에서부터 출발 再考해보자는 “비평으로서의 역사”⁵⁾의 한 작업이다.

자기비평

“17세에 난 편견이 없는 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으며, 그는 나에게 자신의 주택건축을 의뢰하였다. 18~19세 사이에 난 그 주택을 정성들여 건축하였다. 감동적이었다! 아마도 이 주택(사진2)은 끔찍하였겠지만...”⁶⁾ 이렇게 Le Corbusier는 자신의 첫작품에 대하여 회상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첫 작품인
FALLET주택 (1905-1908) (사진2)

“감동적이었다!” 건축의 목적이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건축가에 있어서의 크나큰 감동은 창작행위 그 자체이라. 그러므로 Le Corbusier에게 있어서 건축창조는 “이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감수성의 실상”⁷⁾이라고 말한다. 즉, 이성이나 지적인 측면은 건축을 예술의 영역으로까지의 승화된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데 필연적인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할 뿐 창조의 근원은 우선 깊은 감수성에서 나오는 감동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깊은 감수성에서 나오는 “깊은감동, 그것은 의식”⁸⁾의 차원으로 수렴되며, “정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식이 말하는 것”⁹⁾이라는 H. BERGSON의 말처럼 의식은 또다시 우리의 정신세계의 형성으로 연결된다. 의식의 적극적인 상태는 “자각”이며, 이는 인간이 물리적인 외부세계의 현상과 직면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상태이다.

첫 작품을 완성하였다는 깊은 감동과 함께 “끔찍하였겠지만”이라는 고백이 건축행위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Le Corbusier의 진지한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

“난 이미 현인들의 경고에 거역하는 모험을 감수하였다... 건축현장에서 난 벽돌 하나를 손에 들고 그의 무게를 어렵게 보았다. 그의 무게는 날 겁에 질리게 하였고, 난 그자리에서 화석처럼 얼어 붙었다.”¹¹⁾ 깊은 감동과 교차되는 의식의 차원에서의 두려움! 그것은, 건축에 관한 충분한 교육적 경력도 없이 당돌하게 “Sisyph의 쉼스러운 행위”¹²⁾를 모방하였다는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자책이었으리라. Le Corbusier가 화석화 되었던 것은 벽돌의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벽돌의 상징적인 무게 때문이었으리라. 여기서의 “상징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벽돌이라는 건축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Le Corbusier가 자문하기 시작하는 “건축의 진실이란 개념”이라 하겠다. 이렇게 Le Corbusier는 건축에 대하여 자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단계는 건축가로서의 “자기비평(Autorcritique)”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하자면, 분석·재해석·구성·수정·재구성이란 단계를 요하는 건축창조의 과정에서 비평의식 또는 자기비평의식이란 체거름은 중요한 행위라 하겠다.

당연히 이러한 자기비평의식은 평생동안 Le Corbusier의 창조적 잠재력과 함께 자리한다:

“매일, 난 바보같은 영혼속에서 잠을 깬다. 그러나 저녁이면 난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난 내 자신이 보다 더 바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¹³⁾

일종의 역설! 그러나 의미심장한 어구가 아닐 수 없다. 항상 구상하고, 새로운 조형언어를 찾고, 그리고 구상해도 참된 창작행위라는 깊은 심연의 한계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 절망하고 그리고 또다시 노력하는 자신과 오히려 그러한 무한성 때문에 추구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Le Corbusier의 이러한 사고가 그의 창작행위상에서의 생명력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완벽으로 향하는 길은 새로움을 향한 끊임없는 정신적인 투쟁의 과정속에 연속이지 않을까? Le Corbusier는 자기를 추종하는 後學들에게 자신의 사상마저도 부정하라고 선언한다:

“...학파들을 타파하라(Corbu의 학파는 물론 Vignole의 고전학파도—제발 간청합니다!...)”¹⁴⁾ 이처럼 창작의 행위란 자기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역이라는 어휘속에 요약되지 않을까?

4) M.Heidegger, “L'origine de l'oeuvre d'art” in “Chemins qui ne mènent nulle part”, Gallimard, Paris, 1962(1949), p. 13.

5) “비평으로서의 역사”란 개념에 관해선, Manfredo Tafuri, “History of World Architecture/Modern Architecture”, Harry N. Abrams, New York, 1979, 의 Nervi의 서문을 참조.

6) Le Corbusier, “L'oeuvre complete” 1910-1929, p. 10. Villa Fallet는 1905년에 계획되었고, 1906-1907년 사이에 Rene Chapallaz와 함께 건설하였다.

7) “건축은, 다음에 지지않은 재료로서, 감동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Cres et Cie, Paris, 1923, p. 121.

8) Le Corbusier, “Unite” in “L'Architecture d'Aujourd'hui” Special “Le Corbusier”, 1948, p. 55.

9) Ibid, p. 55.

10) H. Bergson, “L'Energie Spirituelle”, Quadrige/PUF, Paris, 1990(1919), p. 4.

11) Villa Fallet에 대한 77세 때의 회상. Le Corbusier, “Mise au Point”, Archigraphie, Geneve, 1966, pp. 15-17.

12) 산 정상으로 끊임없이 돌을 굴러 올리도록 숙명지워진 신화상의 Sisyphus는 Acrocorinthe를 건설한 건축가이기도 하다.

13) Le Corbusier의 어록중에서.

14) 1936년 Johannesburg의 현대건축가모임에 보낸 Le Corbusier의 편지.

비평의식

“(창조의)열쇠는 주시하는 것이다...

주시하고/관찰하고/또 다시

보고/상상하고/구상하고/창조한다.” 이렇게 Le Corbusier는 건축창조의 과정을 역설한다. 창조의 기본은 우선 보고, 관찰하는 것이며, 이는 시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생기발랄하고, 예리한 시선은 우리의 외식이자 정신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외부의 현상이나 자신의 내면으로 회의적이 아닌 “긍정적인 순수부정성”의 관점에서 투사하는 살아있는 시선, 그것은 항상 진실의 의미를 찾는 비평의 시각이며, 여기에서 비평의식은 싹트기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로써의 비평의식은 이미 창조성의 일부이다.

Villa Fallet의 건설이후, 지적경험의 필연성에 대한 자각속에서 Le Corbusier는 건축수업을 위한 스승을 찾아서 유럽을 방황한다. 그러나, “진실된 건축”을 배우고자 하는 그의 예리한 시각속에서는, 당시의 대가들의 작품마저도 그를 실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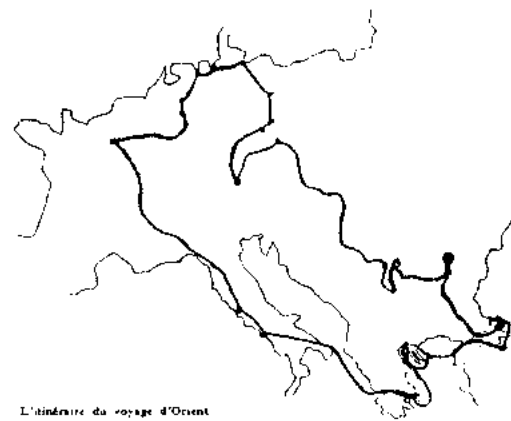
“...어쨌든 모두가 아주 흥미롭군요. 많은 진실성이 내포된 듯 하지만, 대단한 뻔뻔스러움 뿐이며, 창조성들은 전혀 없어요... 아카데미즘의 지도자인 (Otto)Wagner, 그의 차가운 양식이나, 화려한 결백성은 속이 빈 결만 빈드르한 상점 같답니다...”¹⁵⁾

Le Corbusier의 비평적 시각에선 당시 혁신적인 양식인 오스트리아의 Jugendstil마저도 현대건축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허구의 건축으로 보였다. 허구/진실의 변증법 관계에서는 베를린의 대가도 그에겐 마찬가지로:

“...Behrens 사무실에서도 순수한 건축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저 외관에만 신경 쓴답니다. 구조에만 신경쓰는 이단자들 천지고요. 현대건축에 관하여는 무관심 하답니다... 가중스러운 분위기뿐인 이곳에서의 내 생활이 혐오스럽답니다. 바보같은 내 생활이군요...”¹⁶⁾

Behrens는 철골이란 재료사용으로서 당시에 혁신적인 건축가였으며, Mies나 Gropius는 Behrens를 현대적인 건축감각의 소유자로 인정하였으나 Le Corbusier는 그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그것은 현대적인 재료 사용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Behrens의 건축에서 현대적인 맥락이 결핍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의 진실한 건축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재료의 구조적인 표현이나 인간을 현혹시키는 외관의 형식적인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구조·형태 및 공간의 통합된 건축을 통하여 당대의 감수성을 반영하며 아울러 건축가 개인의 어떤 “내재적인 의미”를 표출하는 건축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역시, 한편으로는 그가 존경하는, Perret의 사무실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3년간이라는 현대건축의 스승을 찾기위한 긴방황과, 그리고 그 방황중에 지속 하였던 건축지식의 축적을



“동방여행”(1911년)의
여정표 (사진3)

L'itinéraire du voyage d'Orient

위한 도서관에서의 독학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1911년 Le Corbusier는 동방여행(Le Voyage d'Orient)이라는 새로운 유랑에 들어간다. (사진3) 목적은, 시간과 공간의 생생한 증인들을 통하여, 건축의 진실에 대한 확인과 배움이었다. 여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때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수성과 의식의 지평을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29살이라는 젊은 Le Corbusier에게 가장 중요한 여행장비는 “신선한 감동들을 간직하기 위한 감동하는 능력과 생기있고 예리한 시각”¹⁷⁾과 조형적인 감흥을 기록할 수 있는 스케치북이었다. (사진4)

A Athènes, vu par son ami Auguste Klipstein.



“동방여행”중 아테네에서
그의 친구 클립스타인이
스케치한 르 코르뷔지에 (사진4)

“눈(眼)이 명확하게 볼 때 비로소 정신이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그의 말처럼 예술가의 비평의 시각은 그의 작가정신을 형성하는 원천이 아닐까? 진실된美에 동요될 수 있는 순수한 감수성과 거트된美를 질책할 수 있는 비평적 시각을 동반한 이 여행에서 그는 그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그의 영혼과 정신속에 축적하며 추후의 건축창조행위에 반영한다.

동방/서구의 비교개념에서부터 시작, 민속예술품/공업예술품; 토속문화/현대문명; 聖스러운·범속함, 이라는 변증법적 접근으로 일관되는 그의 “동방여행”은 창조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술적 도덕성이란 새로운 문제를 그에게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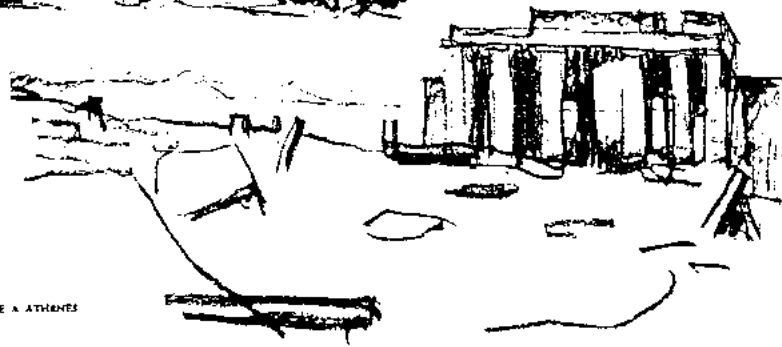
“친구여 소위 문명화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 유럽인들이 더 야만인이지 않을까.”¹⁸⁾

15) Le Corbusier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1911.2.26.일에 고향의 예술학교사절의 은사인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

16) 베를린에서 1911.1.4.일에 은사인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

17) Le Corbusier, “Le Voyage d'Orient”, Parenthese, 1966, p.9

18) Ibid, p.22.



“동방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그리스 아테네의 Acropolis(아크로폴리스)에서 한 르 꼬르뷔지에의 스케치 (사진5)

“현대라는 장벽에서 완전히 실패한 당신들 서구인들은 영혼없는 기술자들의 속물주의에 상처받은 사람들로서 선각자로서의 우선권마저 박탈되었는가!”¹⁹⁾

Le Corbusier의 통찰속에서의 야만은 단순히 문명의 차원에서의 우월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의 정신이 결핍되고 기술성에만 의존된 산업사회의 산물들이야말로 가련한 문명화된 야만이라 보았다.

결국, “동방여행”의 마지막 여정인 Acropolis의 Parthenon(사진5)을 보고난 후에 Le Corbusier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왜 우리의 진보는 추악하기만 할까?”

예술적인 미의 개념에 대한 한계가 가능할까? 미의 창조는 문명화된 예술가의 특권이라 할 수 있을까? 문명화되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깊은 예술적인 정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미를 발산하는 예술작품의 창조가 불가능할까? 匠人에 의한 문화적 차원에서의 미적가치와 예술가에 의한 문명적 차원에서의 미적가치 사이에서 어떠한 경계의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여도, 문화적인 차원의 예술이 때로는 문명적차원의 예술작품들 속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미적이고 윤리적인 감각과 그들만의 자율적이고도 평온한 조형언어로써 우리에게 느끼게하는 감동의 심오한 내재적 가치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문명이란 단어와 문화란 단어는 동의어라 할 수 없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문명이 기술성의 차원이라면 문화는 오히려 정신성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942년 파리의 국립미술학교의 건축과 학생들과의 대답에서 Le Corbusier는 “건축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상의 그 어떤 시대나 사회도 물질적인 장치와 정신적인 형태의 근원적인 자연적인 요소들 사이의 연결이 마비되거나 분쇄되어, 현재의 우리 사회 만큼 막막하지는 않았으리라. 목적과 수단사이의 접촉의 단절, 그리고 행동방식의 부재”라고 당시의 건축사회의 모순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즉 건축창조의 외적인 형식적 차원과 내재적인 도덕적 차원사이의 괴리를 Le Corbusier는 젊은 학생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Le Corbusier의 건축개념으로서의 내적인

19) Ibid. p.40.

충실성과 유착되지 않는 건축외부만의 형식적인 기교에 의한 조형성은 거짓이라 보았던 것이다.

진실한 건축, 그리고 건축행위에 대한 진실에 대한 끝없는 물음과 그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Le Corbusier의 끝없는 노력 및 헌신은 평생을 통하여 그의 작품에 새로운 신선감으로 반영되며 그의 건축에 대한 작업의식 또한 단순한 작업인의 차원을 넘어선 건축인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작가정신

“오늘로서 Vienne이나 Darmstadt 같은 독일의 두학파에 버금가는 성공을 해보겠다는 저의 초라하고 유치한 꿈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건축의 진실 그 자체를 위하여 투쟁하렵니다. 진실이란 어휘가 저를 박해할 것입니다—틀림없어요. 저의 현재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직면이나 준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대중들 속에서 환호를 덜 받을수도... 그러나 저는, 저는—진지하고—그리고 창조하는 삶 속에서 행복할 것입니다.”²⁰⁾ 이렇게 건축가로서의 사회적인 성공이나 건축에 대한 조급한 완성이 목표가 아닌 건축의 진실을 구축해 보겠다는 순수한 이상과 함께 젊은 Le Corbusier는 건축가의 길을 시작하였다.

“존재 그 자체는 끊임없는 고통이다... 한편으로, 순수한 표출속에서 또는 예술작품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온갖 고통을 초월하려는 행위이다.”²¹⁾라고 Schopenhauer는 말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고통에 숙명지워 졌다면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당연한 인간적인 행동이라 하겠다. 물론 고통으로 간주되는 차원도 인간의 정신성에 따라 서로 다르며 그를 극복하려는 방법도 또한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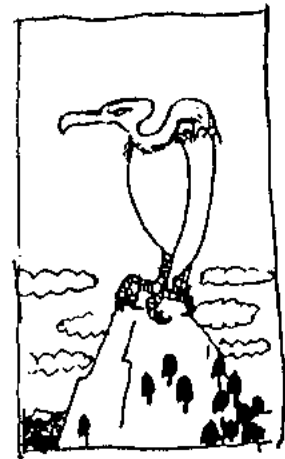
Le Corbusier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차원의 고통이었다. 말하자면, 물질이나 경제적인 결핍에서 오는 고통은 그에게는 그의 의지력으로 극복할만한 것이었다 말할 수 있겠다. 1908년의 초기의 파리생활 중, 극심한 재정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착은 정신적인 양식의 궁핍에 더욱 피로워 하였다.

“제 자신의 의지이상의 더욱 높은 이상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 거역하는 자신의 기술로 인한 고통과 환멸의 나날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사고 능력들이 날 배신하고 있습니다.”²²⁾

이처럼 그의 고통은 자신의 건축지식의 결핍에서 극복하려는 의지와 건축의 이상적 개념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이러한 고통이 Schopenhauer의 개념처럼 그를 더욱 건축의 이상에 대한 지향으로 추진시키기도 하였지만(사진6), 또한 그러한 고통을 그의 Nietzsche적 초인적인 정신적 의지와 그 자신의 도덕의식이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르 코르뷔지에가 PARIS 생활중 자기 부모에게 보낸 (1909년) 크리스마스 카드: 카드의 내용 → 생활의 가난이 인간을 만든다. 가난에 당당하자. 위대한 곤돌의 영혼속에 자신을 불태우며 살자. (사진6)

사진 6



La misère de vivre
fait homme!
et le Dérain de la misère
de vivre
Incarnée en
l'âme de
GRAND CONDOR

신념으로 극복해 나아갔다.

“지고한 개념을 향하여 앞으로!”²³⁾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통은 건축가로서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 그를 따라 다닌다. 이러한 고통에 의한 개인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의 수행을 위하여 그의 초인적인 의지와 엄격한 규율로써 극복한 과정을 1932.6.30자의 그의 일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난 길 잃은 강아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강철과 같은 규율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있는 내 자신도 11개월이 지나자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그러나 나는 예술과 나의 임무라는 정열이 있다... 난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정상적인 생활을 모두 물어버렸다. 나의 생활은 비정상적이지만, 그러나 건전하고 창조적이다.”

비정상적인 생활 그것은 “방화자의 형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이상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었다. 순수주의라는 건축개념의 “전도사”로서의 그의 인생은 때때로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기도 하였다. 그를 시기하는 비평가들은 그를 영혼없는 기술자로서 회화와 건축을 동시에 하는 이단자로서 그리고 그를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로 몰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집착은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는 열정 하나였다.

“우리는 자기자신과 자신의 의식을 위하여 고고한 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다른 가능성으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재물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나의 전 인생은

20) Le Corbusier가 1908.11.22일에 은사인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

21) Schopenhauer, "Le Monde comme Volonté et comme Representation" PUF, Paris 1958(1951), p. 311.

22) 1908.7.3일에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

23) 1908.11.25일에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의 이 구절에서, Nietzsche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애독자였던, Le Corbusier의 니체적인 어조를 느낄 수 있다.

창조행위에만 집착하였다. 그것이 내 자신의 선택이었다.”²⁴⁾

그가 선택했던 인간적인 행복은 조형적인 표현의 의지의 기쁨과, 인간을 행복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깊은 자애심없이 어떻게 건축을 창조할 수 있을까?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이기적인 의지의 인간들이 인간성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지 않은가?

Le Corbusier는 건축작품의 “창조는 개인적 정열의 진지한 거울”²⁵⁾이라고 말한다. 창조라는, 때로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건축가에게 의지라든가 열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연 건축가는 “행위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상처럼 전달 가능한 수단은 없다”라는 그의 “정신적인 유연장”에서 Le Corbusier는 다음과 같이 그의 창조적인 인생을 고백하고 있다.

“77세의 지금, 나의 정신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겸손, 완벽성 및 정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예술창조의 오직 유일한 조건, 그것은 규칙성, 겸손, 지속성 및 불굴의 인내이다.”²⁶⁾

근원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행위 그 자체로 볼 때, “사고하다”라든지 “의도하다”라는 그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의 가치부여에 커다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사고의 인간이자 무엇보다도 행위의 인간이었던 Le Corbusier에게 있어서의 “행하다”라는 어휘는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던 좌우명이었다: “100세가 되서던 오후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님께선: Ce que tu fais, fais-le! 라고 항상 말씀하셨다.”²⁷⁾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을 시작했으면, 철저히 그 일에 자신을 바치며,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그대로 행동하되 하고자 하는 갈망이나 신념에 따라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뜻이다. 이러한 불구의 투지와 그의 정열은 “일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숨을 쉬는 것이다”²⁸⁾라고까지 말한다.

인간에게 완벽은 이미 가능할 수 없다고 해도 예술창조의 길은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이며, Le Corbusier는 그러한 길을 평생 추구해왔던 “완벽주의자”였다. 어느날 그는 친구인 조각가, Savina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친구여, 예술가의 기쁨은 무릎에 힘이 빠지고, 자치고, 사기가 꺾여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²⁹⁾ Le Corbusier, 그는 “건축예술창조”라는 전장에서의 한 “투사”이었으며, 또한 “기술과 정신을 지닌 투사”였다.

예술창조의 행위는 외부의 현상 및 자기 자신과 대적해야 하는 고독한 투쟁이다. 건축창조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Le Corbusier에 있어서의

건축가란 천직은 현실적으로는 그에게 배운망덕한 직업이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점은 그에게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건축가라는 직업, 그 자체를 Le Corbusier는 Nietzsche의 “짜라투스트라”³⁰⁾ 이렇게 말했다”에서 등장하는 곡예사로 비유한다:

곡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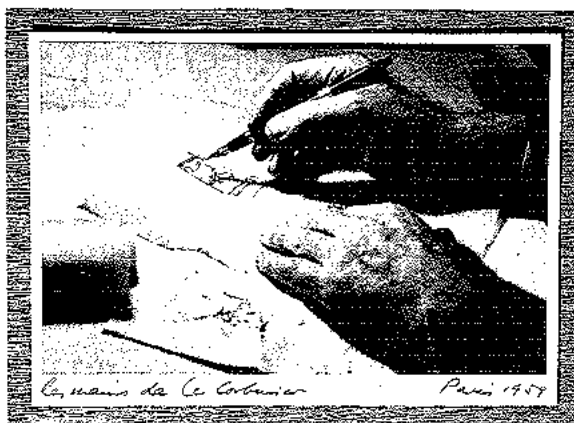
“곡예사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바쳐 하나의 행위에 헌신한다
끝없는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그행위 속에서,
극한의, 난해한 동작을
엄격성과, 정확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그는 비범한 동작을 연출한다...그러다가
목이 부러지고, 뼈가 바스러지며, 전신이 박살나서
공연장을 떠난다.
그 누구도 그를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 누구도 그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어떤 비범한 세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줄타기의 세계에 입문하였다.
결과는: 타인들은 이렇게 자문한다;
왜 그러한 위험한 것을 하지, 건방지게도, 그는
비정상적이야; 우리를 무섭게 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우리를 귀찮게 군다니까!

Le Corbusier

Le Corbusier에게 있어서의 건축행위는 더할나위 없는 정신적 행위이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한 그것은:

“건축은 정신의 상태이지, 직업이 아니다.”³⁰⁾

예술작품은 단지 숙련된 손이나 기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사랑과 정신의 손(사진 7)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나라는 개념이 Le Corbusier의 전 생애를 통한 건축철학이었다.



르 코르 뷔지에의
사랑과 정신의 손
(사진 7)

24) Le Corbusier, "Mis au Point", Archigraphie/Geneve, 1966, p. 15.

25) Le Corbusier, "Art decoratif d'aujourd'hui", Vincent, Paris, 1925, p. 120.

26) Le Corbusier, "Oeuvre complete-les dernieres Oeuvres", p. 168.

27) 1960.9.5. 회 Le Corbusier의 개인기록.

28)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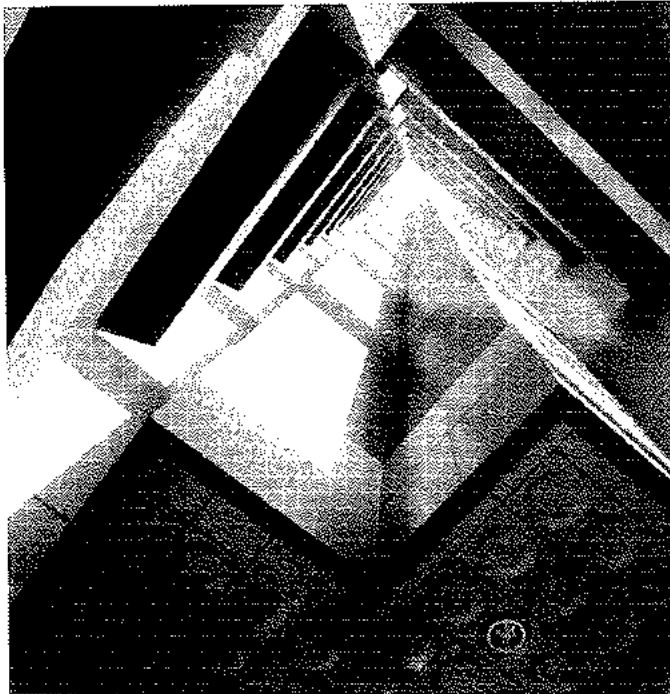
29) Le Corbusier가 1950.12.15일에 Savina에게 보낸 편지.

30) 1936년, Johannesburg의 현대건축가모임에 보낸 편지.

품질관리 그 문제점과 대책 (1)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It's Controversial Point and Countermeasure

李仲浩/청영종합건설 전무이사
by Yi, Chung-Ho



1. 서론

근래 품질관리라는 용어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그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품질관리는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를 수행함으로써 잇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가? 등등 의문점이 제기된다.

필자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고 정의하기에는 너무 천학하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감히 소고를 발표한다.

먼저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석고보드 제작회사인 USG(United State Gypsum Company)에서 발간한 "gypsum construction handbook"을 간단히 소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전역에 40개가 넘는 공장에서 주 자재인 석고보드와 부자재인 구조재 그리고 마감재를 생산하고 있다.

석고보드의 종류와 사용처 등은 물론이지만 부자재인 구조재(Frame; Stud, Furring, Runner, Channel 등)와 마감재(Compound, Tape, Sealant, Bond)를 생산함으로써 석고보드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제품을 일괄적으

로 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제품들은 자체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국가기관의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후 시판된다.

이러한 생산방법은 제품과 시공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품질시공에 가장 좋은 시공방법중의 하나이다.

다시말하면 석고보드에는 하자가 없는데 Stud나 Channel때문에 품질시공이 어렵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이다.

둘째, 자사제품의 장점(Advantage)은 물론 이보다 더 많은 단점이나 주의할 점(Limitation)을 낱알이 공개한다. 이는 제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단점을 짚쳐서 파헤쳐서 현장보관이나 시공시 이를 보완함으로써 품질시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사 제품의 단점은 덮어두고 장점만 선전하는 자재 생산자에게는 상도덕을 떠나서 품질관리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철저한 시공방법이다.

제품의 종류에 따른 시공순서, 시공위치, 부자재의 선택, 부자재의 종류, 적용범위 등 시공방법과 시공시 규제사항들이 기록돼있다.

예를들면, 석고보드를 Screw로 접착할 때 가끔 실패할 때가 있다. 이때는 Screw를 박다 실패한 자점으로 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다시 박아야 한다는 등의 시공방법까지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시공방법은 현장에서 품질관리의 핵심이 되는 시공도(Shop Drawing)의 기준이 된다.

넷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각종시험(Test)이다.

시험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고 국가가 이를 보증한다. 압축강도, 인장강도, 제한된 단위중량 등 물리적인 성질은 물론이지만 투수시험(Pcm), 소음(NRC), 차음(STC), 내화성(Fire Code) 등과 부자재에 대한 강도, 내부식성, 접착성, 탄성 등 수많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30여가지가 넘는 ASTM과 연방시방서에 합격해서 그 제품을 시판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품질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3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자재(Materials)이고 둘째는 시공도(Shop Drawing)이며, 셋째는 시험(Test)이다. 이것이 곧 품질관리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란 무엇인가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설업의 품질관리는 제조업의 그것에 비해서 보다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고 Project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어서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해서 두가지 도서가 계약서에 첨부된다. 도면과 시방서가 그것이다.

도면은 보통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로 부르고 있지만 공사의 기본이 되는 것은 계약도면(Control Drawing)이다. 계약도면에서 품질제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상세도(Detailed Drawing)이다.

부분부분마다 요소요소마다 정확하고 세밀한 상세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계약도면과 그 안에 마련된 상세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공도이다. 시공도야말로 시공의 기준이고 감독의 지침이며 자재, 시험과 더불어 품질관리의 3대 핵이다. 정확한 시공도의 작성과 이에따른 시공은 분쟁의 소지를 막아주고 하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품질관리의 최선의 방법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하자때문에 소비됐으며, 이로인한 시공관계자의 신망이 얼마나 추락됐는가를 생각하면 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건설업무가 완벽한 시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완벽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방법이 품질관리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중요하고 품질면에서 만병통치약같은 시공도가 왜 우리의 현장에서 사용되기를 주저했는가?

시공도는 시공자나 시공자측에서 작성하고 그것을 건축주(발주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시공도는 누구 개인의 뜻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하며, 그 규정은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가 주체이다.

허가받은 시공도는 현장에서 시공자와 감독자 공히 업무수행의 지침서가 된다.

또 다른 하나가 시방서이다.

시방서에는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와 공사시방서(Project Spec), 그리고 참조시방서(Guide Spec) 등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방서는 말할나위 없이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이다.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표준이 되는 시방서이다.

공사시방서는 해당 공사에만 적용되는 시방서로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것도 있고 표준시방서를 변경이나 추가 등 보완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공사마다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작성하는 것이 품질시공을 이룰 수 있다.

참조시방서는 표준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해당 공종이 명기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자재를 구득할 수 없을 때 혹은 시공방법이나 현장조건이 도면이나 기 제정된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유사한 공종이나 동등한 다른 프로젝트의 시방서를 참고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도 건축주나 그의 대리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시방서이기때 우리는 항상 시방서와

더불어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표준시방서에 민족할 수 없을 때가 비일비재 하다.

필자의 천학과 자료부족이겠지만 현재의 시방서로 품질시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표준시방서로서는 품질관리의 주요사항인 시공도를 작성할 지침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의 현장에서 시공도의 사용이 주저된 이유를 필자는 여기에서 찾는다.

대부분의 공사시방서가 표준시방서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편으로는 공사시방서 또한 품질생산의 지침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연 없다는 뜻은 아니다.

피부에 와닿는 품질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목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 실례는 다음에 논의하겠지만 품질관리의 지침이 결여된 상황에서 품질시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다시말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라. 부실공사를 하지말라, 감독을 철저히 하라, 시공자 스스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라는 등의 품질개선 방안도 좋은 방법이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철저히 감독할 수 있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정과 방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건설업이 해외로 진출한 지도 상당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우리도 국제적 수준의 시방서를 만들어서 평소부터 우리의 기술자들을 이에 적응시킴으로써 국제 경쟁사회에 순발력있게 대처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3. 품질관리의 개념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품질관리라는 말이 근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이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자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의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마치 품질관리인 듯한 인상이지만 품질관리란 고품질을 생산하고 하자나 사고를 예방하는 수단이지 사후처리의 방법은 아니다.

사실 근래에 대형사고의 다발로 사회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열차 전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기존건물의 도파사건, 한강다리의 붕괴사건, 아파트 식수탱크의 오물유입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가스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 신도시 아파트의 시공중 철거사건, 신도시 아파트의 대량 하자발생 사건, 신도시 아파트의 부분 붕괴사건, 지하철 공사장의 각종 사고 등 이루 다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즉 PQ제의 도입, 시공평가제, 부실공사업체의 정부공사 참여 규제, 책임감리제 등이다.

이들 모두가 품질향상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알맹이는 없다. PQ제도도 시공능력을 심사해서 입찰에 반영하는 입찰제도의 한 방법이다. 시공평가제는 이번 공사의 결과를 다음 공사에 반영시키겠다는 뜻이다. 숙된 표현으로 이번 공사를 잘 하면 다음 공사도 주겠다는 말이다.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조항은 사후약방문이다. 물론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부실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책임감리제가 품질관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이지만 이 또한 제도이지, 감리자가 품질향상을 위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은 없다.

감리자는 품질을 최종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확인작업은 도면과 시방서에 맞게 시공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장에 비치돼 있는 도면과 시방서가 품질시공을 유도할 수 있게 기술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감리자는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경험을 구비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또 감리보수는 받으면서 보수만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는가도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우리 주위에서 가장 대규모의 공사는 아무래도 아파트 공사일 것이다.

이 아파트가 골조공사 중 철거하고 재시공을 했다. PC가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곳곳에서 붕괴사고도 발생한다. 그래서 콘크리트니 안전진단이니 레미콘이니 하는 말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집이 튼튼하기만 하면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는 줄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표준시방서의 콘크리트 조항에서 몇가지만 논의하기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표준시방서 5.3.3에 콘크리트의 소요 Slump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따라 고급일 경우 18cm이하로 하고, 보통일 경우 21cm이하로 하며, 특기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18cm나 21cm의 Slump치로 과연 고품질의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할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ACI Manual을 소개한다. 마닥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3,000PSI(210kg/cm²)시 Slump치는 3"~4"(7.5cm~10cm)이고 4,500PSI (315kg/cm²)시 3"(7.5c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의 공병감실(COE)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 Slab, 계단 : 5~7.5cm

기둥, 벽, 지중보 : 7.5cm~10cm

활주로, 주차장, 도로 : 5cm이하

표준시방서에 "이하"라는 직절한 용어가 삽입돼 있지만 별로 실효력이 없다.

위 두 가지 규정에서 우리는 실제 공사와 직결되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찾을 수가 있다.

전자는 Slump와 강도와의 관계이고, 후자는 Slump와 구조부위와의 관계이다. 바로 이같은 방법이 피부에 닿

는 품질관리인 것이다.

우리의 표준시방서 중 특기시방서에 콘크리트의 분류와 품질분류표가 상세히 작성돼 있다. 이 분류표가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너무나 추상적인 감이 없지도 않다.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보자.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그의 생명이다. 그렇다면 이 압축강도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뜻이다. 즉 구조체 중 물탱크나 정화조, 위험물 저장소 같은 곳은 대단히 예민하고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에서는 기둥, Slab, 계단, 보, PC제, 맨홀 등이 상당한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이 바닥 Slab, 기초, 옹벽 등이며 무근콘크리트는 비교적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항들 즉 Slump와 압축강도가 실제 사용될 공종이나 구조체의 부위에 표준시방서가 구체조치를 취한다면 품질관리 즉 콘크리트의 안전에 보다 효과적이 되리라 기대한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콘크리트가 꼭 압축강도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 도로 등 충격을 받는 곳은 탄성을 필요로 하며 최소한의 인장강도(Flexural), 즉 휨(Bend)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축강도의 확인을 위해서 현장 콘크리트 타설시 Cylinder에서 Mold를 채취한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표준시방서에서 확실히 정의하여야 한다.

Mold 채취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Batcher마다 하는지, 어느 일정량마다 하는지, 날마다 하는지, 몇개나 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압축강도 결정 방법도 기술하여야 한다.

시험강도가 설계강도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8일 후의 압축강도가 기준인데 이 때는 이미 몇개층의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다. 3일이나 일주일 후의 강도 시험으로 28일 강도를 예상할 수는 없는가?

시험실 문제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험을 위해서 시험실과 시험용기를 준비하고 시험사를 채용한다.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꼭 이런 방법이 최선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정부의 시험기관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적인 시험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대단위 Project를 수개의 건설회사가 동시에 참여할 때(예 : 신도시나 주공아파트공사) 공동으로 시험실을 운영한다면 이 또한 전문성과 경제성에 좋은 방법이다.

공사장마다 시험실 운용은 비경제적일뿐 아니라 전문성도 고려되고 전비용으로 전락하기가 쉽다.

이러한 시험실 운용에 관한 사항들이 공사시방서에 지적되어야 한다.

품질관리의 최종목표인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획득"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상기 시험실도 품질관리

의 좋은 실례가 되리라 믿는다.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해서 더 논의해 본다.

시멘트제품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온도 차이로 인한 균열이다.

이는 시멘트가 갖는 특성 때문에 완전한 균열의 방지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지 모르지만 이를 최소화 함으로서 콘크리트의 품질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콘크리트제품의 수축으로 인한 균열은 어떻게 방지해야 하며 팽창으로 인한 파손은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외기에 변한 콘크리트면은 현저한 온도 차이로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는데 이로 인한 품질저하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인데도 우리의 표준시방서에는 언급이 없다.

전장에서 필자는 품질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지침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실례(實例)가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해서 기술한 사항들은 지극히 일부분만 발췌했지만 우리의 표준시방서가 더 많은 품질향상에 언급있기를 기대한다.

4. 품질관리의 수행자들

전술한 바와같이 품질관리의 양대 지침은 계약도면과 시방서이다.

도면과 시방서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즉 “설계자는 품질관리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엄숙한 임무를 설계자는 기억해야 한다. 설계자는 품질관리의 최초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도면과 시방서에 품질관리의 지침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사의 품질제품 생산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공자 스스로 품질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규정은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이들의 Sponsor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최종 허가와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정된 여러가지 규정들 중에서 설계자는 공사여건에 맞는 것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예를들면, 표준시방서에 Slump치를 품질에 따라 18cm 나 21cm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설계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10cm 혹은 12cm로 줄일 수 있다.

품질관리의 최종 확인자는 감독자(감리자)이다. 그래서 감독(Inspector)를 품질보증인(QAR: Quality Assurance Representative)이라 부른다.

감리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시공자의 부족한 품질관리 업무를 보완, 지시, 규제하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공자측 기술자(Engineer)는 그 주임부가 품질관리인데도 다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노무, 자재, 장비, 자금, 관청업무, 본사업무, 민원관계 등으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기가 쉽다.

이로인해서 결핍된 품질관리를 보완하는 것이 감리자의 주 임무이지만 이외에도 안전, 기성, 공기 등에 권한을 부여받기도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의 중지나 계약을 해지하는 임무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이는 최악의 경우이다. 이 때는 상급자에게 보고, 승인 등의 절차가 있지만 어떤 행동이 결정되면 가차없이 수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하자나 부실공사가 오래 가면 갈수록 그 사후처리가 더 어려워지며 또 감리자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시공자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시공자 스스로 품질시공을 유도하는 감독자가 가장 우수한 감독자이다.

감독자는 우수한 지식, 풍부한 경험,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과 경험과 지도력은 감독자가 갖추어야 할 3박자인 것이다.

시공자는 품질관리의 수행자들이다.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현장이란 본사이든 간에 임무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시공해서 우수한 건축물을 공기내에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회사도 좋은 평판을 받아 다음의 공사에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철저한 품질시공과 공기내 완공은 회사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하자를 줄일 수 있다.

품질관리의 최종 확인 방법은 시험이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험은 그 종류에 따라서 장비나 기기가 사용되지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Visual Test)도 하나의 시험이다.

시험의 종류, 시험의 방법, 시험의 시기와 회수, 시험인의 자격 등은 공사시방서에 확실히 규정해야 하며 시험의 비용과 시험실의 이용방법도 계약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자체 시험실을 이용할 지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의뢰할 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다. 시험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기도 하지만 건축주가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품질보증시험이라고 한다. 시험은 유자격자에 의해서 실시하고 시험의 결과는 모든 관계자들이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품질관리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시험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실 품질관리제도도 실시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나라마다 그 방법도 동일하지 않다. 또 같은 나라라도 발주처에 따라서 그 시행방법이나 적용범위가 다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품질관리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표준시방서 20.1.1 사항(도장공사)에 납 함유량은 무게의 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어린이(7세 이하)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납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서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전 산업현장에서 이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도장공사에서 일반 페인트의 납 함유량을 무게의 5% 이내로 제한하지만 방청도료인 광명단(연단: Red Lead)의 납성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7세 이하의 어린이 운운하는 것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일반 도료에 포함된 납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만 이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단은 그 주성분이 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생명에 영향을 주는 납성분에 대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납성분은 남녀노소에게 위해로운 물질이므로 이유없이 가급적 사용이나 접촉을 금해야 한다.

둘째, 철제표면의 방청제로서 무연성분의 도료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연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장 작업전의 교육실시나 위험표지 부착, 작업자의 장갑착용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며, 노출면에서의 부득이한 연단 사용은 필히 마감도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미 공병단의 시방서에는 납성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도료의 납성분 함유량은 중량의 0.06%(연단제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노출공간(Consealed Spaces)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도료의 납성분 함유량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여러가지 여건상 납성분을 줄일 수가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인체를 보호하는 규정이 우리의 표준시방서에 제정되어야 하겠다는 바람이다.

도료의 납성분에 대한 기술은 건축물의 품질관리라기 보다는 인간의 품질관리이다. 품질관리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는 동일목표를 위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품질관리의 수행자들이다.

설계자는 품질관리의 지침을 마련하고, 시공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자는 품질관리를 최종 확인한다.

이들의 업무는 규정과 제도에 의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5. 품질관리와 경제

품질관리의 최종목표는 “낮은 공사비로 높은 품질의 획득”이라고 전술한 바 있지만, 혹자는 품질관리는 돈이 많이 드는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품질관리를 전연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래 석고보드의 사용이 점증하고 있다. 그런데 석고보드를 부착한 현장에서 가끔 안타까운 일들을 본다.

첫째는 두점붙임(2ply)이요, 나머지는 기 시공판에 발생된 균열이 그것이다.

하나씩 분석해보자.

두점붙임의 이유는 휘거나 균열이 발생하거나 약하다는 이유들이다. 물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석고보드 시공현장이 너무나도 안이하고 무원칙함을 볼 수가 있다.

우리의 표준시방서에서도 시공방법에 대한 방법이 기술이 너무나 빈약하다.

석고판의 천정 시공시 규정에 따른 Hanger와 Chanel을 설치하고 규정에 따른 접착을 했을 때 12% 두께의 석고판을 붙였다면 하자가 있을 수 없다. 벽도 마찬가지이다. 정품의 Stud의 설치와 간격유지, Runner와 바닥과 천장의 간결, 문틀이나 개구부의 보강 등만 규정대로 하면 천장과 마찬가지로. 석고보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여기에서는 시공에 관한 규정중 한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석고판의 특성중에 장점은 불연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재는 철제사용이 내화구조물에는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목재를 사용시 USG는 다음과 같은 시험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Wood Frame을 사용시 무재는 5cm×10cm 이상이어야 하고 함수율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또 목재의 자연 건조는 안되며, 인공건조(Kilm Dry)하여야 하며, 간격은 Steel Frame과 같고 부자재는 천장이나 벽이나 같다.” 균열에 대해서 USG의 실험자료를 참조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석고판이 영하 2℃ 일 때와 영상 22℃ 일 때 10m간격마다 1cm씩 팽창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최소 13℃의 상온에서 24시간 이상 저장한 뒤 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의 시공현장에서 수축 팽창에 대비한 Control Joint를 본 일이 없다. 10m마다 6%의 Control Joint를 설치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이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품질관리이다.

지금까지는 한두가지만 기술했지만 여타 규정에 맞게 시공한다면 두점붙임(2ply)은 절대 필요치 않으며 균열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다.

한점붙임도 충분한 두점붙임으로 인한 공사비의 낭비는 품질관리로써 막을 수 있다. 필자의 지식으로는 방화구역을 제외하고는 두점붙임을 하라는 규정을 본 일은 없다. 여하튼 품질관리가 경제적 손실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6. 품질관리와 안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필히 사라져야 할 사항이다.

고용주는 고용자에게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고용자는 고용주에게 안전한 작업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안전(Safety)은 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지나 일상생활 하는 곳에서도 똑같이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안전에 관해서 품질관리 차원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우리의 일터(예: 사무실)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위

해를 생각해 보자.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다.

건물을 신축할 때 화재의 예방이나 소화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 투자는 영원히 한번도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사용되어야 할 때에 작동이 안되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Detector, sprinkler, 소화기, 호스, Alarm기, 물Tank, 각종Motor 등 대부분이 기계나 전기적인 사항들이다. 건축적인 방화재, 방화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의 표준시방서에는 방화문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건축법과 소방법에는 해당 규제조항이 있지만 적어도 필요한 조항만큼 표준시방서에 인용되어야 한다.

방화문은 공동주택의 방화구역의 정의에 따라 공동주택의 출입문이나 피난계단의 문은 필히 방화문이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갑종방화문의 경우 0.5% 이상의 철판을 양면에 붙이거나 1.5%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시방서 17.3.1(강제창호)에 의하면 강제창호 출입구 문의 두께를 1.6%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갑종방화문이 일반강제문의 두께보다 얇거나 얇을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건축법상의 방화문(Fire Door)과 표준시방서상의 강제창호(Steel Door)와의 철판의 두께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 을종방화문에 대해서는 옥내면에는 두께 12% 이상의 석고판을 설치하고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이면 된다는 규정이 있다. 석고판의 두께는 지적됐으나 철판의 두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화재는 인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적당히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석고판은 불연자재이다. 미국의 석고판 제작회사의 실험에 의하면 두께 12%석고보드의 양면불임은 보통 화재시 2시간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시간 동안의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1Hour Fire Code)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내화재로 인정받은 석고판은 타입 "X"의 석고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별되지만 미국에서는 제품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시간과 내화구조의 등급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화재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철판의 두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과 문틀의 한 세트를 시험해서 그 결과를 미국 정부나 UL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받은 제품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시간의 표지판(Label)을 문과 문틀에 붙여서 이를 입주자에게 인식시킨다. 우리의 방화문이 일반 화재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 실험치가 참으로 궁금하다. 을종방화문에 망입유리(Wired Glass)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우리의 두께와 철망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과연 방화문에는 철판의 두께만 규정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적어도 방화구역 내에서 이를 차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옆집에서 불이 나면 그 불꽃이나 유독가스가 우리집에는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화문은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하며 닫

혀지는 가구, 즉 Door Closer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착된 Closer가 그 기능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품이 그렇게 기능에 맞게 작동하느냐 하는 문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1급 Door Closer의 경우 150만번의 실험에 합격해야만 시판될 수 있다. 품질관리의 3대 요소 중 그 첫번째를 재료라고 언급한 바 있고 재료의 품질은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Door Closer는 이 두가지 요건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문은 문틀에 정첩(Hinge)으로 지지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정첩이라고 예의일 수는 없다. 문은 건널 수 있는데 정첩이 불에 견디지 못하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이 이론은 철골구조에서 연결재(Bolt Rivet)의 강도는 철골의 그것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정첩은 용융점이 더 높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가장 용융점이 높은 금속재료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구리제품의 정첩이 방화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이다.

문이 닫혀지는 작동은 Closer가 하지만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가 Lockset 혹은 Latchset이다.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Lock이나 열쇠를 사용할 수 없는 헛자물쇠(Latch Bolt) 공히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첫째, 방화문에는 Door Closer를 부착해야 하고 둘째, 용융점이 높은 금속제품의 정첩을 부착해야 하고 셋째, 문의 닫혀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Lock이나 Latch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방화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화재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이 우리의 표준시방서에 기술됨으로써 유고시 인명이나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년부터 UR이 부분 개방된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가정을 해본다. 만약 선진국의 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수한 품질, 철저한 A/S, 서구적인 구조 등 오늘의 우리 실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 건설업체의 장래가 상당히 우려된다. 기우에 불과한 사실이지만...

근래에 우리 주위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건설현장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 이 모두가 건설인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철길 아래서 터널을 뚫으면서도 겁없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당했는가?

한강 다리는 왜 강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건설에 얼마나 큰 실망을 주었는가?

아파트가 뒤질래 가스유출도 확인하지 않은 건설인 때문에 그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이사날이 제삿날이 되고 말았는가?

수돗물도 그냥 마시기에는 불안한데 왜 오물까지 섞어 마셔야 하는가?

떨췌한 집이 무너지고 짓는 집도 무너지고 짓다가 헐고 다시 짓는 우리들의 집, 방법은 없는가?

언제까지인가?

(다음호에 계속)

건축법 질의·회신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건설부 건축계획과

▶ 질의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결정은 강제규정인지? (질의자: 서울 서초 조동영)

▶ 질의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방법은? (질의자: 서울 동작 이석일)

▶ 질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고 1년 이후에 무단으로 착공한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감리자는 의무적으로 위법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경남 김해 김현규)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일부가 보와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도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경기 오산 장만규)

▶ 질의

대지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3인)이 그 대지를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대지에 상속인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건축허가서를 제출할 때 나머지 2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경기 안산 김미영)

▶ 질의

막다른 골목길(길이 19미터, 너비 2.4미터)에 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할 때 3미터 도로너비를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와 이의 시정요망. (질의자: 서울 종로 전현숙)

▶ 회신(건축 58070—, '93. 5. 17)

동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건축주의 신청에 따르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 '93. 5)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가 접한 면의 중앙에서 막다른 도로의 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 회신('93. 5. 7)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시장등에게 위법보고를 하는 것은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시정기간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등에게 하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법령에 위반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536, '93. 5. 7)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이 모두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93. 5. 11)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건축할 당해대지에 대하여 권리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바, 질의의 경우 3인이 공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1인이 대표로 건축허가 신청은 가능할 것이니 공유권자의 동의여부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법률사무소나 당해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941, '93. 5. 31)

가.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동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폭의 2분의1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동 건축선 후퇴규정은 이용권을 일부 제한하되 소유권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소요폭에 미달되는

▶ **질의** —————

도시설계에 따라 3필지의 토지에 걸쳐 공동개발토록 되어있는바 3필지의 토지중 1필지의 토지가 대지면적최소한도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 마포 김원배)

▶ **질의**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경기 평택 이기준)

▶ **질의** —————

건축물의 노대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건폐율에 저촉되게 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경남 창원 임원식)

▶ **질의** —————

인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중인 건축물이 대지를 서로 침범하여 건축된 바, 사후에 대지주 상호간 정확한 경제측량을 약속하고 대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경기 연천 김희준)

▶ **질의** —————

사진필름 현상 및 인화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질의자 : 서울 강서 최은숙)

▶ **질의** —————

공동주택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서에 감리자가 날인하여 관청에 접수후 공사 미비 및 사업주와 채무관계등의 이유로 감리자의 날인취소를 요구할 때 해당관청에서 날인취소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 갈산 박원호)

▶ **질의** —————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지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폐율이 완화되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 동대문 정영숙)

▶ **질의** —————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조등을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정북방향만 인접대지경계선을 도로중심선으로 보아 건축물높이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자 : 광주 서구 김미라)

도로에 접한 대지내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민원인 포함)들의 교통·피난등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93. 5. 29)

도시설계의 내용에 따라 3필지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적용의 특례적용여부는 당해 지역의 도시설계내용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 ('93. 5. 7)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은 그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신** ('93. 5. 6)

건축물 노대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면적에 산입되며, 건폐율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며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 (건축 58070-1975, '93. 5. 31)

질의의 필름현상·인화업소가 환경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시설이라면 일정기준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배출시설 설치를 요하는 시설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7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 **회신** (건축 58070-1925, '93. 5. 31)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건축물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것이며 동 신청서에는 공사감리자의 날인 및 공사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용검사는 건축허가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인바, 만약 질의의 공사가 건축허가내용을 위반하는등 공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은 교부받을 수 없을 것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건축 58070-1937, '93. 5. 3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내용등 현지의 현황을 검토하여 당해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 (건축 58070-1929, '93. 5. 31)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는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질의** —————

1층은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면적 250제곱미터), 2~6층은 업무시설로 설치할 경우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강남 문석필)

▶ **질의** —————

기존건축물과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할 때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와 하나의 건축물로 볼 때 옥탑부분의 층수산입 기준은 (질의자: 서울 강남 천혜철)

▶ **질의** —————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중 관찰관청에 고발되어 이행강제금 납부 및 형사고발등 조치가 완료한후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바 이의 가능여부 (질의자: 부산 해운대 하상우)

▶ **질의** —————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과반이상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건축물을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걸쳐서 건축할 때 일반 주거지역과 인접한 대지에 대하여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자: 서울 서초 박종호)

▶ **질의** —————

- 가.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서 공장상호간 업종을 변경할 때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현행 건축법상 일반공장과 공해공장으로 용도분류가 되기 이전에 신축한 공장건축물에 배출시설 설치 가능하지 여부
- 나. 무허가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부산 사하 배근예)

▶ **질의** —————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이 철도용지인 토지를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서울 서초 최수근)

▶ **질의** —————

자연녹지지역(유원지)내의 기존건축물에 대중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독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금번 질의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두고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질의자: 부산 금정 박복자)

▶ **회신**(건축 58070-1929, '93.5.31)

질의의 1층 사무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927, '93.5.31)

질의의 각각의 건축물이 구조물로 분리되고 연결출입구가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등으로 설치하여 구조, 안전, 위생, 방화상 독립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은 현지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943, '93.5.31)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8조 내지 83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조치되는 것이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시장등의 시정명령 내용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현황을 검토하고 당해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949, '93.5.31)

질의와 같이 2개의 지역에 걸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또는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950, '93.5.31)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건축법시행령 개정시('78.10.30) 공장은 공장 및 공해공장으로 분류하였으며, '80.11.12 일반공장 및 공해공장으로 개정하였는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가 세분시에는 당초허가된 용도의 내용 및 개정시의 사용 용도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재분류하여 건축물대장에 변경 기재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와 같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69조 및 별칙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와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에 용도변경과 배출시설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93.5.7)

건축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건축가능여부를 결정(종전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이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면 지목이 철도용지라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할 것이나 당해 철도용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야 합니다.

▶ **회신**('93.5.7)

유원지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인

▶ 질의

동일대지내에 아파트와 상가(부대복리시설)가 있는 경우 일조권 산정을 위한 인동간 거리산정기준은? (질의자: 서울 강남 안길원)

▶ 질의

건축허가시 건축설비도·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자: 서울 강남 이승택)

▶ 질의

정북방향으로 대지와 도로사이에 위치한 잡종지인 토지(면적 73 제곱미터)를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한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서울 종로 정립건축)

▶ 질의

기존건축물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적용여부 (질의자: 대전 중구 박향미)

▶ 질의

건축물의 옥외계단부분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자: 대구 북구 박성열)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넓은 도로에서 건축물을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로서 기타 나머지도로 부분의 도로폭완화 적용시 가장 넓은 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폭과 후퇴부분의 도로폭을 합산하여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자: 서울 용산 김덕현)

▶ 질의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축시 개구부가 향하는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은? (질의자: 서울 송파 고봉철)

경우 대중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문의의 기존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면 이를 용도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건축 58070-1539, '93.5.7)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동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3호 나목(4)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복리시설의 높이만큼 이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525)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계산서 및 건축설비도(소방설비 제외)는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설계사무소에는 건축허가 도서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건축설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972, '93.5.31)

질의의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최소 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이를 건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여건을 참작할 때 법령등의 완화적용이 타당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법령의 일부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93.5.8)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을 건축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바, 문의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93.5.7)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창문등"에는 외부계단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인접대지의 건축주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93.5.7)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넓은 전면도로의 폭에 건축선에서 후퇴한 부분의 폭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93.5.7)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

전자제품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반업무시설용도의 건축물(지상 7층, 지하 4층)1층과 2층의 일부를 show room과 A/S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서울 강남 백호봉)

▶ 질의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질의자: 부산 남구 지우현)

▶ 질의

가구내에 접한 대지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규정 적용시 반드시 대지가 넓은 도로에 접하여야 등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자: 부산 동래 김기배)

▶ 질의

기존 종교시설을 철거하고 종교시설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의 준공시 까지 인접필지에 가설건축물로서 가설집회장(종교집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여부 (구청의 건축조례는 미제정 상태임) (질의자: 서울 종로 김은태)

▶ 질의

'91.7.2 건축허가를 득하여 '92.1.25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에 위법이 있다하여 '92.6.1 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가능여부? (질의자: 서울 서대문 정주현)

▶ 질의

미관지구내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를 설치시 통로부분을 공개공지 설치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자: 서울 영등포 서울건축)

▶ 질의

- 가. 옥상층에 있는 물탱크실을 오르내리는 옥외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나 방으로 변경한다 하여 옥외계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상기 가항의 물탱크실에 창문설치 가능여부?
다. 일조권규정에 위반되게 발코니의 설치가능 여부?

▶ 회신('93.5.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 전시실(show room)과 서비스실(A/S센터)이 주용도인 일반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일반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본다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며 별도의 전시시설 또는 수리점등으로 보아야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는 당해허가권자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93.5.10)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92.5.31)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회신('93.5.10)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규정은 대지가 넓은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신('93.5.10)

종전 건축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 설치하는 가설홍행장 또는 가설 전람회장으로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존치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그 용도의 사용목적 자체가 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질의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당해허가권자가 인정한다면 가설홍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신('93.5.8)

귀 문의의 경우 건축법령을 위반한 시점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불가하나, 만일 전문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법건축행위를 하였다면 같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93.5.10)

건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건축선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관지구안에 지정된 건축선의 후퇴부분도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회신('93.5.11)

가 및 나에 대하여

옥상층에 있는 물탱크실을 오르내리는 옥외계단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문의의 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실을 방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건축법령상 동 물탱크 부분을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한 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니 위

라. 건축법령에 하자보증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질의자: 서울 강남 광동현)

▶ 질의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건축하는 임시적 가설건축물의 건축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자: 부산 동구 서정일)

▶ 질의

대지면적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가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더욱더 미달되는 경우 특례적용 가능 여부? (질의자: 서울 중구 이창주)

▶ 질의

일반주거지역내의 기존건축물중 500제곱미터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자: 광주 동구 최형선)

▶ 질의

에어로빅 체조장의 건축법상 용도는? (질의자: 경기 수원 김석준)

▶ 질의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가 1년에 몇회까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경기 부천 박상태)

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권규정에 위반되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하자 보증규정은 없습니다.

▶ 회신('93. 5. 11)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임시 가설 건축물은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93. 5. 11)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면적최소한도·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문의와 같이 대지면적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가 건축선의 후퇴로 더욱더 미달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의 대상이

▶ 회신('93. 5. 11)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학원의 건축가능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 건축법시행령 별표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법령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폭4 미터이상의 도로에 폭 4미터이상 접한 대지에는 학원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동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 회신('93. 5. 11)

질의의 에어로빅 체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656, '93. 5. 13)

건축법상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으나 60제곱미터가 넘는 증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위해서도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인기념 · 군민종합회관

2천년대를 대비, 순창(淳昌)군에서는 지방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의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순창군의 전통과 미래가 상징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군민종합복지회관 및 가인(街人)기념관을 건립키 위해 지난 4월23일 현상공모를 마감, 총 9개 사무소에서 출품한 결과 예건건축(대표 주영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5월11일 발표하였다. 우수작으로는 필건축안과 모아건축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감도

당선작

(주)예건종합건축 소
(대표 주영정)

대지위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303-1 일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에 따름
대지면적 / 23,834㎡
건축면적 / 3,191㎡
연면적 / 4,475㎡(군민종합복지회관 : 3,134.05㎡, 가인기념문화회관 : 1,342㎡)
건폐율 / 13.38%
용적률 / 15.99%
건물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 / 지붕철제 트러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계획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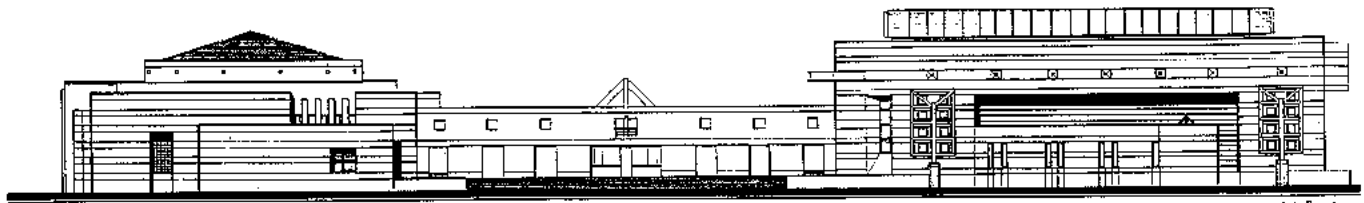
- 순창군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 상징화
- 순창군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표현
- 건물 형태의 랜드마크(landmark)화
- 대지의 외곽선에 대한 형태에 서의 은유적 표현
- 화강석의 강인하고 무거운 이미지와 외부강관 입체 트러

스(pipe space truss) 구조의 가별고 기계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한 미래 지향적 현대미의 표현
• 각동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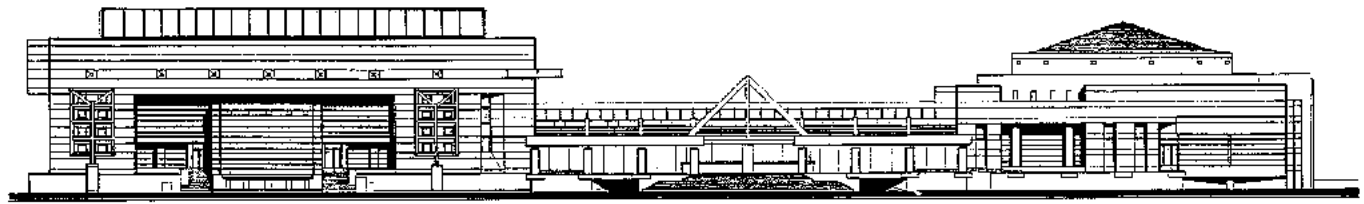
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정을 계획하여 각동의 요소를 서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도록 계획

■ 배치계획

- 대상지 주위는 대부분이 농지의 Open된 공간으로 외부주위 공간의 시각축을 형성하여 순창군의 Landmark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 주거단지와 체육관과의 충분한



북측면도



남측면도

한 거리는 소음공해를 차단함과 동시에 주변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다.

- 남쪽에 주 진입광장을 형성하고 북쪽에 부진입로를 두어 전면의 확트인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휴게 공간의 역할과 함께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

- 진입부, 중앙광장, 녹지공간 등 면적인 공간요소의 전개와 건축물, 녹지 등 입체적/수직적인 공간요소를 중첩해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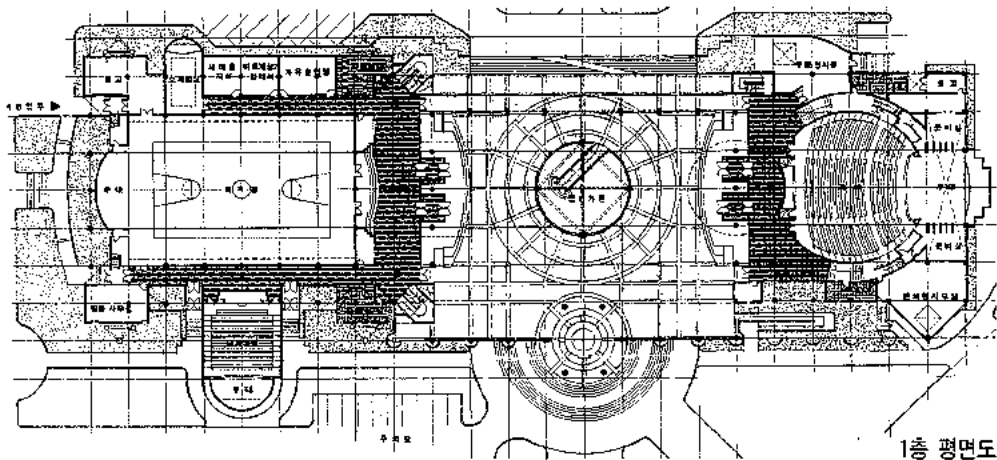
—도입부—진입유도—전면광장—행사 및 휴게 공간

■ 동선 계획

- 각시설의 공간을 결집하는 중심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정을 두어 각 시설과 순환적인 연결을 유도한다.
- 일반 관람인은 남쪽 주출입구로 진입하고 VIP 및 선수, 임원진은 북쪽 부출입구로 진입을 유도한다.
- 대규모 행사시에 남쪽 주출입구로 일반인의 진입을 유도한다.
- 주 진입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 분리한다.

■ 평면계획

- 시민문화 공간으로서 다목적인 기능 수용
- 전시공간마련으로 군민의 애향시키고취 및 문화생활영위
- 복합기능에 따른 명확한 동선 분리 및 관리 효율화
- 선수, 임원, 관람인, 판라인, 보도인들의 명확한 동선 분리



1층 평면도

- 군민회관과 가인기념관을 각동으로 분리시켜 동선의 분리수용.

-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zoning 계획

- 경기시와 소규모 행사시(대, 소 회의실)용도와 동선분리

- 6.0m×6.0m의 구조합리적 대용형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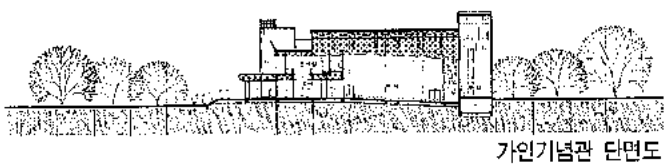
- 피난공간 인지가 뚜렷한 동로
- 긴급대피시 두 방향의 외면 피난이 가능케 한다.

- 건물 장변방향 양측에 계단을 두어 수직동선을 유기적으로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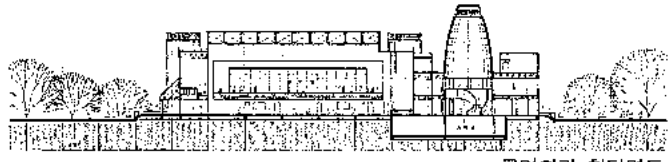
- 공간의 균일성, 실용성, 시공성의 높은 효율성과 구조합리적인 선정에 의한 6.0m×6.0m의 모듈을 적용한다.

- 주경기 시설 이용 일반 관람인은 공식경기시 관람객 출입구를 통해 각 관람석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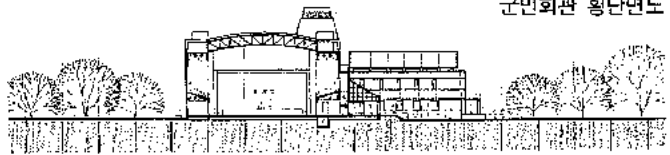
- 선수는 관람객 출입구와 분리된 부 출입구를 따라 선수 대기실을 통해 경기장으로 들어간다.



가인기념관 단면도



군민회관 횡단면도



군민회관 종단면도

■ 입면계획

- 순창군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의 표현과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형태.

- 발전하는 순창군의 이미지가 Mass에서도 도입 상승감을 줄 수 있게 함.

- 자연과 인위가 조화되는 형태를 형성화

- 굳건하고 기계적인 이미지의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여 체육관의 역동성을 형상화하고 기념관과의 조화와 연계.

- 육중한 Mass의 시각적 분절

화로 심리적 충격완화

- 각 공간의 기능적 차별성이 외관에서 손쉽게 표현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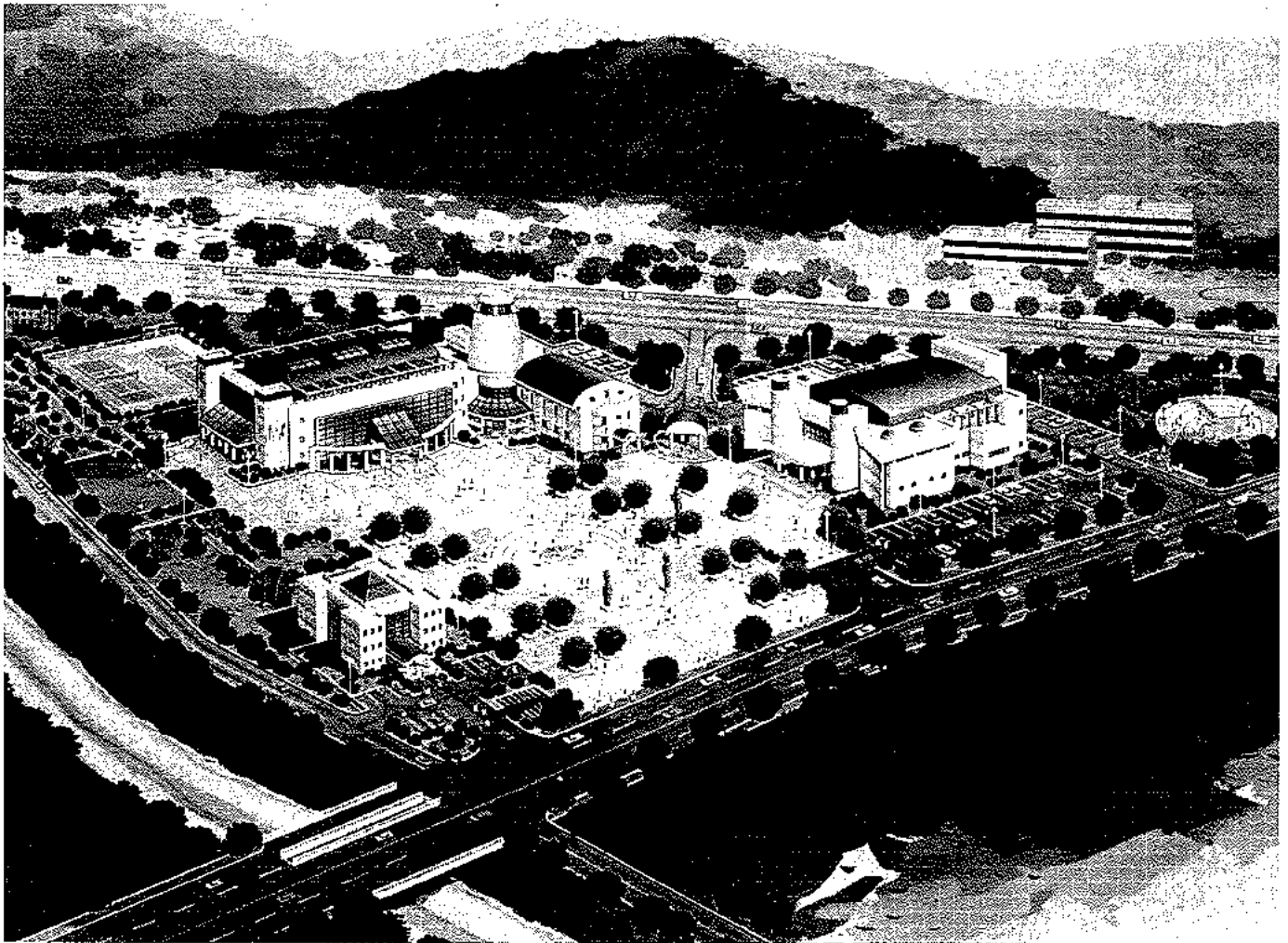
- 대지의 환경사를 이용하여 각 외부공간의 성격에 따라 단차이를 조급씩 주어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재미있는 공간

- 적절한 가시선 검토에 의한 관람석 경사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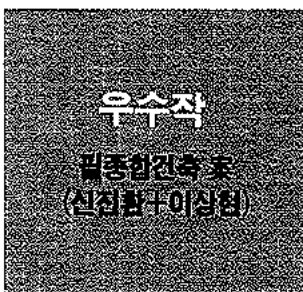
- 기능별에 따른 최대 주광유도

- 수직 동선거리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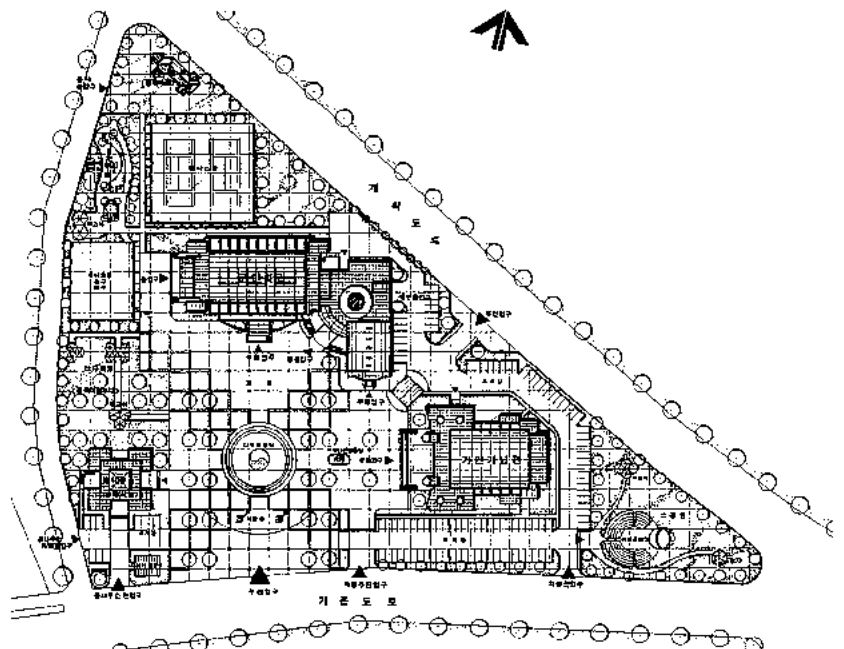
- 시공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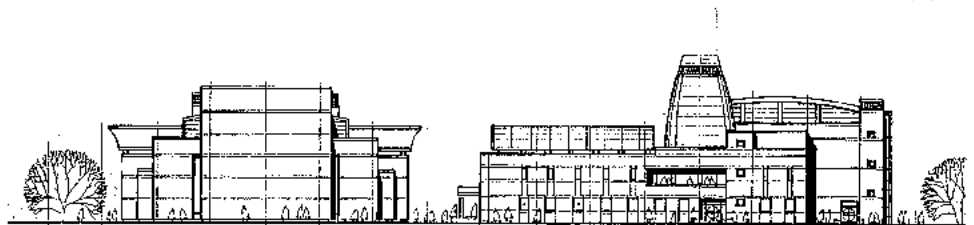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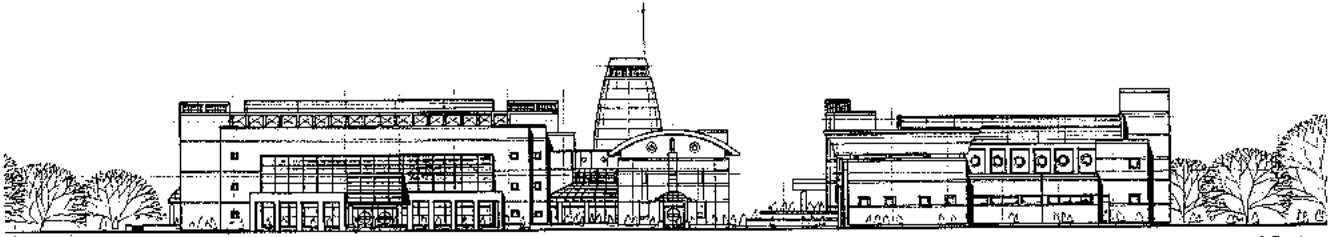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 순창군 순창읍 남
계리 303-1번지 일대
대지면적 / 23,834㎡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건축면적 / 3,269.8㎡
연면적 / 4,357㎡(군민종합복지회
관 2,902.5㎡ 가인선생기
념관 1,454.5㎡)
건폐율 / 13.7%
용적률 / 18.3%
건물규모 / 군민종합복지회관—지
하 1층 지상 3층 가인
선생기념관—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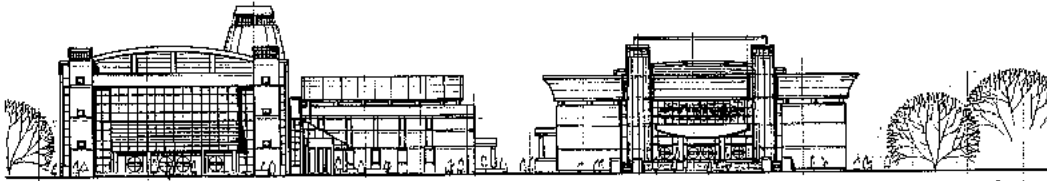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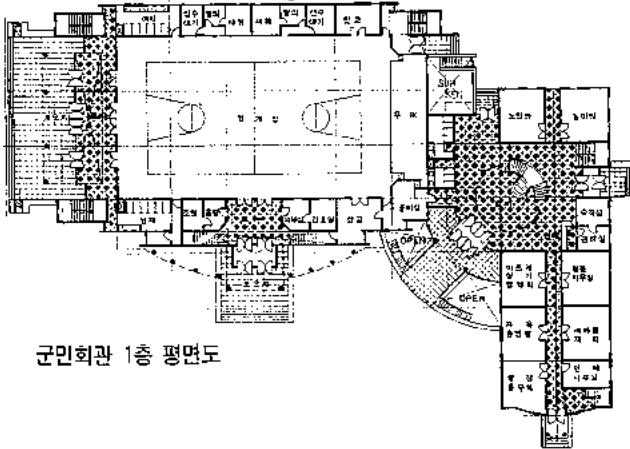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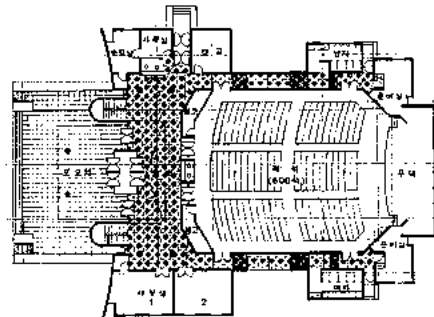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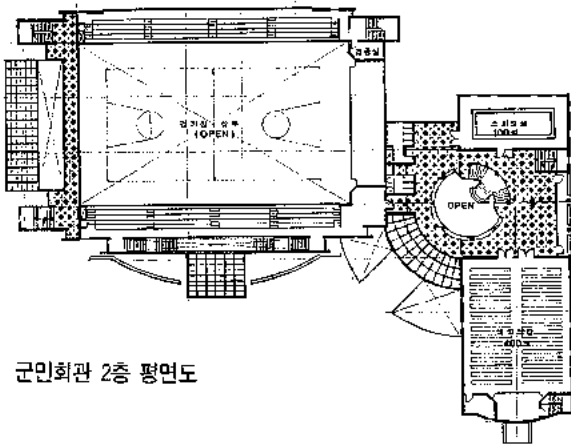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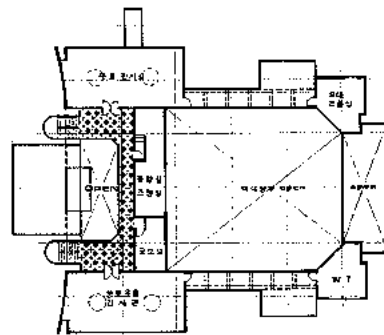
군민회관 1층 평면도



가인기념관 1층 평면도



군민회관 2층 평면도



가인기념관 2층 평면도

■ 계획의 원칙과 방향

- 순창의 특징을 살린 가인기념
군민종합복지회관
- 신한국시대 순창군의 도약의
장으로 승화된 기능과 공간
구성
- 순창의 문화계승과 지역주민
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합복
지시설
- 발전하는 순창군의 홍보의 장
-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하
는 교육의 장

■ 배치개념

- 주진입구의 남향 중앙광장의

적극 활용

- 대모산성 연상으로 에워싸는
배치형태로 결속 단합을 반
영
- 보차분리와 함께 동선의 유기
적 연계
-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다방면
의 인지성
- 증축부지 고려한 배치계획

■ 평면개념

- 남부지방의 전통적 만가 구성
: 7자형 배치 · 전정 · 후
정 · 중정(선큰가든)
- 자연채광의 적극적 이용 : 상

주가능 남향배치

- 기능별 독립성 및 연계성 확
보
- 이용동선의 자유로운 흐름

■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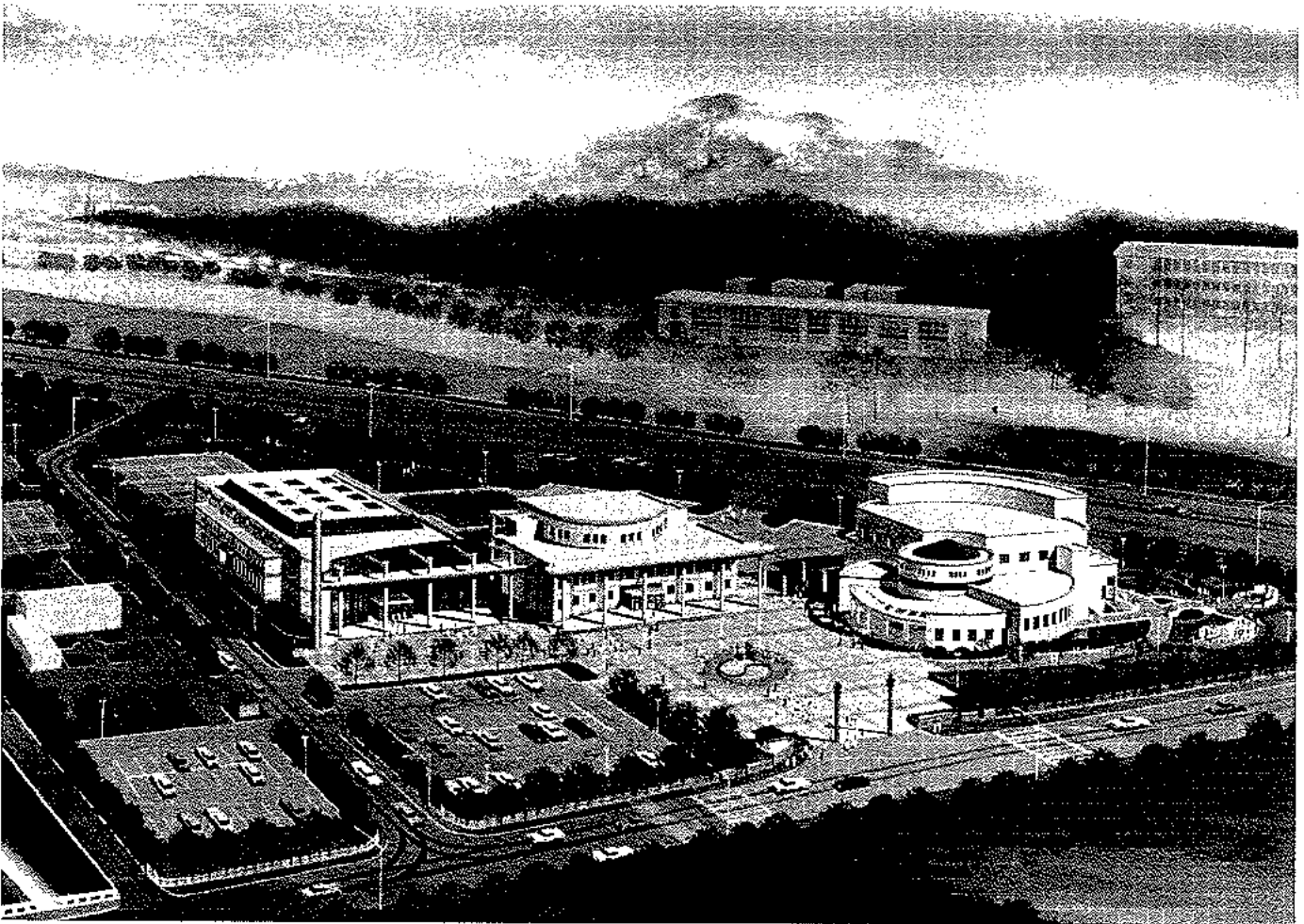
- 지평선과 안정을 의미하는 수
평적 요소 도입
- 곡면지붕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안정—고추장장독과
은어의 유연한 곡선 도입
- 내구성이 크고 경제적인 자재
사용

■ 단면개념

- 자연요소의 실내유입
- 단계적 발전계획 고려한 단면
- 퍼글티 및 선큰가든의 적극적
이용
공간 · 시각 · 행위의 연속성
부여
- 수직적 공간 연계

■ 조경개념

- 남향의 대지를 적극 활용
- 보행흐름을 살릴 수 있는 식
재계획
- 공간의 성격과 계절별 식재특
성 조화를 위한 계획



조감도

우수작
(주)모아종합건축 社
(최상학+이희주+민병건)

우수작
(주)모아종합건축 社
(최상학+이희주+민병건)

대지위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
계리 303-1일대

대지면적 / 23,800㎡중 9,917㎡

건축면적 / 3,840㎡

건폐율 / 39%

연면적 / 5,374㎡(주민종합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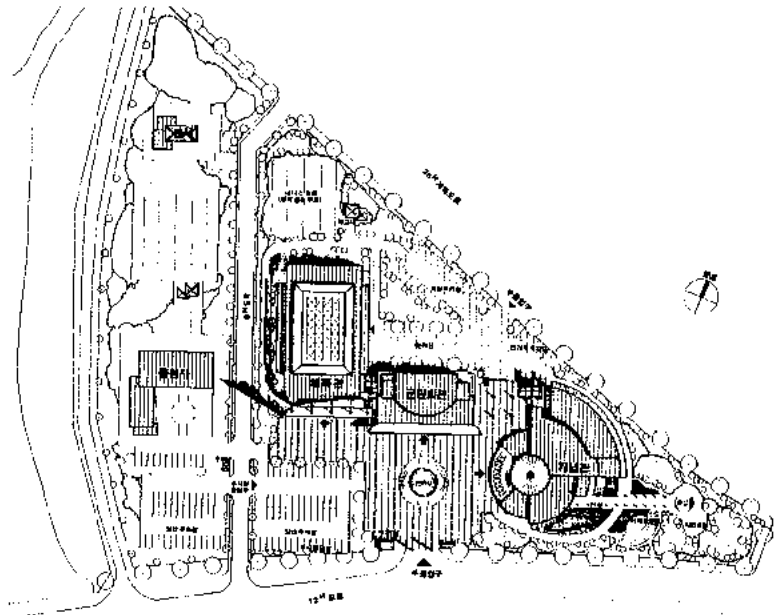
관 : 3,437m², 가인 기념

관 1,937m²)

용적률 /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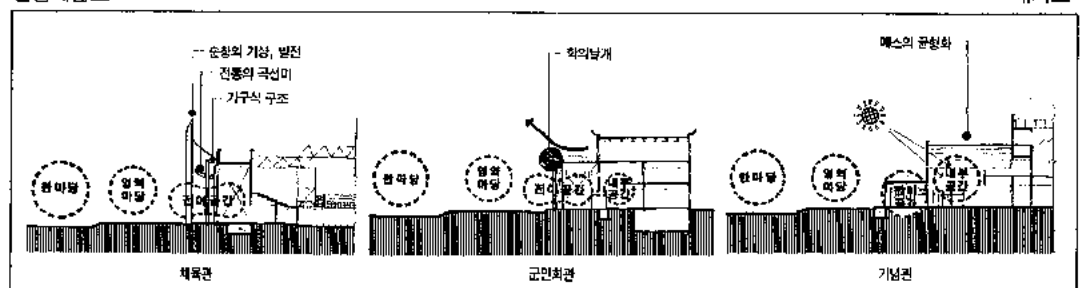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단면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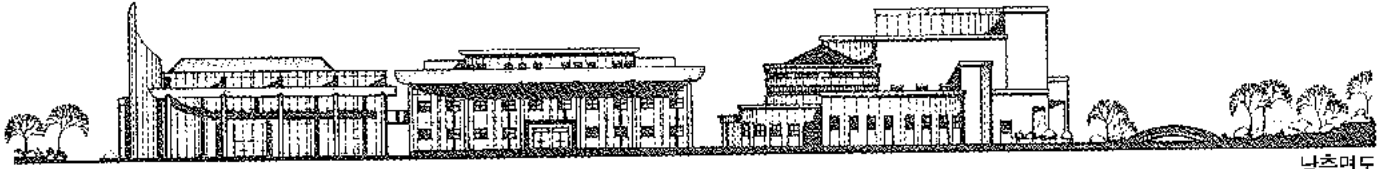
배치도



자육관

군민회관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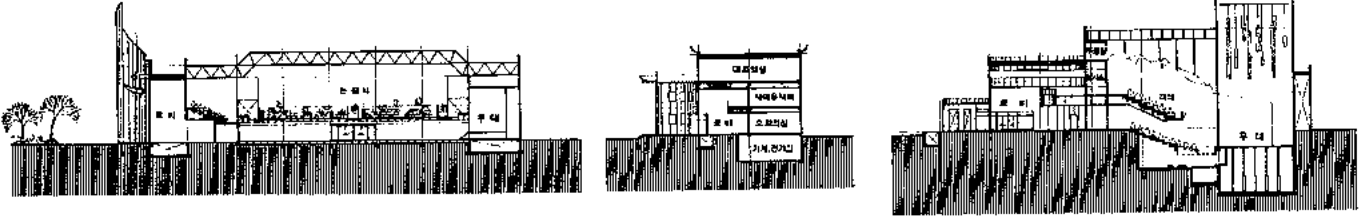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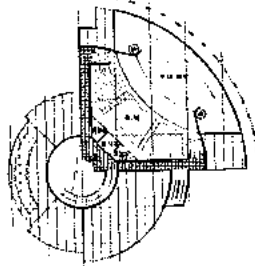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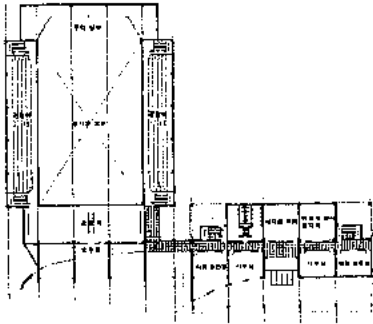
자육관

군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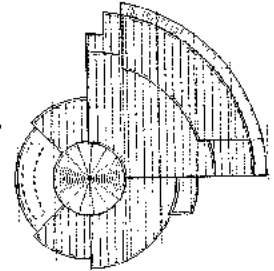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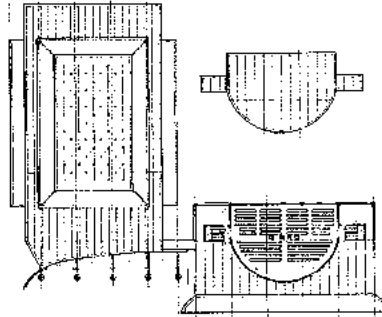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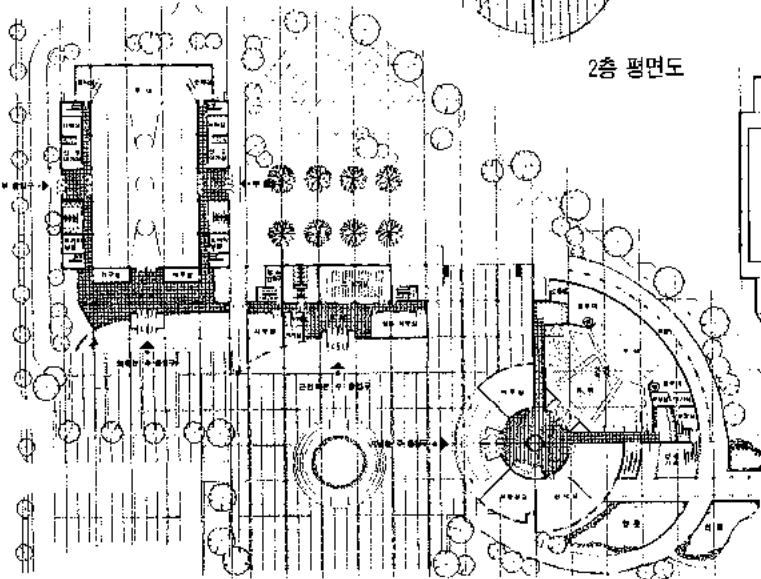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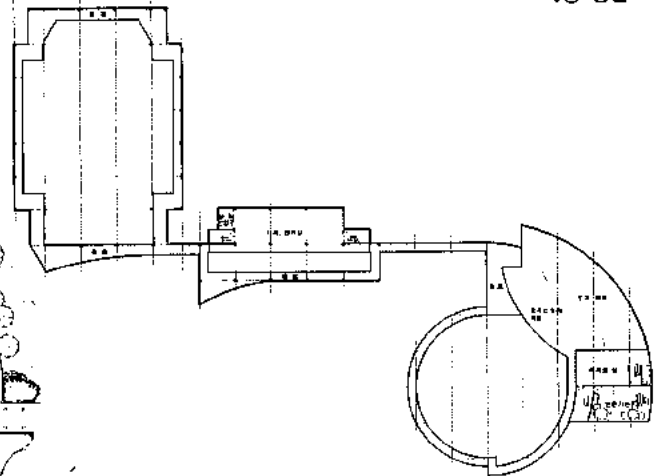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계획목표

- 지역 문화공간 확충
- 군민화합과 참여의 장 제공
- 복지 편의 시설 제공
- 전통 계승과 밝은 미래상 제시
- 군민의 자긍심에 대한 상징성 부여
- 교육의 장으로의 활용

■ 계획개념

1) 외부공간 개념

- 공간의 순차적 구성 및 위계성 부여
- 매개공간을 통한 공간의 개방성과 폐합성 유도
- 수공간과 전, 후정 계획 및 각 외부공간 성격 설정을 위한 인공 매개물 설치를 통한 공간의 풍요성 유도
- 보차분리

- 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설계를 통해 군민의 참여, 화합 유도

2) 형태, 외장 개념

- 매스의 균형화 처리로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유도
- 전통요소의 현대적 해석
- 수직, 수평요소의 절제된 선택을 통한 상징성 부여
- 지역성을 고려한 색채와 재료, 패턴 선택

3) 평면개념

- 매개 공간(매개물)을 통한 각 기능공간의 연계와 분절
- 단계별 사업 시행을 위한 평면개획

4) 단면개념

-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
- 자연광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공간의 풍요성 부여
- 내부공간의 위계성 부여 및 명확한 기능 공간의 조닝

동양그룹 본사사옥

동양그룹에서는 삼우설계, 원도시 건축, 창조건축 등 오피스텔 경험이 풍부한 4개의 사무소를 지명하여 현상설계를 실시하였다.

국내사무소 및 외국사무소와 협동설계를 통하여 안을 제출토록 한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창조건축+김태수(재미 건축가) 안을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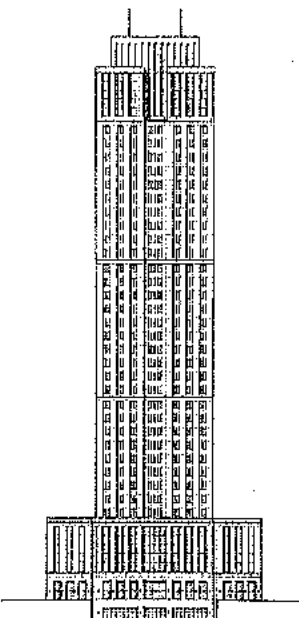
작으로 선정하였으며, 당선작외에 삼우설계+퍼킨스 윌, 원도시 건축+니켈센키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국제현상설계가 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응모작(삼우설계)안을 게재한다.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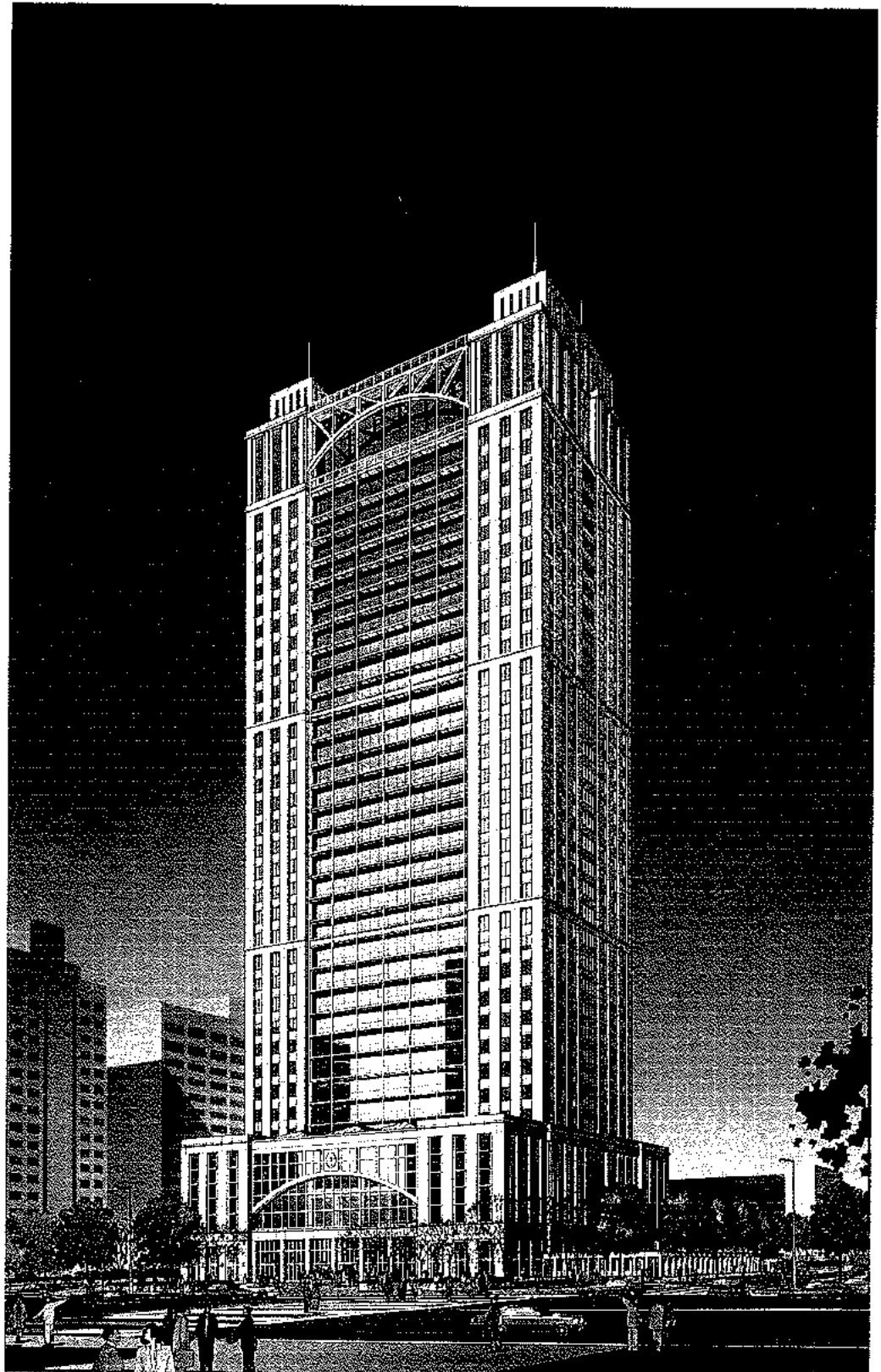
(주) 창조종합건축사
김태수 案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9-1 4, 5, 6, 8번지
지역·지구 / 일반 상업지역, 주차
장 정비지구, 1종미관지구,
방화지구, 재개발 사업지구
대지면적 / 9,439.1m²(도로용 공공
용지 1,090m² 별도)
건축면적 / 3,911.14m²
연면적 / 113,024.99m²
건폐율 / 41.44%
용적률 / 791.51%
건축규모 / 지상 35층, 지하 5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외장재료 / 화강석 버너구이,
화강석 물갈기, 반사유리,
Cler Anodized Aluminum



NORTH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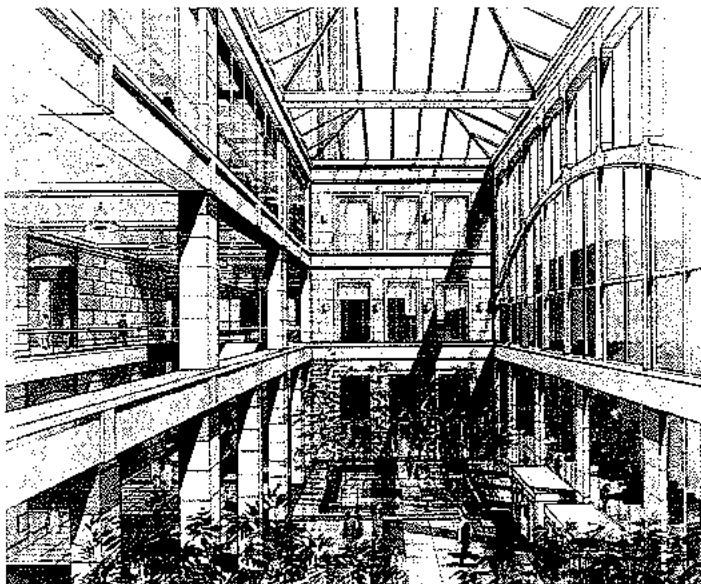
북동측 입면도



투시도



전면 주출입구측 투시도



실내투시도

- 조형성 :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과 성장표현의 조형미
- 상징성 : 기업이미지 표상화 및 강북지역의 Landmark 구현

■ 계획의 목표

- 서울시 도심의 업무 및 문화 기능 분담
- 고도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인텔리전트 빌딩계획 및 미래의 기술발전에 적응할 융통성 있는 건축계획
- 업무기능의 원활 및 기업이미지 구현
- 시민에게 개방적인 건축 및 조경계획
- 그룹 빌딩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경제성의 극대화

■ 기본개념

- 상징성을 가진 Monument : 강의 도시 서울 Monument 이미지
- 한강에서 동양 그룹 사옥의 조망 : 경관의 변화—Panoramic한 스카이라인
- 한강의 구조물인 다리와와의 연관성
- 기존의 건물과의 형태적 조화
- 강남·북을 시각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둥과 같은 건물
- 여의도와 마포의 연계성 부여

- 여의도의 금융사무실 지역과 마포로 사무실 지역의 연결의 도시적 쏠림
- 마포대교를 사이에 두고 여의도 Twin Tower와 함께 강남·북을 시각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둥 역할

- Tower : 수직성이 강조된 돌의 Tower 기둥 이미지
- Arch : Tower의 연결, 다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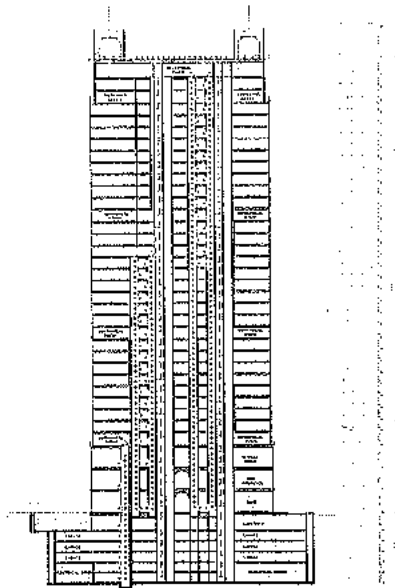
- 마포로의 강한 축(Axis)인식
- 선형성의 순응
- 마포로에 대한 정면성 부여

■ 배치계획

- 선형(마포로)의 도시형태 순응 : 직사각형 평면 형태
- 건물 전면의 오픈스페이스의 공공성 : 보행자 공간 할애
- 물리적 장애물이 없는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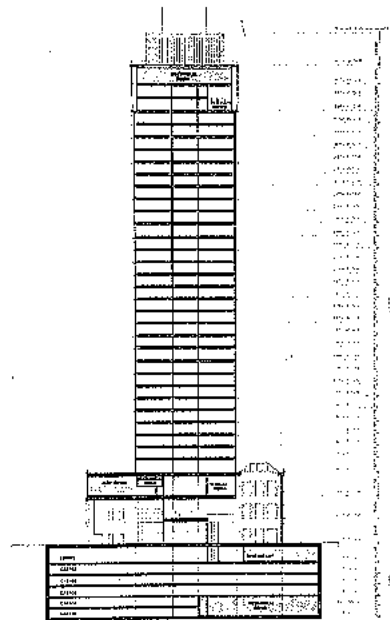
■ 계획의 의의

- 도시공간 정비를 위한 계개발 사업→도시기능부여
-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
- 부도심 기능의 활성화, 도시기능 불균형 해소
- 현대적인 업무, 문화시설 집중육성
- 최첨단 정보시스템의 인텔리전트 빌딩 건립
- 지역 주민의 문화, 휴식을 위한 종합 문화센터 제공
- 기업이미지 전달의 매체 역할 / 장소성, 조형성, 상징성 표현
- 장소성 : 주변 도시환경과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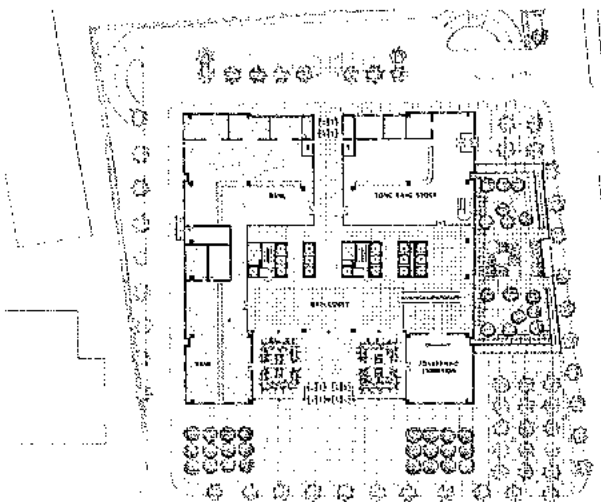
SECTION A

단면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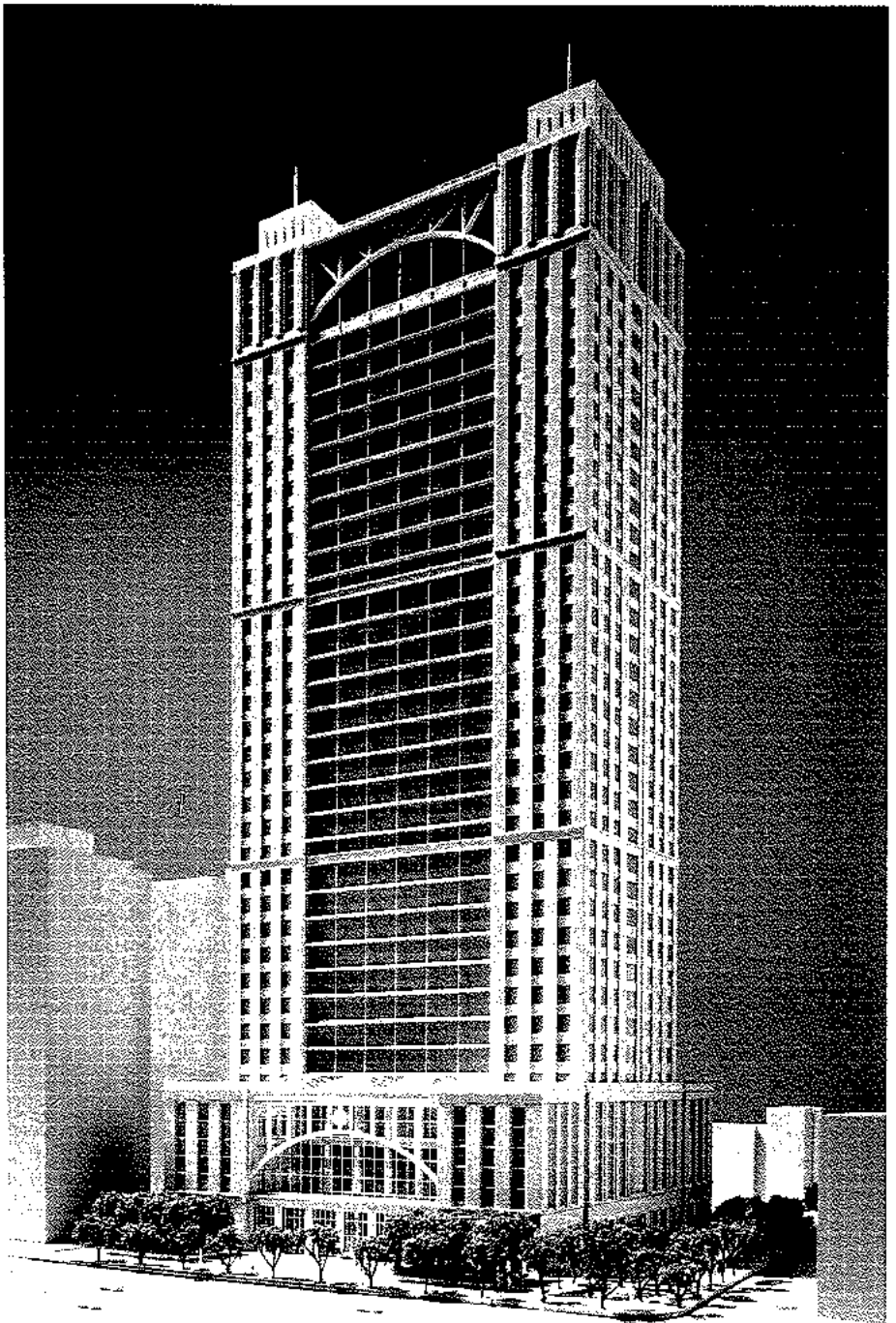


SECTION B

단면도 II



배치 및 1층 평면도



모형도

공간

-Security와 공공성의 조화 : Entrance Garden의 매개공간 Layer 확보

• Sunken Garden

-가로와 건물 주출입구를 단절하지 않고 광장을 통해 가로와 연결
-이용자 동선 유입용이

■ 평면계획

• 모듈계획

기준 모듈 1.8m×1.8m의 합리성

-3.6m×3.6m-Private Office

-간막이벽 90cm 단위

-조명, 천정 재료 60cm 단위 생산등 시공상의 경제성
-업무공간 변화의 융통성

• Core 계획

: 좌우대칭의 중앙 코어형

-사무실의 채광유리

-사무실에서 코어에 이르는 동선길이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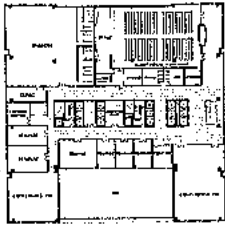
-구조적 이점

최소한의 구조체만을 필요로 하는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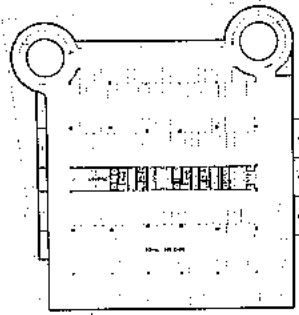
• 저층부 계획/공공용도

-Entrance Garden의 매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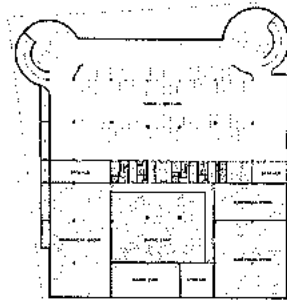
: Security와 공공성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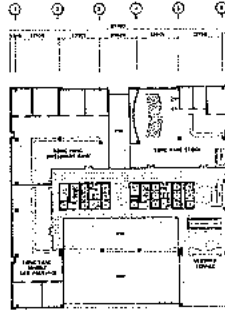
3R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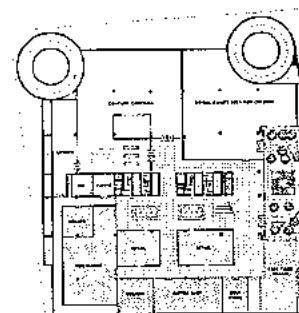
8-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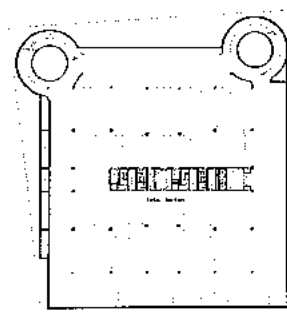
8-3RD MEZZAINE FLOOR PLAN



2ND FLOOR PLAN



8-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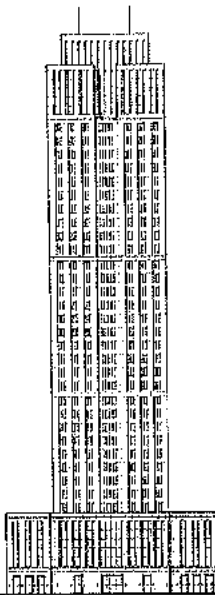


8-3RD 4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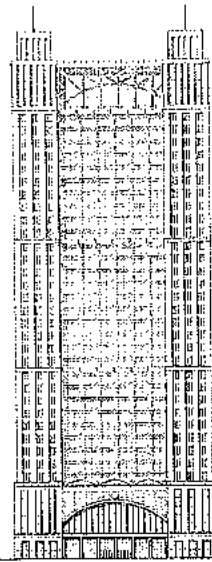
2,3층 평면도

지하 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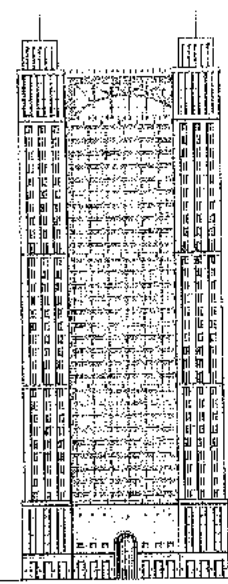
지하 3,5층 평면도



남서측 입면도



남동측 입면도



북서측 입면도

- 3층 높이의 대나무 식재
-Skylight에 의한 쾌적한 공간
-몸체 Tower에서 앞뒤 14.4m 확보: 회사의 공공용도에 적당한 큰 실내면적 제공
- 기존층 계획/사무실
-기존층 규모의 적정성 판단 61.5m×34.5m(614평)의 직사각형평면
-1.8m×1.8m의 모듈
-사무실 면적비(코어를 제외한)
·지상 4-19층: 86.3%
·지상 20-32층: 88.3%

- 사무실 길이:
·최소 12m
·복도설치시 10.2m(복도 폭 1.8m)
·상층부 계획/회장실, Cooling Tower
-회장실
30m 길이의 Structural Truss의 연결부: 외장의 가장 상징적 공간
-Cooling Tower의 디자인 계획: 수직성 강조

■형태 및 입면 계획

- 건물의 구성형태: 고전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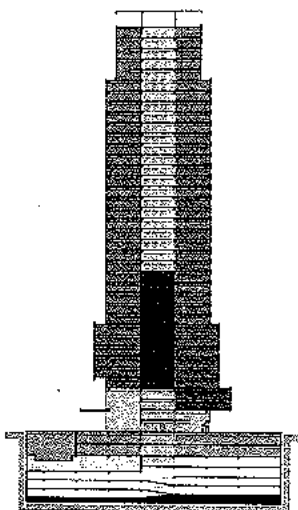
- 입면표현방법:
대조되는 요소들의 조화
-기단, 몸체, 머리부분의 명확한 분절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명확한 구분
-묵직한 돌의 고전적 표현과 유리 및 Aluminum이 갖는 기계적 정밀함이 만드는 조화
-Monumentality를 지니는 거대한 스케일의 Arch와 그 밑에 걸려있는 정교한 루버 Curtain의 대비

■단면 및 엘리베이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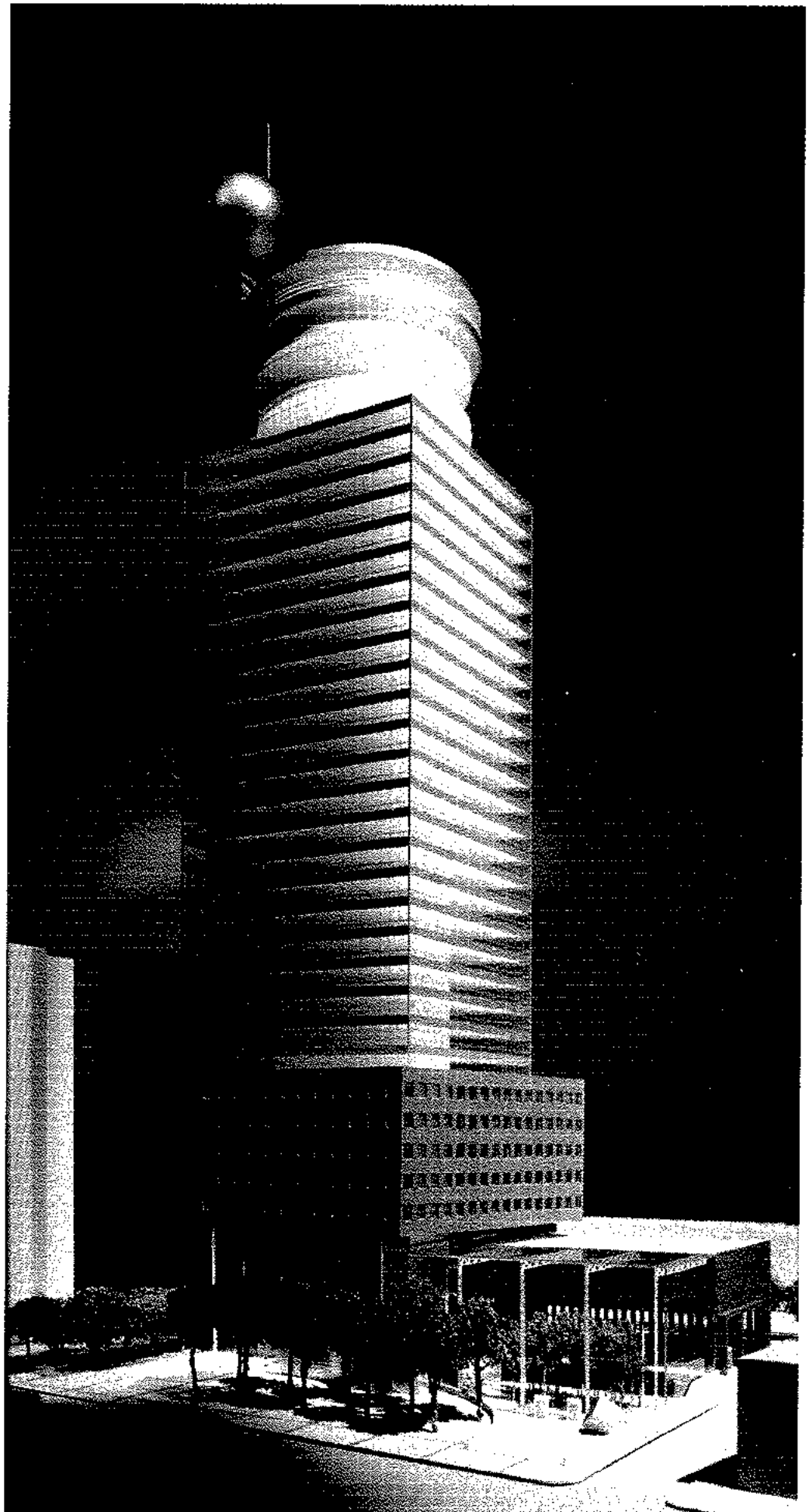
- 층고계획
-I.B.S 기본 층고 도입·유지
•저층부 상·하층의 Open 확성된 공간감 형성
•Sunken Garden 설치
지하층 동선 유입 및 일조권 확보
•엘리베이터계획
-엘리베이터 군관리계획에 의한 원활한 수직 동선계획
-저층부와 (1층-19층) 고층부 (20층-34층) 구분
-화물용, 비상용 엘리베이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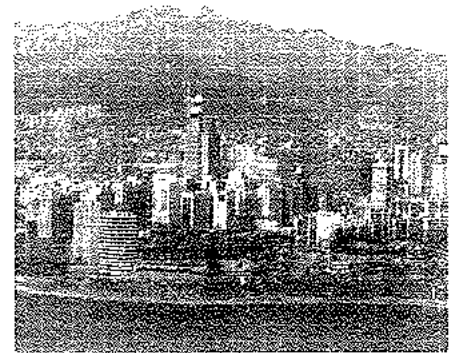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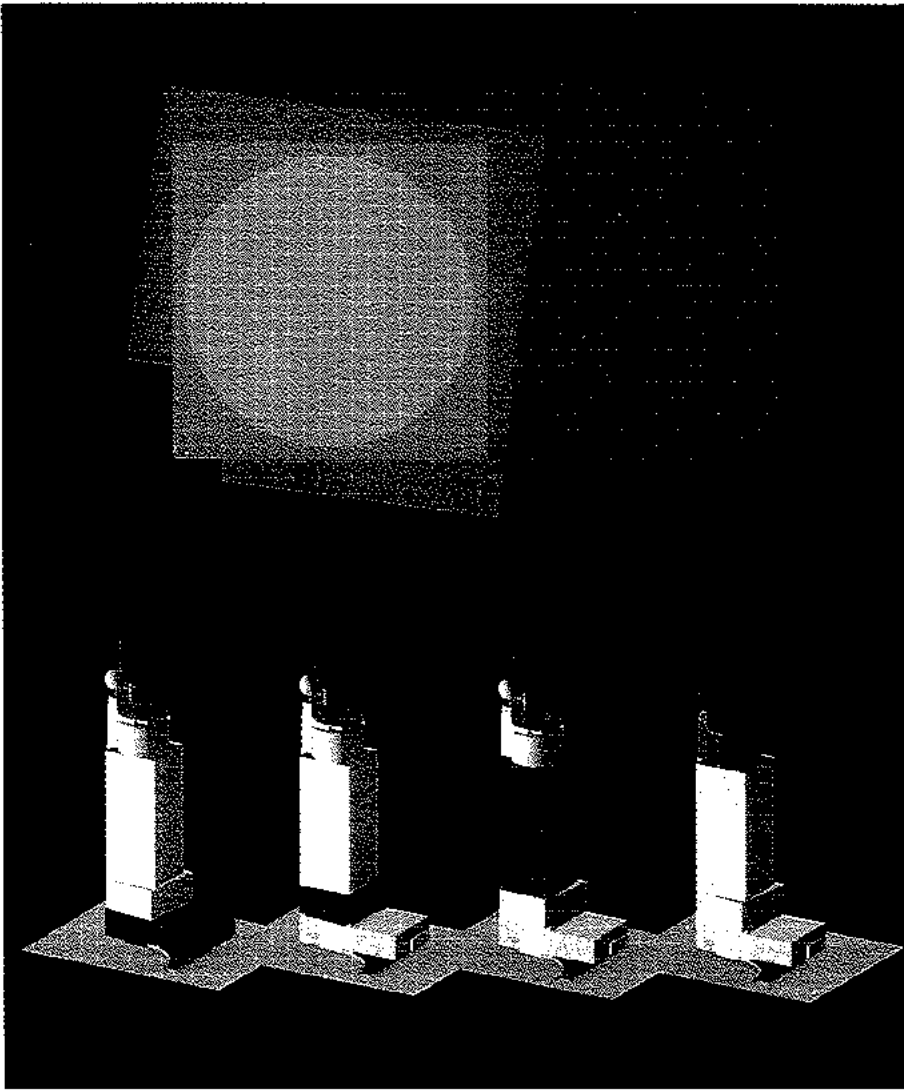
응모작
삼우설계+퍼킨스윌 案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대지면적 / 9,439.1㎡
건축면적 / 3,756.72㎡
연면적 / 110,863.5㎡
건폐율 / 39.8%
용적률 / 698.8%
층수 / 지상 38층, 지하 6층
주차대수 / 9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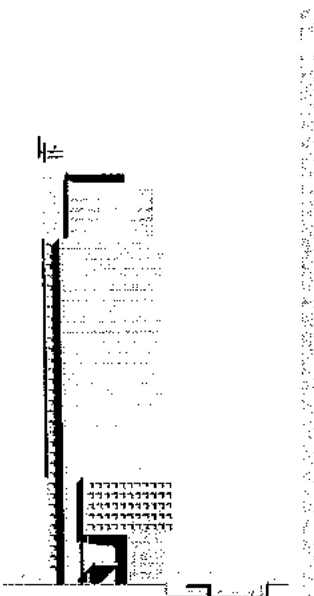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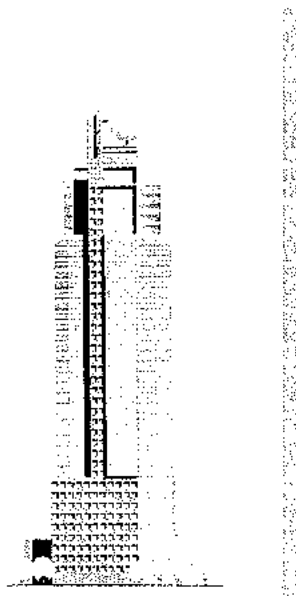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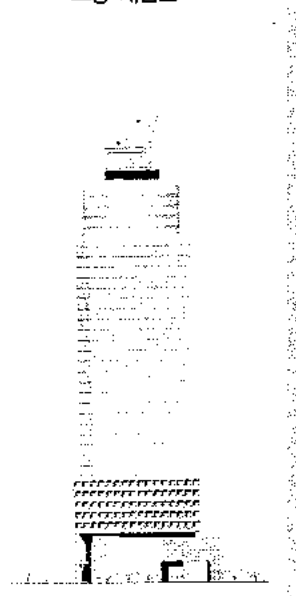
조형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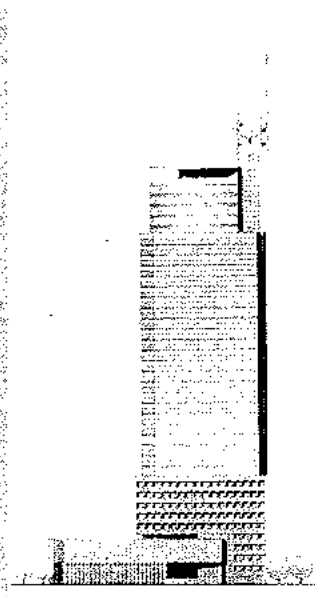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 입지 현황분석

광역권 분석

- CBD지역과 여의도 상업지역을 잇는 도심 발전축의 중심 가로인 귀빈로 상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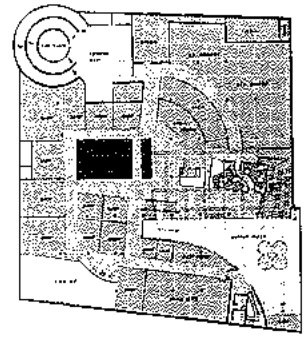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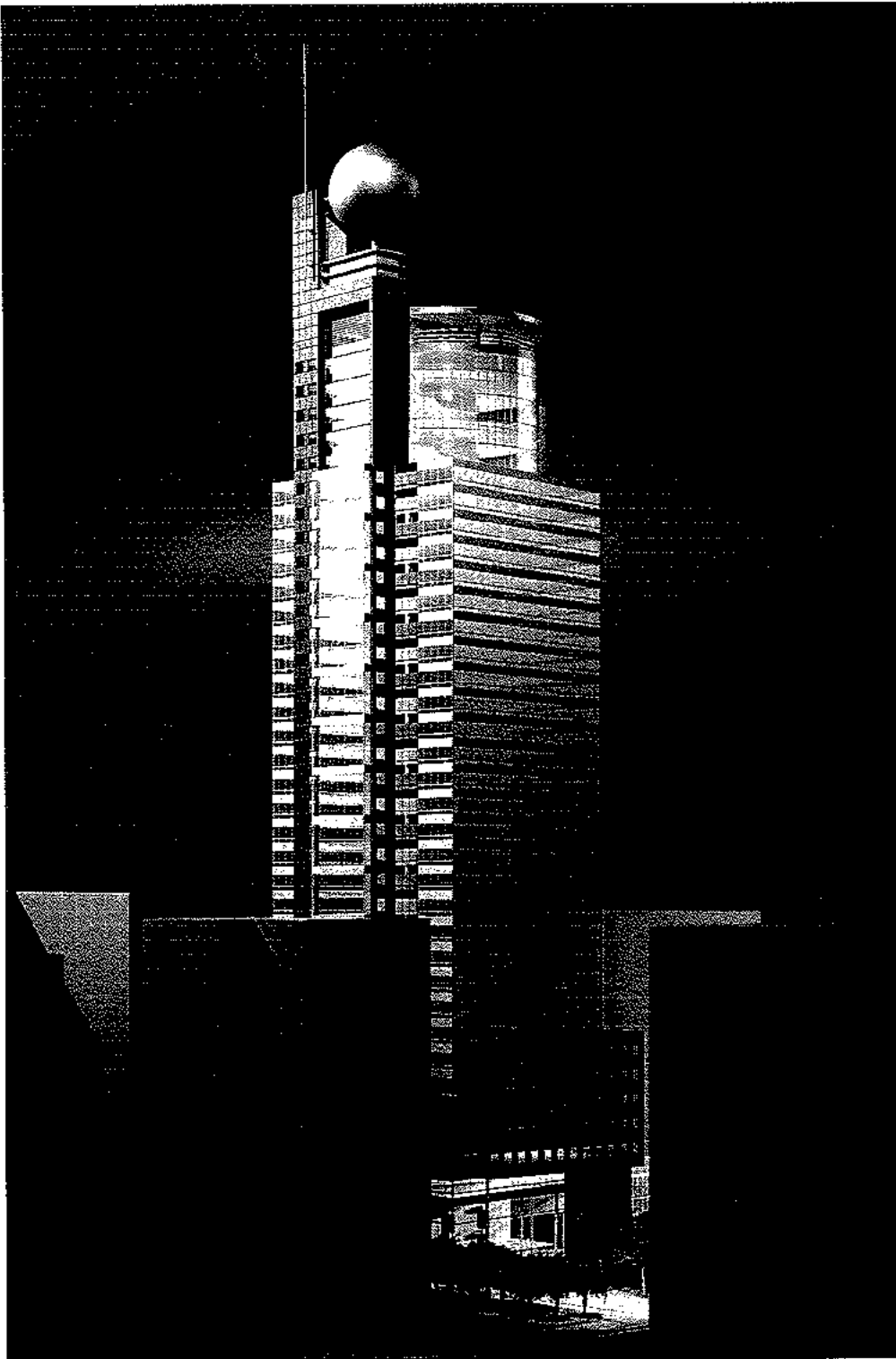
한다.

- 도시계획상 도심 5km 이내에 위치하고, 여의도 지역과 인접해 있어 마포 생활권의 새로운 중심 지역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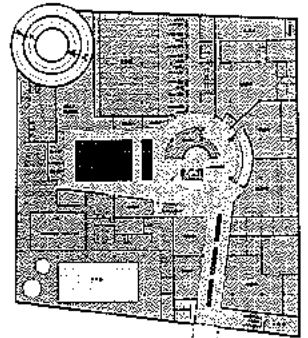
주변현황분석

- 주도로와 측면 도로에 의해 대지가 마름모 형태로 이루어져 Urban Context상 2개의 축을 형성한다.

- 향후 지하철 5호선 완공시 주도로 지하에 조성될 지하상가와 연결을 고려한다.
- 대지 남측에 16,17층의 건물들이 가로막고 있어 주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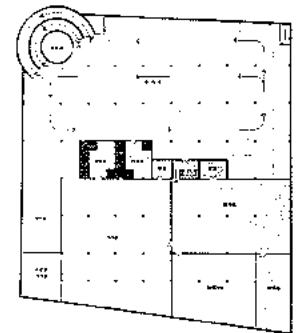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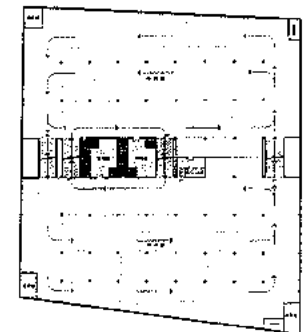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주요 시설물 위치와 면적



지하 3층 평면도



지하 5~8층 평면도

에서의 접근 View는 여의도 쪽보다 마포쪽에서 보여 있다.

- 주도로의 교통량이 많고 내지 전면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북서측 도로와 측면 도로를 이용한 주차 진출입 동선을 고려함이 효과적이다.

■ 계획개념

역동(Dynamic)

- 인접한 도로의 축에 따라 변화되는 Mass는 정적인 건축을 동적으로 만들며, 기업의 끊임없는 변신과 발전을 표방한다.

조화(Harmony)

- 상호 대비가 되는 건축적인 표현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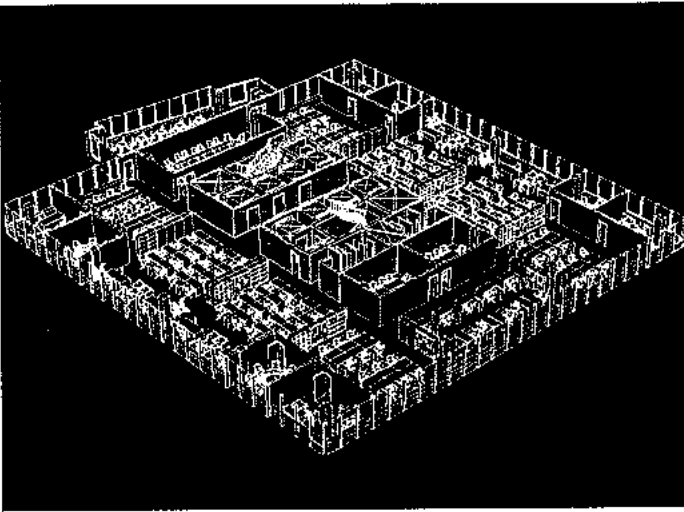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그룹의 기업정신을 표현한다.

- 상층부(Head) : Hightech이미지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회사를 상징한다.
- 중층부(Body) : 고도의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하며 기업의 합목적성을 표현한다.
- 저층부(Base) :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이미지는 고객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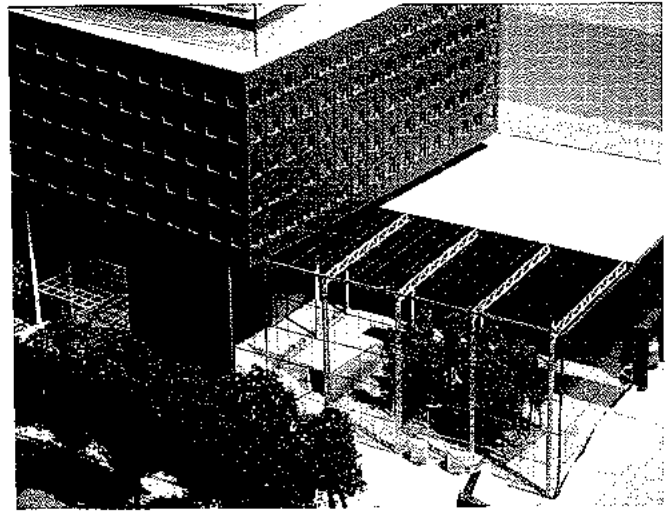
한 신뢰감을 나타내며 동양그룹의 기간산업이 그 바탕임을 상징한다.

개성(Identity)

- 차별화를 통한 Unique한 건축 형태는 도시의 Landmark로서 인지성을 높인다.



엑소노 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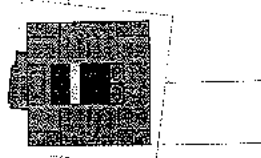
저층부 Model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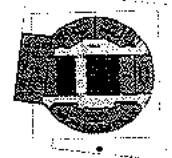
4층 평면도



고층부 기본층 평면도(11~13층)



3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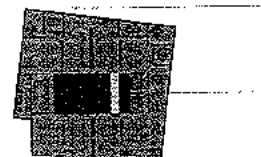
3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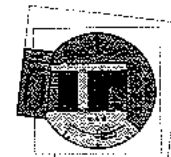
1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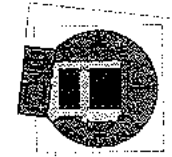
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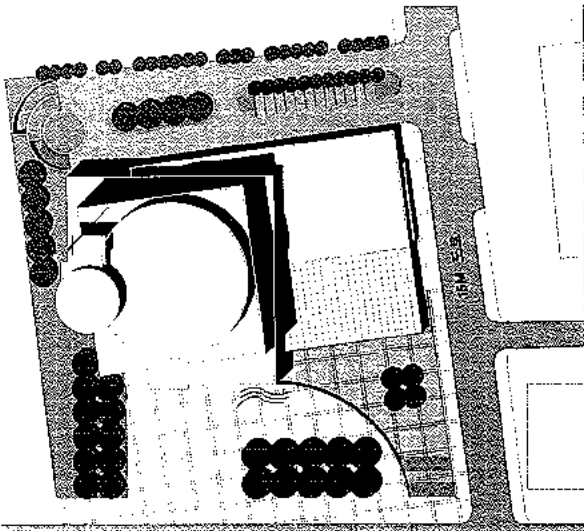
저층부 기본층 평면도(6~10층)



34층 평면도



36층 평면도



배치도

쾌적성(Amenity)

- 저층부 Atrium은 건물 내부 공간에 활력을 주며 건축의 질을 높이는 요소이다.
- 기준층의 Refresh Corner는 남측전망을 조망할 수 있으며,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Plaza, 환경조형물, Sunken Garden, 식재계획 등을 통하여 도시인의 휴식과 만남의

친근한 외부공간을 제공한다.

사무공간 구성

- 기능적인 사무공간에 Dynamic한 Amenity공간을 적절히 구성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Office건물을 제공한다.
- 건물 최상부에 국제 금융정보 센터를 배치하여 사용자의 만족도와 사옥의 질적 수준

을 극대화한다.

- 천정고 2.7m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옥외공간계획

- Plaza는 진입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다양한 Event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Sunken Garden에는 Falling Water를 설치하여 도시 소음을 차단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반옥외적 외부공간을 제공한다
- 건물 후면의 차량 출입 광장에는 가능한 옥외 주차를 지양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 안내시설, 휴게시설, 경계 및 보호시설, 조명시설, 수경시설 등은 기능과 환경적 조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 조경계획 프로그램과 색채계획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물과 옥외공간의 Image통일을 꾀한다.

조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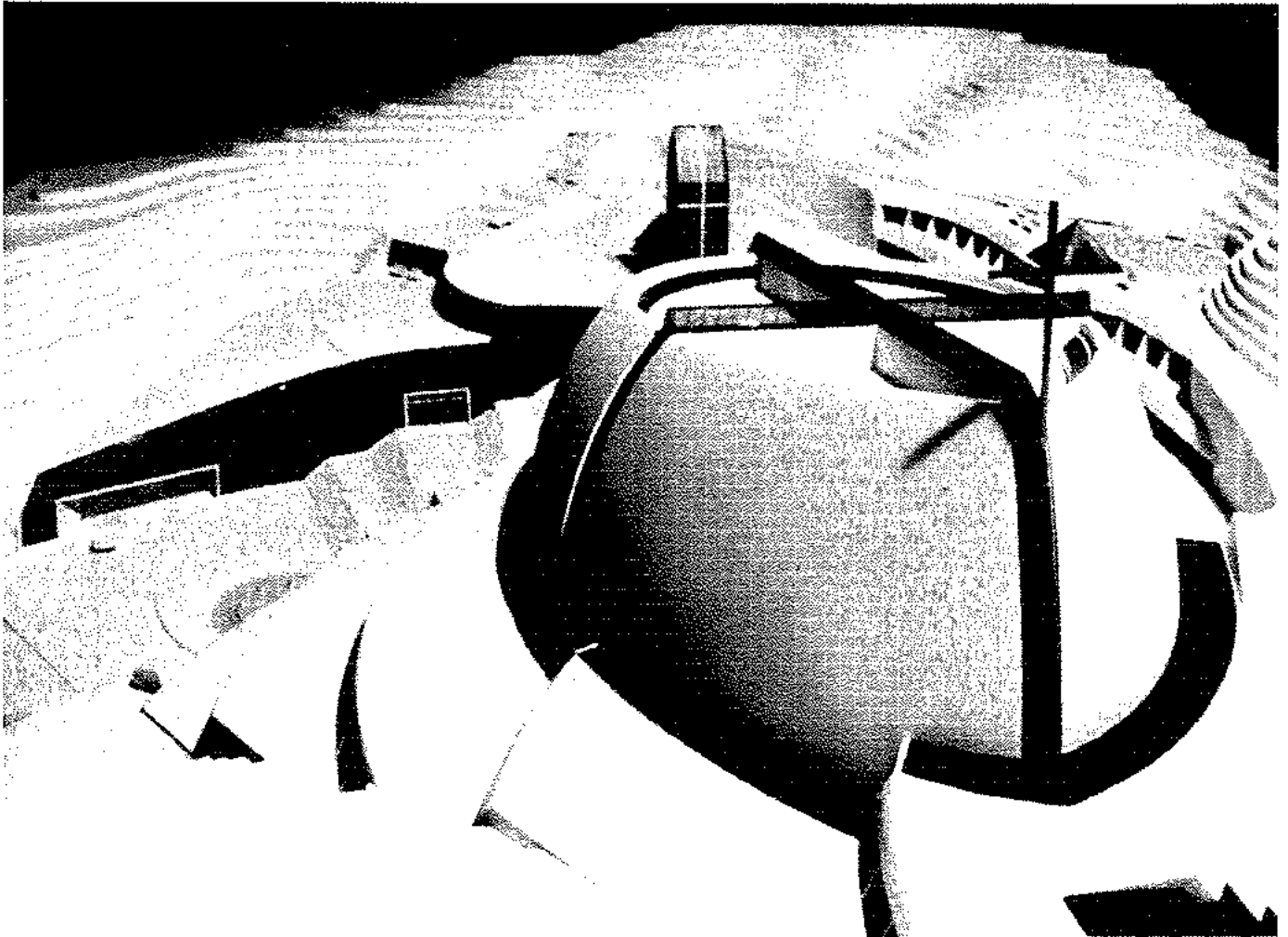
- 21세기를 향하여 변화, 도약하는 동양그룹의 Image를 미래지향적인 Unique한 형태로 표현한다.
- 시대적으로는 2000년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조형적인 건축물로 계획한다.
- 인접 도로의 축에 따라 건물의 기본 축을 변화시켜 기업의 역동성을 부각시킨다.
- 건물 최상부의 실린더형 Mass와 옥탑위의 동양의 Symbol이 서울의 Landmark로서 인지성을 제고하며, 미래지향적인 기업정신을 표현한다.

할렐루야 교회

20세기말 분당 신도시 야탑산 기슭에 세워질 할렐루야의 새 성전 건립을 위해 지난 3월 10일까지 현상설계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무소에서 응모하여 그 중 (주)정림건축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발표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인그룹건

축안이 선정되었다.

이 새 성전은 종래 교회건축에서 탈피, 선교·문화·청소년·가족 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교회의 완성된 모델로 제시되었다.



당선작

(주)정림종합건축사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지역, 지구 / 자연녹지, 종교시설
부지
대지면적 / 12,686㎡
건축면적 / 2,4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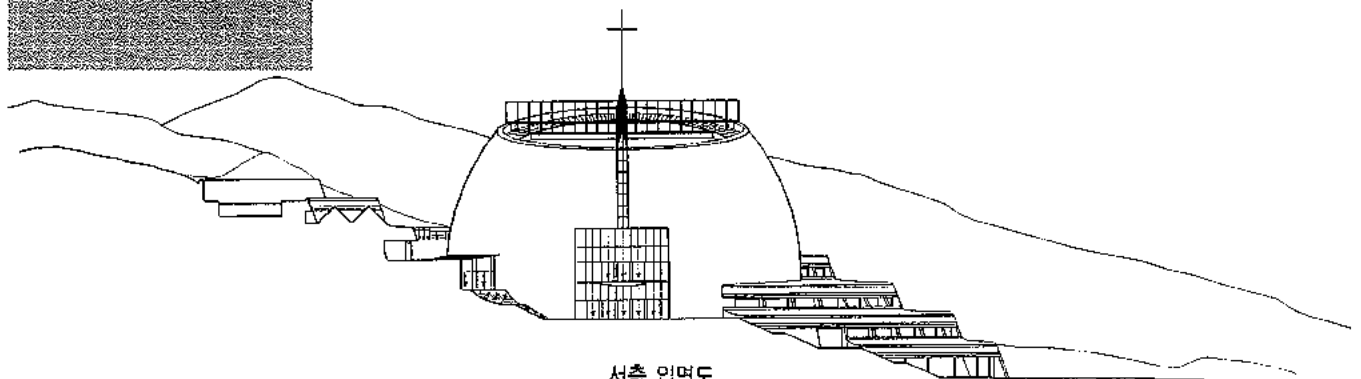
연면적 / 58,514.5㎡
건폐율 / 19.2%
용적률 / 21.3%
규모 / 지하 5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부 설공조

외부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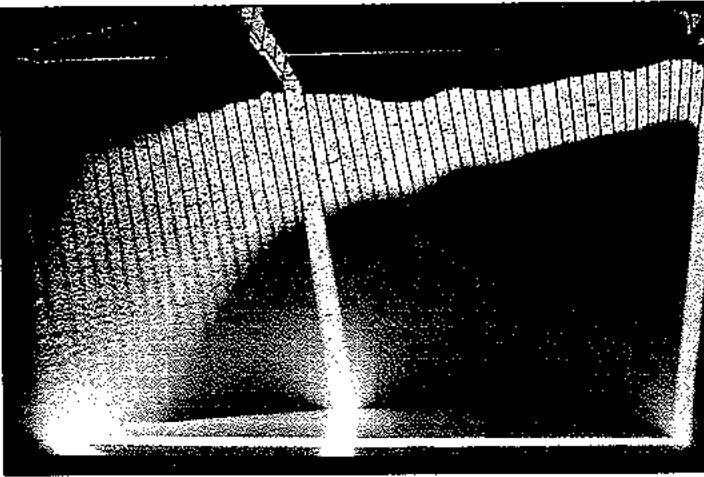
기단 / 화강석 옥두기+미너구이

본당 / 백색 화강석 미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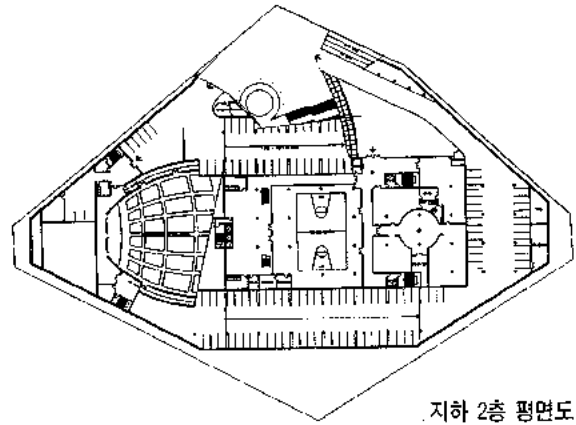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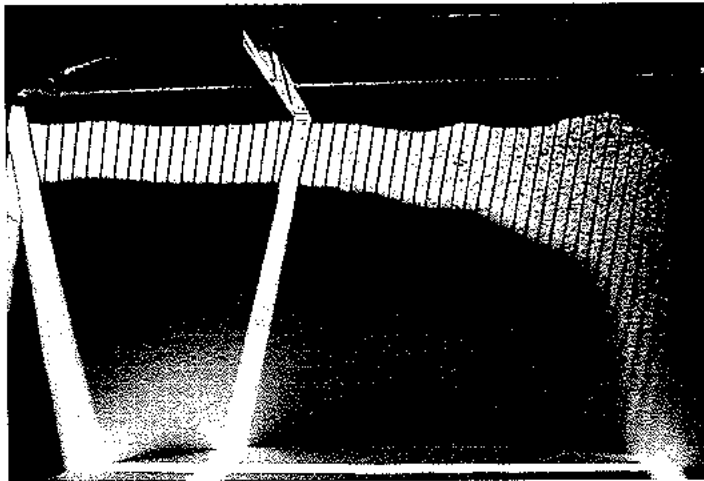
스터디 모델—주예배시간(11시~1시) 동안의 본당내부 자연채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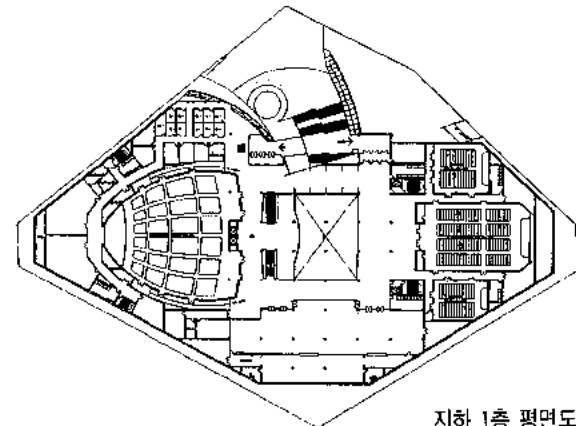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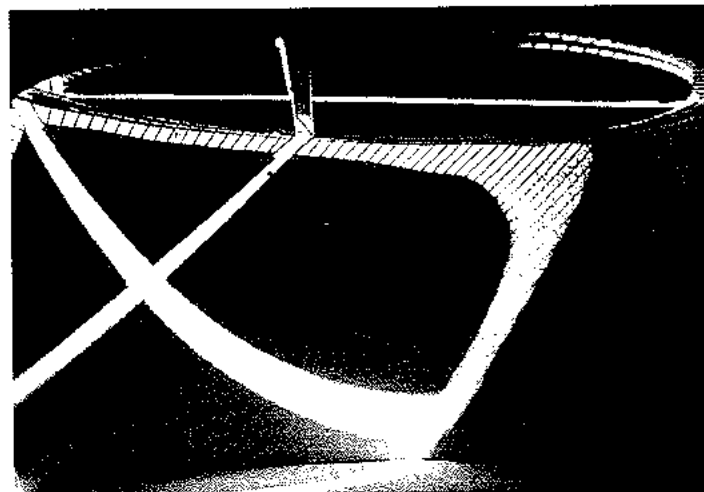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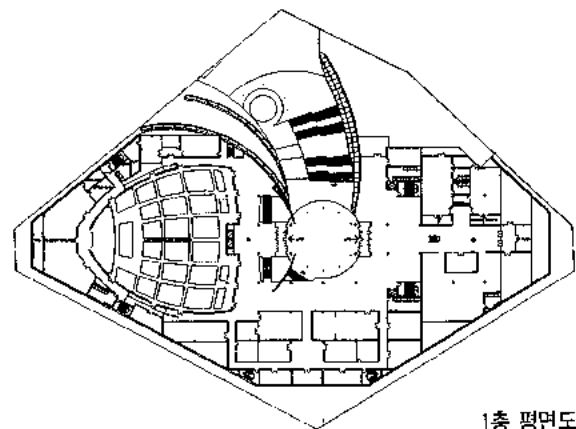
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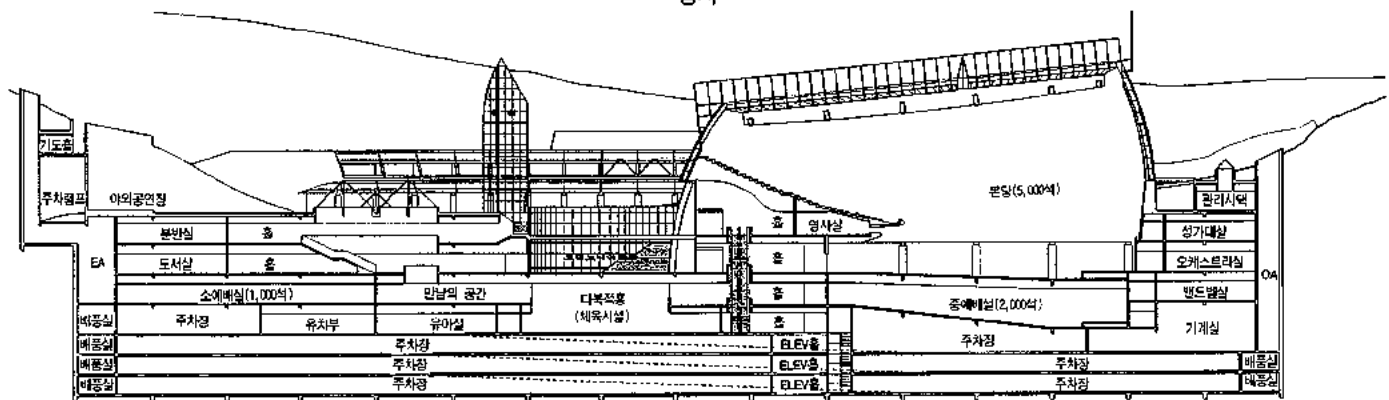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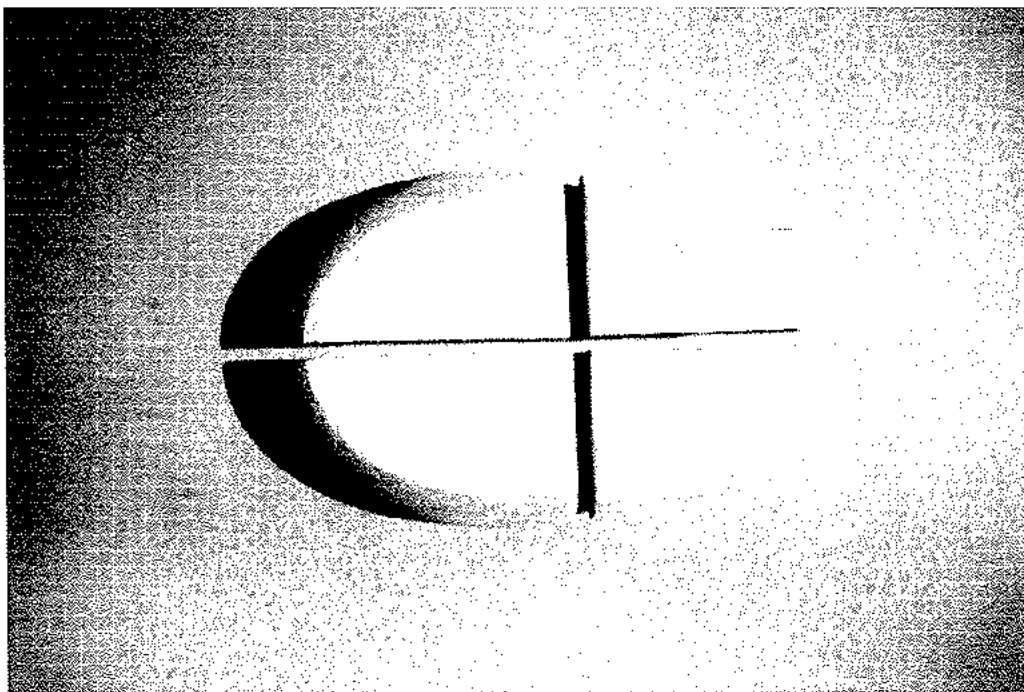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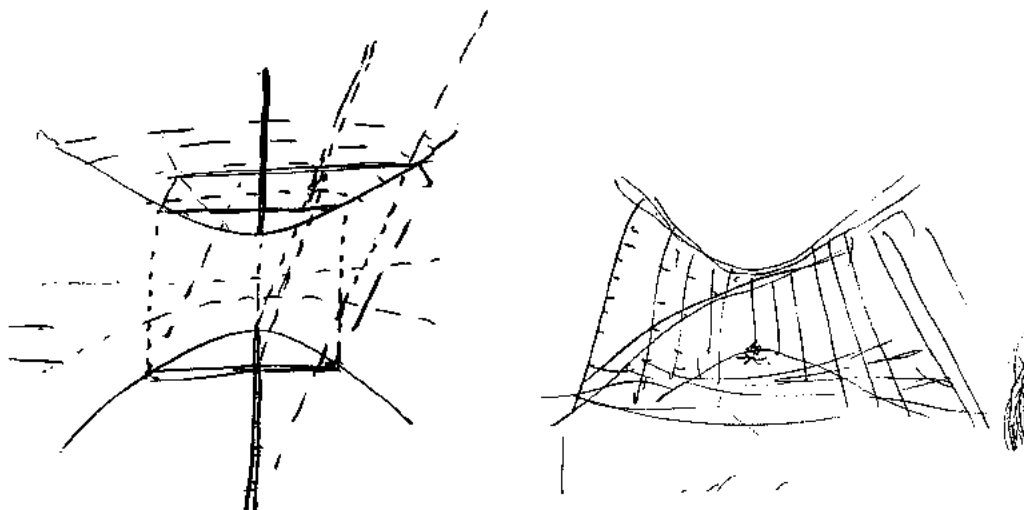
단면도



서흑 조감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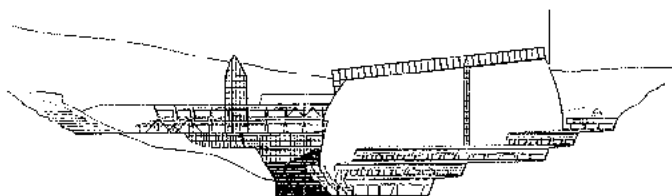


본당 Concept Model



본당내부—십자가 천장으로부터 떨어지는 빛 스케치

본당내부 스케치



남측입면도

■ 21세기의 방주

20세기말 분당 신도시 야탑산 기슭에 지어질 할렐루야 교회 새 성전은 종래 예배와 최소한의 부속시설만을 위한 교회건축에서 탈피하여, 선교·문화·청소년·가족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교회의 완성된 모델로 제안된다.

우리의 계획은 지리적, 시대적,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맥락을 바탕으로 21세기 교

회의 구성 개념이 될 세개의 카테고리에 의해 진행된다.

첫째, 21세기 한국교회의 이미지 표현이다. 전통적인 교회의 유형(類型)을(진입로, 종탑, 본당과 빛 등) 전체의 구성원리로 하고, 물질주의 시대에 부족한 정신적인 심볼리즘을 현대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노아의 방주—성서에 나오는 '아라랏산'에 정박해 있는 방주를 상징하는 교회 형태의

주변환경과 하늘과 땅, 태양과 달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21세기를 위한 교회의 형태로 제안된다.

·순례자의 길—교회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며, 교회로 가는 길은 속의 경계없이 성의 세계로 가는 과정이 된다. '순례자의 길'로 명명된 진입로는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가 시작됨을 암시하는 시·공간의 투명한 배일이다. 수공간(水空間)은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 아래의 삼도천(三途川)의 세계를 암시한다.

·말씀의 빛—교회는 말씀으로 인하여 있으며, 모든 말씀은 빛으로 형상화된다. 종교적 감동은 엄밀한 비례로 조정된 정

적인 공간에 리듬을 주는 빛이 감정에 작용함으로써 얻어진다. 타원형 평면의 상부 천장에서 만곡된 3차원 벽면을 따라 떨어지는 빛이 계절에 따라 풍부한 변화를 한다.

둘째, 훌륭한 주변환경에 조화되는 '자연으로서의 건축' 개념이다. 21세기의 건축은 자연으로 회귀한다. 오랫동안 기술은 자연을 황폐시켜 왔으나, 미래에 있어서의 기술은 자연과 조화(調和), 즉 동화(同化)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교회의 형태는 21세기의 기술과 자연을 동시에 표상하고,登高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구성된 지하부분은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자연의 일부가 되며, 경계는 모호하게 처리된다. 진입시 본당이 주변 산세에 비해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상부를 곡면처리하고 가벼운 느낌의 백색 화강석을 사용하여 무게감을 줄임으로써 자연, 건물과 방문자가 친근한 관계가 되도록 한다. 합리적인 모듈에 의해 구획된 지하공간 구석구석까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도달한다.

셋째, 동시 수용인원 10,000여 명이 보이는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와 특별한 해석에 의한 시스템 구축이다.

·공간의 위계화—대규모 교회에서 부족하기 쉬운 친교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동선의 심층은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집중보다는 다양한 층로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공간내에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홀과 통로 등을 위계 있게 구성한다.

·효율을 극대화시킨 주차계획—주차효율을 높이기 위해 램프 사용대신에 경사로 주차방식을 채택하고, 주차 통로폭을 8m로 하여 통로에의 양측 평행 가상 주차 포함 최대주차대수 1,544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차면적 8,900평)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등 미래형 건물에 대응하는 각종 설비시스템을 구축한다.

할렐루야교회 새성전



조감도

우수작

(주) 일크림
종합건축사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역·지구 / 자인녹지, 종교시설
부지

대지면적 / 12,686㎡

건축면적 / 2,458.89㎡

연면적 / 57,28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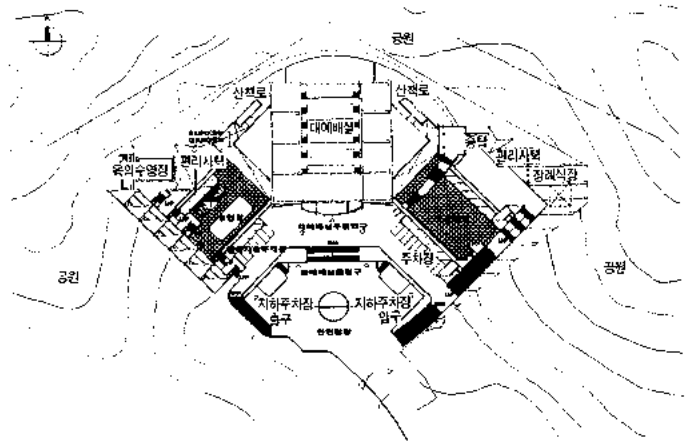
건폐율 / 19.69%

용적률 / 48.05%

규모 / 지하 6층, 지상 5층, 옥탑 1
층

구조 /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THK50mm 화강석 비너
구이, 몰탈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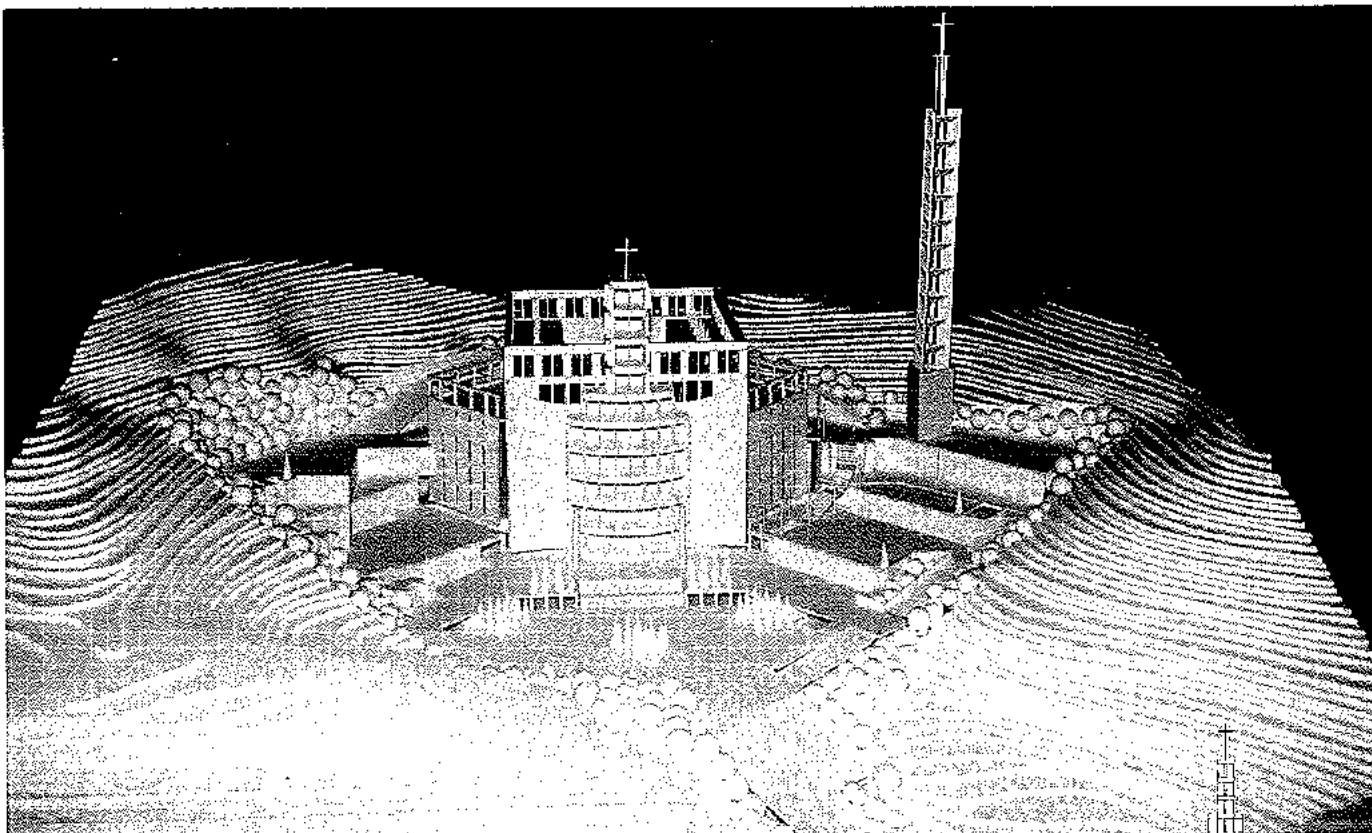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역대하 6 : 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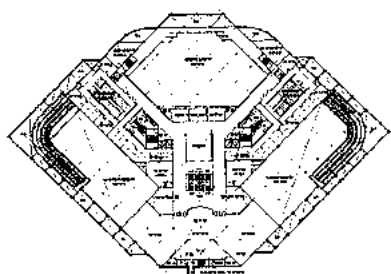
섬마을, 농촌, 두메산골, 도시 그 어느 곳에서건 주의 성실한 종들이 주의 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과 간구가 있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부름을 받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된다.

2000년대를 향한 Vision을 가진 교회로서 예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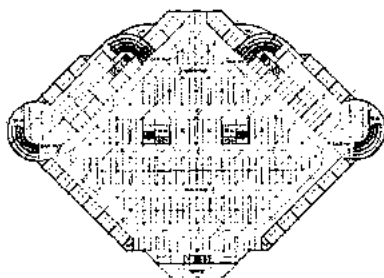
교육과 친교 및 봉사와 선교의 장을 마련하며 특별히 진전한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해 지역문화센터와 청소년센터 그리고 가족센터 및수양회관 등으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선도하고자 하는 귀한 새성전 공모설계에 미력이나마 참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 교회앞에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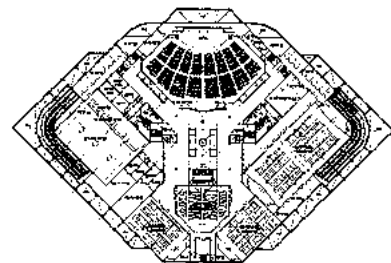
모형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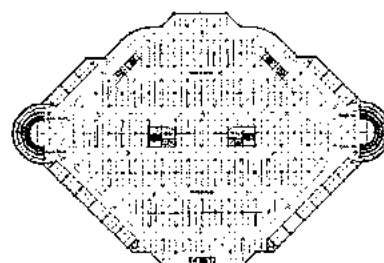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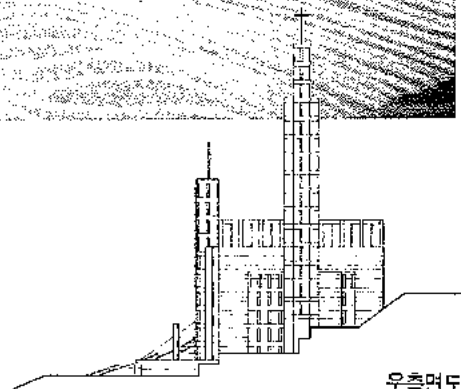
지하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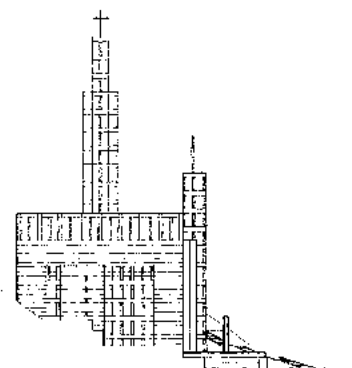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4층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감사드리며 한달여동안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며 젊은 건축인들과 함께 밤을 낮삼아 작업한 결과물들을 할렐루야교회 새성전의 공모설계안으로 제출하였다.

현숙한 아내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설계를 건축주가 받아본다고 비는 것은 여간한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대 1만명 이상의 성도가 동시에 반

복적으로 사용되는 대공간을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공간을 구성 연출하는 것은 대단한 작업이 요구되었으며, 교회 설계를 자주 대하는 입장에서 매우 흥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서 한가지 배운 점은 불특정 다수가 일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최대한 단순 명료하게 공간을 처리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쉽게 인식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연면적 17,000평중 약 2,000평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에서 처리되어야 했기에 더욱 절실한 과제였다.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결과에 감사드린다.

■배치기념

상징성의 표출

•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상

징하는 물고기의 형상화
• 종탑을 통한 성삼위의 상징
• 시각적인 인지성의 확보
—대지우측모퉁이에 종탑을 위치
—진입로로부터 보행자 및 차량진입시 시선의 유도
• 전통적 공간의 구성방법을 도입, 한국적 건축의 구현 공간의 구성
• 전통공간의 개념을 도입 복합적이며 유기적 공간의



- 유기적 공간에 대한 분석
- 과정적 매개공간을 매개공간과 교차시키며 자연을 도입
- 동선의 연결과 공간의 분절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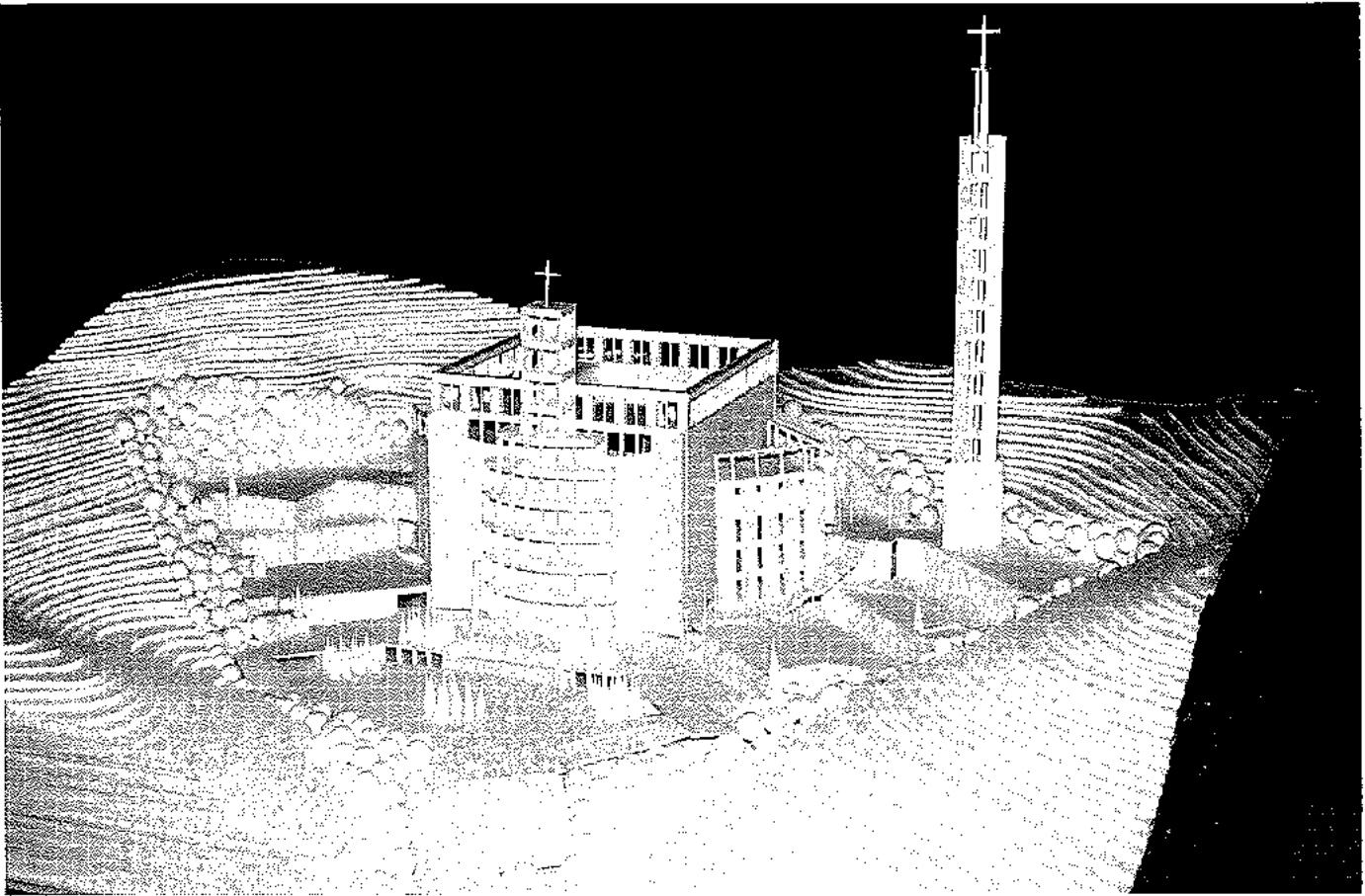
차량동선
• 대지동측 모퉁이 부분을 주차

- **이용자동선과 분리**
- **진입도로의 가변차선계획** : 대규모 차량 소동을 위해 10m 진입도로를 가변차선으로 제안
- **지하주차로 폭을 2차선으로 확보하여 시간당 3,000대를 처리토록 확보**
- **장래차량동선을 위해 주차장 끝부분에 장래식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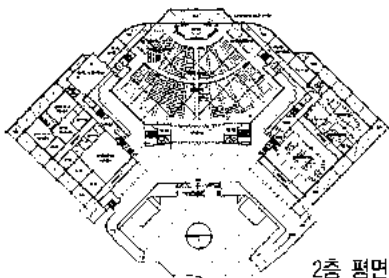
- 광장부분으로부터 차량동선 분리
- 매개공간인 Deck를 설치하여 시설이용별 동선배분의 인지도 확보
- 옥외시설은 주차장반대편, 대지서측에 위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독립공간 유도

- 실의 배치는 중앙홀을 중심으로 십자형으로 기능공간별 조닝
- 각층의 홀공간을 Open공간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동선 혼란을 방지하고 각 기능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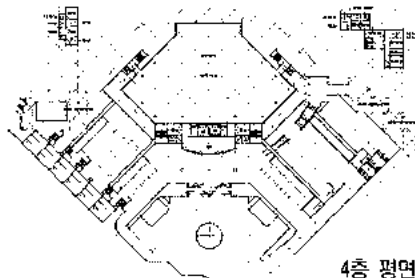
• 聖스러운 성소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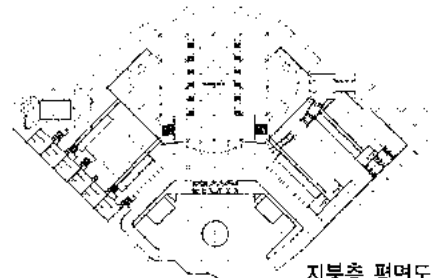
모형도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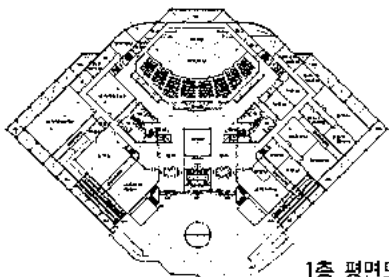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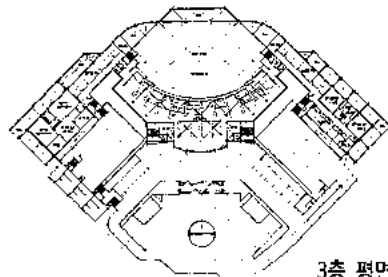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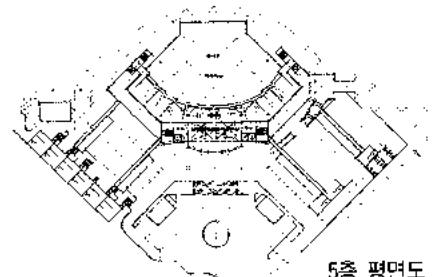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를 이미지화
- High Place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하학적 위계로서 추구
- 미래지향적 진취성과 개신교의 이미지라는 다의적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 기둥을 도입하여 수직상승의 진취적 이미지 표출
- 교회의 상징의 종탑을 성스러운 상징인 빛의 은총 의미

를 담은 성암의 이미지를 형상화 야간조명에 의해 시각적 감응의 효과를 증대→본당과 분리배치

■ 단면계획

- 주변환경과의 조화
 - 대지현황 레벨차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건축 공간을 Set-back처리
 - 대지북측의 숲을 배경으로

대예배실 상부를 옥외집회소로 이용

- 대규모 천교공간 확보
 - 대식당을 만남의 광장화, 지역사회시설이 배치된 지하 2층 중앙홀의 중간에 배치, 일련의 연속된 만남의 장소를 제공
- 시각에 대한 고려
 - 중예배실 및 대예배실의 좌석에 대한 시선 확보 기능도

록 단면높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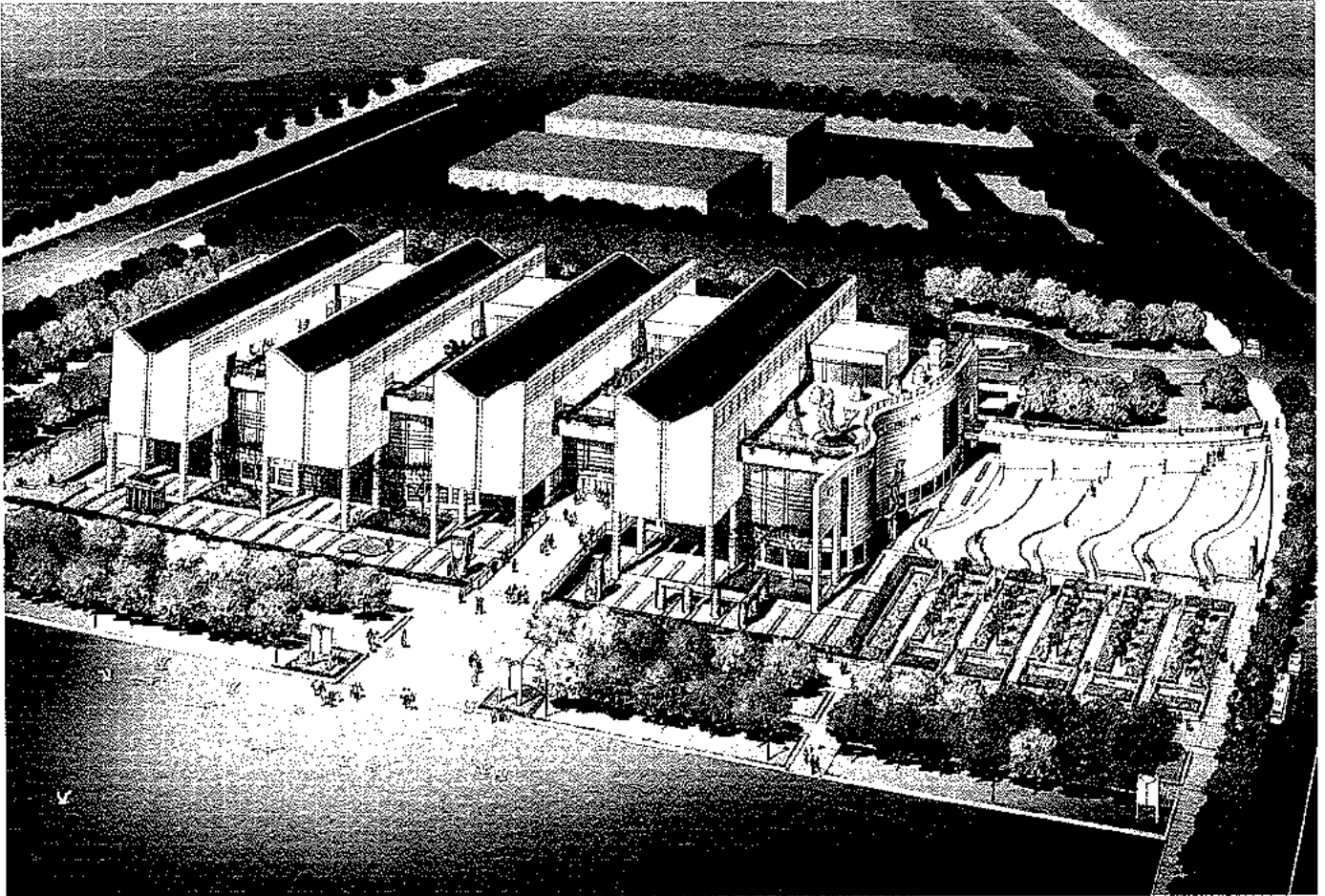
- 수직동선의 처리
 - 예배관계동선과 이용자수직동선을 분리 예배 관계동선은 강대로 별도의 직접출입토록 고려
- 경제성
 - 건물의 Set-back처리로 인해 지하단면 깊이의 최소화 가능

부산 시립 미술관

부산 직할시에서는 해운대구 우동 소재 올림픽 공원내에 부산시립미술관을 건립키로 하고 이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올림픽공원내 놀이마당시설 철거후 놀이마당 위치에 가능한 건물을 서남향으로 배치하되 공원 위치 변경시에도 적합하도록 계획할 것,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살려 미술관의 상징성을 표현하되 기능성, 경제성을 중시하여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계획할 것, 주변환경과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2천년대의 현대미술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획할 것 등이 지침으로 제시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총 12개 사무소가 참가하여 일신건축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수작으로는 신도시 건축 안을, 가작으로는 금림건축과 세진건축 안을 각각 선정하였다.



당선작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
(대표 이용훈)

대지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올림픽
공원내)

대지면적 / 9,917m²

건축면적 / 7,398.7m²

연면적 / 16,43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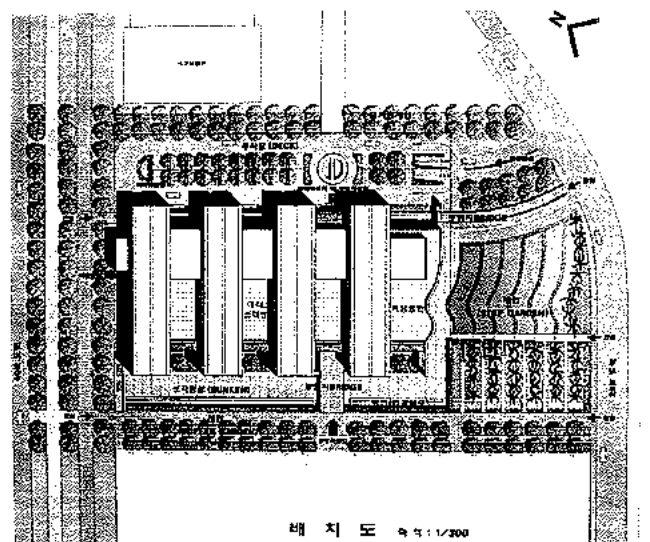
건폐율 / 6.93%

용적률 / 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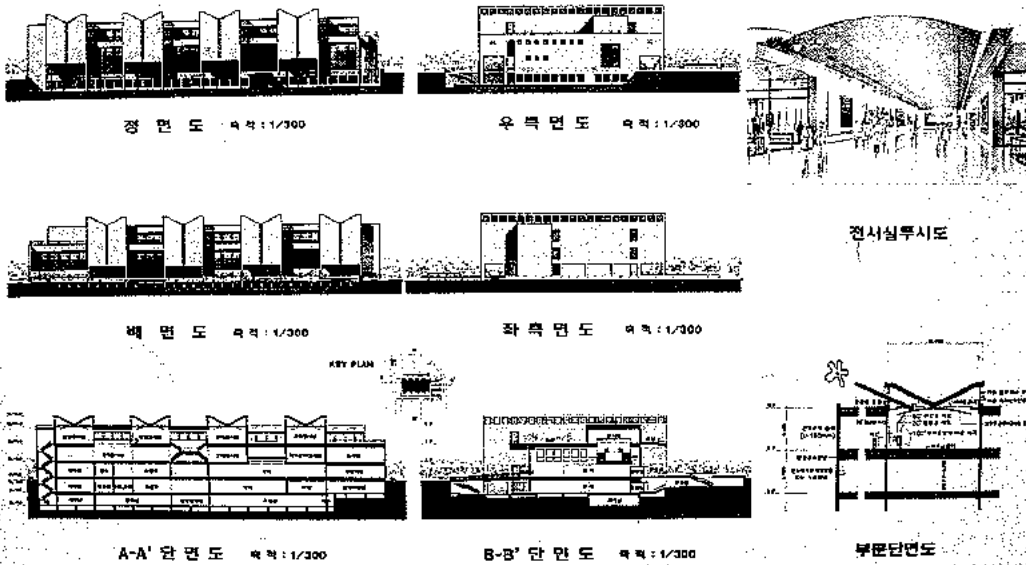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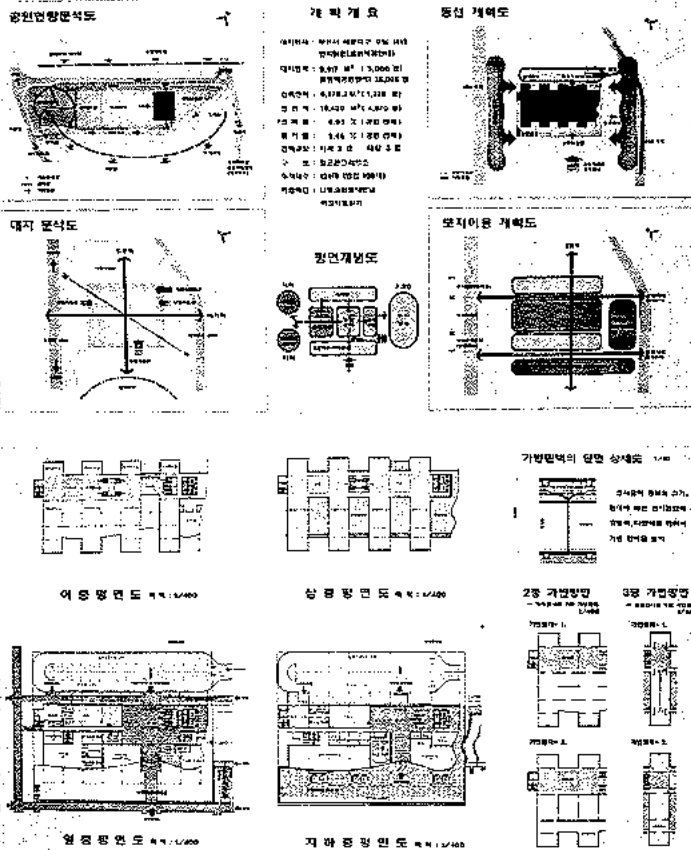
외부미감 / 완열코팅 철제패널, 화
강석 물갈기



배치도 축척: 1/200



부산직할시 시립미술관 계획설계안



■ 대지분석

본 계획대지는 88서울올림픽 요트경기 개최지로서의 상징적, 기념비적 기능을 수용하는 해운대 올림픽공원내 기존 놀이마당 부지를 활용한다. 올림픽공원은 북측에 수영비행장이 위치하여 비행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나 장래 비행장 대지를 도심 내 시민공원으로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

으며 남측의 수영만 매립지는 대규모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본 계획대지에 상당한 흡인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지와 근접하여 지하철 역사가 계획, 확정되어 있고 사방이 도로에 면하여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접근성이 양호하다.

■ 배치계획

계획대지 협소에 대한 대지의 이용 효율 극대화 및 미술관 고유기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올림픽공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 올림픽공원 놀이광장으로부터의 정면성 확보에 의한 상호 연계성 강화 및 스텝가든에 의한 주보행자 동선 유도 및 공원시설과의 조화를 꾀했다. 가든 및 스텝가든의 설치에 의한 놀이광장으로부터의 완충공간형성의 진입부와 건물의 중앙부 주차공간 및 화물반출입의 후면부로 대지를 블록화하였으며 선큰가든 및 벽천을 이용하여 미술관의 문화공간과 동적인 공원광장과와의 상징적 분절을 꾀하였다.

외부공간은 구성은 25m 도로를 따라 진입하는 보행동선을 스텝가든에 의하여 선큰 옥외 전시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 40m 수영로의 소음에 대한 Buffer Zone을 형성, 데크에 의한 Shadow Parking을 계획하여 협소한 대지조건을 최대로 활용하였다.

■ 평면계획

미술관의 다양한 기능을 포용하고 각 기능별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전시·교육·학예·연구·수장 공간의 명확한 공간구분에 의하여 각각의 영역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였다. 저층부는 진입 및 수장품 반입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적공간 및 수장공간으로 구성하고 상층부는 전시성격별로 특성있는 공간구성을 계획하였다. 전시계획은 2층에 대공간을 확보, 다양한 전시방법확보 및 전시공간의 분할 및 통합이 요구되는 기획전시를, 3층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는 상설전시공간을, 3층 옥외 테라스 및 선큰가든에 의한 조각전시공간, 메인 로비가 있는 1층에 이벤트홀을 두어 현대미술의 특징인 퍼포먼스(공연행위), 음악화, 연회를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수장계획은 방습을 고려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 분산 배치하였으며 화물의 성격에 따라 하역장을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하역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 입면계획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되고 힘차고 개방적인 부산시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되는 입면을 구성하였다. 전시실 내부 기능의 솔직한 외적표출, 매스와 면의 반복에 의한 리듬감, 개방감 및 파동성에 의한 부산의 상징성 부각, 음영의 효과를 고려한 볼륨감과 변화감을 추구하였다.

■ 단면계획

1. 기능별 조닝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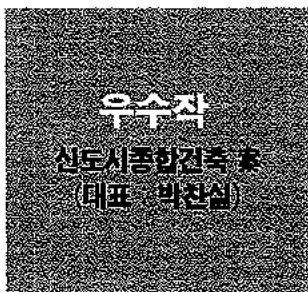
저층부는 전시품반입 및 흡인력 있는 배치위주의 Public Zone으로 상층부는 넓은 전시공간 확보 및 적극적인 채광도입에 의한 전시실 확보로 명확한 기능별 조닝을 하였으며 상하층 void의 극적처리에 의한 공간의 변화감과 층간의 유기적 확보를 꾀하였다.

2. 합리적인 전시실 조명방식 채택 (Goodbar Daylight Collimator)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한 조명 방식으로 수평 천장면에서 오는 일광을 분산조절하여 수직의 벽을 비추어 다른 모든 방향에서의 빛의 유입을 통제하여 전시품을 강조하고 자외선 차단 이중유리 및 광원의 반사작용과 결합된 천장면이 우아한 디자인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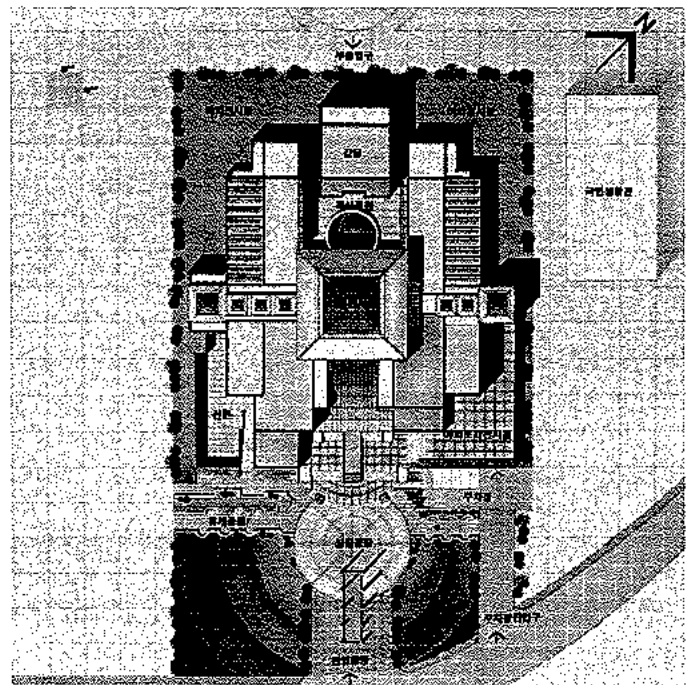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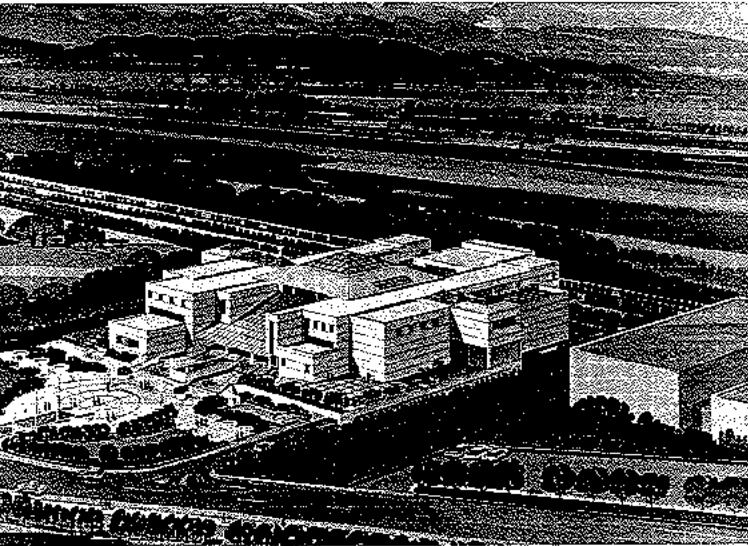
대지위치 / 부산직할지 해운대구
우동 1413일원
(올림픽 공원내)
지역 /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군사보호구역
대지면적 / 9,900㎡
건축면적 / 5,336.42㎡
면적비 / 16,630.09㎡
건폐율 / 4.61%
용적률 / 14.37%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장부분 지하2층)
외부미감 / 화강석 전식 붙임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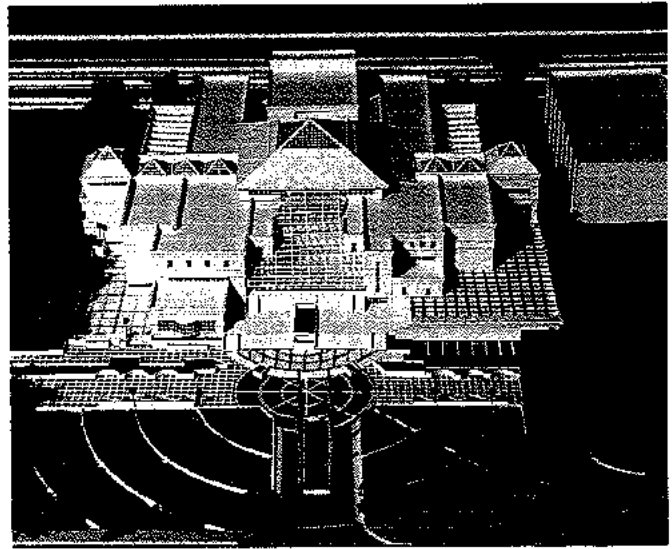
- 공간별 기능에 따른 위계설정
으로 기능의 혼재를 미연에
방지
- 공간 배분은 15m도로에서 진
입 기능별로 진입공간, 상징
공간, 미술관공간, 야외조각
전시장으로 구분
- 장래의 기능확장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의
융통성 부여
- 청소년, 일반인 공간의 확보
로 미술전시는 물론 교육학
습이 겸비된 종합예술관 계
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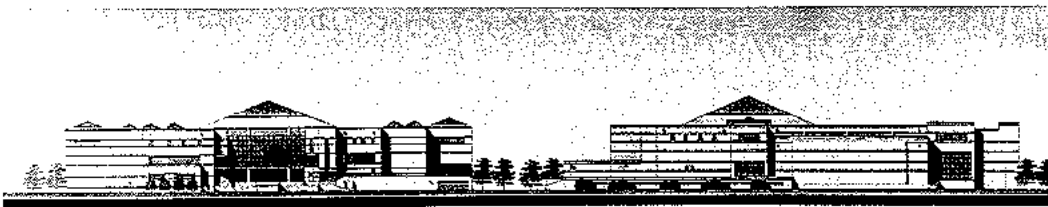
배치도



조감도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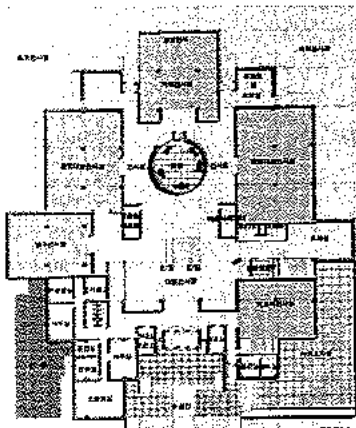
정면도 축척 1:200

우측면도 축척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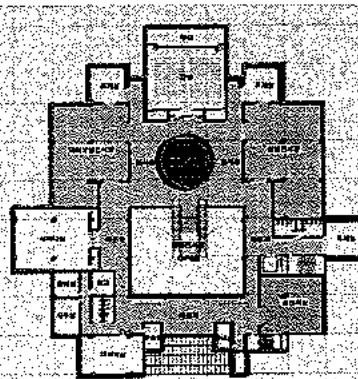


중단면도 축척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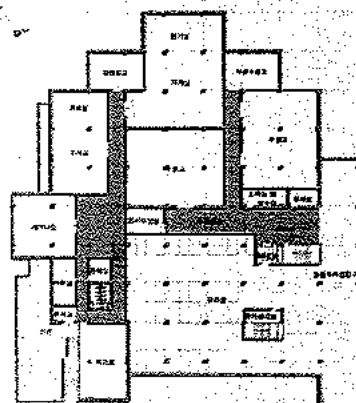
좌측면도 축척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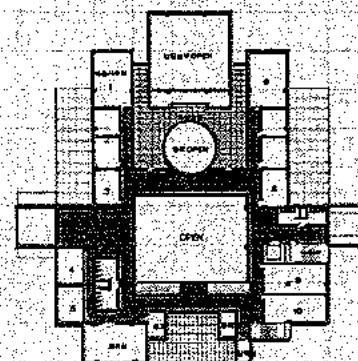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축척 1:300



2층 평면도 축척 1:300



지하 1층 평면도 축척 1:300



3층 평면도 축척 1:300

■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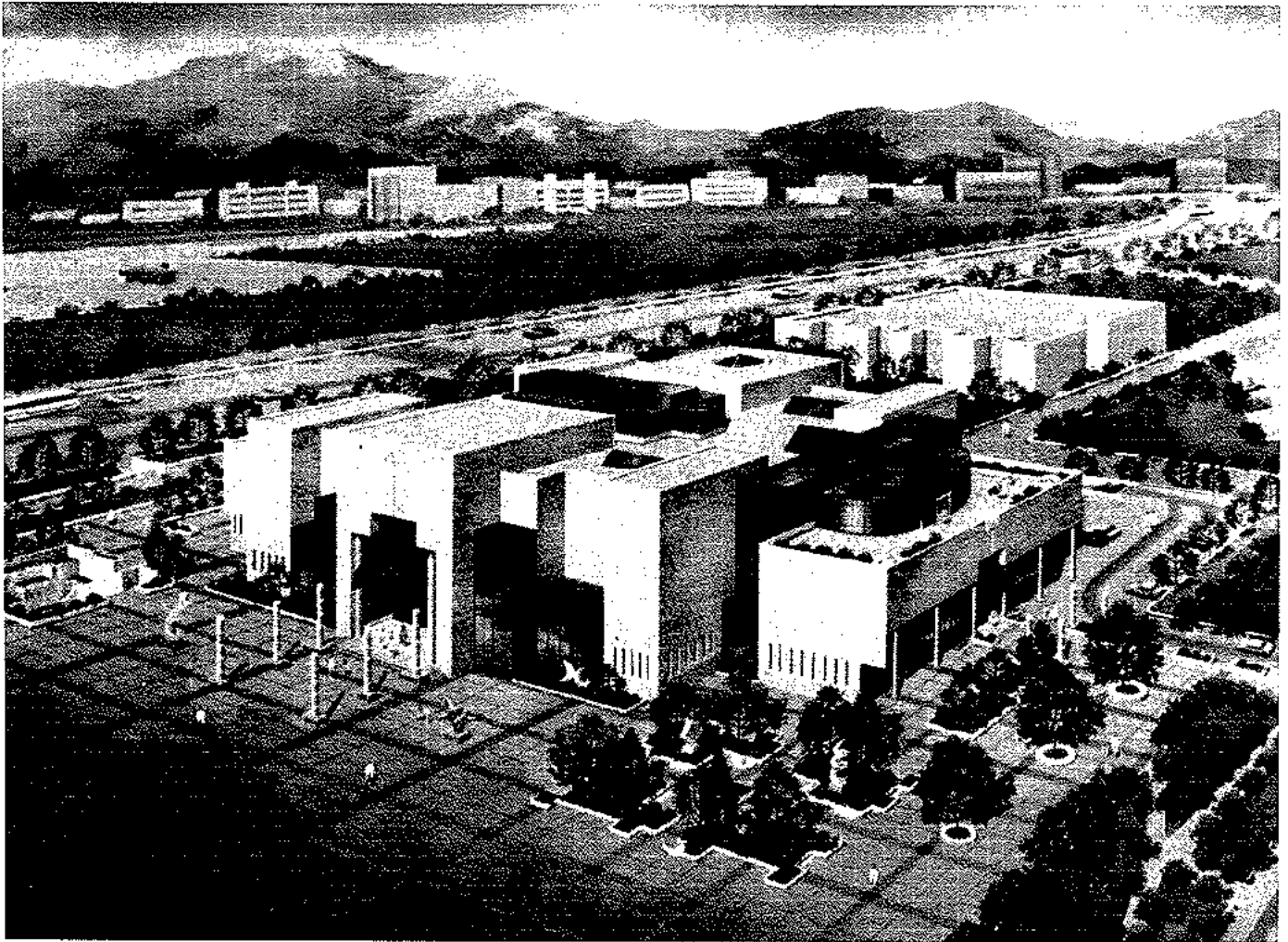
- 미술관과 관련된 상징성 강한 시설도입으로 이미지부각
- 기존자연환경 최대한 보호와 공간의 유기적 연결
- 친수공간, 상상공간, 주차장 진입, 보행자 동선의 분리

■ 시설 배치 계획

- 전통적 공간개념의 위계적 공간 구성 배치
 - 도입공간-진입공간-전정
 - 중정-후정공간들을 주축에 따라 설정
- 건축가용지 집중배치
 - 도로측 소음방지, 다양한 경관 변화의 연속
 - 옥외 전시와 진입전경의 인식도 증진

■ 평면개념

- 각종전시물 확장에 대비한 가변성 부여
- 기능의 연결성과 유기적 관계
- 관람자의 이용을 강제 유도 방식의 보행동선으로 계획
- 각종 전시물의 전시 기능 공간확보를 위해 평면 분할
- 재해예방과 안전을 고려한 평면배치
- 시각적 확장과 중정과 대형전시장의 자연채광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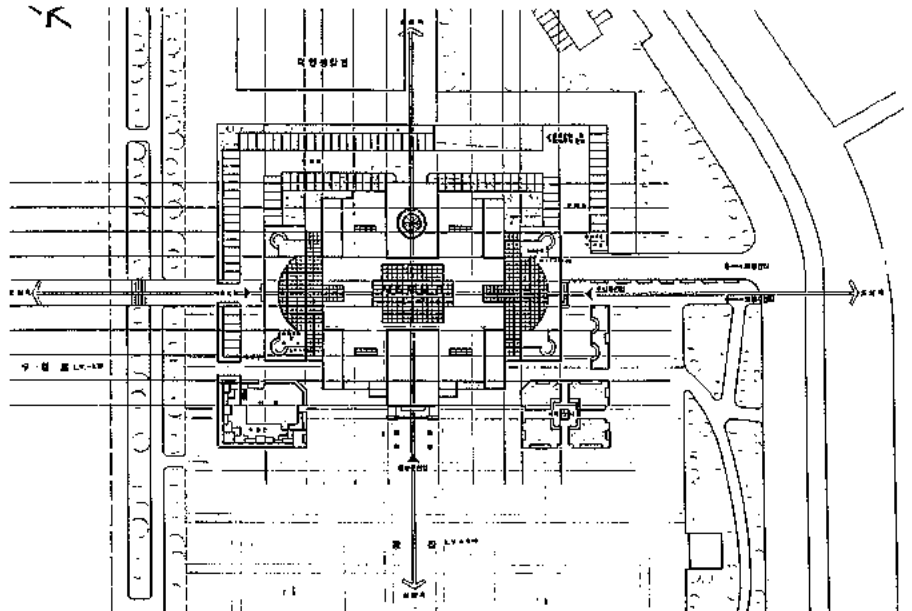


조감도

가작

금립종합건축사
(대표 김철호+김태원)

대지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4번지 일원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군사
보호구역
대지면적 / 실사용 면적-9,900㎡
전체면적-115,954㎡
건축면적 / 3,721㎡
연면적 / 16,594㎡
건폐율 / 3.21%
용적률 / 9.69%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 화강석, 복층유리



종합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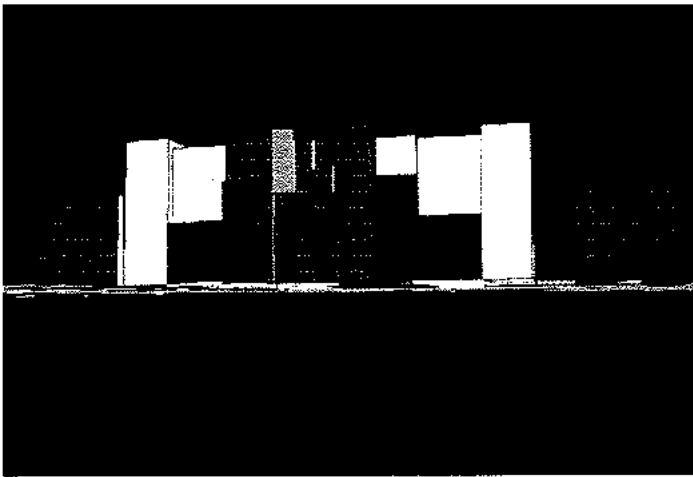
부산시립미술관의 대지를 벗
번이고 답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광활함, 시원함, 그리고 명쾌함
의 느낌이었다.

그리고 넓고 평탄한 대지 저
너머에 푸르른 하늘과 병풍같이
펼쳐진 산들. 여기에 삶을 살아
가는 투박하면서도 끈끈한 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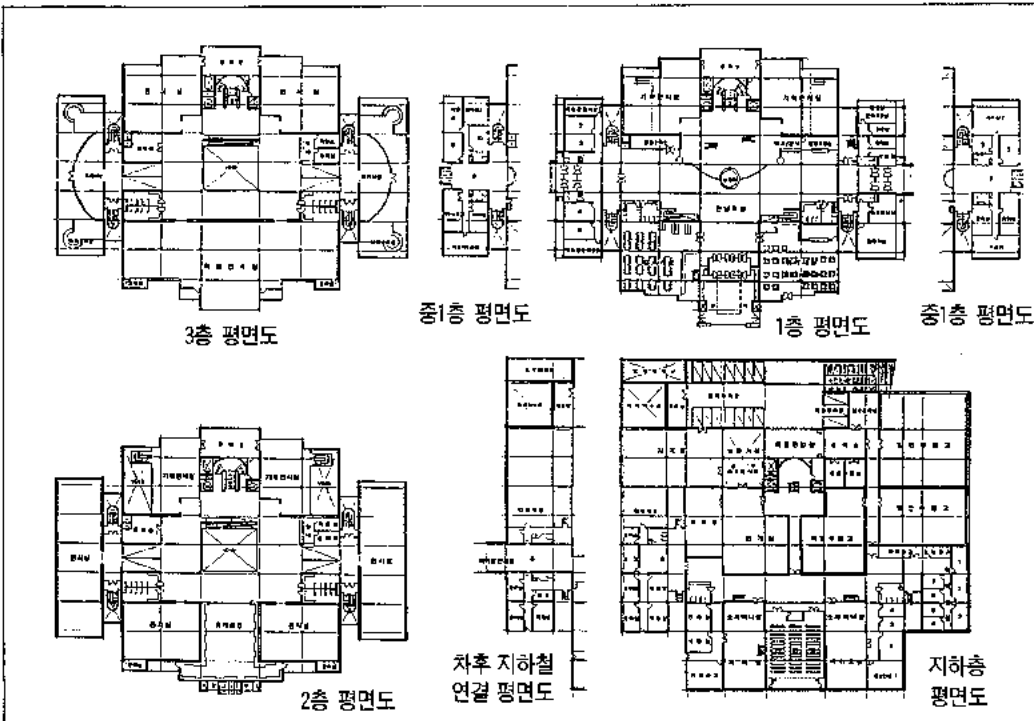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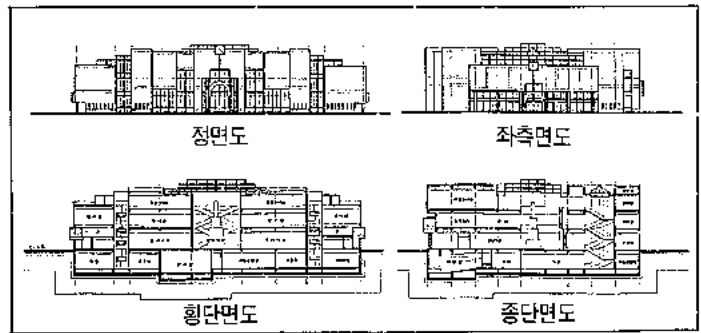
넘치는 내 고장사람들... 이러한
느낌들을 미술관·예총의 기능
이란 전제속에 담아보고자 하
였다.

■ 기본계획

대지의 긴 축을 이용해 광장
을 함하여 전시실들을 병렬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배열하고, 산능선의 스카이라인 (Sky Line)에 따라 자연스레 나열했다.

주진입 광장진입 예충진입 그리고 서비스진입의 고민스런 문제를 중앙의 Main Hall로 처리하여 휴게공간 도서공간을 이 Hall과 공유시켜 시민공원 < > 휴게·도서공간 < > Main Hall < > 미술관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 배치계획

계획부지의 도심축 및 상징축을 이용한 주요공간들의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연출을 위해 대청적 배치를 시도했다.

도심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올림픽 광장과와 상호연계성을 증대시키며 진입로에서의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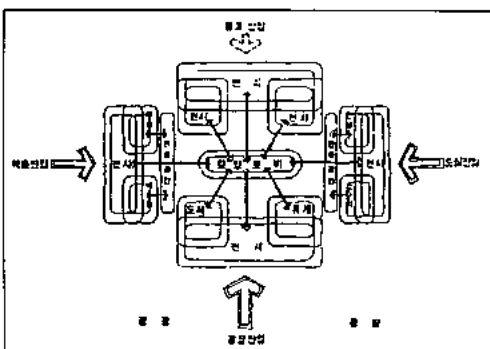
시민광장과 미술관의 연계를 위해 휴게공간을 광장과 연결시킨다.

관리·사무공간, 예충관련시설, 전시공간을 수직 수평적으로 조닝(Zoning)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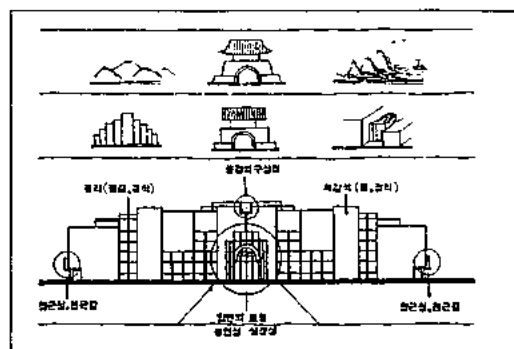
공간의 리듬을 확보하는 분절과 접속의 평면기법을 도입했다.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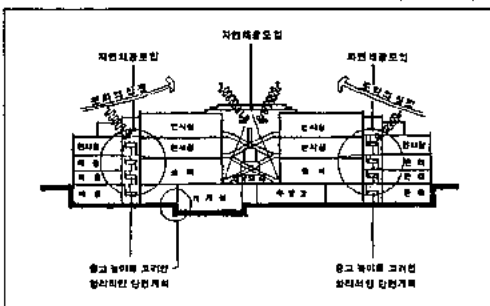
파도와 돌이 어우러지는 바다의 이미지를 살려 미술관의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축의 개념에 의한 정면성을 부여하고 관리·사무공간의 예충관련시설을 전시실의 충고를 이용한 주변과의 Sky Line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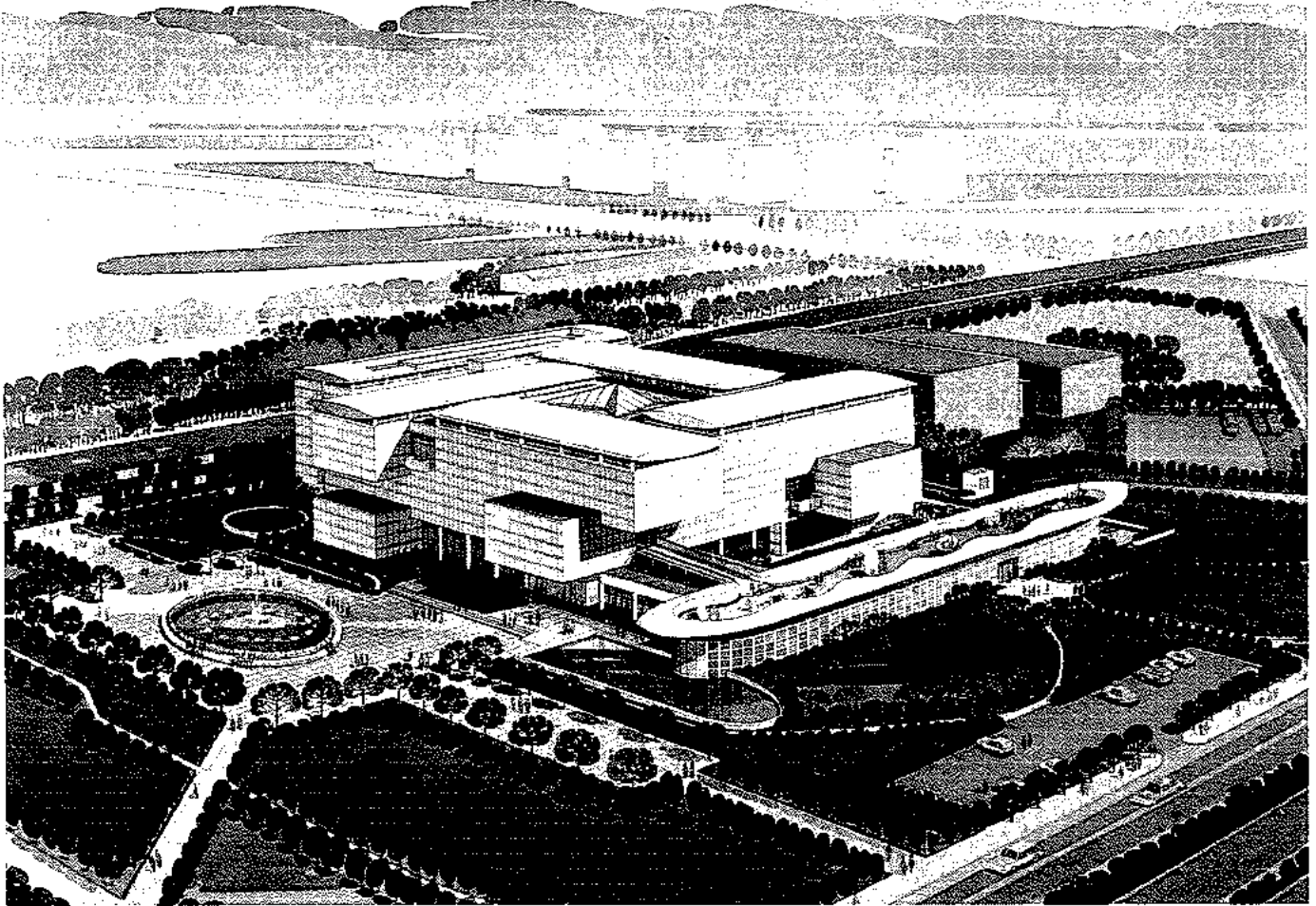
평면 개념도



입면 개념도



단면 개념도



조감도

가작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대포·박지영)

대지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

지역·지구 / 자연 녹지 지역, 군
사 보호 지구

대지면적 / 115,838.49㎡

건축면적 / 5,365.5㎡

연면적 / 16,513.1㎡

건폐율 /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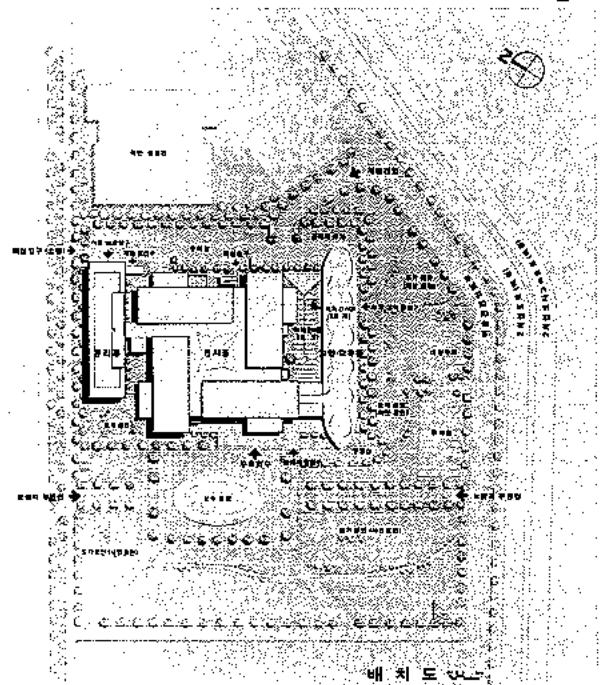
용적률 / 14.26%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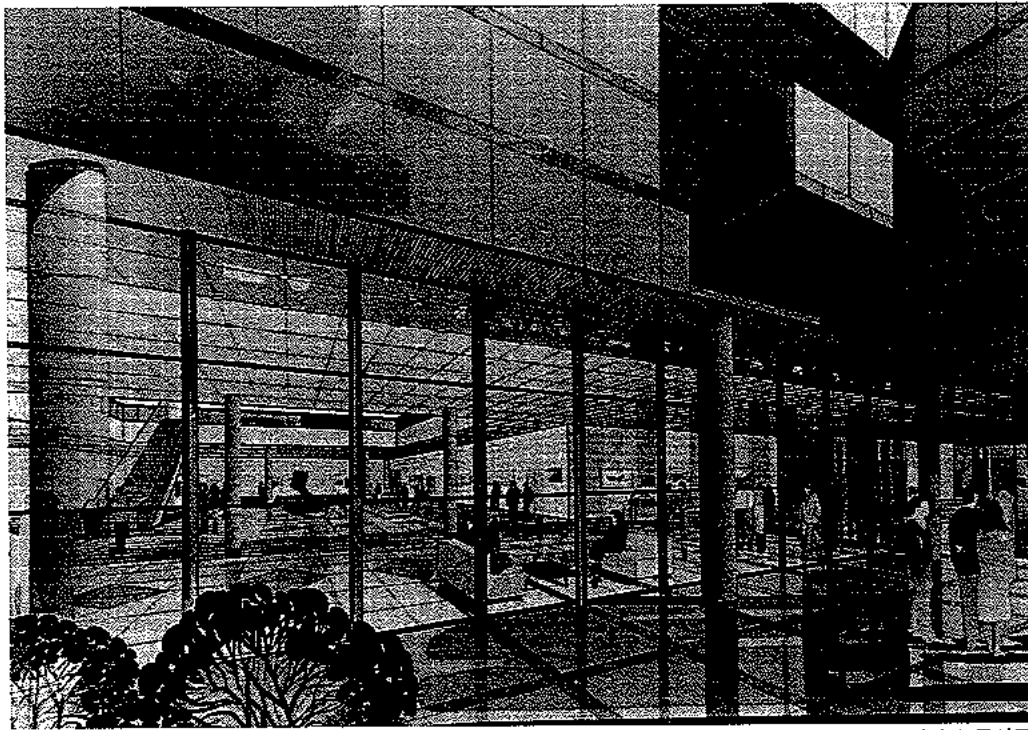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외부미감 / 화강석(거봉-스텐레
스 스틸, 불소도장)

건축주: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설계: 박지영



배치도



로비전경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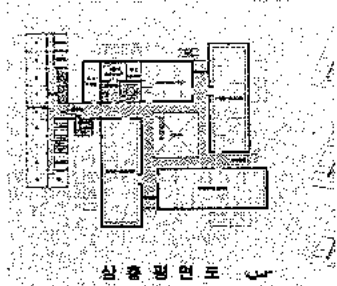
경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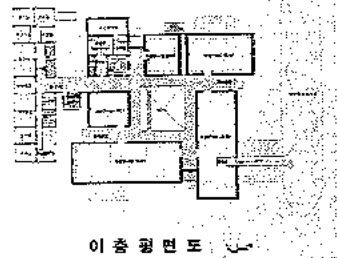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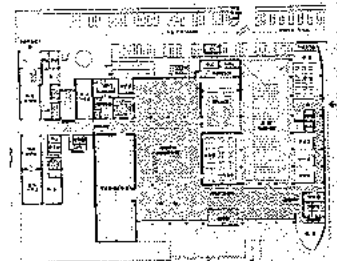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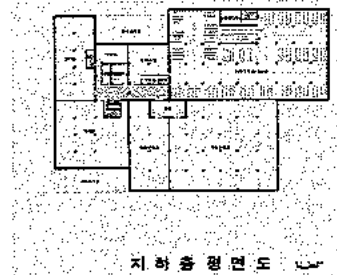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 배치계획

전면 광장으로 개방감 확보

- 올림픽 공원의 제반시설을 융합하는 오픈 스페이스
 - 진입 광장
 - 조각 공원
 - 분수 광장
- 개방된 옥외 공간은 시민교육, 휴식공간의 장
- 주진입로와 직각으로 배치된 관리동과, 교양, 교육동으로 건물 중앙 현관의 인지도 높임

「국민생활관」과의 조화

- 양시설을 공통의 축선에 배치하여 건축군으로 인지 유도
- 국민생활관의 부지도 포함한 외부 공간의 일체적인 경관 시설군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치

- 전시부분을 안쪽 중앙에 배치시켜 시각적 상징성 부여
- 관리동과 교양, 교육부분은 전시부분과의 연계성 고려하여 배치
- 휴식공간은 옥외조각 전시장과 중정에 면함

기능 공간

- 로비-광장측에 두어 트인 시계 연출
 - 전이 공간으로 전시 공간과 교양, 교육부분간의 선택권 부여
- 전시실-옥내 전시실간의 유기적 연결
 - 중정, 옥외전시장을 통한 전시가능 확대
- 교양교육부분-전시실과 상호 긴밀한 관계유지

- 관리부분-관람자 주출입구와 분리된 동선체계 마련
- 주차장-이용자, 관리, 장애자용으로 분리

■ 평면 계획

명확한 조닝

- 1층 로비를 중심으로 하여 전시, 관리, 교육의 공간으로 나뉨
- 「참여형 미술관」으로서 서비스, 교육부분은 1층 우측에 배치
- 전시공간은 1층, 2층의 상설 전시부분, 3층의 기획전시부분으로 나뉨
- 층별 유료, 무료 조닝의 명확한 분리와 각 기능간의 연계성 도모

전시부분

- 기획전시실은 아트리움과 면하여 3층에 배치, 상설전시부분과 분리 운용 가능
- 중앙의 아트리움으로 인해 미술관의 전체상 파악 용이

수장부분

- 작품 반입구를 간선도로에 면한 1층에 배치
- 반입구를 기점으로 수장고는 지하에 집약시키고 사람과 화물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고 전시, 연구부분 연결

연구, 관리부분

- 엔트런스홀 서쪽에 집약 배치
- 각개실이 열린 속깊이로 설비 계획의 경제성 도모
- 각실간의 상호연락 용이한 통신체계

주택 온수온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On the Controversial Point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Under-floor Heating System Housing

池健相/건축사사무소 합성건축

by Chi, Keon-Sang

1. 취지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식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온돌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식인데 이는 복사식으로 열교환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대류식난방보다 월등하게 효율적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즉 온돌은 인체가 두냉족온이 되어 좌식생활에는 더욱 유리하며 또한 실내의 공간이 균등하게 열교환이 되어서 주택난방으로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로 년중 육개월은 난방을 하는데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문화의 발달이 생활수준향상과 연료조건 등으로 온돌로서 구조가 달라지게 되었다. 즉 연료조건이 변천으로 온수난방식이 되었고, 연료가 유류, 가스로서 되었는데, 화석연료(유연탄, 기름, 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전연 생산이 안되어 년간 150억불 이상을 도입하여 이 중에서 주택난방분야의 소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주지할 것이다. 또한 생활수준향상과 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은 고층으로 건축하게 되고, 더욱이 년간 50만호 수준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주택건축에서 온돌설비는 참으로 중요한 분야이지만 현행의 온돌시공방향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에너지 소비의 낭비와 주거자의 불편과 시공상 비능률 등이다.

현재 지구촌에는 환경문제를 범세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우선 대기공해에 대한 예방책으로 화석연료의 절감을 각국에서 강력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추세에서 유류나 가스의 도입의 절감은 참으로 바람직한데, 에너지 소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난방 분야에서 현행의 온돌시공에서 기술개발로 다소라도 절감이 되고 또한 주거자의 불편해소와 시공기술의 효율적인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희망할 것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종래의 온수가 순환하는 온돌공법이 개량되어 열공기가 순환하는 공법으로(즉 옛날의 연기의 통과에 의한 온돌공법을 과학화한 것) 기술개발하여 연료조건이 대폭적으로 절감되고 주거상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공비도 현행보다 월등하게 절감되는 방향이 실현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크게 바람직할 것이므로 2종의 공법 즉 ①은 현행의 온수온돌을 조립식 공법으로 해서 현행보다 에너지 절감과 시공의 능률화, 주거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기술개발과 ②는 미래지향적이나 열공기에 의한 조립식 온돌로서 현행의 보일러 배관 등이 없이 시공되며 에너지 절감 40%, 시공비 절감 30%가 실현되는 기술개발을 고찰하여 제안하는 바이다.

2. 현행의 온수온돌의 문제점

현재 주택건축은 고층화되어가고 온돌난방은 아파트건축에서 단지적 건설분야는 온수를 중앙공급식으로 하고 단지가 아닌 분야는 온수를 개별난방식으로 대별하는데, 온돌의 구조적인면 때문에 공통으로 문제점이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중앙공급식난방이 가일층한 것 같다.

먼저 온수온돌을 시공면에서 볼 때, 기본구조는 단면상으로 슬라브에서 약 10cm~12cm 높이(온돌층)가 되어야 하며, 이를 단열층, 축열층, 배관층으로 구별케 시공을 목표로 하는데, 단지로 중앙공급식은 실제로 고층화되어 갈수록 각층의 슬라브의 높이치수는 시공상 정확지 못해서(즉 골채구축적인 면) 온돌층 두께는 현장마다 거의 다른데, 5cm~12cm 사이에서 각기의 두께가 되고 있다.

이러할 때 시공작업의 순서는 먼저 중앙공급식일 때 ①경량기포 콘크리트작업 ②배관작업 ③물탈작업 등이며 개별식 난방분야는(즉 아파트, 연립, 빌라) 시공작업순서가 ①공자갈층류 ②스치로폴깔기 ③배관작업 ④물탈작업 등이다.

이상에 의해서 중앙공급식과 개별난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가) 노무관리면과 공기면에서 노무관리면은 상기 각분야의 기능직별은 최소 3개분야가 되어 현장에서 인력관리면에 애로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시공법이 현장에서 습식작업이므로 동절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콘크리트 작업은 양생기간이 소요되고 고층에는 순리적작업 등으로 온돌분야로 인해서 타공정분야까지 공기에 장애를 주는 등 전체적으로 공기단축은 불가능하다.

나) 온돌의 기능면에서

A. 중앙공급식분야(아파트 건축)

①소요에너지의 낭비

상기 약속한 바와 같이 중앙공급식은 온돌층의 두께가 일정지 못한 관계로 공급되는 온수의 열효율은 온돌방으로서 제각기 차이가 난다. 실지로 같은 단지에서 주거하는 처지에서 같은 난방비를 부담하면서 난방효율의 차이로 불만상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온수를 중앙에서 일정한 열량으로 공급하지만 평균적 열효율이 안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만 낭비가 되는 것이다.

②상하층 온돌방의 음향전달문제

현재 온돌방의 천장은 슬라브만으로 시공함으로 상층온돌은 상기 약속한 바와 같이 슬라브위에 신다 콘크리트를 함으로 온돌방내에서 다소라도 큰 충격적 소리는 바로 하층으로 전도되어 주거생활에 불쾌감을 준다.

B. 개별식난방분야(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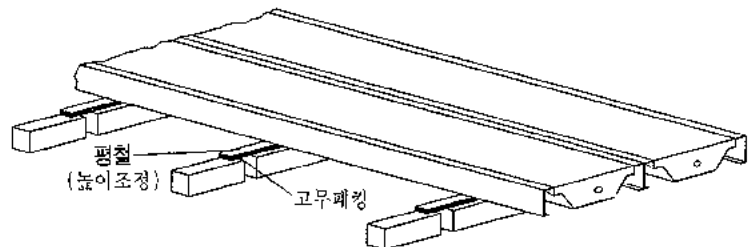
중앙공급식난방과 같이 온돌층 두께는 대개의 경우 큰 차이가 심하지 않음으로 상기의 ①과 같은 문제는 별로 없겠으나 ②와 같은 상층과 하층사이에 음향문제는 동일한 현상이고 상기한 기본구조의 단면상으로 ①~④ 작업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④의 스티로폴 깔기가 된다. 즉 스티로폴과 바로 밀착해서 온수배관하는 것은 스티로폴의 제질상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열에 약한 관계로 변질이 되는데, 그 상부물탈은 형식적인 철근으로 배근하고 있지만 온돌방으로 사용상 압력이나 물탈층은 반드시 무너지는 상태가 됨으로 온돌로서의 수명에 문제가 된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의 온돌시공방향은 거주자에게 주는 피해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큰데 그렇다고 고층화하는 건축구축에서 시공상의 정확한 치수를 당국에서 감독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방임하면 위 기술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해결이 안됨으로 새로운 기술개발로서 시공법이 규격화된 공산품 등용으로 해결하는 제도화방식으로 시정이 요망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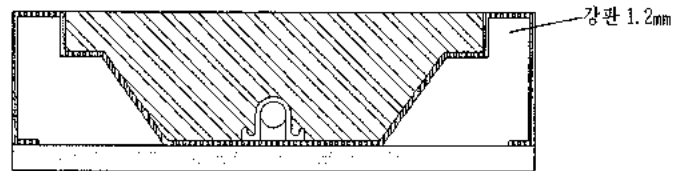
3. 기술개발이 요하는 제안방향

현재 주택건축은 점차로 고층화 되어가는 현단계에서 상기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①현재의 시공상으로 부득이한 각층 슬라브 상부에 온돌층 두께가 일정지 못한 실정에서도 수용이 되는 조건으로 일정한 두께를 산출해서 온돌층을 확정하여야 되는데 이러할 때 높이는 4.5cm~5cm 정도로서 열전도성이 우수한 조건으로 구성되는 물체속에 온수파이프로 매설하는 공산품의 온돌층이 필요하다. ②는 이 공산품의 온돌로서 각층 슬라브와 다소 간격(공간)이 떠있는 상태로 부설한다. 이것은 슬라브와 창문이 있음으로 해서 절연이 되어 상층 온돌방에서 큰 충격의

음파가 있더라도 하층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온돌조건으로 기능면과 더욱 중요한 것은 시공능률면에서도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모든 건축시공은 가급적 공산품은 현장에서 조립방향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당국방침에서도 아파트건축을 조립식공법의 시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재에 연간 10만~15만호 수준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택건축에만 해당되지만 온돌식난방의 소요자료는 아직 생산이 없으니 공극에는 실현이 요구된다. 또한 상기(2)항에 약속한대로 온돌로서 기능면, 구조면, 능률면에서 조립식온돌이 필요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현재 기존주택의 보수에 해당되는 조립식온돌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구조적으로 건축에 해당이 안되고 또 기능면과 가격면에도 해당되지 않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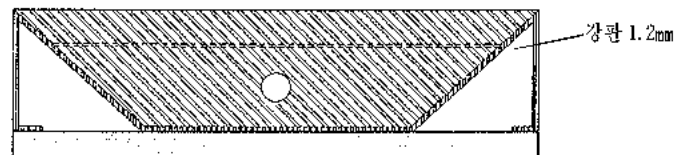


조립식 구들장의 현장시공도



A형 단면

강판식 조립 구들장의 단면도 ①



B형 단면

강판식 조립 구들장의 단면도 ②

4. 기술개발에 의한 조립식 온수온돌

본 조립식 온돌은 강판제 홈통속에 온수순환용파이프를 매설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현장에는 마루깔기와 같이 부설작업으로 단시간에 온돌방이 마감되는데, 동절기에도 현장작업이 되어 공기의 단축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 조립식 온돌은 마루깔기와 같이 부설하는 강판제 홈통패널은 밀바닥 슬라브와 절연상태가 된다. 또한 강판제 홈통형패널에 의한 온돌임으로 현행의 온돌식보다

에너지가 상당히 절감된다.

이하 구조를 약술하면 본 조립식 온돌은 마루와 깔기와 같이 길게 된 것을 가로 방향으로 연속하여 구성된 강판제 홈통패널 속에 온수파이프를 매설하는데, 주위를 폼자갈과 몰탈로서 덮어서 열전도가 되게 하여 상부는 난방용으로 열교환의 되게 하고 단면상으로 측면과 하부는 강판제 홈통으로 열전도가 되어서 홈통의 재질이 강판이므로 고르고 빠르게 열전도가 된다. 이와같이 한줄로 구성된 홈통형패널은 단면상 그 높이는 4.5cm~5cm 정도로서 일종에 덱커프레이트가 되는데 대체로 현행의 시공상 부득이 불규칙한 온돌층 두께에서 4.5cm~5cm정도는 최악의 경우로 수용되고 단면이 강재로서 덱커프레이트형이 되어 인장강도는 건물의 바닥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연속되는, 홈통형패널은 온돌마감선(수평)에 맞추어 부설할 때 바닥 슬라브와는 공간에 있게 되어 이 공간에서 40cm정도의 간격으로 본, 강판제 홈통형패널을 받는 장치를 한다. 이 때에 경질의 고무가 박힌 재료를 써서 높이를 조정하고 40cm 간격사이의 스티로폼을 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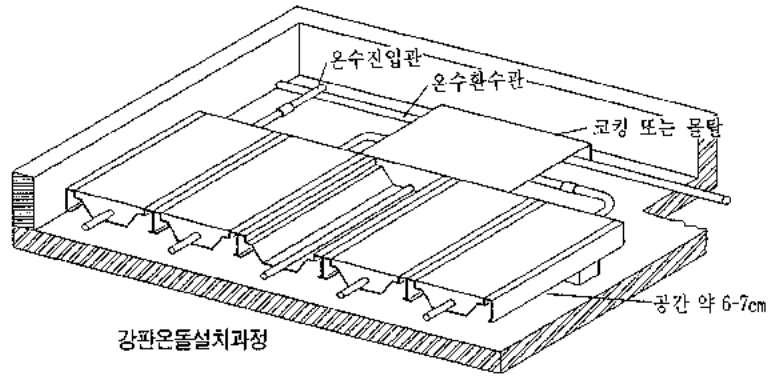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고층아파트에서 각층의 천장은 슬라브 바로 밑에 부쳐서 시공함으로 현행의 온돌은 큰 충격의 음향이 있을 때 하층에 들려서 하층의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본 조립식 온돌은 구조적으로 온돌층이 슬라브와 간지 않고 그 상부에 공간이 있으며, 온돌층을 받치는 장치에 고무킹을 사용하여 상층 온돌방에서 큰 음향이 있더라도 하층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상의 본 조립식 온돌은 아파트 건축에서 중앙공급식 난방이나 또 개별식 난방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에너지 수급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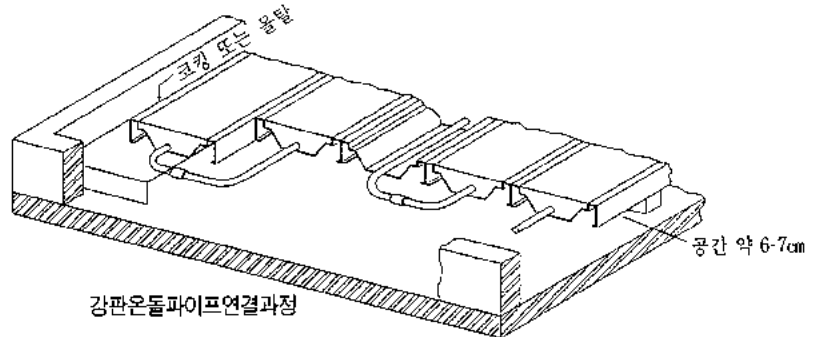
7. 미래지향적 조립식 공법에 의한 열풍식 온돌

건축공법의 발달속도는 정보시대에 들어서 가일층되고, 건축 각 분야의 소요부품과 현장 시공법을 날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국내에서 연간 수십만호 단위의 주택건축으로 시공기술의 향상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대체로 선진국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유독 난방 설비 분야는 우리나라 고유의 온돌식이며 년중 육개월은 난방하는 실정과 에너지의 수급실정과 환경실정은 상기(1)항에서 약술한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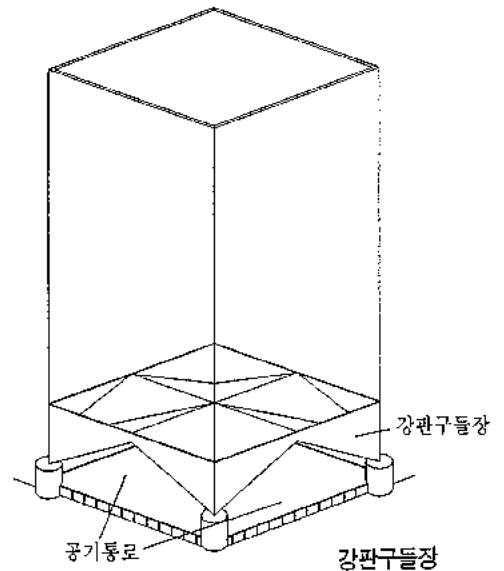
미래지향을 고려할 때 급속한 과학의 진보와 경제발전은 세월의 흐름으로 예측되지만, 주거생활에서 온돌식 난방은 재속될 것이므로 현공법은 열매체를 온수가 되어서 파이프를 통해 콘크리트제 즉 석질재를 통한 열교환이다. 따라서 열매체로서 온수는 열전도상이 우수한 물질이지만, 물리적으로 온돌의 경우 석질재에 의해서 열교환원으로 미래지향을 고려할 때 이보다도 효과적 열교환이 되는 온돌을 추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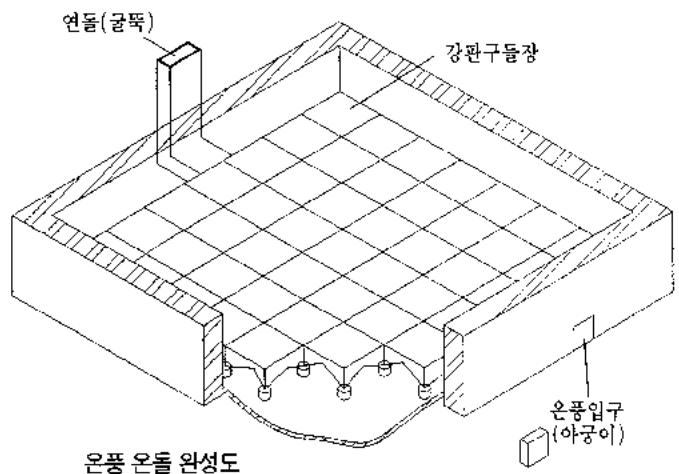
강판온돌설치과정



강판온돌파이프연결과정



강판구들장



온풍 온돌 완성도

본시, 온돌은 현재와 같은 온수가 열매체로서 순환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무를 연소할 때 나는 그 연소연기로 연탄일 때는 연소를 석질 구들장밑으로 통과해서 굴뚝으로 배기하는 과정에서 구들장이 열교환되어 난방이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오랜 역사를 가진 공법이므로 본 고찰에서는 이 공법을 과학화하는 방식인 것이다.

즉, 난방원리는 구들장의 소재에는 강판제 1.6mm두께를 특수형으로 프레스하여 인장강도를 높여 강재의 열전도성은 석재보다 35배나 높음으로 석질의 구들장두께는 평균 6cm로 할 때 열전도성은 동일한 면적에서 산출하면 강재는 석재보다 수백배가 되는 이론이 된다. 또한 구들장으로 방열 온도는 강재이든 석재이든 약 30℃~50℃ 정도로 제약되어 이에 해당되기 위한 강판제 구들장의 열교환이 되는 열공기의 소요열량과 종래식 난방에 필요한 보일러의 소요열량을 비교할 때 열공기식 난방이 유리한 것은 자명한데, 문제는 열공기조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고도한 연소기계작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미완성임으로 미래지향적 조립식 공법에 의한 열풍식 온돌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열풍식온돌은 가스나 유류가 연소하는 특수연소장치의 기술개발로서 인체에 해독과 폭발의 위험성이 없이 가스연소가 완전중화되는(현재로서

기술개발의 미완성)열풍이 아궁이에서 급탕장치가 있는 구조로 하고 구들장은 석재나 콘크리트가 아니고 강판제를 특수형으로 구성해서 조립식으로 부설하는데, 이 아궁이에서 연소하는 기체는 완전히 중화된 기체로서 강판제 구들장 밑으로 잔입하여 그 온돌방의 소요열량에 맞게 외기와 혼합해서 조절되어 송풍기의 작동으로 각 닥트를 통해서 배기되는 과정에서 강판제 구들장 밑에서 열풍이 되어 열교환이 된다. 이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종래식 난방의 소요열량보다 월등하게 절감이 된다. 그 이론은 종래식은 온수가 열매체가 되어 온수관의 주위와 콘크리트에 전달되어 열교환되어 난방이 되지만, 이 열풍식은 두께 1.6mm의 강판제 구들장 밑으로 열풍이 통과할 때에 그 상부는 30℃수준으로 제한된 온도로 열교환 되는데, 석재보다 수천분의 일의 두께가 35배나 높은 열전도성은 같은 강판제 구들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열풍식 온돌은 종래의 보일러와 배관이 필요치 않게 된다. 또한 강판제 구들장은 공장생산이고 현장에서 조립부설한다.

아궁이 연소는 하절기에는 급탕용만 동절기에는 급탕과 난방용으로 연소케 한다. 이 구들장의 규격은 250mm×250mm로서 그 밑으로 열풍이 진입하여 배기하는 통로(회로)는 구들장 사이의 칸막이 설치가 용이하므로 계획하는 화로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원고모집

「건축사」지는 건축사 여러분의 대화의 “場”입니다.

월간「건축사」지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지이며, 모든 건축인을 위한 잡지로 항상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한방울의 땀도 소중히 담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축사」지에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를 모집코자 합니다.

〈모집내용〉

- ☆ 시, 수필, 수상, 건축기행문
- ☆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 ☆ 회원작품 (최근 1년 이내 준공된 작품)
- ☆ 계획작품 (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 ☆ 작품스케치 (작품과 관련된 개념스케치)

☆ 주제별 회원작품 게재계획

- 7월 : 주거용건축(단독, 공동, 다세대, 다가구주택), 근작
- 8월 : 업무용건축, 근작
- 9월 : 종교건축, 근작
- 10월 : 문화시설 및 의료시설, 근작
- 11월 :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근작
- 12월 : 상업용건축, 근작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803-55(우편번호 : 137-070)

전화 : 587-8504(직), 581-5711~4(교) FAX : 586-8823

건축물 설계도서의 저작권법상의 권리

The Copyright of Architectural Design Drawing

鄭德薰/종합건축사사무소청전건축
by Cheong, Teok-Hun

I. 서론

1. 저작권법의 연혁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융희 2년(1908)에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 의하여 1908년 8월 16일부터 당시의 일본저작권법을 의용하여 오다가 1910년 8월 29일 합방이후부터는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시행하였고 미군정 및 대한민국정부수립초기까지 그대로 시행하여 오다가 1957년 당시의 일본저작권법을 모델로 하여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몇 차례의 개정작업이 정부와 관련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나 1986년 7월 21일 성립된 한미통상협정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그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률 제3916호)

저작권이란 말은 Copyright라는 말을 일본사람이 번역하여 만든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의용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이라하면 지적·정신적 문화활동으로부터 창작된 지적 산물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학문과 예술에 관한 문화의 보호육성과 그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규범을 말한다.

2. 설계도서의 의의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등을 말하며,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건축물 설계도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저작물 등록부에 미등록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받을 수 있는 바 설계도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고하며,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유도하고 저작물의 창작을 고무·장려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내지 저작권제도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는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저작자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여 그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저작물의 창작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생활을 하며 보다 나은 저작물을 창작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저작물 이용자이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목적을 추구한다.

셋째, 일반대중이다. 일반대중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보다 높은 문화를 접하는 대신 저작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저작권 제도가 저작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재산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의 보급관점과 기본적인 자연권과 제도적 권리의 보호관점으로서

가.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노동의 산물이므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나.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투자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견해

다. 국가의 문화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
라. 문화의 원상보존과 후세전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
마. 인류문화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저작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고 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저작물 이용자에게 알리고 최대한의 경쟁을 통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루려는데 있는 것이다. 즉, 저작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처리를 보호

저작자의 권리에는 복제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 등 저작자의 물리적·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물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이 있다. 즉, 저작자의 재산과 인격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들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 구제수단을 인정해야 한다.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재산상 인격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3)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저작물에 대한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지적·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을 말하며,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하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창작물이어야 한다.

3. 저작물의 예시

- 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 나. 음악저작물
- 다. 연구 및 무용·부연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
- 마.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바.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사. 영상저작물
- 아.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

- 가. 의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나. 보호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편집저작물

- 가. 의의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나. 보호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가. 법령
- 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유사한 것
- 다.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기목내지 다목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바.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이 있다.

6.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저작자를 추정하고 있다.
- 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나.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다. 상기와 같은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

7. 공동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제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8.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가. 저작 인격권

저작자의 인격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다음 세가지가 있다.

1) 공표권

공표권이란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하는 권리이다.

2)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4) 성질

가)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며,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라면 그 저작인격권이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예외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5) 공동 저작물의 권리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다.

1) 복제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2) 공연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말한다.

3) 방송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말한다.

4) 전시권

저작자가 미술저작품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5) 배포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말한다.

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7) 예외규정

개관절차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 등예외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등은 예외적으로 재산권침해를 성립하지 않는다.

8) 보호기간

가) 원작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사망후 공표시 보호기간은 10년 이내일 경우에도 10년간 존속된다.

나)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①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② 예외

- 50년간내에 저작자의 실명도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 50년간내에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 단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
공표한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9) 양도·행사·소멸

가) 양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나) 이용허락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 거래에의 제공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라)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마)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나 질권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바) 저작재산권의 소멸

① 자인소멸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됨

② 법적소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와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소멸된다.

9.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주소불명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방송사업자가 재산권자와 협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송할 수 있다.

다.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

저작물을 번역·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에 해당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이를 번역·발행할 수 있다.

10. 등록

가. 실명의 등록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나. 등록의 효력

미등록시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이 제한되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다. 등록의 절차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물 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Ⅲ.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의 정지등 청구

저작(著作)권 그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그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명예회복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Ⅳ. 저작권법상의 건축물과 설계도서의 관계

현행 저작권법상 건축물과 설계도서는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으나, 엄격히 구분한다면 저작물에는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에는 건축물로 나누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이 우선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되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로 보아야 되며, 설계도서와 건축물은 각각의 독립된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현행 건축물의 설계계약서(건설부인가:건축 455-19276(1983.9.27)) 제 10조의 규정을 보면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귀속되며 건축주는 본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모방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체육부장관이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등록의 효력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설계도서에 대한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건축사법상 협회에 등록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필한 것으로 본다는가 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재산적 가치가 상향되었을 때 그에 따른 설계기법의 기술이 발전되고 창작된 작품과 신기법은 보호되어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하며, 문화적, 예술적 작품은 창작할 수 있는데 대한 보상으로 설계도서에 대한 법적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협회에 등록한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협회에서는 설계도서 도서관을 마련하여 이를 회원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교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저작권논문집(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지, 1992.
2. 저작물과 출판권, 황적인/최현호 지, 1990.
3. 한국저작권 판례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 1990.
4. 기간 저작권 92년 겨울호 제20호,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지, 1992.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 법률 제4,562호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구조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시설감리”를 “공사감리”로 “사업관리”를 “사업관리·구조의 안전성 검토”로 하며, 동조제5호중 “기술자격취득자”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책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와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7.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5년마다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나 건설기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연금

제11조제3항중 “정부”를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①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와의 차의 출연금 기타 기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중 “건설업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 제목 (“새로운 건설기술의 보호”)를 (신기술의 보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

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건설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각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종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건설자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그 자재의 품질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생산자등에게 품질시험의 결과를 요구하거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참여하에 품질시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품질시험의 대행)”을 “(품질시험의 대행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대행자(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확인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한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자격,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책임감리대가의 기준)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책임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회비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와 기준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책임감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을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농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기술인력”을 “감리원”으로 하여 동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이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제4호 내시 제6호와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중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각각 “책임감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험을 끼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중 “소속공무원으로”를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하고, 동조제3항중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을 “검사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시공감리자”를 “감리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건설부장관은 시공감리자가”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각각 “책임감리”, “시공감리자”를 “감리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을 각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으로 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의 전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④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등)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보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증업무

5. 기타 책임감리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36조의5(책임 및 선출방법등)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는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보고등) 건설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7(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의견진술)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지정 취소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37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또는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중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책임감리”로 한다.

제40조중 “시공감리”를 “책임감리”로 한다.

제41조중 “시공감리자”를 “감리원”으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각각 “책임감리”로, “2천500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등

2. 제24조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한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품질시험 결과의 제출 또는 품질시험의 실시에 관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벌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2조의2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의 제목중 “시공감리자”를 “감리원”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시공감리자”를 “감리원”으로 한다.

1993년 4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4월분 8백73만3천㎡ 보다 8.24%(71만9천3백78㎡)증가 한
9백45만2천3백78㎡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4월 누계 3천7백26만5천3백59㎡보다 0.31%(11만6천6백

51㎡)증가한 3천7백38만2천10㎡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3월분 1천60만3천8백79㎡보다 10.86% (1백15만1천5백1㎡)
감소한 9백45만2천3백78㎡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2년도	1993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229,179	1,296,140	66,961	5.45%
	대구	642,174	1,105,078	462,904	72.08%
	인천	503,063	665,166	162,103	32.22%
	광주	93,611	166,724	73,113	78.10%
	대전	234,749	511,576	276,827	117.92%
	경기	1,529,144	1,935,819	406,675	26.59%
	충북	237,453	382,234	144,781	60.97%
	충남	348,839	429,510	80,671	23.13%
	전북	329,710	380,533	50,823	15.41%
	전남	257,821	399,217	141,396	54.84%
감소지역	경남	709,174	725,616	16,442	2.32%
	제주	88,366	101,957	13,591	15.38%
	부산	1,380,823	473,443	(907,380)	-65.71%
	강원	380,979	303,510	(77,469)	-20.33%
	경북	767,915	575,855	(192,060)	-25.01%
합	계	8,733,000	9,452,378	719,378	8.24%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별	3월분	4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1,376,924	1,161,541	(215,383)	-15.64%
다 세 대 주 택	569,471	592,874	23,403	4.11%
연 립 주 택	146,895	66,423	(80,472)	-54.78%
아 파 트	3,755,089	3,288,038	(467,051)	-12.44%
근린생활시설	1,672,892	1,529,544	(143,348)	-8.57%
종 교 시 설	76,169	89,721	13,552	17.79%
의 료 시 설	36,663	21,010	(15,653)	-42.69%
교육연구시설	379,491	235,125	(144,366)	-38.04%
업 무 시 설	324,638	407,235	82,597	25.44%
숙 박 시 설	118,572	147,920	29,348	24.75%
공 장	938,553	910,705	(27,848)	-2.97%
기 타	1,208,522	1,002,242	(206,280)	-17.07%
계	10,603,879	9,452,378	(1,151,501)	-10.86%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 概況(4月分)

(단위/㎡)

구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2,522	2,578	1,229,179	2,982	3,035	1,296,140	460	457	66,961	5%	
부산	1,635	1,918	1,380,823	1,085	1,246	473,443	(550)	(672)	(907,380)	-66%	
대구	918	1,031	642,174	1,641	1,858	1,105,078	723	827	462,904	72%	
인천	532	734	503,063	749	774	665,166	217	40	162,103	32%	
광주	364	396	93,611	247	269	166,724	(117)	(127)	73,113	78%	
대전	465	487	234,749	454	499	511,576	(11)	12	276,827	118%	
경기	2,389	2,887	1,529,144	2,122	2,533	1,935,819	(267)	(354)	406,675	27%	
강원	889	991	380,979	722	813	303,510	(167)	(178)	(77,469)	-20%	
충북	913	1,046	237,453	782	923	382,234	(131)	(123)	144,781	61%	
충남	739	768	348,839	534	568	429,510	(205)	(200)	80,671	23%	
전북	744	882	329,710	453	501	380,533	(291)	(381)	50,823	15%	
전남	846	1,002	257,821	522	746	399,217	(324)	(256)	141,396	55%	
경북	1,118	1,323	767,915	920	1,185	575,855	(198)	(138)	(192,060)	-25%	
경남	1,566	1,885	709,174	1,304	1,668	725,616	(262)	(217)	16,442	2%	
제주	328	351	88,366	257	315	101,957	(71)	(36)	13,591	15%	
합 계	15,968	18,279	8,733,000	14,774	16,933	9,452,378	(1,194)	(1,346)	719,378	8%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4月 合計分)

(단위/㎡)

구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7,111	7,455	4,393,052	13,560	13,931	6,747,102	6,449	6,476	2,354,050	54%	
부산	5,343	6,645	3,797,585	3,610	5,051	2,783,656	(1,733)	(1,594)	(1,013,929)	-27%	
대구	2,707	2,973	1,522,544	5,057	5,598	2,975,489	2,350	2,625	1,452,945	95%	
인천	1,635	2,213	1,935,623	2,422	2,556	2,121,048	787	343	185,425	10%	
광주	1,337	1,551	938,292	1,333	1,528	1,341,233	(4)	(23)	402,941	43%	
대전	1,459	1,740	1,868,078	1,477	1,628	1,350,194	18	(112)	(517,884)	-28%	
경기	7,214	9,587	9,219,683	7,960	9,371	7,871,131	746	(216)	(1,348,552)	-15%	
강원	2,441	2,950	1,925,988	2,127	2,410	1,018,366	(314)	(540)	(907,622)	-47%	
충북	2,856	3,451	1,157,393	2,633	3,287	1,825,195	(223)	(164)	667,802	58%	
충남	2,235	2,373	1,432,240	1,820	1,916	1,710,468	(415)	(457)	296,228	19%	
전북	1,854	2,150	1,411,551	1,316	1,595	1,118,055	(538)	(555)	(293,496)	-21%	
전남	2,565	3,093	1,096,536	1,716	2,226	1,108,176	(849)	(867)	11,640	1%	
경북	3,527	4,190	2,682,523	2,719	3,719	2,194,418	(812)	(471)	(488,105)	-18%	
경남	4,789	6,077	3,510,754	4,013	5,026	2,935,148	(776)	(1,051)	(575,606)	-16%	
제주	1,019	1,170	373,517	637	818	291,331	(382)	(352)	(82,186)	-22%	
합 계	48,092	57,618	37,365,359	52,396	60,660	37,382,010	4,304	3,042	116,651	0%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4月分)

(단위/㎡)

구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7,327	7,608	1,024,638	6,203	6,349	1,161,541	(1,124)	(1,259)	136,903	13%	
다세대주택	470	621	226,369	1,125	1,251	592,874	655	630	366,505	162%	
연립주택	58	62	76,677	51	60	66,423	(7)	(2)	(10,254)	-13%	
아파트	155	578	2,485,343	174	771	3,288,038	19	193	802,695	32%	
근린생활시설	4,849	5,073	1,566,242	4,234	4,359	1,529,544	(615)	(714)	(36,698)	-2%	
종교시설	139	160	80,557	143	166	89,721	4	6	9,164	11%	
의료시설	17	17	65,363	13	13	21,010	(4)	(4)	(44,353)	-68%	
교육연구시설	139	173	200,370	96	125	235,125	(43)	(48)	34,755	17%	
업무시설	191	212	764,895	170	177	407,235	(21)	(35)	(357,660)	-47%	
숙박시설	48	50	58,676	140	157	147,920	92	107	89,244	152%	
공장	892	1,491	1,222,467	751	1,197	910,705	(141)	(294)	(311,762)	-26%	
기타	1,683	2,234	961,403	1,674	2,308	1,002,242	(9)	74	40,839	4%	
합 계	15,968	18,279	8,733,000	14,774	16,933	9,452,378	(1,194)	(1,346)	719,378	8%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4月 合計分)

(단위/㎡)

구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20,811	22,169	3,371,021	23,012	23,620	4,549,070	2,201	1,451	1,178,049	35%	
다세대주택	1,492	1,890	700,169	4,436	4,782	2,170,523	2,944	2,892	1,470,354	210%	
연립주택	194	267	380,398	193	226	327,547	(1)	(41)	(52,842)	-14%	
아파트	697	3,877	17,448,972	598	3,206	13,780,004	(99)	(671)	(3,668,968)	-21%	
근린생활시설	15,429	16,191	5,354,875	14,911	15,901	5,873,091	(518)	(290)	518,216	10%	
종교시설	432	504	249,368	451	543	406,826	19	39	157,458	63%	
의료시설	51	60	155,272	61	65	122,979	10	5	(32,293)	-21%	
교육연구시설	449	575	899,529	325	465	1,019,108	(124)	(110)	119,579	13%	
업무시설	637	695	1,894,966	506	549	1,663,452	(131)	(146)	(231,514)	-12%	
숙박시설	143	154	236,976	489	537	518,304	346	383	281,328	119%	
공장	2,638	4,386	3,550,953	2,457	3,990	3,251,135	(181)	(396)	(299,818)	-8%	
기타	5,119	6,850	3,022,869	4,957	6,776	3,699,971	(162)	(74)	677,102	22%	
합 계	48,092	57,618	37,265,359	52,396	60,660	37,382,010	4,304	3,042	116,651	0%	()=마이너스

93년도 제2회 임시총회

開 會 辭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제19대 회장직을 떠나면서 금년도 제2회 임시총회에 즈음하여 개회사를 겸한 신상발언을 올리게 되어 심정이 매우 착잡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총회 결과에 대한 승인요청이 주무장관으로부터 반려됨에 따라 본인은 하루 빨리 새집행부가 선출되어 협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일념에서 본인의 자진 사퇴서를 감사에게 제출·보관시켰고, 오늘 총회에서 공식 표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간 협회는 본의 아니게 두달간이나 공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의 와중에 있는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조류에 발맞춰 적응과 발전을 가속화하며 성숙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심지어 우리같은 전문단체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받아 들어질 수 있는 많은 기회마저도 놓쳐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대 사회적으로 형편없이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날의 시시비비와 과오는 과감히 잊어버리고 오늘 총회를 한점의 하자도 없이 훌륭히 치루므로써 새롭게 거듭나, 협회를 정상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퇴진하는 현 임원진은 이같은 일념뿐임을 다시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막연한 오해는 이 시점을 기해서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회의를 하나의 하자도 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자는 것 뿐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본인은 물러가는 입장에서 대의원 여러분에게 몇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집행부가 불신임당한 표면적인 사유는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건축사법 개정안중 문제의 몇가지 조항 즉, 현행 종합사무소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법인사무소제도, 공제조합 조항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항들의 내용은 2년전부터 협회의 공론으로 연구 검토되었고, 정부와도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집근된 사항으로서 본인이 작년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을 결코 출마하여 선출된 회장이 공약을 실천키 위한 출발점 상황에서 차초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안은 협회의 안과는 달리 우리 건축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조항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대회후 정부 당국자와 활발한 협의결과 당시만 해도 정부 시안중 우리의 의견과 다른 조항은 고쳐주겠다고 약속되었음을 밝히둡니다.

아울러 급히 출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대의원 여러분에게 널리 홍보는 못하였지만, 이사회 의결 및 시도회장회의에서 보고 협의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둘째, 오늘 이 자리에서 선출되는 새집행부는 건축사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책임보증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협회는 업무의 연속성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정관에도 그 취지가 깔려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시 이사 대부분이 총회의 분위기에 의해서, 또는 협회의 공전을 막기 위해서 자진사퇴의 형식이 되었습니다만, 건축사법에 관한 한 책임질 사람은 본인이하, 법제담당 임직원으로 국한되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잉크도 안마른 이사가 무슨 많은 일을 했겠으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화합과 단결의 차원에서 이점 새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겨두질미하고 우리는 평생동지입니다. 우리 회원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상은 동일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우며 더불어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합시다.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정하게 오늘의 총회를 매끄럽게 치루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경우 본인을 위시한 임원진은 사퇴서를 첨부하여 새 집행부가 조속히 승인을 득하도록 범적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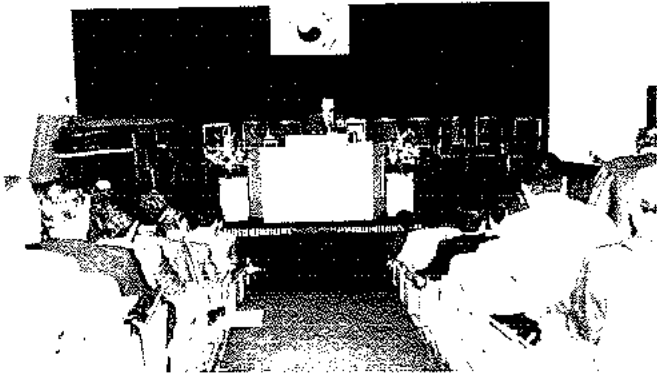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1993. 6. 3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李 永 熙

93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1993年度 第2回 臨時總會



임시총회 전경

본 협회는 지난 6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본협회 강당에서 93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9일 제1회 임시총회 속개회의 결과 이영희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와 새 회장으로 추대됐던 오웅석 회원과 이사진의 승인이 건설부로부터 정관규정에 위배된 결의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이영희 회장과 사퇴서 수리와 신임 임원선출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에 즈음해 이영희 회장은 「협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왔다」며,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사퇴수리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승인하고, 신임 회장 선출에 들어가 오웅석 회원을 단일후보로 추대, 표결에 붙여 재적대의원 240명 중 227명의 찬성으로 2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신임이사진 구성은 지난 속개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인선한 임원진을 그대로 재선출하였으며, 참여이사 선임은 신임회장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어,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집행부에 일임, 일부 의견은 서신으로 접수, 반영키로 하고 폐회했다.

회장 이·취임식 거행

—20대 회장에 吳雄錫 회원 취임—



이·취임식

본 협회 20대 회장에 吳雄錫 회원((주)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 취임했다.

6월 23일 오전 11시 본회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회장 이·취임식에서 李永熙 전임회장은 「그동안 우리 회원간에 팽배해 있던 오해와 불신을 오늘을 기점으로 종식시키고, 시대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기성찰과 개혁으로 실추된 협회의 위상을 회복하자」며, 「새 집행부의 분발을 확신하며, 협회발전을 위해 회원 상호간 신뢰의 협력하는 기풍을 조성하자」는 이임인사가 있었다.

이어 있는 취임사에서 신임 吳회장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재정돈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상을 정립해 나가자」며, 「건축사법 개정문제는 회원의 자유로운 저작활동과 권익이 보장되면서 국민을 위한 객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사의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의 운영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 위원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건축사」지 기능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연금운영의 효율적 개선 등에 관해 역



吳雄錫 會長
(1930. 12월생)

- 1954. 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1966. 7. 건축사 면허 취득
- 1968. 9. 기술사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 1965. 7. 신조 건축 연구소 개설
- 1982. 3. - 86. 10.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 1982. 11. - 86. 10.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장, 전국회장 역임
- 1984. 7. - 85. 6. 서울특별시 시청자문위원(도시개발)
- 1985. 3. - 87. 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도시설계조정 심의위원
- 1986. 3. - 87. 2. 건설부 건축위원회 위원
- 1988. 12. - 91. 12. 건설부 중앙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위원
- 1993. 현재
(주)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자영중

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고,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식장에는 역대 회장 및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 신임 임원들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공로패 전달과 협회기 전달이 있는 후 장기인 자문위원의 격려사가 있었다.

신 임 임 원 (가나다 順)



金仲宰 理事

- 1942년 6월생
- 본협 이사 및 부산건축사회장 역임
-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金仁坤 理事

- 1935년 3월생
- 서울건축사회 강남분회장 역임
- (주)세마건축 대표이사 역임
- (주)동일건축사사무소 대표



金在佑 理事

- 1937년 5월생
- 본협 이사 및 대구건축사회장 역임
- 한남건축사사무소 대표



金澤盛 理事

- 1938년 2월생
- 서울건축사회 상남분회 감사, 복지회 및 선협 이사
- 흥인건축연구소 대표



宋良漸 理事

- 1938년 12월생
- 본협의 이사 및 광주건축사회장 역임
- 한미건축설계사무소 대표



李一潤 理事

- 1940년 11월생
- 경기도건축사회장 역임
- 한림건축사사무소 대표



李鍾寬 理事

- 1943년 3월생
- 본협 에너지분과 위원장 역임
- 건축사사무소 한국 대표



李鍾萬 理事

- 1933년 11월생
- 서울건축사회 서초분회장 역임
- 녹야·현익·호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李春相 理事

- 1936년 5월생
- 본협 감사 및 이사, 서울건축사 회장 역임
- 신양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건축사회 경로소연 개최



경로소연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지난 5월 14일(금) 경기 파주 소재 문산(반구정)에서 제2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추대회원과 역대 회장들을 모시고 경로소연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경로사상이 날로 되새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원로건축사에 대한 경의표시를 하는데 기본 취지를 두고 매년 배풀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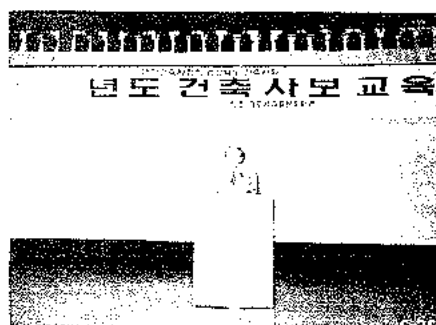
경북건축사회 건축사보 교육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에서는 지난 5월 26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건축사보 1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태웅 회장의 건축가의 요건, 울산대 성인수

교수의 20세기 현대건축의 여러 경향, 김이두 교수의 컴퓨터를 이용한 건물의 구조해석 등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건축사보 일동은 건축문화 창달과 신한국 창조에 기여코자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건축사보교육

「노인복지국제학술회의」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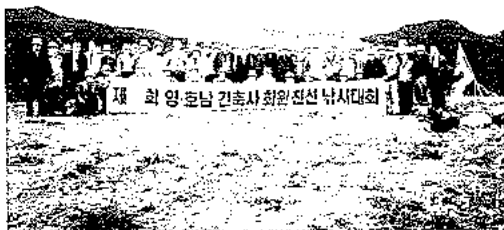
경남 건축사회(회장 배동권)는 지난 5월 4일(화) 경남 마산시 소재 경남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남지역의 노년층을 위한 종합 리조트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노인복지 국제학술회의에 협찬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지역언론사 및 KBS, MBC와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개최됐

으며, 경남 지역 해안가의 노년층 종합리조트타운 계획방향(경상대-박태환)과 실버커뮤니티의 설계기법(버링 브라운 건축설계(주)-다텔브라운) 그리고 실버커뮤니티의 경영방법(린너웨이베이 실버타운(주)-알란지)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 결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학술회의



친선 뉴시대회

영·호남 회원 친선 뉴시대회 개최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 주최로 지난 5월 1일(토) 경북 안동군 임하댐에서 7개 건축사회(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의 많은 회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영·호남 건축사 회원 친선 뉴시대회를 개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93경남건축전 작품공모

경남건축사회(회장 배동권)에서는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건축계의 장래를 이끌어갈 후진발굴 및 양성을 목적으로 제3회 경남학생작품전을 겸한 '93 경남건축전을 개최한다.

○출품자격

- 건축사(회원)부문: 경남건축사회 회원
- 학생부문: 경남도내(전문)대학 건축과 재학생

○출품내용

- 건축사(회원)부문: 준공검사 필한 건축물
- 학생부문: 순수창작 작품으로 용도, 규모 및 대지여건은 무제한(졸업작품과 겸하여도 무방)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건축사부문
 - 90cm×90cm의 규격, 작품당 패널 2매 이내
 - 작품의 사진은 공동으로 촬영
- 학생부문
 - 120cm×120cm의 규격, 패널 매수 제한 없음
 - 도면작성
 - 공동작은 3인 이내
 - 타공모전에 수상한 작품은 제외

—공동사항

- 패널제작시 반사재료 사용을 금할 것
- 전시용 절고리 부착
- 패널재료는 운반, 전시시 파손의 우려가 없는 재료
- 모형은 출품을 금하고 사진으로 대체
- 패널 규격 엄수

○작품접수: 1993년 10월 15일(금)~16일(토)

○시상내용

- 건축사부문: 작품집 발간 홍보
- 학생부문
 - 대상(1점):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최우수상(1점): 상금 70만원과 상패
 - 우수상(2점): 상금 각 50만원과 상패
 - 장려상(3점): 상금 각 30만원과 상패
 - 입선(다수): 상금 각 10만원과 상패

※출품자 전원에게 기념패 수여, 입상자에게는 졸업후 회원업체 우선채용

※작품접수 및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사무국
전화: 46-4530-1, FAX: 45-4530

분당 주택 전시관 개관

한국주택협회(회장 류근창)에서는 분당 야탑역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건립, 지난 5월 31일(월) 개관했다.

분당신도시 야탑역 인근에 들어선 이 주택 전시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만9천7백21평 규모로 96년 말까지 4단계 사업계획으로 주택공원이 조성되는데 참여하는 건본주택 통합전시관으로 수도권 분양아파트 상설 전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전시에 참여한 업체 중 (주)청구주택의 청구문화관은 세계 60여개국의 주거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꾸민 세계민속관과 청구가 분양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를 전시하는 건본주택전시관 그리고 청구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직경 14미터의 동형대의 영상관으로 구분, 단연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 10일(월) 연구원내 2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진행,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배순석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제도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발

표에서 재건축과 공공개발과의 관계와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집중 진단했으며, 이어 임상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 본 재건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건축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최근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 증대와 함께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건축학회, 공업화주택 기술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건축학회(회장 송종석)에서는 지난 5월 20, 21일 양일간에 걸쳐 건설학회 대회의실에서 신현식 중앙대 교수의 'PC 공법활용의 당위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이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공업화주택 기술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많은 관계자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제1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요강 발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

한민국건축대전의 올해 개최요강이 발표됐다.

○전시내용 및 출품기간

구분	전시기간	원서교부	작품접수일	환수시간
초대전	93.11.5~11.19		93.11.2	10:00~17:00
일반공모전	93.11.5~11.19	93.6.21~7.30	93.11.1	10:00~17:09 (시간임수)

○전시장소 및 작품접수처 : 예술의 전당 미술관(서울 서초 700)

○출품자격 : 대한민국 국민,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 명의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작품내용 :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설

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작품규격
패널 : 100cm × 200cm 이내
모형 : 100cm × 100cm × 100cm 이내

○발표 : 1993년 11월 5일

○원서교부 및 문의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전화 744-8050)

건축가협회 6월 금요토론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에서는 지난 6월 4일(금) 예총회관 회의실에서 「창작과 제도」라는 주제로 6월 금요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건축계의 관심사인 감리제도와 건축사제도와 관련 외국의 예를 들어 발표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건축행정제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김수분(가우건축대표) / 미국의 감리제도(캘리포니아주) 정기용(기용건축대표) / 불란드 건축사제도 손명석(건설부 계장) / 우리나라의 건축행정제도 김인철(인제건축대표) 김홍수(단우모람대표) 최관영(일건건축대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공개 세미나 개최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장 윤도근)에서는 오는 6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연세대 알렌관에서 실내디자인 시장환경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실내디자인학회의 5개분과 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리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디자인과 관련된 최근 설비발달 상황 (실내설비위원회)

○컴퓨터를 이용한 실내 조명 설계 (실내조명위원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목재대용 인공소재 및 표면재료 (실내가구위원회)

○최근 실내디자인 재료시장의 상황 (실내재료위원회)

○현대 건축기술과 실내디자인의 역할 (실내시공위원회)

※문의처 : 한국실내디자인학회(전화 564-2598)

제6회 한국 인테리어디자인대전 수상작 발표



대형 실내디자인 작품의 일부분

가인테리어그룹과 월간 인테리어에서 개최한 제6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인대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개최된 이번 대전에서는 총 73작품이 응모하여 문효정·조소영·이정민(이화

여대 산미대학원)이 출품한 'STREET BOOK CAFE'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우수상 1점, 특선 8점, 입선 14점이 각각 선정, 수상하였다.

※문의처 : 월간 인테리어 편집부(전화 744-7643)